

2011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발간등록번호  
11-1620000-000350-01

# 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안 관련 연구



# 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안 관련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11년도 용역사업  
최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양 천 수

공동연구자 배 병 일  
이 부 하  
오 완 호  
박 정 원  
이 윤 주

연구보조원 김 흥 택  
이 명 주

2011년 12월

영남대학교 인권교육연구센터

본 연구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연구비를 지원 받아 수행한 것으로 국가  
인권위원회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 목 차 ●

요약문 .....	vii
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 추진체계 .....	xiii
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단기·중기·장기계획) 성과목표 및 실행과제 .....	xvi
각 영역별(공공영역·학교영역·시민사회영역) 중점추진과제 .....	xvii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1

I. 연구 목적 .....

1

II. 연구 필요성 .....

1

### **제2절 연구방법 및 순서** .....

4

I. 연구방법 .....

4

II. 논의순서 .....

6

III. 연구 추진 일정 .....

6

## **제2장 국내·외 인권교육 현황 분석** .....

7

### **제1절 인권교육 개념에 대한 기초적 논의** .....

7

I. 인권교육의 개념 .....

7

II. 인권교육의 요소 .....

33

III. 인권교육관련 기구 .....

36

### **제2절 국내 인권교육 현황 분석** .....

40

I. 국내 인권교육 현황 개관 .....

40

II. 공공영역 인권교육 현황 .....

42

III. 학교영역 인권교육 현황 .....

57

IV. 시민사회 영역의 인권교육 현황 .....

77

V. 국내 인권교육의 과제 및 방향 .....

82

<b>제3절 국외 인권교육 현황 분석: 인권교육의 국제적 차원</b> .....	88
I. UN 인권교육(Human Rights Education)의 전개 .....	88
II. 인권교육의 세계적 현황 .....	102
<b>제3장 인권교육에 대한 전문가 실태조사 분석</b> .....	117
I. 설문조사기간 및 방법 개요 .....	117
II. 일반적 특성 .....	119
III. 분석결과 .....	120
IV. 결론 .....	179
<b>제4장 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 추진체계</b> .....	183
<b>제1절 서론</b> .....	183
I. 인권교육 행동계획 추진체계 구상절차 .....	184
II. 인권교육 행동계획 추진체계 설정배경: 특히 4대 핵심목표를 중심으로 하여 .....	185
III. 인권교육 행동계획 추진주체 .....	186
<b>제2절 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 추진체계 기본구상</b> .....	189
I. 비전 .....	189
II. 기본원칙 .....	190
III. 4대 핵심목표 .....	191
IV. 성과목표 .....	193
V. 실행과제 개관 .....	200
<b>제3절 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 실행과제 분석</b> .....	207
I. 인권교육의 권리화 .....	207
II. 인권교육의 전문화 .....	209
III. 인권교육의 제도화 .....	216
IV. 인권교육의 지역화 .....	222

<b>제4절 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 로드맵</b> .....	225
I. 고려사항 .....	225
II. 단기계획(2012-2014) .....	226
III. 중기계획(2015-2017) .....	228
IV. 장기계획(2018-2020) .....	229
<b>제5절 각 영역별 중점추진과제</b> .....	232
I. 공공영역 .....	232
II. 학교영역 .....	233
III. 시민사회영역 .....	235
<b>제5장 결 론</b> .....	237
<b>참고문헌</b> .....	243
<b>부 록</b> .....	249

## ● 표 목 차 ●

<표 1> 각 영역별 실태조사 응답률 .....	5
<표 2>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과 주요업무 .....	39
<표 3> 국내 인권교육 시기별 상황 .....	40
<표 4> 군 인권교육 규정의 교육종류별 교육운영·내용 및 시간 등 .....	50
<표 5> 연도별 정신보건분야 인권교육 실시 현황(2009년-2011년) .....	53
<표 6> 정신보건시설의 인권교육 강사 양성과정 .....	53
<표 7> 경찰분야 인권교육 현황 .....	56
<표 8> 학교영역 인권교육 제도화 수준 .....	59
<표 9> 초·중등 및 대학교 인권교육영역 주요 활동 .....	64
<표 10> 시·도교육연수원 인권관련 교과목 강좌개설 현황(2006-2009년도) .....	65
<표 11> 자격연수에서 인권관련 교육 현황(2008-2009) .....	66
<표 12> 인권관련 과목별 강좌시간 현황(2008-2009) .....	68
<표 13> 국·공립대학교 인권과목 개설 추이 .....	69
<표 14> 대학별 인권기구 및 기관(2011.12.31. 기준) .....	70
<표 15> 대학별 국제학술대회, 토론회, 세미나 등 .....	71
<표 16> 대학교 인권과목 개설 현황 .....	75
<표 17> 시민사회영역 인권교육 제도화 수준 .....	86
<표 18> 각 영역별 설문조사 응답률 .....	118
<표 19> 학교영역의 대상별 인권교육활동 평가 .....	133
<표 20> 학교 영역의 대상별 인권교육 활동 전체 평가 .....	134
<표 21> 공공기관 영역의 대상별 인권교육활동 평가 .....	144
<표 22> 공공기관 영역의 대상별 인권교육 활동 전체 평가 .....	145
<표 23> 시민사회 영역의 대상별 인권교육활동 평가 .....	156
<표 24> 시민사회 영역의 대상별 인권교육 활동 전체 평가 .....	158
<표 25> 인권교육의 물적기반 평가 .....	167
<표 26> 인권교육 프로그램과 자료, 강사의 전문성 전체 평가 .....	168
<표 27> 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단기·중기·장기계획) 성과목표 및 실행과제 .....	230
<표 28> 각 영역별(공공영역·학교영역·시민사회영역) 중점추진과제 .....	236

## ● 그림 목차 ●

<그림 1> 인권교육의 영역과 주요대상 .....	35
<그림 2> 장병 의식변환 .....	52
<그림 3> 인권교육의 방향 .....	189
<그림 4> 인권교육 행동계획의 비전 .....	190
<그림 5> 인권교육에 대한 세 가지 기본원칙 .....	190
<그림 6> 인권교육에 대한 4대 핵심목표 .....	192
<그림 7> 인권교육에 대한 구체적 성과목표 .....	194
<그림 8> 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 추진체계 .....	204



## ● 요약문 ●

이 연구는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국내·외 인권교육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앞으로 10년 동안 적용해야 할 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 추진체계의 구체적인 모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분석하고 제시한 내용들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제1장에서는 이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그리고 연구방법 및 순서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 제2장에서는 국내·외 인권교육 현황을 분석하였다. 우선 제1절에서는 인권교육의 개념과 원리 등에 관해 그 동안 축적된 연구 성과들을 분석·정리함으로써,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인권교육이란 무엇인지, 인권교육의 원칙과 방법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등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제2장 제2절에서는 그 동안 각 분야별로 이루어진 국내 인권교육의 성과 및 한계 등을 분석·정리하였다. 이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국내의 인권교육은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공공부문 인권교육, 시민사회부문 인권교육, 학교부문 인권교육 등이다.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면서 인권교육에 대한 총체적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지난 10년간 사업의 흐름은 세 시기로 분류할 수 있다. 인권교육 도입기(2002-2005), 인권교육 성장기(2006-2008), 인권교육 확립기(2009-2011 현재)이다.

공무원 인권교육의 현황의 전제로서 인권교육에 대해 가장 기본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있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중 공무원 인권교육을 개관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무원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의식이 제고되면서, 공무원 인권교육 역시 그 이전보다 양적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공무원 인권교육의 형식화, 미흡한 인권교육방법 등이 한계로 보인다. 군이나 경찰의 경우에도 인권교육을 실시해오고 있지만, 인권교육 시간이 너무 짧고 인권교육 교재가 미비하며, 인권교육 교관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교육이 매우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학교 인권교육은 사실상 독립된 과목이나 교육과정에서의 특별한 내용적 강조 없이, 단지 관련 교과에서 미미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개별적으로 인권관련 교육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교원 신규임용 및 승진자들을 위한 자격연수과정의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교육시간의 증가는 바람직하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조례가 제정되면서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흐름을 찾아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주민의 인권보장을 지향하고,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규정하는 지역주민의 인권의식을 향상시키는 변화가 유발되고 있다.

대학에서의 인권과목은 법학 관련 과목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법과대학에서 인문사회과학대학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학에서 인권과목수의 증가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대학에서 다양한 인권관련 교과목 개발이 요청된다.

다음으로, 제2장 제3절에서는 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권교육 현황을 분석해 보았다. 이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유엔은 세계인권선언 이후 국제적으로 유엔인권교육의 기준을 국제적 문건을 통해 제시해왔다. 인권교육은 이제 세계적 차원의 보편적 흐름이며 이에 따른 인권교육의 제도화가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국내에서의 인권보호의 문제는 동시에 국제적 차원을 갖게 되며, 동시에 국제적 인권기준은 국내적으로 미비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인권보호의 현실을 확인시켜 줌으로써 국내법적 인권보호 신장에 기여할 수 있다.

인권교육과 관련된 국내정책결정자나 활동가들은 국내적 정책 입안과 실천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동시에 국제적 기준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권교육을 국가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치환시켜 실질화, 구체화시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한국사회가 국제적 수준의 인권보호가 실질적으로 구현되고 있는 사회로 완전히 확립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인권교육’을 통하여 인권을 보다 실질화하고 확인하는 사회가 되어야한다는 점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유엔인권교육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한국을 국제적 수준의 인권교육 시행 국가로 확고히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제적 인권과 인권교육의 확고한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이 시민인권교육, 인권교육의 평생화로 실천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국제적 흐름에 적극적으로 협력, 대처해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은 유엔회원국으로서 주요한 국제적 조약을 체결하고, 이들 조약이 제시하는 규정들을 국내적으로 이행하려는 노력을 해왔다. 정부는 유엔이 제시한 인권에 대한 국내적 증진을 위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시행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인권증진 보호와 국제적 인권기준을 실천행동으로 보여 왔다. 한국은 유엔이 제시한 국제적 인권교육의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고,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이 끝나는 2015년에 유엔의 프로그램 이행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국내적으로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이 제시한 인권교육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각국의 인권교육의 현황은 개개 국가의 문화적 특수성, 역사적 배경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그 장단점을 논하기는 힘들지만, 전반적인 차원에서 볼 때 인권교육의 다양화, 전문화, 집중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각국의 인권교육 현황에 대한 사례 검토는 많은 국가들이 다양한 대상과 방법, 내용을 포함하는 실질적인 인권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인권교육의 대상 선정 및 교육, 인권교육 전문가 양성을 주도하는 조직 중심의 인권교육이 체계적으로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의 경우 인권교육의 연구와 교육 등이 주로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민간단체에서 보다 활발하고 체계적인 인권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인권교육 교재 발간, 전문가 양성 등의 문제가 민간단체 차원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짐으로써 인권교육의 전문화가 보다 심화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제3장에서는 인권교육에 대한 전문가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정리하였다. 이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인권교육의 정부 내 주무부처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를 96.1%의 인권전문가들이 선택하였으며, 인권교육법을 제정할 때 중점을 두어야 하는 사항으로 순위를 통합한 결과 인권교육 지원예산의 확보와 공공기관 종사자의 인권교육의 의무화가 각각 31.0%, 29.9%로 높게 나타났다. 순위별로는 1순위로 공공기관 종사자의 인권교육 의무화가 43.1%로 가장 많았고, 인권교육 지원예산의 확보는 2순위에서 4순위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들의 86.3%가 인권교육원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으며, 인권교육원 설립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과반수이상의 전문가가 정책관리자의 무관심을 꼽았다.

지난 10년간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 활동에 대해서 잘했다는 긍정적 평가는 33.4%, 부족하다는 부정적 평가는 35.3%로 전문가들의 평가가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가는 활동영역이 국가인권위원회인 전문가는 잘했다가 53.8%로, 대학교나 시민사회에서 활동하는 전문가에 비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지난 10년간 인권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인권교육이 권리임을 인식하게 하였으며, 학교교육 및 교육과정에서의 제도화 및 다양한 인권자료 개발에 노력한 부분 등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그러나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점을 두어야 할 점 역시, 인권교육을 할 강사 양성 및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보급을 꼽아 아직은 더 많은 부분에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학교에서의 인권교육 의무화와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직업이나 정책시행자 등의 공공기관 관료에 대한 인권교육의 의무화의 의견이 많았다.

각 영역별로 인권교육 활동의 평가는 학교영역은 1.89점, 공공영역은 1.77점, 시민사회 영역의 인권활동 평가는 1.96점으로 모든 영역에서 인권교육활동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하였다. 대상별로 살펴보면 학교영역에서는 초·중등 학생과 초등학교 교원의 평가 점수가 각각 2.40점과 2.37점으로 평가되었으며, 대학생, 유치원 및 취학 전 아동, 유치원 및

취학 전 기관 종사자가 각각 1.92점, 1.81점, 1.76점이고, 대학교수, 전문직업 훈련원생, 기타가 각각 1.55점, 1.57점, 1.59점으로 평가되어 학교영역에서는 초·중등 학생과 초등학교 교원의 인권교육이 다른 대상에 비해 다소 높게 평가되었다. 공공기관 영역에서는 보호시설관련 공무원이 2.74점으로 다른 대상에 비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경찰공무원이 2.30점, 교정직 공무원이 2.17점, 행정공무원이 2.09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보호직, 출입국 공무원이 1.85점, 군부대 종사자 1.81점, 사법부 1.74점, 입법관계자와 검사 및 검찰공무원이 각각 1.56점과 1.51점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가정보원 1.19점,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1.19점, 국회의원 1.3점으로 고위 공무원들의 인권교육활동에 대한 평가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에서는 시민을 대면하는 공무원들에 비해 정책결정을 하는 고위 공무원들 대상의 인권교육활동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시민사회영역에서는 사회적 약자집단과 사회단체 지도자가 각각 2.42점, 2.35점으로 다른 대상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료전문인과 기업인이 각각 1.60점과 1.31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언론인은 1.98점으로 인권교육활동이 부족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영역별, 각 대상들에 대한 인권활동의 평가에 있어서도 대체적으로 시민사회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에 비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영역별로 인권교육의 가장 큰 장애요인에 대해서는 학교영역과 공공기관 영역에서는 정책관리자의 무관심이 각각 29.6%와 3.5%로 가장 높았으며, 시민사회 영역에서는 체계적 교육기관 부재가 21.1%, 예산부족 17.7%, 정책관리자 무관심 15.6%, 사회적 책임의식 및 성숙한 시민의식 부족 14.3%, 인권교육에 대한 전반적 편견 13.6%, 인권강사 및 연수프로그램 부족이 12.9%로 전문가들에 따라 매우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학교영역 인권교육에서 우선되어야 할 대상으로 교원 53.5%, 학생 26.8%(38명)이었으며, 공공기관 영역에서는 행정부에 소속된 대상이 67.9%로서 입법 관계자 17.6%, 사법부 5.7%에 비해 매우 높았다. 그리고 시민사회 영역에서는 전문집단이 41.5%로 높았으며, 사회적 영향력 집단과 기업인이 각각 16.2%와 18.3%로 나타났다.

각 영역별로 인권교육이 잘 되기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모든 영역에서 인권교육의 의무화 및 제도화에 대한 의견이 많았으며, 예산지원 또는 인권강사 및 인력 양성과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학교영역에서는 학급 환경개선 부분과 학생 수준별 다양한 인권자료에 대한 의견이 있었으며, 공공기관에서는 인권교육의 의무화 및 모니터링 체계와 교육대상의 다양화 및 인권 준수 사항 의무화 및 처벌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시민사회에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에 대한 인식 및 의식 고취와 대중화를 위한 홍보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현재의 인권교육프로그램과 강사의 전문성 등 인권교육의 인적·물적 기반에 대한 평가로 인권교육프로그램은 2.88점, 인권교육자료는 3.23점, 인권교육 강사의 전문성은 2.81점으로 인권교육자료에 대한 평가가 3가지 항목 중에서는 가장 높았으며, 특히 인권교육자료에서 활동영역이 대학교와 국가인권위원회인 경우의 평가점수는 각각 3.44점, 3.69점으로 잘했다는 측면에 대한 평가가 있는 반면, 시민사회의 평가점수는 2.60점으로 차이를 보였다. 강사의 전문성에 대한 평가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평가점수는 3.31점으로, 대학교와 시민사회의 평가점수인 2.56점, 2.53점에 비해 높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되어야 할 인권교육의 자료나 프로그램으로 자료의 전문화 및 교육대상별 세분화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또한, 자료의 현실성과 실제 사례위주의 자료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대중적이고 쉬운 교재와 표준화된 교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강사 양성에 있어서는 강사 양성기관 설립이, 양성교육에 필요한 매뉴얼 공통 교재 개발, 강사들의 연수 및 보수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인권교육 강사의 지식과 자료 공유와 단계별 양성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향후 10년간 인권교육계획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비정치적이고 사회 전반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권에 대한 교육, 인권친화적인 방식으로 교육, 인권 실천 및 증진 활동으로의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인권교육의 의무화와 공공기관, 기업, 학교 영역의 최고 관리자들의 교육, 어릴 때부터 인권교육 실시 등으로 인권교육의 확산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또한, 향후 10년간 인권교육계획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한 방안으로 역시 인권교육의 체계화 및 제도화 강사들의 역량강화 및 다양한 교육자료 개발 단기 및 중·장기적 계획 수립 등 국가차원의 제도화 수준을 높여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및 인권관련 기관 및 연구소 설립과 각계의 인권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이 연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 추진체계를 다루었다. 연구진은 우선 비전으로서 ‘인권교육 실질화를 통한 공생사회 실현’을 제안하였다.

이어서 인권교육의 기본원칙으로서 세 가지 원칙을 내놓았는데, ‘권리로서 인권교육’, ‘통합적 접근대상으로서 인권교육’, ‘역사적·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인권교육’이 그것이다.

다음으로 인권교육의 4대 핵심목표를 제시하였다. ‘인권교육의 권리화’, ‘인권교육의 전문화’, ‘인권교육의 제도화’, ‘인권교육의 지역화’가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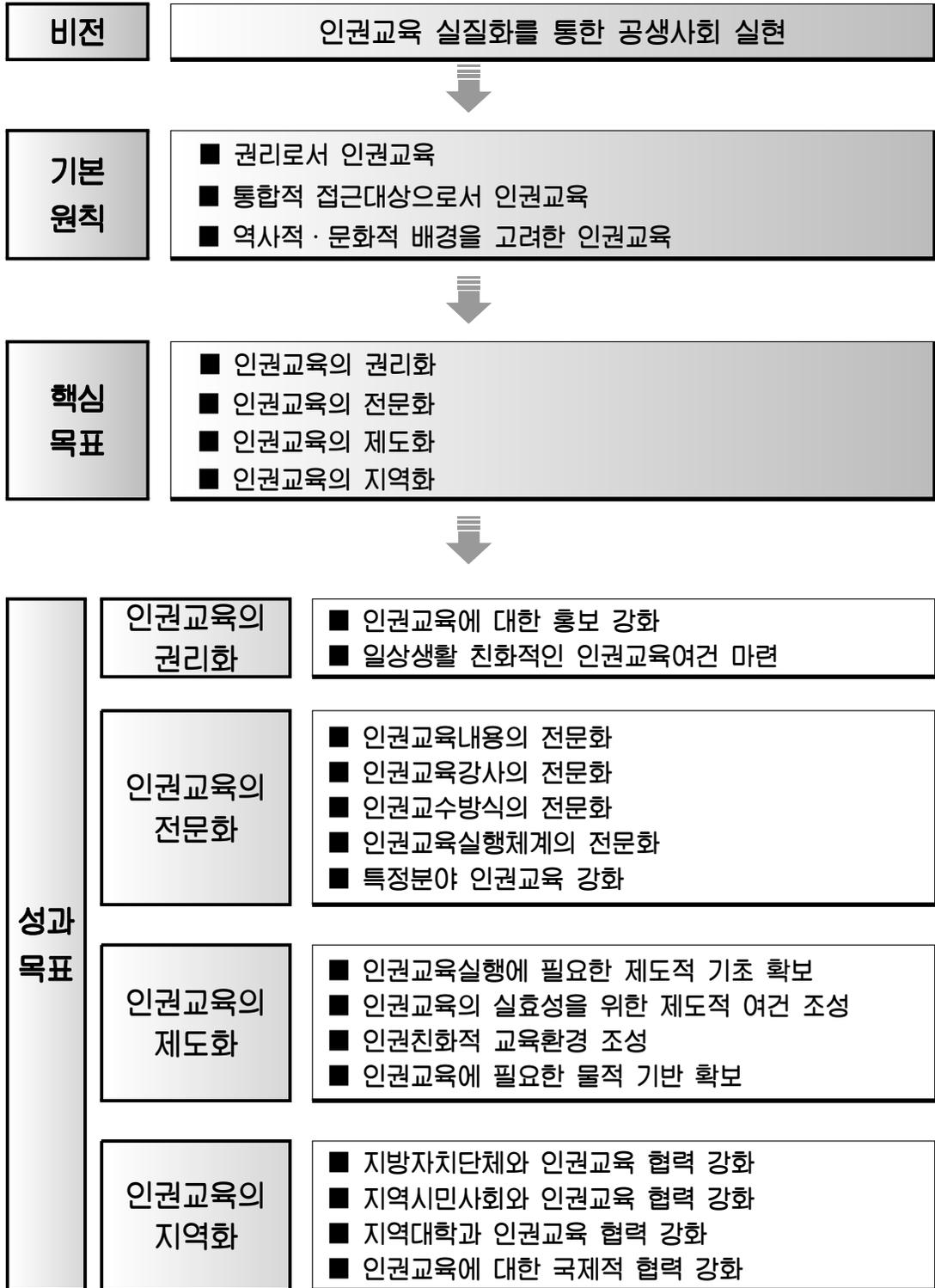
나아가 이러한 인권교육의 4대 핵심목표를 구체화하는 성과목표를 각 핵심목표 아래 설정하였다. 먼저, 인권교육의 권리화를 실현하기 위한 성과목표로는 ‘인권교육에 대한 홍보강화’, ‘일상생활 친화적인 인권교육여건 마련’을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인권교육의

전문화를 실현하기 위한 성과목표로는 ‘인권교육내용의 전문화’, ‘인권교육강사의 전문화’, ‘인권교수방식의 전문화’, ‘인권교육실행체계의 전문화’, ‘특정분야 인권교육 강화’를 설정하였다. 나아가 인권교육의 제도화를 실현하기 위한 성과목표로는 ‘인권교육실행에 필요한 제도적 기초 확보’, ‘인권교육의 실효성을 위한 제도적 여건 조성’, ‘인권친화적인 교육 환경 조성’, ‘인권교육에 필요한 물적 기반 확보’를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권교육의 지역화를 실현하기 위한 성과목표로는 ‘지방자치단체와 인권교육 협력 강화’, ‘지역시민사회와 인권교육 협력 강화’, ‘지역대학과 인권교육 협력 강화’, ‘인권교육에 대한 국제적 협력 강화’를 설정하였다.

인권교육 행동계획 추진체계의 마지막으로 이러한 성과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50개의 구체적인 실행과제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인권교육 행동계획 추진체계에 토대를 두어, 인권교육 행동계획 로드맵을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 설정하였고, 공공영역, 학교영역, 시민사회 영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각 영역별 인권교육 중점추진과제도 제시해 보았다.

## 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 추진체계



실행 과제	<b>인권교육의 권리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인권교육에 대한 홍보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교육 홍보광고 추진</li> <li>· 인권교육 뉴스레터 발간</li> <li>· 전국 대학생 대상 모의 인권위원회 대회 개최</li> <li>· 인권교육 논문공모전 실시</li> </ul> </li> <li>■ <b>일상생활 친화적인 인권교육여건 마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도시사업 지원</li> <li>· 인권교육도시사업 지원</li> <li>· 인권체험마을 조성사업 지원</li> </ul> </li> </ul>
	<b>인권교육의 전문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인권교육내용의 전문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인권교과목의 전문화</li> <li>· 전문인권교과목 개발</li> <li>· 통합형 인권교과목 개발</li> <li>· 기존 인권교육교재 개정</li> <li>· 각 분야별 인권교육교재 개발</li> <li>· 전문인권교육교재 개발</li> <li>· 통합형 인권교육교재 개발</li> <li>· 인권교육사례집 개발</li> </ul> </li> <li>■ <b>인권교육강사의 전문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교육강사 양성과정 체계화</li> <li>· 전문분야별 인권교육강사 양성</li> </ul> </li> <li>■ <b>인권교수방식의 전문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친화적 교수법 개발</li> <li>· 다양한 교수방식의 인권교과목 개발</li> <li>· 인권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li> <li>· 인권교육 교수법 매거진 발간</li> </ul> </li> <li>■ <b>인권교육실행체계의 전문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영역별 인권교육프로그램 표준모델 개발</li> <li>· 각 영역별 인권교육 평가지표 개발</li> </ul> </li> <li>■ <b>특정분야 인권교육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인권에 대한 교육 강화</li> <li>· 기업인권에 대한 교육 강화</li> <li>· 사회복지인권에 대한 교육 강화</li> <li>· 아동인권에 대한 교육 강화</li> <li>· 교원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li> <li>· 고위행정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li> </ul> </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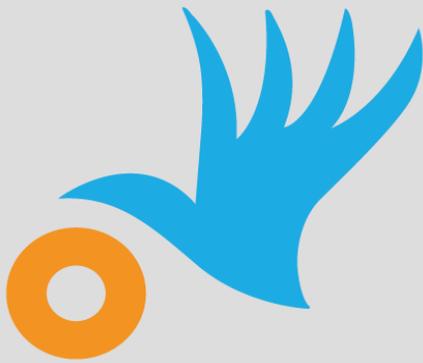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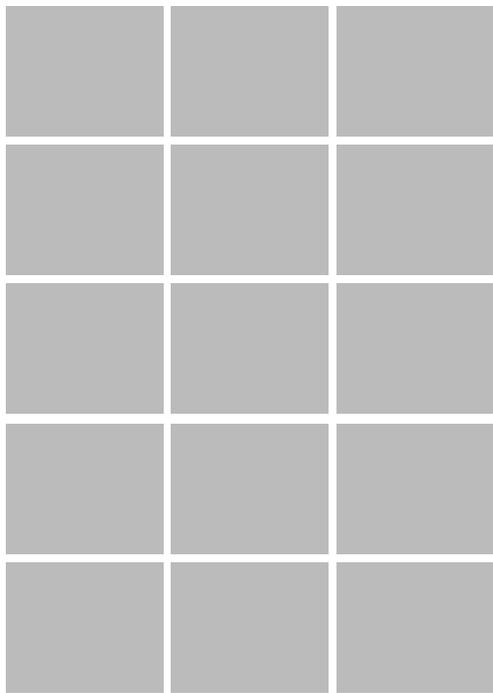
<b>실행 과제</b>	<b>인권교육의 제도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인권교육실행에 필요한 제도적 기초 확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교육법” 제정</li> <li>· “인권교육법시행령” 제정</li> <li>· 인권교육원 설립</li> <li>· 인권전문대학원 설립 모색</li> </ul> </li> <li>■ <b>인권교육의 실효성을 위한 제도적 여건 조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교육에 대한 감독 및 평가체계 제도화</li> <li>· 시민사회 인권교육단체와 네트워킹 방안 모색</li> <li>· 인권교육강사 협의회 운영 검토</li> <li>· 각종 국가시험에 인권교과목 추가 모색 (변호사시험, 공무원시험, 교원임용시험)</li> </ul> </li> <li>■ <b>인권친화적 교육환경 조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영역별 인권친화성 지표 개발</li> <li>· 대학평가항목에 인권지표 포함 추진</li> </ul> </li> <li>■ <b>인권교육에 필요한 물적 기반 확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확보방안 모색</li> <li>· 인권교육펀딩체계 구축</li> </ul> </li> </ul>
	<b>인권교육의 지역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지방자치단체와 인권교육 협력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인권조례제정 지원</li> <li>· 지방인권교육에 인권교육강사 지원</li> </ul> </li> <li>■ <b>지역시민사회와 인권교육 협력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인권교육협의체 운영</li> <li>· 시민사회-대학 인권강사 매칭 프로그램 개발</li> </ul> </li> <li>■ <b>지역대학과 인권교육 협력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교육연구중심대학 협의체 운영</li> <li>· 각 대학 인권교육센터와 네트워킹 구축</li> <li>· 대학 인권교과목 개발 지원</li> </ul> </li> <li>■ <b>인권교육에 대한 국제적 협력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아시아 인권레짐 구축 추진</li> <li>· 동아시아 국가인권위원회 협의회 창설</li> </ul> </li> </ul>

구분	성과목표	실행과제
<p><b>단기계획</b> (2012-2014)</p>	<p><b>인권교육 권리화를 위한 기본체계 제도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교육 홍보광고 추진 (1-1-1)</li> <li>· 인권교육 뉴스레터 발간 (1-1-2)</li> <li>· 전국 대학생 대상 모의 인권위원회 대회 개최 (1-1-3)</li> <li>· 인권교육 논문공모전 실시 (1-1-4)</li> <li>· 기존 인권교과목의 전문화 (2-1-1)</li> <li>· 기존 인권교육교재 개정 (2-1-4)</li> <li>· 인권교육강사 양성과정 체계화 (2-2-1)</li> <li>· 인권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2-3-3)</li> <li>· 각 영역별 인권교육프로그램 표준모델 개발 (2-4-1)</li> <li>· 각 영역별 인권교육 평가지표 개발 (2-4-2)</li> <li>· 정보인권에 대한 교육 강화 (2-5-1)</li> <li>· 기업인권에 대한 교육 강화 (2-5-2)</li> <li>· 사회복지인권에 대한 교육 강화 (2-5-3)</li> <li>· “인권교육법” 제정 (3-1-1)</li> <li>· “인권교육법시행령” 제정 (3-1-2)</li> <li>· 인권교육에 대한 감독 및 평가체계 제도화 (3-2-1)</li> <li>· 각 영역별 인권친화성 지표 개발 (3-3-1)</li> <li>· 예산확보방안 모색 (3-4-1)</li> <li>· 지방인권교육에 인권교육강사 지원 (4-1-2)</li> <li>· 지역인권교육협의체 운영 (4-2-1)</li> <li>· 인권교육연구중심대학 협의체 운영 (4-3-1)</li> </ul>
<p><b>중기계획</b> (2015-2017)</p>	<p><b>인권교육의 지속적 전문화 · 체계화 · 소통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인권교과목 개발 (2-1-2)</li> <li>· 통합형 인권교과목 개발 (2-1-3)</li> <li>· 각 분야별 인권교육교재 개발 (2-1-5)</li> <li>· 전문인권교육교재 개발 (2-1-6)</li> <li>· 통합형 인권교육교재 개발 (2-1-7)</li> <li>· 인권교육사례집 개발 (2-1-8)</li> <li>· 전문분야별 인권교육강사 양성 (2-2-2)</li> <li>· 인권친화적 교수법 개발 (2-3-1)</li> <li>· 다양한 교수방식의 인권교과목 개발 (2-3-2)</li> <li>· 인권교육 교수법 매거진 발간 (2-3-4)</li> <li>· 이동인권에 대한 교육강화 (2-5-4)</li> <li>· 교원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2-5-5)</li> <li>· 고위행정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2-5-6)</li> <li>· 시민사회 인권교육단체와 네트워킹 방안 모색 (3-2-2)</li> <li>· 인권교육강사 협의회 운영 검토 (3-2-3)</li> <li>· 인권교육 펀딩체계 구축 (3-4-2)</li> <li>· 각종 인권조례제정 지원 (4-1-1)</li> <li>· 시민사회-대학 인권강사 매칭 프로그램 개발 (4-2-2)</li> <li>· 각 대학 인권교육센터와 네트워킹 구축 (4-3-2)</li> <li>· 대학 인권교과목 개발 지원 (4-3-3)</li> </ul>
<p><b>장기계획</b> (2018-2020)</p>	<p><b>인권교육의 평생교육화에 필요한 기본여건 실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도시사업 지원 (1-2-1)</li> <li>· 인권교육도시사업 지원 (1-2-2)</li> <li>· 인권체험마을 조성사업 지원 (1-2-3)</li> <li>· 인권교육원 설립 (3-1-3)</li> <li>· 인권전문대학원 설립 모색 (3-1-4)</li> <li>· 각종 국가시험에 인권교과목 추가 모색 (3-2-4)</li> <li>· 대학평가항목에 인권지표 포함 추진 (3-3-2)</li> <li>· 동아시아 인권레짐 구축 추진 (4-4-1)</li> <li>· 동아시아 국가인권위원회 협의회 창설 (4-4-2)</li> </ul>

각 영역별(공공영역·학교영역·시민사회영역) 중점추진과제

구분	성과목표	실행과제
공공영역	공공영역 인권교육의 실질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인권교과목의 전문화 (2-1-1)</li> <li>· 전문인권교과목 개발 (2-1-2)</li> <li>· 통합형 인권교과목 개발 (2-1-3)</li> <li>· 기존 인권교육교재 개정 (2-1-4)</li> <li>· 각 분야별 인권교육교재 개발 (2-1-5)</li> <li>· 전문인권교육교재 개발 (2-1-6)</li> <li>· 통합형 인권교육교재 개발 (2-1-7)</li> <li>· 인권교육사례집 개발 (2-1-8)</li> <li>· 인권교육강사 양성과정 체계화 (2-2-1)</li> <li>· 전문분야별 인권교육강사 양성 (2-2-2)</li> <li>· 인권친화적 교수법 개발 (2-3-1)</li> <li>· 다양한 교수방식의 인권교과목 개발 (2-3-2)</li> <li>· 인권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2-3-3)</li> <li>· 인권교육 교수법 매거진 발간 (2-3-4)</li> <li>· 정보인권에 대한 교육 강화 (2-5-1)</li> <li>· 고위행정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2-5-6)</li> <li>· “인권교육법” 제정 (3-1-1)</li> <li>· “인권교육법시행령” 제정 (3-1-2)</li> <li>· 인권교육원 설립 (3-1-3)</li> <li>· 인권교육에 대한 감독 및 평가체계 제도화 (3-2-1)</li> <li>· 각종 국가시험에 인권교과목 추가 모색 (3-2-4)</li> <li>· 예산확보방안 모색 (3-4-1)</li> <li>· 인권교육펀딩체계 구축 (3-4-2)</li> <li>· 각종 인권조례제정 지원 (4-1-1)</li> </ul>
학교영역	인권친화적 인권교육환경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대학생 대상 모의 인권위원회 대회 개최 (1-1-3)</li> <li>· 각 분야별 인권교육교재 개발 (2-1-5)</li> <li>· 인권친화적 교수법 개발 (2-3-1)</li> <li>· 다양한 교수방식의 인권교과목 개발 (2-3-2)</li> <li>· 인권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2-3-3)</li> <li>· 인권교육 교수법 매거진 발간 (2-3-4)</li> <li>· 교원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2-5-5)</li> <li>· 인권전문대학원 설립 모색 (3-1-4)</li> <li>· 각 영역별 인권친화성 지표 개발 (3-3-1)</li> <li>· 대학평가항목에 인권지표 포함 추진 (3-3-2)</li> <li>· 인권교육연구중심대학 협의체 운영 (4-3-1)</li> <li>· 각 대학 인권교육센터와 네트워킹 구축 (4-3-2)</li> <li>· 대학 인권교과목 개발 지원 (4-3-3)</li> </ul>
시민사회영역	제도화된 인권교육영역과 네트워킹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인권에 대한 교육 강화 (2-5-2)</li> <li>· 사회복지인권에 대한 교육 강화 (2-5-3)</li> <li>· 아동인권에 대한 교육 강화 (2-5-4)</li> <li>· 시민사회 인권교육단체와 네트워킹 방안 모색 (3-2-2)</li> <li>· 인권교육강사 협의회 운영 검토 (3-2-3)</li> <li>· 지방인권교육에 인권교육강사 지원 (4-1-2)</li> <li>· 지역인권교육협의체 운영 (4-2-1)</li> <li>· 시민사회-대학 인권강사 매칭 프로그램 개발 (4-2-2)</li> </ul>





# 제 1 장

## 서 론

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연구방법 및 순서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I. 연구 목적

이 연구는 앞으로 10년 동안 적용할 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안을 모색하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안을 모색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째는 그 동안 진행된 인권교육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작업이다. 가령, 인권교육과 관련된 국내·외 여건과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권교육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 작업은 다시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인권교육에 관한 국내 여건 및 실태 등을 분석하는 것과 인권교육에 관한 국외 여건 및 실태를 분석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둘째는 이렇게 확보한 인권교육 관련 기초자료를 토대로 하여, 앞으로 10년 동안 적용할 인권교육 행동계획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권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인권교육 발전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 등을 모색하고 발굴하는 것이나, 인권교육을 안착시키기 위한 인권교육지원법이나 국가인권교육원 등을 제도화하는 데 필요한 각종 정책방안을 발굴하는 것을 거론할 수 있다.

### II. 연구 필요성

그러면 이처럼 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수행해야 할 필요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이에 대해 연구진은 크게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자 한다.

1.

####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2010-2014)

먼저, 일종의 실정법적 근거로서 2010년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Plan of Action for the Second Phase(2010-2014) of the World Programme for Human Rights Education)을 거론할 수 있다. 초·중등학교 과정의 인권교육에 초점을 둔 제1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2005-2009)과는 달리,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에서는 고등교육상 인권

## 2 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안 관련 연구

교육 및 교원, 공무원, 법집행관, 군인 등에 대한 인권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sup>1)</sup> 말하자면, 제1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이 인권교육의 초석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였다면,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은 인권교육의 전문화를 꾀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은 교원, 법집행관, 군인 등과 더불어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조한다. 교원, 법집행관, 군인 등도 넓은 의미의 공무원에 포함되므로, 결국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은 대학을 주축으로 하는 고등교육상 인권교육과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핵심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는 인권교육의 개념과 원칙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인권교육훈련선언을 채택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유엔을 필두로 하는 국제사회가 각종 선언 및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인권교육을 역설함으로써, 국가수준의 중·장기적 인권교육 행동계획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하였고, 이를 통해 우리 대한민국의 인권교육을 세계적 브랜드로 성장시켜야 할 요청 역시 증대하고 있다. 바로 이 같은 이유에서 지금 시점에서 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과 같은 중·장기적 계획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2.

#### 인권교육에 관한 국내 상황 변화

나아가 인권교육에 관한 국내 상황이 변화했다는 점도 이 연구를 수행해야 할 근거로서 생각할 수 있다. 지난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한 이래,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인권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인권교육이 양적으로 확장되었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차별금지법, 연령차별금지법 등이 제정·시행되었고, 초·중등교육법에 학생인권보장규정이 신설되었으며, 정정보건법에 인권교육 의무화 규정이 추가되었다. 이를 통해 인권교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대하였다. 이에 따라 이제는 과거 10여년 동안 이루어졌던 인권교육의 성과와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향후 10년간 적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인권교육 행동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전문적인 연구를 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바로 이 점에서 이 연구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 3.

#### 인권교육의 전문화 - 제도화 필요성

마지막으로,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등이 강조하는 것처럼, 이제는 인권교육을 전문화·제

1)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2010-2014)』, 2010 참고; 이를 간략하게 소개하는 문헌으로는 채형복, “로스쿨에서의 인권교육 현황과 과제 - 유엔 세계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관점에서-”, 『제1회 인권교육 정책토론회: UN 인권교육프로그램과 한국의 대학(원)에서의 인권교육 자료집』, 한국인권재단, 2011.4.25, 11면 아래 참고.

도화할 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도 이 연구를 수행해야 할 필요성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동안 인권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인권교육이 양적으로 풍성해지기는 하였지만, 각각의 전문적인 영역이나 분야 등에서 이루어진 인권교육의 현황을 분석하면, 이제는 인권교육을 좀 더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인권교육이 안정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이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간취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권교육을 제도권 중심에서 비제도권 까지, 이를테면, 유치원이나 기업, 노동조합 등까지 확장하여 이를 제도화하고 실질화 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안을 모색하는 이 연구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 제2절 연구방법 및 순서

### 1. 연구방법

이 연구는 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안을 도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 1.

#### 문헌연구

우선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서 문헌연구방법을 채택하였다. 예나 지금이나 이 문헌연구방법은 사회과학적 연구를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이 연구에서는 인권교육과 관련된 기존의 문헌들, 가령 세계인권선언,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 아동권리협약 등과 같은 인권교육관련 국제규범이나 유엔 인권교육훈련선언,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등과 같은 국제 인권교육프로그램 및 NAP,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등과 같은 국내 인권교육에 관한 문헌들을 분석하고 정리하는 데 노력하였다. 이를 통해 그 동안 축적된 인권교육의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앞으로 적용할 인권교육 행동계획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 2.

#### 실태조사

나아가 이 연구는 그 동안 이루어진 인권교육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다만, 여기에서는 일반인의 관점이 아닌, 전문가의 관점에서 인권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인권교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아래는 이 연구에서 사용한 전문가 실태조사 방법을 개관한 것이다.

#### (1) 설문지 작성

설문지는 크게 세 단계를 거쳐 확정되었다. 우선 2011년 9월 1일부터 27일에 걸쳐 설문지 초안이 준비되었다. 이어서 이렇게 마련한 설문지 초안을 2011년 10월초부터 11월 8일까지 국가인권위원회가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2011년 11월 9일부터 11월 14일까지 설문지를 수정하여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

## (2) 조사기간

설문조사는 2011년 11월 15일부터 12월 9일까지 총 25일간 진행되었다.

## (3) 조사방법

조사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 번째 방법은 이메일을 통해 관련 전문가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설문을 받은 후 수거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 방법은 직접 관련 전문가를 찾아가 면대면 조사 방식으로 설문을 하는 방법이다.

## (4) 조사대상

이 연구에서는 인권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278명을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여기서 인권교육 관련 전문가는 다음 두 가지 기준을 통해 선정하였다. 즉, 우선은 인권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인권교육정책을 수립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선정하였다. 아울러 인권교육 연구모임에 참여하는 전문가 역시 조사대상 전문가로 선정하였다. 각 영역별로 보면, 국가인권위원회, 초·중등학교, 대학교, 시민사회, 정부기관, 기타 복지 및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들이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총 278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는데, 이 가운데서 총 51명이 설문에 응답해 주었다. 아래 <표 1>은 이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조사의 배포수와 응답 수 및 응답률을 각 영역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 1> 각 영역별 실태조사 응답률

	국가인권위원회	초·중등	대학	시민사회	정부기관	기타 (복지, 보건의료 등)	총계
배포수	44	6	42	171	9	6	278
응답수	15	1	16	19	0	0	51
응답률	34	16.7	38	11.1	0	0	18.3

### 3.

### 중간보고회 및 공청회

이외에 이 연구는 중간보고회 및 공청회를 연구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중간보고회와 공청회는

## 6 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안 관련 연구

각각 1회 개최하였다. 중간보고회는 지난 2011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연구진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공청회는 지난 2011년 11월 5일 영남대학교 인권교육연구센터에서 연구진과 공공영역, 학교, 시민사회 영역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러한 중간보고회와 공청회에서 논의된 쟁점 및 개선방안 등은 이 연구에 건설적으로 반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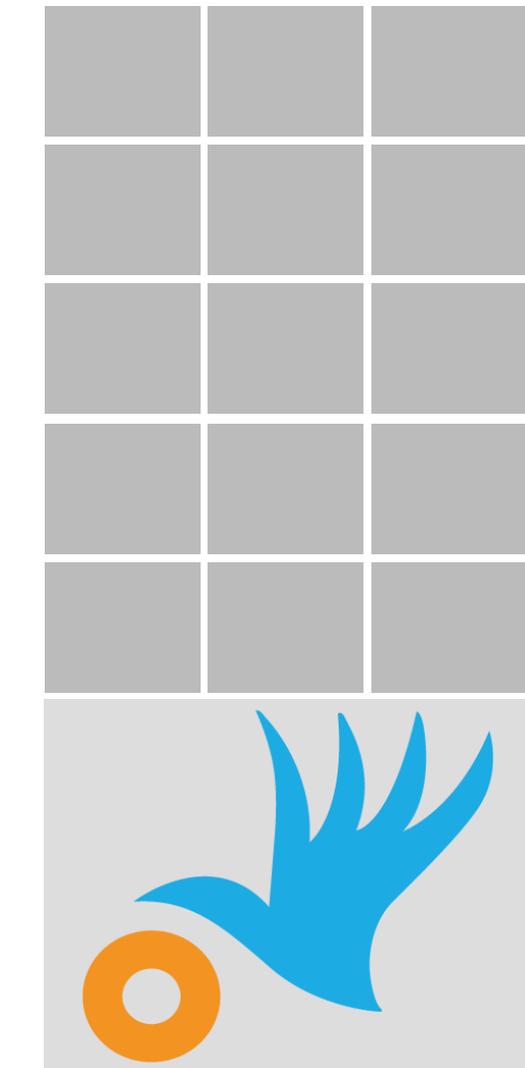
### II. 논의순서

이 연구는 크게 다음과 같은 순서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우선 제2장에서는 그 동안 이루어진 인권교육 현황을 분석하는 데 집중하였다. 여기서는 그 동안 축적된 인권교육 관련 문헌을 양적·질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인권교육의 현황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 제2장은 다시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제2장 제1절에서는 인권교육 개념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를 정리하였다. 이어서 제2장 제2절에서는 국내 인권교육의 현황을 분석하는 데 지면을 할애하였고, 제2장 제3절에서는 인권교육에 대한 국외 현황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어서 제3장에서는 인권교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하는 데 집중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제4장에서는 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 추진체계를 제안하였다.

여기에서는 인권교육의 비전, 원칙, 핵심목표, 성과과제, 실행과제 등을 중심으로 하여 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 추진체계를 그려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 결론에서는 이 연구에서 다룬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정리하였다.

### III. 연구 추진 일정

(연구기간 : 2011. 08. - 2011. 12.)						
연구내용	월	8	9	10	11	12
연구계획 세분화 및 선행연구 분석						
관련 자료수집 및 조사·분석						
인권교육 관련 설문조사 실시						
중간보고						
연구보고서 초고 작성						
공청회 실시						
최종연구보고서 작성 및 검토						
결과 보고						



## 제2장

# 국내·외 인권교육 현황 분석

제1절 인권교육 개념에 대한 기초적 논의

제2절 국내 인권교육 현황 분석

제3절 국외 인권교육 현황 분석:  
인권교육의 국제적 차원



## 제2장 국내·외 인권교육 현황 분석

### 제1절 인권교육 개념에 대한 기초적 논의

#### 1. 인권교육의 개념

1.

#### 인권교육의 개념

##### (1) 인권교육 개념 정립의 어려움<sup>2)</sup>

인권교육의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어 그 개념의 이해가 다소 어렵다. 이는 우리의 경우뿐만 아니라, 외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인권교육을 다루는 외국의 학자들도 여전히 인권교육은 무엇인가에 대한 정리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UN이나 UNESCO의 인권 및 인권교육 관련 포럼 등에서 인권교육은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Flowers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여러 나라의 인권교육 관련 학자들과의 인권교육의 개념적 특성에 관한 논의를 한 후, 인권교육의 개념을 명료하게 설명하는 것이 어렵다고 언급하고 있다.<sup>3)</sup> 인권교육의 개념 정립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몇 가지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가장 문제되는 것은 ‘인권’이라는 개념과 ‘교육’이라는 개념이 결합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인권교육 개념 정립의 어려움이라 할 수 있다.

첫째, 인권교육 개념 정립의 어려움을 ‘인권’이라는 개념과 연관시켜 생각해 볼 수 있다. 인권 개념의 다양성과 복잡성과 관련하여, 1948년 세계인권선언을 준비하던 당시 ‘인권’에 대한 이해의 차는 매우 컸다. 실제로 하나의 선언이 도출될 수 있을까하는 염려가 들 정도였다. 이러한 진통은 인권을 바라보는 개별 국가의 문화적 관점의 다양성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1948년

2) 이종태 외 5인, 『인권교육 개념 및 방향 정립 모색 연구』, 2005년도 인권교육개념모색 연구용역보고서, 사단법인 한국교육연구소, 39-40면.

3) Nancy Flowers, The Human Rights Education Handbook: Effective Practices for Learning, Action and Change, The Human Rights Resource Center, University of Minnesota & Stanley Foundation, 2000.

## 8 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안 관련 연구

세계인권선언 당시 인권의 개념 이해에서 나타난 문화적 차이로 인해 인권의 하위 항목이나 내용에 대한 논란이 크게 있었다. 그 이후 인권에 관한 세부적인 항목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도 논란은 지속되었다. 이러한 인권에 대한 개념적 혼란은 당연히 ‘인권’교육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명확히 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다.

둘째, 인권교육에서 말하는 ‘교육’과 관련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교육은 한 사회에서 제도적으로 접근한다. 그러나 인권교육은 그 시작에서 제도적으로 도입된 것이라기보다는 인권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인권운동’ 차원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한 사회에서 의미하는 제도적 측면의 교육은 사회화 기능과 관련이 있어서 한 사회구성원을 기존의 질서에 순응하도록 가르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제도적인 측면의 교육은 그 내용이나 형식의 결정이 위에서부터(top-down) 이루어지는 측면이 강하다. 즉, 제도적 교육은 처음 형성되는 과정에서 교육 목표나 내용의 설정에서 이론적 논의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교육적 실천을 하는 순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인권교육의 경우는 이와 반대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인권교육은 실천에서 이론을 정리해 가는 과정이기에 그 개념 정립이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인권교육 개념 정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인권교육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위한 노력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UN이나 UNESCO 등에서는 공식적인 문건이나 협약 등을 통해 인권교육이 무엇이며 어떠한지 하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논의가 제공되고 있다. 또한, 학자들은 개별적으로나 집단적으로 인권교육을 논의하면서 나름의 정의와 개념화를 시도하였다. 또한, 인권운동 차원에서 이루어진 인권운동단체들 또한 인권교육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석이나 논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문헌들에서 인권교육에 관하여 논하면서 인권교육에 대하여 개념 정리를 하지 않은 채 막연한 느낌으로 인권교육과 관련한 논의나 제안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문헌들이 인권교육에 대해 나름대로의 정의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 1) 국제기구 문건에 나타난 인권교육의 의미<sup>4)</sup>

인권교육에 대한 공식 문건은 UN, UNESCO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다룬 인권이나 인권교육의 중요성 논의 및 협약 등이다. UN과 UNESCO 문건은 영문 자료에 있는 경우와 우리나라에서 번역하여 사용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교육에서 인권을 강조하는 논의는 UN의 세계인권선언에 담겨 있다. 그 내용이 ‘인권교육’에 대하여 정확하게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세계인권선언의 세부 조항에서 인권교육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세계인권선언 제26조에 의하면, “교육은 인격을 충분히 발전시키고 인권과 기본 자유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교육은 모든 국가, 종족 집단 또는 종교 집단 사이에 이해와 관용, 친선을 증진시키고, 또한 평화를 지키기 위한 유엔의 활동을 증진시킬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4) 이종태 외 5인, 『인권교육 개념 및 방향 정립 모색 연구』, 2005년도 인권교육개념모색 연구용역보고서, 사단법인 한국교육연구소, 40-43면.

있다. 이 조항은 교육이 왜 권리로 인정되어야 하는지 그 정신을 요약한 것이다. 이 조항을 인권교육적 차원에서 보면 ‘교육이 인권을 강화’시키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포괄적인 인권교육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13조 “교육이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 사회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고, 모든 나라와 인종·종족·종교 집단사이에 이해와 관용 및 우의를 촉진시키며, 그리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유엔의 활동을 증진하도록 만든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한다. 그밖에, 아동권리조약 제29조, 여성차별방지조약 제10조, 인종차별철폐조약 제7조에도 교육의 권리를 규정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러한 문건은 일반적으로 교육의 권리를 강조하고 있으며 인권교육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지만, 교육이 인권을 존중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점에서 모든 교육은 ‘인권교육적’이어야 함을 천명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인권교육에 대한 개념적 표현은 1993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인권과 민주주의 교육에 대한 국제회의]에서 채택된 [인권과 민주주의 교육에 관한 세계 행동계획]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전에 인권교육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주로 인권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권고나 인권교육 관련 국제회의의 결과를 통해 인권교육에 대하여 다양한 방면에서 제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1974년 [UNESCO의 인권교육 관련 권고]를 통해 “인권교육은 국제적 이해와 협력 그리고 관용과 존경 그리고 연대에 대한 태도를 증진시키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인권교육의 역할을 부각시켰다. 그리고 [1978년 비엔나 인권교육에 관한 국제회의]에서는 “인권교육은 인권에 내재되어 있는 관용과 존중, 연대의 태도를 배양하고, 국내적·국제적 수준에서의 인권에 관한 지식과 이행을 위한 체계를 알려주어야 하며, 국내적·국제적 차원에서 인권이 사회적·정치적 현실 속에서 실현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자각을 높여야 한다.”는 표현을 통해 인권교육에 대한 관심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 속에 담겨 있는 인권교육은 그 역할과 방향성을 중심으로 제시하였을 뿐, 여전히 인권교육에 대한 개념적 설명은 담겨 있지 않다.

[1985년 학교에서 인권의 교수 학습에 관한 유럽의회의 권고]에서 “인권교육은 민주주의 원리와 다원주의적 민주주의, 관용, 기회의 평등 그리고 갈등에 대하여 비폭력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하여 인권교육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는 UN의 세계인권선언에서 교육이 인권을 증진해야 한다는 인권교육의 포괄적 표현을 조금 더 섬세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인권교육에 대하여 명확한 의미를 제시한 것은 아니다.

[1993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세계인권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인권에 대한 특수성과 보편성 논의를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나온 선언을 보면 ‘공동체 간의 안정되고 조화로운 관계를 증진시키고 상호 이해와 관용, 그리고 평화를 고양시키기 위해 인권교육을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강조하는 인권교육의 역할을 보면, ‘상호 이해’와 ‘관용’, 그리고 ‘평화’와 같은 공동체적 삶에서의 중요한 가치를 고양시키기 위한 수단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드러난다. 이렇게 UN 등의 공식 문건에서 인권교육을 공동체에서 중요한 가치의 고양을 위

## 10 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안 관련 연구

한 수단적인 측면에서 설명한 것은 1980년대까지의 지구촌 인권 상황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동서 냉전, 문화권의 차이로 인한 인권에 대한 합의의 어려움, 그리고 지역분쟁 속에서의 지구 문화촌의 평화적 유지 등이 UN의 중요한 목표였기 때문에 인권교육 또한 이를 위한 수단적 의미로 강조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UN 등의 공식기구에서도 인권교육에 대한 개념적 설명에서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다. 지금까지 인권교육의 수단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인권교육 그 자체의 본질적 의미를 강조하는 논의가 나오기 시작한다. 1993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인권과 민주주의의 교육에 대한 국제회의]에서 채택된 [인권과 민주주의의 교육에 관한 세계 행동계획]에서 채택한 내용을 보면 기존 방식과 다른 인권교육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고 있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은 인권 그 자체이며, 사회 정의, 평화 및 발전의 완벽한 실현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그러한 권리의 구현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민주주의 보호와 사회 발전의 일익을 담당할 것이다.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은 인권보장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굳건한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 그 교육과정은 국민과 시민사회의 삶의 질 향상을 고무하는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과정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인권교육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다양한 인권침해를 제거하고 민주주의와 발전과 관용과 상호존경에 기초하여 평화의 문화를 만드는 수단이다. 이를 위한 행동계획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권문화를 창출하는 것이며, 또한, 개인이나 집단이 비폭력적 방법에 의해 불만이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민주적 사회를 발전시키는 것이다.”는 점을 부가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관점에 비하여 인권교육이 무엇이고 어떠한가 하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도 인권교육의 수단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버리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1994년에 발표된 유엔인권교육10년(The United Nations Decade for Human Rights Education: UNDHRE)에서는 인권교육의 목표와 개념을 좀 더 확장하여 제시하고 있다. “인권교육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는 가치와 태도를 습득하여 개개인의 인성과 존엄성이 충분히 습득되도록 하는 교육활동이며, 동시에 이러한 변화를 통하여 인종이나 성별, 국적, 종교나 문화 및 기타 구분에 의한 사람들 간에 차별과 편견이 종식되고 평등한 관계와 관용, 이해와 우호 및 평화가 증진되는 사회 형성에 기여하는 활동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구체적인 인권교육의 하위 목적을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존중과 상화, 인격과 인간 존엄성의 완전한 발전 추구, 모든 국가, 선주민, 인종, 지역, 민족, 종교 및 언어집단 간의 이해, 관용, 성의 평등 및 우호관계의 증진, 모든 사람의 효과적인 참여, 평화유지를 위한 유엔 활동의 증진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전달 및 태도의 형성을 통하여 보편적인 인권문화를 건설하는 데 목적을 둔 훈련, 보급, 및 전달의 노력’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2004년 UN은 인권교육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즉, “[...] , 인권교육은 다음과 같은 지식의 공유, 기술의 전수, 태도의 형성을 통해 보편적인 인권문화를 건설하는 데 목적을 둔 교육,

훈련, 정보전달로 정의된다.”

-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는 것
- 인격과 인간존엄성을 완전히 발전시키는 것
- 모든 국민, 선주민(indigenous), 인종·국적·민족·종교·언어, 집단 간의 이해, 관용, 성적평등, 그리고 우애를 증진시키는 것
- 법에 의해 통치되는 자유민주사회에 모든 사람이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평화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
- 인간중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정의를 증진시키는 것(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이를 다시 위에서 언급한 지식과 기술, 태도 등의 세 차원, 즉 ‘지식: 인권과 인권 보호 장치에 관한 지식 제공’, ‘가치, 신념, 태도: 인권을 지지하는 가치, 신념, 태도의 계발을 통한 인권 문화 제고’, ‘행위: 인권을 수호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실천행위 격려’로 나누어 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공식적 기구인 UN이나 UNESCO의 인권교육 논의는 그 역사가 오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교육에 대한 핵심적인 개념 정의를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초기에는 교육의 권리로서 인권교육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다가 1990년 이전까지는 인권교육을 세계평화나 세계의 유대를 위한 하나의 도구적 차원에서 논의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는 인권교육 고유의 정체성을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인권교육의 목표와 내용 등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공식 문건에서의 인권교육의 의미는 세계 속에서 인권이 갖는 보편성과 특수성 논의와 더불어 아직도 포괄적이며 개별 국가별로 해석의 여지를 남겨둠으로써 그 개념 정의가 명확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2) 학설에서의 인권교육의 의미<sup>5)</sup>

학설에서 나타나는 인권교육의 의미는 학자들의 개인 저서나 논문, 또는 HREA<sup>6)</sup>의 온라인 토론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 학설에서 인권교육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은 크게 2가지 측면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포괄적 차원에서 보편적인 인권교육 자체를 논의하면서 제시한 것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교과교육적인 차원에서 인권교육의 의미를 다룬 것들이 있다.

인권교육의 의미를 다룬 대표적인 학자는 Lister이다. Lister는 ‘인권’이 갖는 의미와 특징에 비추어 다른 교육에 비해 인권교육은 단순히 인권 내용을 강조하는 인권에 대한 교육

5) 이종태 외 5인, 『인권교육 개념 및 방향 정립 모색 연구』, 2005년도 인권교육개념모색 연구용역보고서, 사단법인 한국교육연구소, 43-46면.

6) 이것은 개별 국가의 학자들이 인권교육에 대하여 공적으로 논의하거나 의견을 서술하는 장을 제공하는 NGO적인 성격을 갖는 인권교육협의회이다. 인터넷 주소는(www.hera.org.)

## 12 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안 관련 연구

(Education about human rights)으로 그쳐서는 안 되며 동시에 인권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human rights), 인권을 통한 교육(Education through human rights)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7)</sup>

Lister가 말하는 ‘인권에 대한 교육’은 인권이 무엇인지 알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인권에 대한 인지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다루어야 할 내용으로는 인권의 역사, 인권을 보장받는 가운데 만들어진 역사적 문건들, 인권 관련 정책 등을 통해서 자신이 가진 기본적인 권리와 권리 침해에 대해 이해하며, 이와 관련한 인권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것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인권을 위한 교육’은 실제로 인권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이를 위해 타인의 인권을 보호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의지로써 인권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일상생활에서 인권의 관점을 적용하도록 지식과 기술을 갖도록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인권을 통한 교육’은 인권을 알고 누리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권에 관한 학습이 일어나는 곳에서 충분히 인권을 누리도록 설계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폭력과 억압, 강제적인 행위가 있는 상황이나 인권에 역행하는 방식으로 인권교육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인권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가장 인권적이어야 한다. 이 점에서 인권교육은 그 과정 자체가 인권을 완성해 가는 것이며, 인권과 관련한 다양한 가치를 체득하는 과정이다.

인권교육학자인 Tarrow는 인권교육을 ‘교육의 특별한 내용과 특별한 과정을 통해서 학습자들이 그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의식을 발달시키고 다른 사람들의 권리에 대한 열린 태도를 갖추며,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책임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의식적인 조력’이라고 보았다.<sup>8)</sup> 이러한 Tarrow의 논의는 개인의 입장에서 한 개인이 자신의 권리로서 인권을 이해하는 것과 타인에 대한 가치로서의 인권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인권교육의 의미로 제시하고 있다.

단순히 개인이 가져야 하는 가치적인 측면의 관심을 넘어 인권교육에 대한 좀 더 명료한 개념 정의를 시도한 학자들도 있다. Torney는 인권교육에 대하여 교육의 목표 측면에서 좀 더 포괄적으로 설명하면서 다음의 4가지를 제시하고 있다.<sup>9)</sup> 첫째,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서 인권에 대한 보편적인 열망을 학생들에게 인식시키고 둘째, 인권을 보호하는 국제기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부여하며 셋째, 인권이 부정되는 곳에서 이와 관련된 쟁점 혹은 쟁점이 적용되는 사례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권리가 짓밟혀진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들의 입장을 내 입장에서 되돌아 생각해 보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개인적

7) Ian Lister, *The Challenge of Human Rights for Education*, in: H. Starkey (Ed.), *The Challenge of Human Rights Education*, London, 1991.

8) Norma Tarrow, 'Human Rights Education: Alternative Conceptions', in: James Lynch/Celia Modgil/Susan Modgil (Eds.), *Human Rights, Education and Global Responsibility*, The Falmer Press, pp. 21-50.

9) J. Torney-Purta/B. Wilkenfeld/C. Barber, *How Adolescents in 27 Countries Understand, Support, and Practice Human Rights*, *Journal of social issues* Vol.64 No.4, 2008, pp. 857-880.

차원의 ‘가치’교육이라는 의미를 넘어 인권교육의 내용에 대하여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HERA의 위원장인 Tibbitts는 2003년 HERA 회의에서 인권교육에 대하여 “전 사회의 모든 계층에 속한, 그리고 모든 발달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타인의 존엄성 존중과 모든 사회에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배우는 포괄적이면서 전 생애에 걸친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인권교육이 단순히 학교교육 체제에서만 가르쳐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전 생애에 걸쳐 배워야 하는 것이라는 점, 그리고 모든 사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과정이며, 마지막으로 그들의 삶 속에 있는 폭력을 정의하고 사회 내에 존재하는 도움의 기제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배움으로써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반면, 우리나라 학자들의 논의에서는 인권교육을 통한 실천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양상을 보인다. 즉, 외국 학자들의 논의와 비교해 볼 때 인권교육을 통해 단순히 인권의 가치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을 넘어 인권의 실천적 측면을 지양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행동과 사회변화를 강조한다는 특징을 나타낸다. 강순원(2000)은 “인권교육은 자신의 개인적 존엄을 억압하는 조건을 밝혀내고 이를 극복하게 만드는 것으로서, 특히 사회적으로 힘이 없고 주변화 된 약자뿐만 아니라, 이를 보호하고 함께 지켜야 하는 힘 있는 자들에게도 필요한 과정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인권교육을 통한 사회변화를 강조한다.

한홍구 등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 발전 5개년 연구』 보고서에서 인권에 대한 기본 논의를 살펴본 후 인권교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sup>10)</sup> “인권교육은 인권에 대한 교육이면서 그러한 인권이 보장되고 인권 침해가 예방되도록 하는 목적을 지닌 실천지향적인 교육이다. 인권교육은 인권을 보호·신장하는 데 요청되는 지식, 태도, 기술을 함께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곧 인권의 하나이다.”

우리나라 학자들은 인권교육의 매우 구체적인 양상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또한 인권교육의 실천성을 부각시키며 학습자의 참여, 인권교육의 결과로서 비판적 성찰과 연대를 통한 사회변화의 추구 등을 강조하고 있다. 구정화 등은 『교사를 위한 학교 인권교육의 이해』라는 책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이를 행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인권은 권리가 된다.”라고 한 Starkey의 주장을 바탕으로, 인권교육은 인권에 관하여 알게 하는 일련의 교육적 행위라고 보며 이런 점에서 인권교육은 “인간이 가진 기초적이고 보편적인 권리로서 자신이 가진 권리를 알고,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행동양식과 기술,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의 형성을 동시에 추구하도록 하기 위한 일체의 교육적 노력”이라고 하고 있다.<sup>11)</sup> 이러한 정의에 기초하여 학교 인권교육의 목적을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이 최대한 발현”되도록 하고, “다양한 인간과 집단에 대한 이해와 관용,

10) 한홍구 외, 『인권교육발전 5개년 기본계획』,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 2003.

11) 구정화·송현정·설규주, 『교사를 위한 학교인권교육의 이해』, 국가인권위원회, 2004, 17면.

## 14 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안 관련 연구

평등과 우정이 증진”되도록 하며, “모든 사람이 자유로운 사회에서 사회적 참여”를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두고 있다. 또한, 문용린 등의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 용역과제인 『유, 초, 중, 고 인권교육과정 개발 연구』에서 “인권교육은 첫째 그 대상이 되는 학생들로 하여금 인권을 개념적으로 파악하도록 하고, 둘째 인권과 관련된 기술적 내용, 곧 인권 관련 사회적·역사적 사실들을 이해하게 하며, 셋째 그들의 태도 혹은 일체의 교육적 노력을 가리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sup>12)</sup>

### 3) 인권운동단체 및 활동가가 규정한 인권교육의 의미<sup>13)</sup>

인권운동단체와 활동가의 인권교육 논의는 그 수준이나 내용이 매우 다양하다. 우리나라에서 인권운동 단체 및 활동가의 논의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인권운동이나 인권교육운동을 하는 단체들의 논의이고, 다른 하나는 인권운동가들의 논의이고, 마지막으로 인권단체들이 펴낸 인권교육 자료집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인권운동단체들의 논의를 살펴보려 한다. 우리나라 인권운동단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권운동사랑방이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인권을 위한 다양한 실천과 더불어 인권운동 활동가를 위한 교육 측면에서 다양한 형태의 인권교육을 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인권운동사랑방에서 인권운동 활동가를 위해 만든 『인권교육길잡이』(1990)에는 인권교육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념 정의는 다산인권센터의 인권교육 메인 페이지에서도 그대로 제시되고 있다(www.rights.or.kr). “인권교육은 학습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과정을 통해 인권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형성하며 인권을 옹호하고 방어할 수 있는 행동능력을 길러냄으로써, 인간의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고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억압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 있는 힘을 길러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계된 교수-학습의 과정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이 책에서 인권교육에 대한 개념적 정의와 더불어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인권의 실현은 개인과 공동체의 존엄한 삶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전체 인류의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생존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는 사실은 지난 세기의 비극 속에서 잉태된 소중한 깨달음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세기는 여전히 지난 세기의 야만과 폭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권은 인류 모두에게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라는 기준으로 삶의 조건과 가치를 재구조화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힘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억압으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키고 자기 삶의 주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안내자가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인권교육인 것이다.”

이와 더불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도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몇 가지 기획 문헌을 내보이고

12) 문용린 외, 『유·초·중·고 인권교육과정 개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03, 14면.

13) 이종태 외 5인, 『인권교육 개념 및 방향 정립 모색 연구』, 2005년도 인권교육개념모색 연구용역보고서, 사단법인 한국교육연구소, 48-54면.

있는데, 이는 UNESCO의 공식 문건으로 보기보다 인권교육단체의 논의로 보아야 할 것 같아 여기서 살펴보기로 하였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2000)가 기획한 『인권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책에서는 “인권교육은 자신을 삶의 주체로 세워나가기 위한 것으로 사람들의 삶과 경험을 이해하고 변화시키는 데 있다. 학생들에게 인간 존엄성의 존중을 발전시키고 인권의 기본적인 원리를 주장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케 하여 결과적으로 공정하고 인간적인 사회를 건설하게 하는 것이다. 교육 중에서도 인권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인권교육을 구성한다. 인권교육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어 활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길잡이라고 할 수 있다. 인권교육은 사람들이 가진 수동적 행동을 거부하고, 변화지향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 이 속에서 인권학습은 사람들이 알아야만 하는 지식으로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경험에 대한 이해와 변화로서 인권을 받아들이는 것이 된다.”<sup>14)</sup>

인권운동단체에서 말하는 인권교육의 개념은 인권교육 관련 공식 기구나 학자들과 비교하여 좀 더 인권의 구체적인 상황과 장면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인권을 통한 변화 지향성을 강조한다. 학자들의 논의가 단순히 인권교육의 포괄적인 사회 변화를 강조한다면 인권운동단체에서 말하는 사회변화는 인권교육을 받는 당사자들의 삶이 구체적으로 달라지는 것, 개개인의 삶의 변화를 더 강조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인권운동 단체에서 말하는 인권교육은 일상적 인권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제사면위원회는 인터넷 웹사이트(<http://www.amnesty.org>)에서 다음과 같은 인권교육의 개념을 제시하면서 일상적 권리로서의 인권 이해와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인권의 실습이라는 요소를 강조하였다. “인권교육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교육의 원칙으로 이루어진 지식, 기술, 태도를 형성함을 통해 개인, 단체, 사회가 능력을 가지게끔 하는데 초점을 둔 숙고되고 참여적인 실체다.” 인권교육은 태도 및 행동의 변화, 새로운 기술의 학습, 지식과 정보의 교환 증진에 관심을 가진다. 인권교육은 인권의 보편성과 개별성 인식, 인권에 관한 지식과 이해 증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능력제고, 인권보호를 위해 고안된 법적 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원조, 인권존중의 태도를 계발하기 위해 상호작용적, 참여적 방법 사용, 인권의 원리를 일상생활 속에 통합, 대화와 변화의 공간 창출, 존중과 관용의 정신을 복돋움에 그 목적이 있다.<sup>15)</sup>

이러한 일상적인 인권문화의 강조는 미국의 국립인권교육센터(National Center For Human Rights Education)에서도 나타난다. 이 단체에서는 “인권교육은 모든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포함하여 우리의 인권에 관해 학습하고 이러한 인권을 보호하는 법을 학습함으로써 개입하고 권력을 키우고 참여하는 과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http://www.nchre.org>). 이 논의는 기존의 논의와 달리 일상적인 인권이라는 것을 ‘개입’, ‘참여’라는 표현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14)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편, 『인권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오름, 2000.

15) <http://www.amnesty.org/en/human-rights-education>.

인권운동단체가 가진 개별적인 운동의 방향이나 교육 정신에 따라 인권교육을 이해하는 정도가 달라지지만, 그럼에도 어느 정도 비슷한 측면에서 인권교육에 대한 이해를 보이고 있다. 인권교육의 이러한 논의는 인권교육단체나 인권교육 실천가 집단에서 만들어 낸 인권교육 자료집에서도 나타난다. 인권교육 자료집은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인권교육을 실천하는 활동가들이 자신들의 교육 실천 내용을 묶어 놓았다는 점에서 인권교육의 실천 현장에서의 인권교육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자료집은 학교를 비롯한 인권교육의 필요를 인식한 곳에 있는 현장 실천가들이 모여서 또는 인권운동 단체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대부분이다. 기본적으로 이들이 이해하는 인권교육을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그 내용을 분석하여 인권교육에 대한 이들의 이해를 추론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는 시간을 요하고 개별 프로그램의 의도를 오해할 가능성도 있기에 개발된 자료집에서 구체적으로 인권교육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하여 보기로 하였다. 이런 점에서, 인권교육에 대한 개념 정의를 자료집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두 개 정도이다.

우선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 번역한 『아시아의 인권교육』(1999)은 호주, 인도, 홍콩 세 나라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서, 프로그램 소개에 앞서 인권교육에 관한 논의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호주 편에서는 “취학 전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에게 실시하는 인권교육은 자아가치와 사회적 존중에 대한 감성을 함양하는 것이다. 자아가치와 사회적 존중은 인간에 관한 선언 전체의 기초, 즉 이 선언의 토대가 되는 핵심적 가치이며 이러한 가치와 연관된 세계의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고 하였고, 인도 편에서는 ‘인권교육은 우리들 각자가 지닌 본질적인 가치와 인간으로서 존엄성에 대한 인식을 계발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역시 동등한 가치를 지닌 존재이며 우리의 친구라는 인식을 길러주는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배경내는 인권교육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인권교육에서 참여자들의 경험은 가장 중요한 교육의 자원이다. 각자의 경험과 삶의 재료들이 자유롭게 교육의 과정 속으로 초대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잘 짜여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인권교육은 지식의 전달이든 사회의 변화이든, 어떤 목표를 일구어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 자체로 간주되어야 한다. 교육을 하나의 도구로 보면 인권교육 참여자들을 대상화하고 인권교육 과정에서 빚어지는 역동적인 변화와 잠재력을 간과할 위험이 있다. 개인 혹은 집단의 권한 강화는 인권운동이 추구하는 사회변화를 위한 토대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서 권리인 것이다. 인권교육의 대상은 다양하다.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집단, 인권을 효과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집단, 인권을 침해받기 쉬운 집단 등. 그런데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은 집단에 속한 사람도 또 다른 관계에서 보면 소수자이다. 인권교육은 바로 이 점에 주목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소수자들이 인권역량을 키움으로써 스스로 인권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고 인권의 상호의존성을 인식할 때, 그들을 가해자로 만드는 인식과 제도를 바꿀 수 있는 힘도 길러질 수 있다. 인권교육은 법을 뛰어넘는 인권의 열망을 길러내는 교육이다. 인권교육은 이미 정해져 있는 인권 기준을 아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인권 기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감수성과 힘을 길러줄 수 있어야 한다.”<sup>16)</sup>

결국, 인권교육활동가들이 강조하는 것은 인권침해가 일어나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강조하며, 그러한 인권교육 그 자체가 인권침해를 당하는 사람들의 권리이고, 이러한 것을 통해 인권문화를 만들어 가며 인권 침해가 줄어드는 사회변화가 일어나며, 이로 인해 궁극적으로 인권이 개선되는 상황을 만들어가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이런 의미에 인권교육은 그 자체로서 삶 자체가 인권을 존중해야 함을 의미한다.

## (2) 인권교육 개념의 중요한 의미 요소들<sup>17)</sup>

인권교육에 대한 논의와 관련하여, UN 등의 공식적인 논의는 매우 포괄적이며 반면, 인권교육 실천가들의 논의는 매우 구체적인 장면을 다루고 있다. 이렇듯, 인권교육은 포괄적인 개념 규정에서 아주 미세한 개념적 이해까지 그 개념이나 내용이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인권교육의 개념을 하나의 개념 정의로 담아내는 것은 인권교육의 외연을 축소 내지 정형화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인권교육의 개념에 포괄될 수 있는 내용을 한 문장으로 담아내기보다는 인권교육의 다양한 논의 속에 들어 있는 인권교육의 중요한 의미 요소들을 찾아내는 것이 인권교육의 개념적 이해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인권교육의 개념 규정 중에서 중요한 의미 요소를 추출하여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sup>18)</sup>

첫째, 인권교육에 학습자의 참여는 몇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준다. 기존의 학습, 특히 학교에서의 학습자가 갖는 수동적인 학습상태와 달리 학습 자체에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참여 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며, 또 다른 의미는 단순히 지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학습의 내용이나 방법을 직접적으로 구성해 간다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위의 논의와 연관된 것으로 인권교육이 학습자의 참여를 강조한다면 당연히 인권교육은 학습자의 인권 사태와 연관된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인권교육은 구체적인 삶의 상황들을 다루어야 한다.’ 내지 ‘인권교육은 일상생활의 맥락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로 표현된다. 이렇게 인권교육에서 학습자의 인권 맥락이나 침해 상황을 강조하는 것은 인권교육이 지식교육이 아니라, 학습자 자신의 인권을 인식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는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다. 인권이 박제화 된 개념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문제라는 것을 학습자가 인식하고 삶의 전 영역을 인권의 시각으로 보아야 하며, 삶의 현장에서 인권 문화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16) 배경내, 토론회 발표내용(이종태 외 5인, 『인권교육 개념 및 방향 정립 모색 연구』, 2005년도 인권교육 개념모색 연구용역보고서, 사단법인 한국교육연구소, 52면).

17) 이종태 외 5인, 『인권교육 개념 및 방향 정립 모색 연구』, 2005년도 인권교육개념모색 연구용역보고서, 사단법인 한국교육연구소, 54-58면.

18) 이종태 외 5인, 『인권교육 개념 및 방향 정립 모색 연구』, 2005년도 인권교육개념모색 연구용역보고서, 사단법인 한국교육연구소, 54면.

셋째, 인권교육이 학습자의 인권 사태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를 강조함으로써 인권교육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권리이며, 다른 어떤 것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될 수 있다. 여러 논의에서 인권교육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적 목표를 제시하지만, 궁극적으로 인권교육이 그 자체로 권리가 되고 인권교육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이러한 사회변화는 이미 달성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인권교육은 그 자체로서 목적이다. 따라서 인권교육은 사실상 일상적인 ‘인권문화’의 형성을 강조한다.

넷째, 인권교육에서는 인권친화적인 교육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된다. 일상적으로 교육을 이야기 하면서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교육환경을 강조하더라도 그것은 부가적인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인권교육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인권교육의 환경은 부가적인 것이 아니라, 인권교육의 본질적인 한 부분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인권교육에서의 환경을 강조하는 것은 교육이라는 상황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관계, 그리고 인권교육을 둘러싼 포괄적인 의사결정에서의 인권친화적인 문화를 강조하는 것이다.

다섯째, 인권교육에서는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관점을 강조한다. 이 점에서 인권교육은 중립적이지 않다. 또한, 인권이 소수자의 권리라는 점을 인권교육을 통해서도 강조한다.

여섯째, 이러한 인권교육은 궁극적으로 사회변화를 요구하게 된다. 그렇다고 인권교육이 사회변화를 위한 수단이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이것은 인권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사회변화가 당연한 귀결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인권교육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점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인권교육을 통한 사회변화라는 표현은 매우 다양한 범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단순하게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 침해를 줄이거나 예방하는 것이라고 표현한 것에서부터 사회현상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갖도록 하거나, 강력한 사회변화를 위한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것에까지 다양하다.

일곱째, 인권교육과 관련한 표현의 상당 부분은 개인적인 측면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지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이는 주로 ‘인권에 대한 이해’, ‘인권의 관점에서 타인 이해’, ‘인권민감성 고취’ 등이며, 결국 인권교육을 통해 개인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학습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여덟째, 인권교육이 갖는 교육적 특징을 강조하는 표현들도 있다. 이는 의도성, 시기나 대상, 교수자 등과 관련된다. 인권교육은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며, 인권교육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논의는 인권교육이 갖는 내용요소로서의 교육에만 초점을 두지 않고 인권교육이 지향하는 교육의 관점, 방법, 이를 위한 환경 등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인권교육의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 (3) 인권교육 개념의 특성<sup>19)</sup>

19) 이종태 외 5인, 『인권교육 개념 및 방향 정립 모색 연구』, 2005년도 인권교육개념모색 연구용역보고서, 사단법인 한국교육연구소, 61-73면.

인권교육의 특성은 다음과 같은 것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인권교육은 기본적으로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지는 평생교육이 되어야 한다. 학교와 직업적이고 전문적 훈련 등의 공식적 부문에서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기업, 시민사회, 제도, 가족, 그리고 매스 미디어 등 모든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인권교육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 누구나 동의하는 자유와 평등, 인간의 존엄이라는 원칙으로부터 시작하고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현상을 통해 인권의 실현을 방해하는 반인권적인 구조를 깨닫고, 그 구조를 정당화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그럴듯한 담론의 정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비판의식을 튼튼히 키우는 일이 인권교육이다. 이 점에서 자신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사회구조를 고쳐나가는 데 참여할 스스로의 잠재력을 의식하면서 비판적 사고와 아울러 도덕적 헌신을 갖춘 인권 옹호자들이 인권교육의 자체가 될 것이다. 셋째, 인권교육은 비맥락적 이어서는 안 되며, 단지 인권에 관한 교육을 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인권교육을 통하여 가르치는 내용은 보편성뿐만 아니라, 그 교육이 되는 곳의 구체적 맥락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하며 비록 인권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학습자 개개인이 인권을 존중하고 신장할 수 있는 ‘인권문제해결능력’을 고양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인권에 대한 현학적인 지식의 암기와 나열이 아니라, 구체적 현실 속에서 인권을 자각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인권문제해결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 서로 다른 생각이나 사상, 성, 종교, 성적 지향, 특히 지역이나 이념으로 인한 차별이나 인권침해에 대해서 알도록 하고 그런 차별과 반목적인 생각과 믿음이 가정이나 학교 혹은 사회적으로 어떻게 형성, 재생산되는가를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새로운 인권교육의 개념에서 부각시켜야 할 특성들, 특히 인권교육이 기존의 교육과 차별성을 갖는다고 인식되는 특성들은 다음과 같다.

### 1) 권리로서의 인권교육

#### ① 인권에 대해 배우는 것 자체가 권리이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기본적인 ‘권리를 알 권리’가 있다. 이 점에서 기본적인 인권을 가르치는 인권교육은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이기도 하다. 권리를 아는 자만이 권리를 행사하고 자신의 권리를 방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권교육은 모든 권리의 실현을 위한 기본적 권리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인권교육의 의미를 인정한다면 교육에서 인권교육의 시행은 우선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2005년 UN의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에 의하면, 인권교육은 교육권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널리 인식된다. “모든 아동들이 받을 권리가 있는 교육은, 그들에게 인권의 모든 영역을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고, 적절한 인권 가치가 보장되는 문화를 증진시키는 삶의 기술을 제공하도록 고안된 것이어야 한다.”<sup>20)</sup>

20) 국가인권위원회,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2005, 16면.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로서의 인권교육의 의미에 동의한다면, 인권교육은 모든 교육 특히, 국민의 기본교육인 학교교육에서 공통필수적인 내용으로 가르쳐져야 할 것이다.

② 인권교육은 다른 무엇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다.

인권교육은 도구 과목이나 기술 과목과 그 성격이 다르다. 인권교육은 각자가 자신의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학습하는 과정이므로 그것이 다른 무엇을 위한 도구나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한다.

또, 인권교육은 사회운동의 도구가 아니다. “인권교육은 지식의 전달이든 사회의 변화이든, 어떤 목표를 일구어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 자체로 간주되어야 한다. 교육을 도구적으로 대하다 보면 인권교육 참여자들을 대상화하고 인권교육 과정에서 빚어지는 역동적인 변화와 잠재력을 간과할 위험이 있다. 개인 혹은 집단의 권한 강화는 인권운동이 요구하는 사회변화를 위한 토대일 뿐만 아니라, 사회변화 그 자체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인권교육은 다른 권리를 위한 권리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서 권리인 것이다.”<sup>21)</sup>

2) 인권교육의 맥락성과 현장성

① 인권교육은 인권침해 경험 등 학습자의 경험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인권교육의 방법으로 제안되는 것 중 특징적인 것의 하나는 학습자의 경험으로부터 인권교육 활동을 출발하라는 것이다. 학습자가 자신의 인권 현실을 돌아보는 것으로부터 인권의 문제를 생각해보게 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교육은 이미 정해진 개념과 지식 체계를 위주로 가르치는 기존의 교과교육과 크게 대비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의 일반 교과 교육이 정해진 교육과정을 따라 배우는 과정이라면 인권교육의 경우에는 이와는 달리 현장 교육과정(emerging curriculum) 곧,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하는 것이 더 본질적인 의미에 알맞을 수 있다.

물론, 인권의 ‘기본 개념들’을 가르치는 것은 기존 교과의 일부로 통합시켜 다룸으로써 정규 교육과정과 동일한 패턴을 따를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이 인권교육의 전부는 아니다. 오히려, 미리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학습자의 개인적이 경험이나 학습자가 속한 사회적 맥락에 따라 더욱 절실하고 현실적인 인권의 문제들이 발생할 때에 그것을 교육 내용으로 다루는 것이 인권교육의 본질에 좀 더 맞는 학습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권교육의 특징은 각 수준에서 인권교육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적용할 때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② 비판적 교수법(critical pedagogy)과 변혁적 학습(transformative learning)

Magendzo는 인권교육의 주된 방법으로서 비판적 교수법과 변혁적 학습을 제시한다.<sup>22)</sup> 이는

21) 배경내,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 실천사례: 인권교육 실천과 원칙”, 2차 집담회 발제문1, 2005.

22) A. Magendzo, Pedagogy of Human Rights Education: Latin American Perspective, International

인권 침해에 대한 개인적, 집단적 기억들을 재생시키고, 공론화하는 것이다. 여기서 개인 혹은 집단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것이라는 인권 개념에 토대를 둔 것으로 ‘문제에 직면하기’, ‘갈등을 인정하고 모순을 분석하기’ 등을 포함한다. 그에 의하면 인권은 역사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강렬하고 지속적인 투쟁의 결과임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며, 학습자들이 이 투쟁에는 모순과 갈등이 충만해 있음을 알게 할 필요가 있다.

### ③ 인권과 관련된 맥락적 요인들을 이해하게 해야 한다.

M. M. Brabeck & L. Rogers는 인권교육에서 어떤 맥락이 아동과 청소년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 맥락 안에서 아동과 청소년들은 어떻게 의미를 구성하는가? 등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sup>23)</sup> 이들은 미국 도심의 가난한 지역 아동과 청소년들의 경우를 예로 들어 이러한 방식의 인권교육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가난함은 폭력을 증가시킨다. 가난은 개인에게 해를 끼치고 가정을 파괴하며 결과적으로 아동은 공동체를 공유할 수 없게 된다. 미국 도시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더 큰 인종주의, 차별 그리고 가난이라는 그림의 일부다. 이 요인이 노숙, 약물중독, 가정폭력, 비고용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희망상실(hopelessness)’의 비율을 현저하게 높이는 데에 공헌한다. 많은 아동들은 자신의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부정의와 그들이 목격하는 폭력과 범죄 간에 관련을 짓지 못한다. 인권교육 전문가들은 이 학생들이 이 문제를 좀 더 넓은 맥락에서 검토하도록 격려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폭력과 사회적 부정의 간 연계에 대한 침묵은 의도적으로 깨뜨려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반인종주의 훈련, 역할 채택, 인간 존엄성에 대한 학생의 권리,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문화적 권리, 연대의 권리에 대한 지식 등이 교육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은 다양한 삶의 실재(realities)를 넘나들면서 가난한 사람, 유색 인종, 이민자들과 같은 사회적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 3) 참여적 과정으로서의 인권교육

#### ① 인권교육의 과정은 참여적 학습의 과정이다.

인권교육의 과정은 수동적·피상적·지식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학습자의 능동적인 참여적 과정이 되어야 한다. 참여적 활동은 추상적인 개념에 생동감을 불어넣고, 멀고 동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문제를 보다 자신의 문제로 만들 수 있게 해준다. 특히, 집단적인 참여는 문제를 보다 전체적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하며, 개인의 다양성과 차이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

참여적 과정으로서의 인권교육은 첫째, 인권교육의 과정은 철저하게 참여적 학습의 과정이어야 한다. 인권교육의 과정은 수동적 지식 전달이나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학습자의 능동적인 참여 과정이 되어야 한다. 특히, 인권문제를 둘러싼 집단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문제를 보다 전

Education, Vol. 16 No. 2, May 2005, pp. 137-143.

23) M. M. Brabeck & L. Rogers, Human Rights as a Moral Issue: Lessons for Moral Educators from Human Rights Work, Journal of Moral Education, Vol. 29 No. 2, 2000, pp. 167-182.

체적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게 하며, 개인의 다양성과 차이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 둘째, 현장체험 학습 중심적인 인권교육이어야 한다. 이는 학습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증대시키는 방법으로 효과적인 인권교육을 위한 방법이다. 셋째, 인권교육은 학습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권교육에서 말하는 참여는 수업시간에 참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지역사회 및 각종 시민단체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경험을 할 것이 요청된다.<sup>24)</sup>

인권교육은 사회 각 영역 간의 분리와 배척이 아닌 상호의존과 상호작용에 의한 체계와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므로 한 사회, 한 시대의 교육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맥락을 정확히 독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식과 실천은 우리의 맥락과 무관한, 우리의 도덕문제와 무관한, 학습자와의 공유되지 않은 객관적 상징체계만을 그대로 따온다면 그것은 왜곡될 수밖에 없다.

산업사회의 패러다임 속에서 인권과 시민교육은 자기주도성의 성격을 상황 적응적으로 해석한 나머지 행위자의 이성을 맹신하는 합리주의, 또는 인지적 능력이 여타의 능력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인지능력의 함양이 인권과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인지주의가 범하는 오류에 빠질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탈산업사회에서 제1의 덕성은 ‘자유’가 아니라 ‘공동체성’이다. 인간은 자기의 실존과 조응하는 세계의 질서에 대하여 최소한의 자율적 권리와 책임을 지닌다. 인권에서 말하는 ‘사회적 책임’은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의 의무’와 반인권적인 법과 제도에 대한 불복종과 저항으로 분명하게 설명되어야 한다. 덧붙여 개인의 사회적 책임뿐만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의무도 분명히 해야 한다. 참여 중심적 인권교육은 지식 또는 상식의 전달에 그쳐서는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진정한 인권교육은 현장 참여와 결합되어야만 그 의미가 나타날 수 있으며, 학습자의 능동적인 참여와 실험, 실천이 결합된 교육방법을 창조해야 한다. 여기에서 참여가 ‘아래로부터 위로’의 행동만이 참여라면 곧 소외로부터 벗어난 사회적 정체성의 획득을 의미하며 그 자체가 자아실현의 통로가 되며, 실제 참여과정을 통하여 참여자의 자기개발이 이루어진다. 또한, 참여가 사회구성원 스스로의 이익을 보호하는 한편 그 사회 민주주의의 발전을 심화시키는 수단으로 기능한다면, 참여는 민주주의의 시작이자, 종착점이다. 또한, 민주사회에서 정당성에 대한 참여의 가치는 사회적 일체감의 증대와 함께 정통성의 확보를 강조하였고 사회적 안정의 초석이 된다면 참여는 ‘강한 민주주의’를 낳는 것이다.

오늘날의 지배집단은 사회문제에 대해서 우월한 경제력, 대중매체에 대한 통제, 권력, 정치적 합법성의 지위를 이용하고 왜곡하여 ‘피지배집단의 이익’을 호도하는 데, 지배집단의 이익을 전체 이익으로 규정하는 헤게모니 지배를 배제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경제적 자본은 사람들의 은행계좌에 들어 있고, 인적 자본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 있으며, 사회적 자본은

24)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개념 및 방향정립 모색 연구”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2006, 6-8면.

사람들의 관계 구조 속에 있다.<sup>25)</sup> 한국사회의 가장 큰 단점은 오랜 군사문화로 인해 위계화 된 질서와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단일주의로 인해 상대방을 배척하고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만 인식한다는 것이다. 즉, 한국사회에서 차이는 대립과 갈등의 소산일 뿐, 다양성과 풍부성을 산출하는 토대라는 인식은 없다. 또한, 심의 민주주의 하에서는 다수의 시민이 단순히 지지하는 결정이라고 해서 반드시 민주적인 결정이라고 정당화되지 않으며, 민주적 결정은 정책결정 공동체 내의 다른 사람으로부터 수용 가능한 이유로 지지받을 때 정당화된다.

사회발전과 구성체계의 전환에 따라 인권교육은 참여적이고 학습자 중심의 교육방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고려되는 것이 구성주의인데 과거 수동적 학습관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했던 객관주의에 반하는 개념으로서,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구성한다는 가정으로부터 출발한다. 구성주의 입장에서 학습자란 학습자가 백지 상태인 채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자신이 지닌 경험이나 신념 체계에 따라 개념 또는 인지 구조를 재조직해 가는 과정으로 파악된다. 객관주의가 학습의 결과·산출에 관심을 둔다면, 구성주의는 학습의 내적과정을 중시한다. 효과적인 인권교육으로써 접근법은 구성주의를 주도적으로 객관주의를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 ② 현장체험 학습과 활동중심 방법이 장려된다.

효과적인 인권교육의 방법으로 현장체험 학습과 활동중심 학습이 장려된다. 이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증대시키는 방법으로 효과적인 인권교육을 위해 요구되는 방법이다. 이 방법들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토론법 (discussion method): 매우 구조화된 토론에서 토론의 목적은 관점에 대해 논의한 후 상대방의 입장을 듣고 그들의 입장을 변화시킬 기회를 갖는 것이다.
- 경청법 (listening method): 이것의 목적은 타인의 논쟁을 경청하도록 장려하고 짧은 시간에 중요한 요점을 요약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 문제해결법 (problem-solving method): 이 방법은 집단이 생각해낼 수 있는 해결책들을 명료화한 후 그것들 가운데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훨씬 복잡한 방법은 참여자들이 문제에 단계적인 접근을 취한 후 그 접근들을 적거나 조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다. 문제해결에서 흥미로운 활동은 다른 접근들과의 비교이다.
- 역할 놀이법 (role-play method): 간단한 역할놀이는 누가 잔학행위를 목격하거나 관련되었는가와 같은 촉진자의 질문에서 시작한다. 그러면 피해자 혹은 목격자는 감정을 반영해 사건을 재연하도록 요구된다.

25) A. Portes, "Social capital: Its origins and applications in modern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24, 1998, pp. 1-24.

## 24 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안 관련 연구

□ 지역사회 자원 인사 활용(use of community resource persons): 참여자들에게 실제적이고 관련된 경험을 제공한다. 권력의 희생자들은 NGO 또는 종교공동체, 여성 및 청소년 집단 구성원들이 규명한다. 지원인사는 교수자와 상호 교수할 수 있으며, 지식과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다.

③ 인권교육은 학습자가 학급/학교/공동체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것을 요청한다.

인권교육에서 지향하는 참여는 단지 수업 시간에 교수학습 활동에의 적극적인 관여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학생들은 학급/학교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지역사회 및 각종 시민단체의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경험을 할 것이 요청된다. 이러한 실제적인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는 학생들을 한 사람의 권리 주체로서 발달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다. UN의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있다.<sup>26)</sup> “권리에 기초한(rights-based) 학습 환경에 의해 학교교육을 받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증진시킨다. 이 학습 환경은 포용적이고, 보편적 가치와 평등한 기회 및 다양성을 존중하며, 비차별을 조성한다.”

4) 사회적 약자의 관점과 사회 구조적 조망 채택

① 인권교육에서는 사회적 약자의 관점 채택이 요청된다.

Brabeck 등은 모든 사람의 권리를 위한 인권교육이 되기 위해서 특권층 혹은 사회의 지배적인 집단의 관점만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관점을 의도적으로 취하게 하는 조망 능력(perspective-taking)을 확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sup>27)</sup> 곧, 사회의 문제를 이해함에 있어서 학습자들이 지배적인 혹은 주도적인 집단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에 입각하여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취약한 집단의 관점에서 사회를 이해하고 문제를 분석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권리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남미의 사례를 바탕으로 인권교육의 문제를 논하고 있는 Brabeck 등이나 Magendzo는 인권교육에서 이러한 관점 채택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사회적 약자’는 기본적으로 부자 대 가난한 자, 지배층 대 피지배층 등 사회적 강자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NAP에서는 현재 우리 사회의 ‘소수자’로서 “여성, 성적 소수자, 장애인, 외국인, 아동, 노인”을 구체적으로 범주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인권교육은 이러한 사회적 약자 혹은 소수자의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6) 국가인권위원회,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2005, 18면.

27) M. M. Brabeck & L. Rogers, Human Rights as a Moral Issue: Lessons for Moral Educators from Human Rights Work, Journal of Moral Education, Vol. 29 No. 2, 2000, pp. 167-182.

② 인권교육에서는 공동체 전체를 보는 사회구조적 조망이 필요하다.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사회문제들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교육함에 있어서 어떤 관점에서 접근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다. 사회문제들의 원인에 관련된 개인의 품성이나 노력의 문제로 볼 수도 있고, 사회구조적인 관점에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 도시의 가난한 학생들에 대한 인권교육의 문제를 다룬 논문에서 Brabeck 등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정치적 힘들에 대해 그리고 자신의 인권과 책임에 대해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종주의와 가난의 사회-정치적인 현실을 무시하는 도덕성을 가르치려는 시도는 억압과 고난 속에서 살고 있는 많은 아동들에게 진짜 같지 않고,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일 것이라고 한다. 인권교육자들은 아동들의 가난의 문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약에 대한 정치적 분석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의 역사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석하게 하고, 현존하는 법체계, 교육체계, 문화구조에 대해 학생들의 질문을 허용하고, 사회의 제도화된 인종주의와 폭력의 원인에 대해 탐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구조적 폭력과 가난의 결과에 대한 이해가 학습자들에게 자기-비난을 줄이고 환경을 이해하고 스스로의 힘을 기를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회적 문제에 대해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중산층의 방식은 가난과 비도덕성을 동일시하게 되고, 개인의 도덕적 행위의 책임을 강조하는 고도로 처방적인 인격교육(character education) 프로그램을 옹호하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에 인권교육은 도덕적 잘못을 만들어 내는 사회구조의 문제를 비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개인적 수준에서 거시적 구조까지 포괄하는” 인권교육의 지향과 일관된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sup>28)</sup> 인권교육은 개인적·심리적 수준에서부터 거시적 구조까지 넓은 수준을 포괄하는 것이어야 한다. 인권교육은 자신의 인권을 인식하게 되는 개인적·심리적 수준에서 시작하여, 타인의 인권을 인식하고 타인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책임을 느끼게 되는 관계적 수준으로 발전된다. 그리고 좀 더 거시적으로 현재 우리의 사회제도가 사회구조가 인권 침해를 유발하거나 용인하지는 않은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단계로까지 나아가야 한다. 일반적으로 인권 침해는 개인적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적 차원에서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인권 침해의 현실을 이해하고 비인권적인 사회제도와 구조를 변화시키려는 연대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 5) 인권 친화적 교육 환경 조성의 중요성

① 인권교육은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인권교육의 특징 중의 하나는 교육을 통해서 인권을 실현하는 것(education for human rights)도 중요하지만, 인권친화적인 환경을 통해서 인권의식이 고양되는 것(education through human rights)도 그에 못지않게 강조된다는 점이다. 학교교육의 경우를 통해 이 문제를 좀 더

28) 국가인권위원회, 『교사를 위한 학교 인권교육의 이해』, 2004.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교에서 인권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학교의 일상적인 경험자체가 학생과 교사의 인권을 존중하는 인권친화적인 분위기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사면위원회가 1994년에 발간한 『첫걸음: 인권교육의 시행을 위한 입문서 (First Steps: A Manual for Starting Human Rights Education)』에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인권을 이해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실천에 의한 직접 경험을 통하여 인권의 중요성을 배워나가게 하는 것이며 학교 환경은 학생들에게 그러한 경험을 제공하는 가장 손쉬운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환기시키고 있다. 따라서 ‘학교 폭력’ 등과 같이 그 동안 우리 학교에서 보고되었던 다양한 인권 침해 사례들을 극복함과 동시에 학교가 인권 친화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의 정립이 요구된다.

UN의 『세계 인권교육 프로그램』(2005)에서 제안하는 인권 친화적 학교 환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인권교육은 인지적 학습을 넘어서, 학습과 교수과정에 관여된 모든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정서적 발달을 포함한다. 인권교육은 학교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학교를 둘러싼 더 큰 공동체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권이 실천되고, 인권의 문화를 발달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이 목적을 위해, 인권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인권에 기반을 둔 학습 환경에서 이루어져야 함이 필수적이다. 교육목표와 실천, 학교조직이 인권적 가치와 원리에 부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학교 안팎의 문화와 공동체가 이 원리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 권리에 기초한 학교는 상호이해, 존중, 책임을 특징으로 한다. 그것은 학교 공동체의 모든 성원들에게 동등한 기회, 소속감, 자율성, 존엄성과 자존감을 제공한다. 이것은 아동 중심적이며 적절하고 의미 있는 학교로서, 인권이 학습목표로서, 그리고 학교 철학으로서 모든 이에게 명백하고 분명하게 내면화되는 학교이다.
  - 권리에 기초한 학교는 학교 공동체의 모든 성원들의 책임이다. 학교장은 이러한 목적에 도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내는 데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 권리에 기초한 학교는 다음 요소들을 갖추고, 그 효율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 학교 내 인권교육을 위한 정책 진술과 이행 규정은 명백하게 공유되며, 다음을 포함하여야 한다.
  - 역할과 임무의 분명한 배분에 근거한 학생과 교사의 권리와 책임현장-폭력, 성적학대, 괴롭힘, 체벌 없는 학교를 위한 행동규칙: 이 규칙에는 갈등을 해결하고 폭력과 집단 따돌

립을 다루는 과정이 포함된다.

- 학교 구성원이 모두 차별 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정책들: 입학, 장학제도, 지급, 특별반, 수강자격과 기회 등이 포함된다.
- 축제, 시상 등을 통한 인권 성취에 대한 확인과 축하

㉞ 권리에 기초한 학교에서 교사는 다음을 가진다.

-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학교 지도부로부터 받은 분명한 위임
- 인권의 내용과 방법론에 관한 교육과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
- 인권교육에 관한 새롭고 혁신적인 모범적인 실천 활동을 개발하고 적용할 기회
- 지방, 국가, 국제적 수준에서 인권교육가들을 네트워크를 포함하여 모범적 실천을 공유할 수 있는 기제

㉟ 권리에 기초한 학교에서 학생들은 다음을 가지게 된다.

- 나이와 발달하는 능력에 따라 부여되는 자기표현, 책임,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 자신들의 활동을 조직하고 자신의 이익을 표현, 중재, 변호할 수 있는 기회

㊱ 학교와 지방정부 그리고 더 큰 지역 사회 간에 다음과 같은 상호작용이 있게 된다.

- 아동의 권리와 인권교육의 핵심적인 원리에 대한 부모와 가족의 인식 제고
- 인권교육의 활동과 프로젝트에 부모의 참여
- 학부모 대의 조직 통해 학교 의사결정에 학부모의 참여
- 지역사회 내에서 특별히 인권 쟁점에 대해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수행
- 인권 인식 제고와 학생 지원을 위한 청소년 그룹, 시민사회, 지역정부의 협력

한편, 인권교육 관련 설문조사에서 인권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많은 사람들이 응답한 것은 바로 “인권교육에 적합한 학교환경 구축”이었다. 그런데 응답자의 과반수가 인권교육을 저해하는 여건이나 환경으로 지나친 입시 경쟁, 과밀학급, 교직사회의 권위적인 분위기를 들고 있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인권교육에서 인권친화적인 환경의 조성이 직접적인 인권교육 활동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② 인권교육을 위해 수평적인 의사소통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인권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자와 피교육자 상호간에 동등한 인격체로서 서로를 대하고 존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평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관계의 형성이 인권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교육 상황에서 수평적인 의사소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앞에서 지적했듯이, 아직 권

위주의적인 교직 풍토와 교사-학생간의 관계가 지배적인 우리의 학교에서 상당히 변화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학생들의 도덕성 발달을 지도한 예는 유명한 콜버그(L. Kohlberg)의 “정의로운 공동체(just community)” 접근에서 그 전형을 찾아 볼 수 있다. 이는 도덕교육을 목표로 개발되고 실험된 모형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인권교육을 위해서도 참고하고 적용할 수 있는 모형이라고 생각된다.

“정의로운 공동체로의 접근”은 콜버그(L. Kohlberg)가 ‘도덕적 토론’과 함께 학교 도덕교육 프로그램으로 제안한 것이다.<sup>29)</sup> 도덕적 토론이 주로 수업에서 교사와 학생간의 언어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교육의 과정이라면, 정의로운 공동체 접근은 교실을 넘어 학교 전체를 정의로운 공동체로 운영함으로써 의도적인 교육의 과정 및 잠재적 교육과정을 통해서도 학생들의 도덕적 발달을 기하려는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콜버그는 도덕 교육에 대한 진지한 발달론적 접근은 학교의 급진적인 재구조화를 요구한다고 보았다. 그는 부정의한 제도적 상황 속에서 정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토론의 활용에 대해 심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러한 교육은 위선의 요소를 갖고 있다고 보았다. 그는 도덕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학교는 ‘생생한 정의의 문제를 다루며 완전한 학생 참여를 통해 민주적으로 통치되는 소공화국’이라고 보았다. 콜버그가 이 프로그램을 고안할 때 이스라엘의 키부츠의 학교를 상당 부분 참조했다고 한다. 키부츠 학교는 민주적이고 집단적인 가치들의 성공적인 결합을 보여주고 있다.

정의로운 공동체 접근은 콜버그 자신의 도덕 교육론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학교 도덕 교육 상황에서 고려해 보아야 할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해준다.

- ① 도덕적 판단으로부터 도덕적 책임감으로: 정의로운 공동체 접근은 학교생활에서 학생들에게 권력과 역할을 제공함으로써 도덕적 책임감을 증진시킨다.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학교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 투표자가 됨으로써 수동적인 볼모가 아니라, 능동적인 의사 결정자가 된 자신을 보게 된다.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학생들은 공유된 집단의 규범과 가치들을 동일시하게 된다.
- ② 집단의식(collective consciousness)의 발달: 콜버그의 도덕적 토론 접근에서는 개인의 도덕적 추론을 발달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 반면에 정의로운 공동체 접근에서는 규범들과 가치들에 대한 집단적 혹은 공유된 의식을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 공유된 의식은 집단의 권위를 나타내고 또 도덕화의 실질적인 기관(agency)이 된다. 실험학교 학생들은 실제로 이 같은 공유된 의식에서 서로를 돌보고, 집단의 일에 공동으로 책임을 느낀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 ③ 교육적 자원으로서의 또래 집단 압력(peer pressure): 소크라테스적 접근에서는 학생이 진정한 정의 개념을 알면 그것에 따라 살 것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접근에서

29) C. Power, The Just Community Approach to Moral Education, Journal of Moral Education, Vol. 17 No. 3, October 1988, pp. 195-208.

남겨진 문제는 진리의 성취 이전 또는 그것 없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이다. 콜버그가 제안한 신(新)소크라테스적 접근에서는 학생들을 인습 이전 수준으로부터 인습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 플라톤의 경우에는 공화국에로 입문하는 포괄적 사회화를 규정함으로써 이 질문에 응하고 있다.

콜버그는 미국 문화의 ‘사적 자유 존중주의(privatism)’가 학생들의 사회적 책임감을 침식하는 것을 우려하고 집단적 과정이 도덕적 발달에 기여하도록 하는 방향을 모색한 것이다. 정의로운 공동체 접근은 집단 압력의 건전한 효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 집단 압력은 또래들보다 낮은 단계에 있는 학생의 단계 발달을 자극시킨다. 이 모형을 통해 우리는 학교에 존재하는 또래 집단 압력을 교육적 자원으로 인식하고 활용할 것을 시사 받는다. 학교에서 자율성과 높은 단계의 추론을 지지하는 집단의 규범을 확립할 수 있다면, 학교의 집단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도덕적 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며, 정의로운 공동체 접근의 실험학교들은 이러한 시도를 상당히 성공적인 것으로 예시하고 있다.

#### 6) 사회체제의 변화를 지향하는 인권교육

##### ① 인권교육은 사회 구조 혹은 체제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포함한다.

인권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각 개인의 인권 신장이라면, 인권교육은 당연히 개인이 속한 사회의 구조와 체제의 문제를 볼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Brabeck 등은 인권교육에서는 교사와 학생들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는 체제적 변화를 서술하고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콜버그의 정의로운 공동체에서처럼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자신의 교실에서 체제적인 정의가 추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에 의하면, 어떤 사람들의 권리와 복지를 과도하게 증진시킬 때 비특권층의 비인간화와 인권 침해가 초래된다. Kozol이 『야만적인 불평등(Savage Inequalities)』에서 지적한 학교 재정의 배분에는 노골적인 인종주의가 깔려 있으며, 차별은 개인 수준이 아니라, 정부 체제와 경제 정책부터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30)</sup> 이것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개인과 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를 인식하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곧 이들은 학생들이 자신과 타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체제들을 비판적으로 평가할 줄 알도록 지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 ② 인권교육은 권위주의적인 교육 체제 자체에 대한 도전을 포함한다.

Magendzo에 의하면, 현존하는 교육 체제의 현실은 인권교육에서 요구하는 비판적 접근과 거리가 멀다. 이는 남아메리카나 미국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인데, 우리 교육의 상황도 이러한 평가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Magendzo에 의하면, 교사들은 그 자신이 불평등

30) J. Kozol, *Savage Inequalities: Children in America's School*, New York: Harper Perennial, 1991.

과 사회적 부정의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재생산해 내는 핵심적이고 기능적인 교육 체제의 부분이다.<sup>31)</sup> 따라서 인권교육자로서의 교사들의 입장은 딜레마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자신이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함과 동시에 자기 자신을 포함하는 기존의 교육 체제 자체의 구조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Magendzo는 일찍이 인권교육의 이러한 딜레마적인 상황에 대해 논의한 바가 있다. 그는 기존의 교육과 인권교육 간에 도구적 합리성과 비판적 합리성간의 긴장, 보수 대 개혁 간의 갈등, 합의를 지향적 교육 대 문제제기형 교육 간의 긴장 등과 같은 긴장과 갈등이 존재한다고 지적한다.<sup>32)</sup>

Magendzo는 인권교육은 사회정의, 사회적 약자의 능력 기르기와 함께 가난, 차별, 평화, 성차별, 인종주의 등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정치적 쟁점들을 교육과 교육과정에 통합·융합시킴으로써 사회 변화에 공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sup>33)</sup>

## 2. 인권교육의 근거 및 인권교육에 대한 권리

### (1) 인권교육의 근거

1) 세계인권선언 전문 및 제26조 (1948년)

세계인권선언 제26조

제1항 : “모든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항 :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

교육은 모든 국가간, 그리고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간의 이해, 관용, 그리고 친선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촉진하는 것이어야 한다.”

세계인권선언에서는 교육의 기준으로서 “인권”에 초점을 두고 있다.

2)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폐지에 관한 국제협약 제7조 (1965년)

3)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3조 (1966년)

4) 모든 형태의 여성차별폐지 협약 제10조 (1979년)

31) A. Magendzo, Pedagogy of Human Rights Education: Latin American Perspective, International Education, Vol. 16 No. 2, May 2005, pp. 137-143.

32) A. Magendzo, Tensions and Dilemmas about Education in Human Rights in Democracy, Journal of Moral Education, Vol. 23 No. 3, May 1994.

33) A. Magendzo, Pedagogy of Human Rights Education: Latin American Perspective, International Education, Vol. 16 No. 2, May 2005, pp. 137-143.

- 5) 아동권리협약 제29조(1989년)
- 6) 비엔나 선언과 행동계획 1부 33-34항, 2부 129-139항(1993년)
- 7) 인종주의,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와 관련된 불관용을 반대하는 세계회의 선언과 행동계획 (선언 95-97항, 행동계획 129-139항)(2001)

## (2) 인권교육에 대한 권리

- 교육에 대한 권리  $\supset$  • 인권교육에 대한 권리  
⇒ 교육에 대한 권리는 인권교육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 교육에 대한 권리  $\subset$  • 인권교육에 대한 권리  
⇒ 인권교육에 대한 권리는 교육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 3.

## 인권교육의 중요성 및 인권교육의 모델

### (1) 인권교육의 중요성

- 인권보호와 증진은 인권에 대한 의식과 존중이 사람들의 머리와 가슴속에 자리 잡을 때 보다 폭넓게 실현될 수 있다.
- 인권에 대한 의식과 존중은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습득되는 것이다.
- 인권은 인권존중과 보호에 대한 인류 개개인의 도덕적 의무를 내포한다.

#### ▶ 단계적 의무론<sup>34)</sup>

- 1차적 책임: 국가와 국제공동체, 즉 공공의 정책을 결정하고 규정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 2차적 책임: 그러한 결정을 이루어내는 과정에 기여하는 모든 개인 즉, 사회의 각 구성원

### (2) 인권교육의 목표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견, 국적 또는 사회적 출신, 출생 또는 기 타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안 된다. 인권교육은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의 평등을 위한 것이다. 또한, 인권적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34) Christopher Menke, Reflections of Equality, Forum for Modern Language Studies, Oxford University Press, Vol. 43 No.4, 2007.

1) 인권교육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인권교육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인권을 인지하고 태어날 때부터 부여받은 자유로운 삶을 누릴 기본적인 권리를 가졌음을 알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권교육은 인간으로서의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인지의 과정이면서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최소한의 삶의 조건을 인식하도록 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결국, 인권교육은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존엄성을 파악하도록 돕는 것이며, 인간으로서 자존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2) 인권교육은 다양한 인간과 집단에 대한 이해와 관용, 평등과 우정이 증진되도록 해야 한다.

현실적인 인간 삶의 조건은 그 문화적 특성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오늘날의 지구촌화된 사회에서 이러한 다양성은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인권교육은 천부적으로 부여받은 양심과 이성애 따라 다양한 인간과 집단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도록 돕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다양성의 이해가 획일성이나 전체성을 지향하는 것 아니라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면서 공존하는 삶의 방식을 추구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평등과 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인권교육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해야 한다.

인권교육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동등한 존엄과 권리를 가진 타인의 인권을 고려하고 그것에 대해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즉, 모든 사회적 맥락에서 인권을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맥락에서 인권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파악하는 인권에 대한 문해력과 사회적 맥락에서 ‘인권’ 관점을 고려하여 그 맥락을 이해하려는 감수성을 갖추어야 한다. 인권교육은 인권이 단순한 한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아니라 모든 인류가 ‘인간으로서 살아갈 권리’가 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4) 인권교육은 모든 사람들이 자유로운 사회에서 사회적 참여를 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권교육은 모든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자유로운 삶을 누리는 사회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인권은 완성되지 않았고, 인권교육이 사라지는 날 인권이 완성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인권교육은 인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찾아주기 위한 사회적 연대가 이루어지고 모든 사람이 자유로운 사회에서 살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3) 인권교육의 3가지 모델<sup>35)</sup>

35) F. Tibbits, Human Rights Education in Schools in the Post-Communist Context, European Journal of Education, Vol. 29 No.4, 1994.

▶ 가치 및 의식모델 (Values and Awareness)

- 학교 및 시민교육
- 정치적·역사적·철학적 접근

▶ 책임모델 (Accountability)

- 인권과 밀접한 전문 직업 종사자들(경찰, 군인, 법률가, 의사, 정치가, 교사, 사회복지사 등)
- 법적·정치적 접근

▶ 변화모델 (Transformational)

- 인권침해를 경험한 사람과 공동체에 대한 치료 및 역량강화 (Empowerment)
- 심리학적·사회학적 접근

## II. 인권교육의 요소

1.

### 인권교육의 요소

#### (1) 인권교육의 구성요소

인권교육은 인권에 관한(about) 교육뿐만 아니라, 인권을 위한(for) 교육이어야 하고, 인권을 통한(in, through) 교육이어야 한다.<sup>36)</sup>

최근 유엔 인권교육훈련선언 등에서 제시하듯 인권교육의 논리구조는 인권에 대한 교육 (Education about human rights: 개념적 측면), 인권을 위한 교육 (Education for human rights: 운동적 측면), 인권을 통한 교육 (Education through human rights: 과정적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 1) 인권에 대한 교육: 인권기준과 원칙, 인권의 토대가 되는 가치관과 인권 보호체계 등에 대한 이해 등을 포함한다.

인권에 관한 지식을 다루는 교육이다.

- 인권의 역사와 의미, 목록

36) Ian Lister, The Challenge of Human Rights for Education, in: H. Starkey (Ed.), The Challenge of Human Rights Education, London, 1991, p. 249.

### 34 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안 관련 연구

- 시민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
- 인권문서들, 인권보호기제 및 이를 활용하는 기술, 과거와 현재, 미래의 인권 문제, 인권 관련정책, 나와 공동체의 인권적 요구 적시

2) 인권을 통한 교육: 교육자와 학습자 양자 모두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의 교육과 학습을 포함한다.

교육 현장에서의 인권 실현을 통해 인권적 가치와 태도, 감수성을 기르는 교육이다.

- 강제와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참여, 민주적 합의와 토론, 인간의 존엄성·평등·타인에 대한 존중·차이에 대한 인정·관용·정의·책임 등의 가치, 공감

3) 인권을 위한 교육: 자신의 권리를 실천하고 향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상대방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할 수 있는 역량강화를 포함한다.

실제로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행동기술과 의사소통능력을 기르는 교육이다.

- 비판적 분석력과 판단력, 인권적 기준에 의한 문제
- 해결 및 갈등 해결 능력, 연대적 행동과 사회참여
- 인권증진을 위한 역량 강화(empowerment)

#### (2) 권리에 기초한 교육(rights-based education)

1) 교육을 통한 인권: 교육과정, 교재, 방법, 훈련을 포함한 학습의 모든 요소와 과정들이 인권을 학습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보장

2) 교육에서의 인권 : 교육제도 안에서 모든 행위자의 인권의 존중과 권리의 실현을 보장

- 관련 5개 요소 : 정책, 정책시행, 학습환경, 교수와 학습, 교직원의 교육
- ⇒ 국가교육제도가 모든 이에게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는 기본적 사명을 실현하는 데 기여.

## 2.

### 인권교육의 영역과 주요대상

인권교육은 인권교육 영역에 따라 학교<sup>37)</sup>영역 인권교육, 공공영역 인권교육, 시민사회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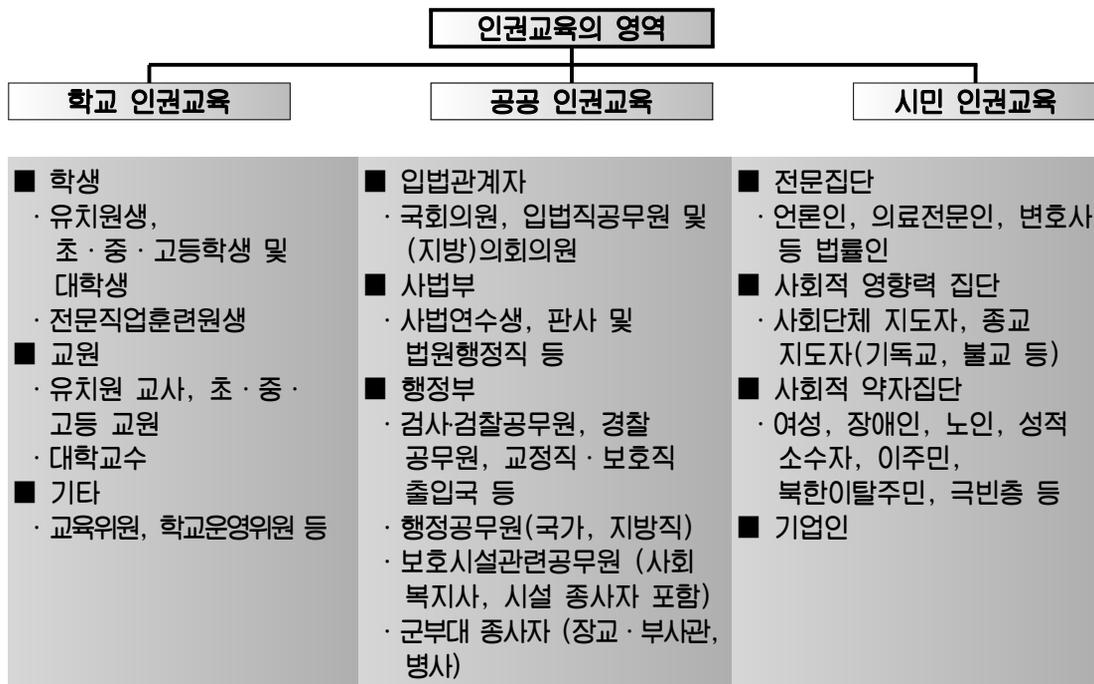
37) 학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영유아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 유아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 등을 말함. '보육시설'이라 함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이고, '유치원'이라 함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인권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인권교육은 정규비정규 교과과정 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교 인권교육을 말한다. 즉,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보육시설, 유아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공·사립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일환으로 행해지는 인권교육을 말한다고 하겠다.

공공영역 인권교육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소속종사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공공기관 인권교육을 말한다. 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및 제6호의 국가기관(입법·사법·행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 및 제3호의 구금·보호시설 등에서 이루어지는 인권교육을 말한다고 하겠다.

시민사회영역 인권교육은 기업 및 민간사회단체<sup>38)</sup> 등 자본 및 민간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시민사회영역 인권교육으로 학교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이외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인권교육을 말한다.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단체 또는 평생교육시설과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실시되는 인권교육이다.

이러한 인권교육 영역에서 인권교육의 주요대상을 유엔 인권교육 10년 계획에서 제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추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인권교육의 영역과 주요대상<sup>39)</sup>

38) 인권교육단체 함은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장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인력, 프로그램, 예산 등 인권적 자원을 갖고 인권에 관한 교육을 주된 기능의 하나로 실시하는 법인 또는 임의단체 등을 말함.

### III. 인권교육관련 기구

민주화에 따른 인권의식의 고양은 과거부터 존재하던 인권 침해적 관행이나 제도에 대한 개선을 가져왔다. 이러한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한 요소가 인권교육이라 할 수 있다. 즉, 인권의식의 고양을 위해서 인권교육은 필수적인 항목이 되었다. 국내의 인권교육은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공공부문 인권교육, 시민사회부문 인권교육, 학교부문 인권교육 등이다.

문제는 인권교육이 다양한 인식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되다 보니까 예측하지 못한 현상이 발생했다. 인권교육의 이해나 주체에 따라 인권교육을 보는 시각과 접근방법이 각각 상이하고, 인권교육자 및 인권교육의 내용간의 상이성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는 인권교육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인권교육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고민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

#### 1.

#### 인권교육관련 주요기구·단체 및 유엔의 인권교육을 위한 노력

##### (1) 인권교육관련 주요기구 및 단체

###### 1) 국제연합(유엔)

- UNESCO: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1993)
- 교육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Katarina Tomasevski (1998-2004), Vernor Muñoz (2004-2010)

###### 2) 비정부단체

-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160여 개국 300만 명이 넘는 회원들과 함께 인권실현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
- hrea.org (Human Rights Education Associates: 인권교육협의회)
- PDHRE (The People's Decade for Human Rights Education: 국제인권교육민중연합)

1988년 Shulamith Koenig (2003 UN 인권상 수상자)가 미국 뉴욕에서 설립하였다. 경제·사회 개혁을 계몽하는 비영리 국제인권교육단체이다. 전 세계 100여개 회원국과 연계하여 인권계몽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역사회 계몽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인권운동가 파견,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지원, 대중 토론, 인권도시 조성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39) 김철홍, “인권교육 제도화의 현황과 과제”, 『경상대 발표자료』, 2011, 8면.

### 3) 유럽평의회(The Council of Europe(1949))

민주주의와 인권수호를 위하여 활동하는 유럽의 국제기구이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그에 본부를 두고 있다. 유럽평의회 규정(the Statute of the Council of Europe)을 바탕으로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등 10개 나라의 서명에 의하여 1949년 설립되었다. 설립목적은 인권과 민주주의 수호, 법치주의 가치 실현을 비롯하여 중동부 유럽 지역에 대한 지원, 지역 민주주의와 교육·문화·환경에 대한 전문성 공유 등이다.

2006년 현재 가맹국은 유럽연합 가입국 전부를 포함하여 러시아, 터키, 중동부 유럽 나라들 등 모두 46개 나라이다. 미국, 캐나다, 일본, 멕시코, 바티칸시국 등 5개 나라는 옵저버로 참여하고 있다. 조직은 각료위원회, 의원회의, 지방자치단체협의회, 사무처 등으로 이루어졌고,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와 유럽인권위원회(European Commission of Human Rights) 등의 독립기구를 두었다.

가맹국들의 외무장관으로 이루어진 각료위원회는 의사결정 기관으로서 매년 1번 회의를 열고 조약이나 협정, 권고의 채택, 예산승인, 각종 운영위원회 설치 등을 맡는다. 의원회의는 가맹국들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매년 4번의 본회의를 개최하며 10개의 일반위원회 또는 위원회를 통하여 활동한다. 사무국을 지휘하는 사무총장의 임기는 5년이며 각료위원회의 추천으로 임명된다.

## (2) 유엔의 인권교육을 위한 노력

### 1) UNESCO

- 1953년 세계인권선언 교사들을 위한 지침
- 1974년 국제적 이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를 위한 교육, 또한, 인권 및 기본적 자유와 관련한 교육에 대한 권고
- 1987년 인권교육과 정보, 문서들에 대한 국제회의
- 1993년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교육에 관한 국제회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 및 수업을 위한 세계행동지침
- 1993년 비엔나 인권회의: 인권교육의 의미 확인(자유, 민주주의, 발전, 사회적 정의, 인권의식, 인권을 위한 사회참여의 강화)

### 2) 인권교육 10개년(1995-2004)

- 1994.12.23. 유엔총회에서 결의: 유엔 인권교육 10개년을 위한 행동지침
- 1997.10.20. 인권교육 국가행동계획을 위한 안내서

3)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2005-)

- 2005.3.2. 유엔총회에서 결의
  - ▶ 1차시기 중점: 초·중고등학교의 인권교육 (-2009)

(3) 우리나라의 인권교육을 위한 노력

- 한국의 인권교육: 1980년대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 제기<sup>40)</sup>에서 출발하여 인권교육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짐<sup>41)</sup>
-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sup>42)</sup>: 인권교육 법제화 필요성 제기 : 교육기본법 개정(인권교육 조항 신설), 인권교육지원 시행령 제정, 인권교육관련법 제정(인권교육기본법, 인권교육연구원법, 인권교육재단법 제정)
-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법제화 TFT 결성(2005년): 외부 전문가 9인 내부 2인 등 11인, 인권교육 개념 정립,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안) 확정
- 2007년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안’ 국회 상정(17대 국회 회기 종료로 자동폐기)<sup>43)</sup>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2007-2011): 체계적인 인권교육이 없음을 지적; 학교인권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유치원부터 대학까지의 정규 교육과정과 모든 교과에 인권내용을 체계적 통합, 편성할 것; 유치원부터 대학까지의 정규 교육과정에서 인권에 대한 이해 감수성 증진 필요
- 2011년 인권위 인권교육법 제정 재추진(2011년 인권위 업무계획)
- 2011년 3월 인권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출(이은재의원 등 15인): 이 법률안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유치원, 보육시설, 학교), 구금/보호시설, 공적

---

40) 강순원 교수는 한국에서 인권교육의 발전단계를 네 단계로 구분하지만, 실제로 인권운동의 차원이나 학생인권에 주목하는 흐름을 넘어, 인권‘교육’ 자체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네 번째 단계인 1990년대 이후라고 볼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참교육실현을 위한 학부모회 등에 의해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이 고취되었던 것이 새로운 계기가 되어 인권교육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 우리나라는 1991년 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고, 1997년 교육개혁위원회 제4차 교육개혁 보고서에는 인권교육의 내용이 일부 담겨 있다. 강순원, 『평화, 인권, 교육』, 한울, 2000, 182면 이하 참조. 이외에도 1990년대에 발간된 인권교육 관련 문헌으로는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 『인권교육 길잡이』, 사람생각, 1999; 배경내, “학생 인권침해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어린이, 청소년 권리 연대회의, 『아이들의 인권, 세계의 약속』, 내일을 여는 책, 1997; 조혜정, 『학교를 거부하는 아이, 아이를 거부하는 사회』, 또 하나의 문화, 1997;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아이들에게도 인권이 있다』, 참여연대, 1997.

41)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편, 『인권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오름, 1997.

42)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 「인권교육발전 5개년 기본계획 관련 연구」,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2003.

43)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안에는 인권교육의 기본원칙, 국가 책무, 공공기관 등 소속 종사자 인권교육 의무화, 인권교육위원회, 인권교육관계자협의회, 인권교육원 설치, 인권교육종합계획 수립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유관단체에서 인권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 인권교육종합계획의 수립, 인권교육의 실시 평가 등을 하도록 했으며, 인권교육 지원을 위해, 인권교육위원회, 인권교육협의회, (인권위 산하의) 인권교육센터 등을 두도록 했다.

**2.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

국가수준의 인권교육은 2001년 11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더불어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교육협력국 산하 ‘인권교육담당관’으로 운영되었다. 그 후, 2005년 12월 30일에 공포된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전부개정령안」에 의해서, 학교교육팀, 공공교육팀, 시민교육팀으로 구성된 ‘인권교육본부’가 조직되어 오다가, 2010년 8월 30일 개정된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하여 기획조정관, 정책교육국, 조사국의 세 분야로 개편되었다. 인권교육과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 전담 부서로서 다음의 주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표 2〉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과 주요업무

전담부서	주요업무
인권교육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교육기본계획 수립·종합 및 조정</li> <li>■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법령·제도·정책·관행개선 사항 연구 및 위원회 권고·의견 표명, 관련 국내·외 협력</li> <li>■ 인권교육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li> <li>■ 인권교육업무와 관련된 기관과의 협의</li> <li>■ 인권교육 프로그램자료의 개발 및 보급·운영</li> <li>■ 인권강사양성과정 운영</li> <li>■ 인권교육 관련 국내·외 인권관련교육제도 및 교육운영실태에 관한 조사·연구</li> </ul>

## 제2절 국내 인권교육 현황 분석

### 1. 국내 인권교육 현황 개관

2000년대 초반부터 국내에서도 몇몇 인권단체 및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 인권교육의 개념이 도입되었으며, 인권학교, 인권캠프 등 초보적 수준의 인권교육이 실시되었다.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면서 인권교육에 대한 총체적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다. 인권교재 및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인권 강사단이 조직되며, 공공부분에 대한 인권교육의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다. 경찰 및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이 실시되었으며, 인권교육에 대한 여러 조건에 대한 분석이 시도되었으며, 현재 중·장기 계획에 근거한 통합적 인권교육의 실시를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이른바 인권교육법의 제정단계로 발달해 왔다.

<표 3> 국내 인권교육 시기별 상황<sup>44)</sup>

시기	인권교육 도입기 (2002-2005)	인권교육 성장기 (2006-2008)	인권교육 확립기 (2009-2011)
조직	인권교육담당관 (7명)	인권교육본부 (학교·공공·시민팀, 22명)	인권교육과 (12명)
제도화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찰공무원 교육훈련</li> <li>■ 검찰·교정·보호·출입국 등 법무공무원 교육훈련</li> <li>■ 사법연수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중·고등학교 및 교원 교육훈련 / 대학교</li> <li>■ 군인(장병) 교육훈련</li> <li>■ 사회복지사 분야</li> <li>■ 언론 분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 공무원 교육훈련</li> <li>■ 북한이탈주민 교육</li> <li>■ 이주민</li> <li>■ 기업분야 진행 중</li> </ul>

국가인권위원회의 지난 10년간 사업의 흐름을 세 시기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은 특성이 드러난다.

44) 박경서, “인권교육의 국제적 동향과 한국적 과제, 인권교육의 국내·외적 동향과 실천 방안”, 국가인권위원회·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제13차 인권교육포럼 자료집, 2011.10.22, 9면.

## 1.

**인권교육 도입기 (2002 - 2005)**

초기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 인권교육 실시, 검찰·경찰·교정 등 법집행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를 위해 인권교육 교재 개발, 강사진 구축, 교육과정 개설 등에 주력했다. 당시는 전문화된 인권 교재나 자료가 거의 없는 상태였고 인권교육가로서 준비된 강사진 역시 거의 없었기 때문에 기초공사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였다. 그런데 인권교육의 양적 확대와 자료 개발 등에 급급한 나머지 검증되지 않은 인권강사진의 운영과 마구잡이식 교재개발(대부분 인권감수성이 낮은 연구용역진에 위탁) 등으로 인권교육의 개념과 방향을 둘러싼 심각한 오해를 만들어내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 시기는 국가인권기본계획(NAP) 권고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진행된 기초 연구, 인권단체나 유관 기관들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국가인권위 인권교육 사업의 방향과 역점 사업이 선정된 시기이기도 하다. 당시 국가인권위는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정규교육과정에서 인권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공무원 인권교육 의무화 등 공공부문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시민사회 인권교육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기업·언론인·사회적 약자/소수자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을 주요 국가 정책 방향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정책 방향은 이후 국가인권위 사업 배치에 있어서도 나침반 구실을 하게 된다.

## 2.

**인권교육 성장기 (2006 - 2008)**

2006년 국가인권위 체제 개편으로 인권교육본부 아래 학교교육팀, 공공교육팀, 시민교육팀이 생겨나고 담당 인력도 증원되면서 분야별 인권교육이 크게 확대되고 체계성과 안정성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구축하는 시기를 맞이했다. 확대된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대학 인권교육, 기업·언론인 대상 인권교육 등 새로운 인권교육 영역이 발굴됐다.

특히, 이 시기에는 사회복지평가지침 개정,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정신보건법 개정으로 인한 인권교육 최초 의무화 법률의 등장 등 제도적 변화에 힘입어 사회복지분야에서의 인권교육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에 이른다. 자연스럽게 국가인권위의 인권교육 사업에서도 이 분야에 큰 비중이 실렸다.

2006년을 전·후로 국가인권위원회는 강화된 위상을 기반으로 공공부문 인권교육의 체계화, 제도화를 목표로 여러 활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공공기관 인권교육 의무화, 인권교육원 설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권교육법’ 제정 시도, 공무원·교원 연수기관 내 인권과목 개설, 정

## 42 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안 관련 연구

부부처와의 관련 협의회 구축 등이 이 시기에 진행됐다. 그러나 성급한 법제화라는 목소리가 인권단체 내부로부터도 터져 나올 만큼,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제화가 추진되었다.

### 3. 인권교육 확립기 (2009 - 현재)

2008년 현 정권의 등장 이후 국가인권위 조직 축소, 위원장 교체 등의 혼란을 거치면서 2009년 기존 3개 팀으로 운영되던 인권교육본부가 1개과 체제로 개편되었다. 법집행 공무원 분야 인권교육의 확산이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국가인권위 역시 법적 기반이 이미 확보된 사회 복지분야(특히, 장애인) 종사자 인권교육, ‘생활인권’에 포함되는 다문화·노인·아동 분야 쪽에 인권교육이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인권교육 법제화를 위한 시도 역시 법무부와의 소관부처 다툼,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표류하게 되었다. 국가인권위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인권교육연구중심대학, 기업대상 인권교육, 언론인 인권교육 등은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 II. 공공영역 인권교육 현황

###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P)에 따른 공무원 인권교육<sup>45)</sup>

공무원 인권교육의 현황을 파악하려면, 먼저 국가가 공무원 인권교육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는지를 간략하게 정리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공무원 인권교육이 이러한 계획에 비해 어느 정도 성과를 냈는지를 비판적으로 비교·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인권교육에 대해 가장 기본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있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서 공무원 인권교육을 어떻게 결정하고 있는지를 개관하도록 한다.<sup>46)</sup>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는 공무원 인권교육을 크게 여섯 분야로 나누어 계획을 설정하고 있다.

45) 양천수, 공무원 인권교육의 현황과 과제, 『인권교육의 국내·외적 동향과 실천 방안』, 2011 연차(통산 10차) 학술 발표회, 제13차 인권교육포럼, 2011.10.22, 21면 이하.

46) 이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정부, 『2007-2011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2007 및 한국인권재단 (편), 『제2회 인권교육정책 토론회: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공무원 교육』, 2011.6.23. 229-231면 참고.

### (1) 일반공무원 인권교육

일반공무원 인권교육에 관해서는 크게 두 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첫째는 매년 인권관련 교육을 포함한 「공무원 교육훈련지침」을 시달하는 것이고, 둘째는 각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 대한 교육훈련 종합평가를 실시할 때 이러한 공무원 교육훈련지침을 평가지표로 반영하는 것이다.

### (2) 법무·검찰공무원 인권교육

법무·경찰공무원 인권교육에 관해서는 크게 네 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첫째는 법무·검찰공무원 인권교육 일반에 관한 것이다. 둘째는 기관장급 고위공무원에 대한 특별인권교육이며, 셋째는 교정공무원 대상 인권교육이고, 넷째는 출입국관리공무원 대상 인권교육이다. 이 중에서 법무·검찰공무원 인권교육 일반에 관한 목표를 좀 더 살펴보면, 여기서는 다시 세 가지 하부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첫째는 시대적 요청을 반영한 인권교육을 확대하고, 감성·덕성 교육을 통한 인권감수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둘째는 ‘1주 이상 교육과정’에 원칙적으로 인권교과목을 편성하고, 외부전문가 초청 강의 및 인권관련단체 현장체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셋째는 인권감수성교육을 신설하여 일일 수용체험, 역할극, 봉사활동, 국토순례 등과 같은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 (3) 경찰공무원 인권교육

경찰공무원 인권교육에 관해서는 크게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첫째는 인권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고, 둘째는 경찰관 인권강사를 양성하는 것이며, 셋째는 인권과정을 개설하는 것이다.

### (4) 군대 내 인권교육

군대 내 인권교육에 관해서는 두 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첫째는 군인권교육 훈령에 따른 체계적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고, 둘째는 군 특성이 반영된 신분별 교재개발을 추진하는 것이다.

### (5) 북한이탈주민 관련 공무원 인권교육

북한이탈주민 관련 공무원 인권교육에 관해서는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첫째는 2007년부터 하나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인권교육을 정례화하는 것이고, 둘째는 2008년부터 북한이탈주민 보호담당자(거주지·신변·취업보호담당관)을 대상으로 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며, 셋째는 향후 유관부처를 대상으로 하여 인권교육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 (6) 사회복지시설 대표와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시설 대표와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에 관해서는 두 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첫째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연중교육을 실시하는 것이고, 둘째는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등 민간협회에서 자체교육계획에 따라 연중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 2.

### 공무원 인권교육의 현황<sup>47)</sup>

이러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 인권교육은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가?<sup>48)</sup> 일단 외형적인 면에서 볼 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설정하고 있는 목표는 대부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49)</sup> 따라서 아래에서는 이러한 성과를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정리하고자 한다. 그 세 가지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첫째, 공무원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였다는 점이고, 둘째, 공무원 인권교육이 양적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이며, 셋째, 공무원 인권교육이 어느 정도 제도화되었다는 점이다.

#### (1) 공무원 인권교육의 성과

##### 1) 공무원 인권교육의 필요성 제고

우선 그 동안 이루어진 공무원 인권교육을 통해 공무원 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의식이 상당

47) 양천수, 공무원 인권교육의 현황과 과제, 「인권교육의 국내·외적 동향과 실천 방안」, 2011 연차(통산 10차) 학술 발표회, 제13차 인권교육포럼, 2011.10.22, 23면 이하.

48) 이에 관해서는 우선적으로 나영희, “인권교육법제 및 정책현황과 과제 - NAP와 인권교육지원법을 중심으로”, 「인권이론과 실천」 제9호, 영남대학교 인권교육연구센터, 162면 아래 참고.

49) 이를 예시하는 국가인권정책협의회, 「2009년도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이행사항」, 2010 참고.

히 제고되었다는 점을 언급할 수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경찰공무원과 군대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이, 이 두 집단에서는 다른 공무원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횟수의 인권교육이 이루어졌다. 공무원 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의식을 제고한 것은, 공무원 인권교육이 제도화되는 데도 기여하였다. 물론, 최근 들어 공무원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의식이 전보다 약해진 감이 없지 않다. 물론,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현재 진행 중인 인권교육 실태조사가 완료되어 그 결과가 나와야만 비로소 가능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2) 공무원 인권교육의 양적 확대

공무원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의식이 제고되면서, 공무원 인권교육 역시 그 이전보다 양적으로 확대되었다. 공무원 인권교육의 횟수가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정례화되기도 하였다. 여기에는 지난 2002년부터 공무원 영역을 인권교육대상에 포함시키고자 애를 쓴 국가인권위원회의 노력이 큰 역할을 하였다. 그 결과 - 다소 오래된 연구결과이기는 하지만 - 지난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로 제출된 연구결과를 보면, 법무분야, 군대분야, 경찰분야, 행정분야, 사회복지분야 등에서 인권교육이 양적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이 연구용역보고서는 인권교육의 체계와 기반 구축, 인권교육과정운영 측면에서 볼 때 경찰분야가 상대적으로 진일보하였다고 평가한다. 예를 들어, 경찰과 군대분야에서는 인권교육 전담조직이 자체적으로 구성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하여 직무교육 안에서 독자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05년부터는 135개 교육과정에 인권과목을 정규과목으로 채택하기도 하였다.<sup>50)</sup> 이에 비해 이 연구용역보고서는 행정분야에서는 인권교육이 거의 전무하다고 평가하고 있다.<sup>51)</sup> 그러나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를 보면, 일반행정 분야에서도 인권교육이 정례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52)</sup> 다만, 이 자료를 보면, 인권 전반에 걸쳐 교육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주로 다문화에 초점을 맞추어 인권교육이 진행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 3) 공무원 인권교육의 제도화

공무원 인권교육은 그 동안 양적으로 확대되었을 뿐 아니라, 제도적으로 정착되기도 하였다.<sup>53)</sup> 예를 들어, 정신보건법을 개정하고 노숙자복지법을 제정함으로써 관련 공무원과 조사자가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받도록 한 것이나,<sup>54)</sup> 군대 안에 인권교육규칙을 제정함으로써 군대

50) 이를 지적하는 배경내, “인권교육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연구 - 인권운동 영역에서의 좌표 모색을 중심으로 -”, 『인권법평론』 제4호, 2009, 12면.

51) 정원오 외, 『국내·외 공공분야 인권교육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2006, 2면.

52) 나달숙,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에 비추어 본 공무원 인권교육의 현황과 과제”, 49-53면.

53) 물론, 여기서 말하는 ‘제도화’가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지에 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될 수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나영희, 앞의 논문, 162면; 여기서는 나영희 연구위원의 견해에 따라 “일회성이 아닌 인권교육의 지속적인 시행을 위해 관련기관의 법률, 규칙 등에 인권교육의 의무적 이행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인권교육의 방향과 원칙을 정하고 일정한 인권강좌를 교육시수에 반영하도록 한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공무원훈련과정에 인권교육권고지침을 마련하여 일정 공무원 훈련기관에 인권교육강좌를 개설하도록 한 것이나, 법무·검찰 공무원과 경찰 공무원 훈련과정에 인권교육 강의시수를 일정 시간 반영하도록 하고, 자체 인권강사를 육성 및 훈련시키도록 한 것 역시 인권교육의 제도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sup>55)</sup>

## (2) 공무원 인권교육의 한계<sup>56)</sup>

공무원 인권교육은 여전히 여러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그 동안 축적된 연구 성과를 참고하여, 공무원 인권교육이 어떤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지를 정리하도록 한다.

### 1) 공무원 인권교육의 형식화

연구진은 그 동안 실시된 공무원 인권교육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서 공무원 인권교육의 형식화를 거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공무원 인권교육의 양적 확대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인권교육의 질적인 측면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형식성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인권교육방법의 측면과 인권교육제도의 측면이 그것이다.

### 2) 인권교육방법상의 한계

인권교육방법의 측면에서는 다시 세 가지 이유를 거론할 수 있다. 첫째,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측면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이를 테면 각각의 공무원 분야에 적합한 전문적인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을 언급할 수 있다. 또한, 나름 독자적인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한 경우에도 이는 해당 분야의 시각만을 반영한 경우가 많아, 인권교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양하고 복합적인 시각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sup>57)</sup> 아울러 상당수의

54) 예를 들어 정신보건법 제6조의 2는 “인권교육”이라는 표제 아래 다음과 같이 정한다.

- ①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지정한 교육기관에 대하여 그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의 내용·방법, 교육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55) 이상의 내용은 나영희, 앞의 논문, 192면 참조.

56) 양천수, 공무원 인권교육의 현황과 과제, 「인권교육의 국내·외적 동향과 실천 방안」, 2011 연차(통산 10차) 학술 발표회, 제13차 인권교육포럼, 2011.10.22, 24면 이하.

57) 조효제 교수의 분류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 분야가 독자적으로 만든 인권교육 프로그램은 ‘응용적 서사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하급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내용 및 대상의 면에서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한 면으로 편중되어 있어, 성공적인 인권교육을 수행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인권강사의 측면에서 인권교육의 형식화에 대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즉, 해당분야의 인권교육을 전문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전문인권강사를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공무원 인권교육이 형식적으로 흐르고 만 것이다.

셋째, 인권교육에 적용하는 교수법의 측면에서 인권교육의 형식화에 대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인권교육에 대한 연구가 보여주는 것처럼,<sup>58)</sup> 인권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인권교육 교수법에 대한 패러다임이 전반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즉, 인권교육 참여자를 수동적인 교육 대상으로 설정한 후 교수자가 교육대상에게 일방적으로 인권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기존의 강의중심적 교수법으로는 인권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또한, 인권감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인권교육은 껍데기만 있는 죽은 교육이 되기 쉽다. 그러므로 인권교육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권교육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을 동등한 인권교육 참여자로 설정한 후, 교수자와 참여자가 대화와 토론에 기반을 둔 상호소통을 하는 방식으로 인권교육이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무원 인권교육은 여전히 전통적인 강의방식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 때문에 인권교육이 참여자들에게 인권에 대한 지식만 전달하는 형식적인 강의가 되기 쉽다.

### 3) 인권교육의 제도적 한계

공무원 인권교육이 형식적으로 흐르고 있는 문제는, 인권교육이 직면하고 있는 제도적 한계에서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 이유를 언급할 수 있다.

#### ① 인권교육에 대한 실정법적 근거 부재

첫째, 공무원 인권교육을 강제할 수 있는 실정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sup>59)</sup> 현재 공무원 인권 교육은 해당 부처에 일종의 권고로서 부과되고 있을 뿐이다. 그 때문에 만약 해당 부처가 공무원 인권교육을 태만히 하고 있는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 이러한 까닭에서 해당 부처들은 공무원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데 치중한다고도 말할 수 있다.<sup>60)</sup>

방식'에 머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서사방식에 관해서는 조효제, 『인권의 문법』, 후마니타스, 2007, 16-21면 참고.

58) 이에 관해서는 우선 이종태 외, 『인권교육 개념 및 방향정립모색 연구』, 63면 아래.

59) 이 점을 지적하는 나달숙,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에 비추어 본 공무원 인권교육의 현황과 과제”, 53면.

60) 더군다나 최근에는 이러한 양적 확대 역시 후퇴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 ② 인권교육에 대한 평가체계 부재

둘째, 인권교육에 대한 평가체계가 부재하다는 점을 언급할 수 있다. 각 부처가 분야별로 실시하는 인권교육이 과연 적절한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체계가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인권교육이 형식적인 것으로 흐르고 있는 셈이다.<sup>61)</sup> 이는 다시 다음과 같이 구체화할 수 있다. 우선 평가주체와 평가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나아가 인권교육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 역시 현재로서는 공식화되어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설사 평가주체가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해당 부처가 평가를 거부하는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영역주의가 강한 공무원 세계에서 한 부처가 수행하는 공무원 인권교육을 다른 외부부처가 평가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쉽지 않다. 이는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관계를 떠올리면 쉽게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 4) 공무원제도의 속성에 기인한 한계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한계들은 공무원제도가 구조적으로 갖고 있는 속성에서 비롯하는 경우도 많다. 공무원제도는 관료제에 기반을 두어 체계화되어 있다. 덕분에 공무원제도는 전문성과 효율성을 추구하고,<sup>62)</sup> 또 이는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관료제적 속성 때문에, 공무원제도는 권위적인 구조를 보일 수밖에 없고, 또 전문성을 추구한 결과 영역주의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공무원 집단은 권위적인 구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소통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역주의 때문에 외부적으로도 서로 협력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 때문에 공무원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은 권위적인 강의식에 기대기 쉽고, 이렇게 수행되는 인권교육을 외부에서 평가하는 것도 생각하기 쉽지 않다. 더군다나 공무원집단은 그 자신의 관점에서 전문성을 추구한 결과 이른바 ‘응용적 서사방식’에서만 인권교육에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 3.

## 군 인권교육의 현황

### (1) 군의 인권교육현황

61) 물론, 국가인권위원회는 연구용역으로 평가지표를 개발하기는 하였지만, 아직 이를 공식화 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지적하는 나영희, 앞의 논문, 163면;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연간 보고서』, 2007.

62) 물론, 여기서 말하는 ‘효율성’은 공무원제도가 준수해야 하는 법치행정원리상 ‘형식적인’ 효율성으로 호를 가능성이 높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군대 인권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 인권교육 실시하였다. 2006년부터 국방부 육·해·공군 장병 교육훈련기관에서 인권과목이 정규과목으로 개설되었다. 국방부는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인권교육 지침을 개발하여 국방부 훈령으로 ‘군 인권교육 규정’(2008.02.13.)을 제정하였다. 국방부-국가인권위원회 공동주관으로 교육대상별,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인권교육 교재 제작하였다.

국가인권위(공공교육팀)와 국방부(인권팀)는 위와 같은 현행 군 인권교육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2007년 3월부터 10월까지 군 인권교육 실행체계 구축 방안과 군 인권교육 시 필수적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에 대해 공동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공동작업에는 ‘국가인권위원회 공공시민인권교육전문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양 기관의 실무자와 육군 및 공군 본부 교육 관계자, 민간 군 인권문제 전문가 5인이 참여하였다. 그 결과로 '07. 6월에는 군 인권교육 실행체계 전반을 담은 ‘군 인권교육 규정 초안’을, 같은 해 10월에는 ‘군 인권교육 교재’를 개발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9년 국방부와 육·해·공군 인권분야 담당과장이 참석하는 군대인권교육협의회를 구성하여 매년 개최하였다. 2010년 군대인권교육협의회에서 국방부 주관 인권과정 운영 시 교재 및 강사 등을 상호협의하기로 하였다. 2011년 협의회에서 국방대학원 최고위과정과 각 군 대학의 지휘관 과정에 인권과목 개설 등 지휘관들의 인권교육 강화에 중점을 두는 것 등을 협의하였다.

군의 인권교육을 강화하여, 국방부(육·해·공군 포함)는 2008년 52회 2,812명, 2009년 63회 12,718명, 2010년 355회, 42,474명으로 증가 추세이다. 의료, 수사, 교정, 인권교관, 법무관 등 인권업무분야 근무자를 대상으로 각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였다. 2010년도의 경우 인권교육과정은 11회, 666명을 대상으로(1회 평균 61명) 실시되었으며, 「군 법무관 인권교육과정」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방부가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국방부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인권교육 지침을 개발하였고, 그 결과 인권교육지침이 국방부 훈령으로 ‘군 인권교육 규정’(2008.02.13.)을 제정하면서 군대내 모든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군 인권교육 규정은 총 3장 27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규정제정의 목적은 군 인권교육의 방향과 기준을 정하여 군 인권교육업무의 효율화와 통일성을 기하는 것이고, 적용범위는 국방부본부, 국방부직할기관(직할부대 포함), 합동참모본부, 방위사업청 및 육군, 해군(해병대 포함), 공군으로 한정하고 있다. 교육대상은 장병 및 군무원을 모두 포함하고, 교육은 교육기관 내 인권교육, 부대 내 인권교육, 인권교관 교육, 인권관련 업무종사자 인권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 자세한 군 인권교육 규정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4> 군 인권교육 규정의 교육종류별 교육운영·내용 및 시간 등

구 분	교육운영	교육내용	교육시간 등
교육 기관 내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 양성</li> <li>■ 장교·부사관 양성</li> <li>■ 장교·부사관 보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개념이해</li> <li>■ 군 인권 특징</li> <li>■ 병영에서 인권보호</li> <li>■ 인권침해구제방법</li> <li>■ 군 인권정책·규정</li> <li>■ 전시 인도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 1시간 이상</li> <li>■ 장교·부사관 양성 . 1년 이상 6시간 이상</li> <li>. 1년 미만 2시간 이상</li> <li>■ 장교·부사관 보수: 2시간 이상</li> </ul>
부대 내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일</li> <li>■ 주간</li> <li>■ 월간</li> <li>■ 반기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인보장인권범위·책무</li> <li>■ 인권보호사례</li> <li>■ 인권침해구제방법</li> <li>■ 인권정책·규정</li> <li>■ 교전 시 군인의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일(병 대상): 소대장 교관</li> <li>■ 주간(장병대상): 중대장 교관</li> <li>■ 월간(장교·부사관): 대대장 교관</li> <li>■ 반기별(대대장급이상): 정면급 지휘관 교관</li> </ul>
인권 교관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통과정(국방부)</li> <li>■ 심화과정(각 군)</li> </ul>	<p>&lt;공통&gt;-인권개념이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보장필요성·범위 등</li> <li>■ 인권침해사례 예방대책</li> <li>■ 인권침해구제방법</li> <li>■ 인권관계법규정 이해</li> <li>■ 인권정책의 이해</li> <li>■ 전시인도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통: 년1회(1박 2일 이상)</li> <li>■ 심화: 년 1회</li> </ul>
인권 업무 종사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의료업무</li> <li>■ 군수사(정보)업무</li> <li>■ 군교정업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 인권이해 / 환자권리 / 종사자 역할</li> <li>■ 수사: 인권이해 / 수사절차 상권리 / 종사자 역할</li> <li>■ 교정: 인권이해 / 교정시설 내 권리 / 종사자역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박2일 이상 집체교육, 방문교육</li> </ul>

(2) 군의 인권교육 평가

군은 2005년도에 있었던 육군훈련소 인분사건 등 군 내부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고들을 계기로 국방부 내에 인권팀을 신설하고, 국방부 통제과목으로 '장병기본권' 과목을 신설하였으며, 국가인권위와 공동으로 군 인권교육 교관요원 및 대대장급 지휘관을 대상으로 인권연수과정을

실시하는 등 군 인권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관련자료 등을 검토·분석한 바에 따르면, 현행 군 인권교육은 아직 초기단계로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들이 개선되어야 한다.

첫째, 군 인권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관련하여, 군인을 다른 시민과 마찬가지로 헌법에 보장된 ‘인권의 주체’로 보기보다는 군인정신과 복무규율에 따라 ‘관리·통제되어야 할 대상’으로만 본다거나, 군 인권문제를 단순히 사고방지 차원의 문제로 생각하는 등 전통적인 시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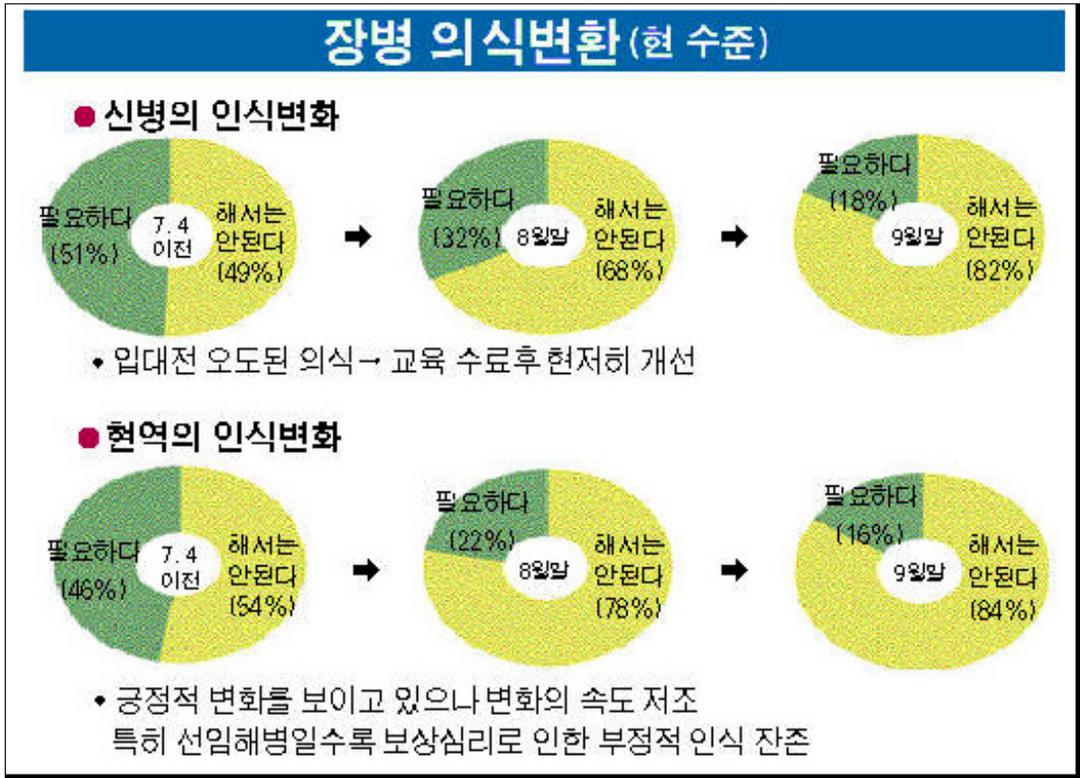
둘째, 군은 2006년도부터 국방부 통제과목으로 ‘장병 기본권 교육’을 포함시킴으로써 인권교육을 실시해오고 있지만, 인권교육 시간이 너무 짧고 인권교육 교재가 미비하며, 인권교육 교관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교육이 매우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인권교육이 실효성 있게 실시되기 위해서는 군 인권교육을 담당할 전문인력 육성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2008년 국방부의 훈령으로 「군 인권교육 규정」이 제정·시행되어 인권교육이 국방부를 중심으로 육·해·공군 전군으로 발전·확산 되는 등 제도적 교육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인권친화적 군대 병영문화 조성 및 개개인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실질적 인권교육을 위해 대대장·연대장 등 지휘관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이 지속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

우선, 군 인권교육 규정내용 및 과정과 관련하여

-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군인의 지위 인식, 인권친화적 문화 확산, 민주적 기본질서예의 충성에 대한 군대의 본질적 사명 등에 입각하여 ‘군 인권교육의 목적’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 군 인권교육이 중·장기적으로 종합적인 계획 하에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필수적으로 군 인권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 일반 사병, 장교나 간부 등의 지휘관, 군내 인권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 구체적인 교육 대상별로 개별적인 인권교육 목표와 원칙을 확립하고, 그에 따라 각 대상 특성에 따른 적합하고 합리적인 교육 내용, 시간 및 과정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운영하며,
- 위와 같이 시행된 군 인권교육에 관하여, 국방부 장관이 주기적으로 그 현황과 시행상태를 파악·분석하고, 국가인권위 등 외부 인권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함으로써 군 인권교육 내용의 충실화와 교육의 실효성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2> 장병 의식변환

【출처 : 국방일보 2011.10.14】<sup>63)</sup>

#### 4. 사회복지 인권교육의 현황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신보건법 제6조에 규정된 인권교육 의무화에 의거하여 정신보건시설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2009년도부터 전국 1,455개 정신보건시설 약 14,000여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전체 1/3 이상에 해당하는 5,428명을 교육하는 성과를 보였다. 또한, 17개 정신보건분야 인권교육 기관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작한 교육교재를 배포하거나 운영방법 및 인권강사를 지원하는 등 정신보건분야 인권교육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63) [http://www.mnd.go.kr/mndMedia/mndNew/mndPlanManage/20111014/1\\_17214.jsp?topMenuNo=1&leftNum=5](http://www.mnd.go.kr/mndMedia/mndNew/mndPlanManage/20111014/1_17214.jsp?topMenuNo=1&leftNum=5)

<표 5> 연도별 정신보건분야 인권교육 실시 현황(2009년-2011년)<sup>64)</sup>

연 도	본부(수도권)		지역인권사무소						계	
			광주		대구		부산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2009년	6	497	10	590	15	998	23	1,395	54	3,480
2010년	30	1,086	14	549	17	618	28	1,241	89	3,494
2011년	27	1,259	15	687	22	1,160	41	2,322	105	5,428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2011년 및 2012년에 시행하고 있는 인권교육 지도자 양성과정 현황은 다음 <표 6>과 같음.

&lt;표 6&gt; 정신보건시설의 인권교육 강사 양성과정

## □ 교육개요

교육	구분	날 짜	시작 시간	교 육 장 소	
신규 강사양성교육	1차	5월 3일(목)-4일(금)	09:30-	서울	하이서울유스호스텔
	2차	5월10일(목)-11일(금)	09:30-	대전	호텔 인터시티
강사 보수교육	1차	5월17일(목)-18일(금)	10:30-	충북 오송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차	5월24일(목)-25일(금)	10:30-	충북 오송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3차	5월31일(목)-6월1일(금)	10:30-	충북 오송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64)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과 연간보고서』, 2011, 17면 참조.

□ 세부교육내용 (2012년)

번호	모듈명 (시간)	교과목명	교육내용	교육방법
1일차				
1	인권이해	정신보건시설의 인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의 개념 및 이해</li> <li>• 인권교육의 필요성 등</li> <li>• 정신보건법 / 장애인차별금지법 등</li> </ul>	강의
2	인권사례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및 전략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신질환자 인권 현황과 주요 사례</li> <li>• 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의 인권 침해 경험 및 보호사례</li> </ul>	강의 및 사례연구 토론
3	인권실천	인권보호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보호 제도</li> <li>• 정신보건시설 내에서 실천 가능한 인권보호방안</li> <li>• 인권감수성 향상</li> </ul>	강의 및 사례연구 토론
2일차				
4	강사의 자질과 활동	강사의 역할 및 강의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인학습의 이해 / 강의활동의 3요소</li> <li>• 강사의 기본자질 및 기본요건</li> </ul>	강의 / 토론 발표
5	동적인 강의진행	Open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의 사전준비 / 수강대상 분석 등</li> <li>• 관심유발로 주제에 집중시키는 법</li> </ul>	강의 실습 / 발표
		Delive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의활동의 기본 Pattern</li> <li>• 주제에 대한 흥미유발 및 몰입유도법</li> <li>• Story Telling 기법</li> </ul>	강의 실습 / 발표 피드백
		Clos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losing의 중요성과 구조</li> <li>• 강의내용 요약절차</li> </ul>	강의 실습 / 발표
6	Dynamic Activity	참여유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룹토의 형성 및 참여촉진</li> <li>• 학습게임 사례 및 개발하기</li> </ul>	강의 실습 / 피드백
		강의내용 강화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감을 얻어내는 분위기 형성법</li> <li>• 반대의견 다루기와 응답하기</li> </ul>	강의 실습 / 피드백

## □ 세부교육내용 (2011년)

번호	교 과 목 명	시간	주 요 내 용
1	'11년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 방향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1년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 방향</li> <li>• 인권교육, 인권강사자격 등</li> </ul>
2	장애인차별금지법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차별금지법 주요 내용</li> </ul>
3	정신보건시설 인권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과 건강</li> <li>• 정신보건시설 인권교육의 중요성</li> <li>• 정신보건시설 종사자의 윤리</li> </ul>
4	정신보건시설 인권보호방안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신보건시설 인권현황 사례</li> <li>• 정신보건시설 인권보호 사례 및 전략</li> <li>• 정신보건시설에서 실천가능한 인권보호 방안</li> </ul>
5	정신장애인 인권보호 사례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와 인권</li> <li>•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이 인지하는 차별 및 편견 사례</li> <li>• 지역사회 정신장애인 인권보호방안</li> </ul>
6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인권감수성 훈련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감수성 심화교육</li> <li>• 활용가능한 인권감수성 향상 교육방법</li> </ul>
7	정신보건시설 인권강사 역할 및 역량강화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교육 강사의 역할 및 중요성</li> <li>• 인권교육 강사의 역량 및 delivery skill</li> </ul>
8	인권교육 자료개발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권교육 강의자료 개발</li> </ul>
9	인권강사 자기관리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신보건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 해소 및 자기관리법</li> </ul>
10	인권강의 클리닉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팀별 인권교육 자료를 활용한 강의실습</li> <li>• 인권강의 클리닉</li> </ul>
11	교육과정 설명 및 평가 수료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교 및 과정안내</li> <li>• 설문서 작성 및 수료식</li> </ul>

## 5.

## 경찰 및 법무공무원 분야 인권교육의 현황

(1) 현황<sup>65)</sup>

경찰청은 인권담당 부서인 인권보호센터를 2005년 설치하여 인권교육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자체 인권교육을 수행하였다. 직장교육으로 인권교육 의무화 및 교육훈련 지침 내 인권교육을 반영하였다. 인권교육의 정규 과목화 및 인권강사 양성과정 개설하였다. 맞춤형 인권교육

65) 출처: 제1기(2007-2011) 인권NAP 자체평가(법무부, 2011.12.)

콘텐츠 제작 및 인권보호 직무사례 발표회 등을 통해 인권의식을 강화하였다.

법무부는 법무공무원(검찰, 교정, 보호, 출입국)의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법무연수원 중기인력 계획에 인권교육을 반영하여 실시하였다. 2008년부터 ‘인권감수성 향상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였고, 검찰·교정·보호·출입국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정규 과목화 및 4개 분야별 인권감수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하였다. 인권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일선기관 자체교육용 인권실무교재 제작·배포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인권길라잡이』, 『수사와 인권』, 『경비와 인권』 3권의 책을 통합하고 새로운 위원회 결정례, 변경된 법규 등을 반영하여 2010년 『경찰과 인권』 교재를 개발하였다. 2011년 2월 전·의경 구타 등 가혹행위 및 사망사건에 대한 직권조사의 재발방지차원에서 경찰에 대한 인권교육이 강화됨에 따라 총 89회 8,399명을 대상으로 위원회 주관 인권특강을 실시하였다. 경찰수사연수원, 경찰교육원, 경찰대학 등 경찰교육기관에 대한 인권특강도 24회 실시하였다.

<표 7> 경찰분야 인권교육 현황

교육범주	교과목명	교육기관	교육대상	교육시간	강사
직무 분야와 관련한 인권교육	경찰과 인권	경찰대학	치안정책과정 경감·경정기본과정	7 5	외부
		경찰종합학교	경사·경위기본과정 간부후보생과정	7 7	외부
		중앙경찰학교	전·의경과정 신임교육과정	7 2	외부
		수사보안연구소	수사지휘과정 전문과정	7 2	외부
		지방경찰학교	인권과정	7	외부
	범죄피해자의 이해	경찰대학	치안정책과정 경감·경정기본과정	3 2	외부
		경찰종합학교	경사·경위기본과정 간부후보생과정	3 3	외부
		중앙경찰학교	신임교육과정	3	외부
		수사보안연구소	수사지휘과정 전문과정	3 2	외부
		지방경찰학교	인권과정	3	외부
	인권의 이해	경찰대학	전문과정	2	내부
		지방경찰학교	실무과정	2	내부
		경찰서	직장교육훈련	1	내부

## (2) 평가 및 향후과제

경찰 및 법무공무원 각 분야에서의 전반적인 인권개선 노력이 우수하며, 개선 성과도 긍정적으로 인정되지만, 인권감수성을 함양하고 관련 분야에서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인권사안에 중점을 둔 실용적인 내용을 참여적 기법 등을 통해 효과적인 인권훈련을 보장할 수 있는 인권교육의 질적 향상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NAP에 포함되어 있는 인권교육 사항에 대하여 그 이행사항을 모니터링 함으로써 인권교육을 내실화 할 필요가 있다.

## Ⅲ. 학교영역 인권교육 현황

### 1.

### 초·중·고등학교 인권교육 개관

국가인권위원회는 초·중등학교 및 대학교 교육과정에 인권교육을 도입하기 위해 2002년부터 ‘교사인권의식조사연구’, ‘제7차 교육과정 교과서 인권관련 내용 분석 연구’ 등 기초여건을 조성하였다. 초·중등학교 교과서를 인권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교과서의 인권침해·차별행위적 내용을 수정하도록 교육부에 권고하여 수정하기도 하였다. 초·중등 정규 교육과정에 인권교육을 도입하기 위해 ‘유·초·중·고등 인권교육과정 개발연구’를 하여 교육부와 교육과정 내 인권교육도입을 협의하였다.

이와 함께 2003년부터 ‘인권교육 정책연구학교’를 운영(기간: 2년)하여 정규교육과정의 교과활동, 재량활동, 특별활동 등에서 인권교육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학교현장에서 실험을 하였다. 그동안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보던 인권교육이 정규 학교 내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그 성과는 시·도교육청 등으로 확산되었다. 지금까지 60여개의 학교가 참여하고 있다.

2005년 유엔이 인권교육10개년 후속조치로서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을 채택하여 1차시기(2005-2007)에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서 인권교육도입을 권고하였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을 번역하여 교육정책담당자들에게 배포하면서 유엔의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내 인권교육 도입을 촉구하였다.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는 주5일제 수업에 대비하여 2009년부터 연차 적용을 목표로 현행 제7차 교육과정 개정작업을 진행했는데 위원회는 교육과정 개정 시안의 인권 관련 내용을 검토했다. 검토 결과, 개정 시안에는 현행 교육과정에 비해 인권 관련 내용이 전반적으로 강화됐으나 교육과정 총론, 도덕과, 실과의 개정 시안에 일부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교육인적

자원부에 검토 의견을 제출했다. 예를 들어, 교육과정 총론의 학교 급별 교육 목표에 ‘인권의 가치’를 포함할 것, 도덕과의 ‘사랑과 축복 속에서의 나의 탄생’이란 표현을 미혼모나 한부모 자녀 등을 감안해 ‘존귀한 나의 탄생’으로 표현하고, 실과의 교수학습 방법에서 국가사회적 요구사항의 예로서 ‘인권교육과 양성평등교육’을 포함할 것 등의 의견을 제출했고, 교육인적자원부는 도덕과 및 실과에서 위원회의 의견을 일부 반영했다.

또한, 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과정·교과서 발전협의회’와 ‘교육과정심의회’에 참여해 교육정책에 인권교육이 반영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007년도 개정교육과정(2007.02.28 교육인적자원부 고시)에서 인권 및 인권교육이 강화되었다. 창의적 재량활동으로 인권교육과정 운영할 수 있으며, 학교수준의 교육과정 운영지침에 인권교육이 35개의 범교과적 학습주제의 하나로 포함되어 인권교육이 교육활동 전반에서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도록 강조하고 있다.

각 교과 중 도덕과의 경우 새로운 사회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도덕적 가치들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여 인권을 비롯하여 정보윤리, 생명윤리 등이 강조되어 인권을 내용으로 하는 단원이 들어 있고 사회과의 경우에도 인권 단원이 설정되어 있으며, 여타과목에서도 인권과 연결된 내용이 강화되었다.

도덕과목에는 ‘생명의 소중함’(초등 3학년), 편견극복과 관용(초등 6학년), 평화적 해결과 폭력예방(중등 2학년), ‘인간존엄성과 인권’, ‘세계 평화와 인류애’(중등 3학년) 등이 반영되어 생명존중, 인권존엄성과 소수자 보호, 편견극복 및 폭력예방을 학습하도록 되어 있다.

사회과 과목에는 초등 6학년 ‘우리나라 민주정치’ 내용에서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도록 하였다. ‘인권보호와 헌법’(중학교 2학년), ‘인권’(고등학교 1학년) 등이 주요 내용으로 반영되어 인권의 기본개념과 인권의 발달과정, 생활주변 인권문제 등을 학습하도록 함으로서 인권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외에도 영어과와 국어과에서도 ‘남녀평등, 인권과 민주 시민 생활 등 민주의를 고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수업의 소재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2009년 개정된 초·중교육과정에서도 창의재량활동 교과로서 인권교육이 포함되었고, 2011년 새롭게 개정된 교육과정에서도 전반적으로 ‘학습 내용 20% 감축’에도 불구하고, 인권 내용이나 요소를 다룰 수 있는 단원에는 변동이 없었다. 도덕과는 초등에서 ‘인권’ 독립 단원 신설과 중학교에서 ‘인권’ 독립 단원이 유지되었다. 사회과는 중학교에서 ‘인권보장과 법’ 독립단원 유지 등 2007년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고등학교에서는 사회 교과가 국민공통교육과정에서 선택교육과정으로의 변경됨에 따라 고등학교 사회(10학년)에 개설된 인권단원이 실질적으로 폐지되었다. 고등 사회 선택 과목 『한국지리』, 『세계지리』, 『경제』, 『법과 정치』, 『사회·문화』에 인권내용이 포함되기도 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유엔이 인권교육10개년 후속조치로서 제안한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의 권고사항, 즉 초·중등학교 등 정규 교육과정 내 인권교육 도입 권고를 이행하게 되었다. 초·중

등학생 시기는 개인의 가치관 형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이고, 아직 학교가 입시위주의 환경으로 인해 많은 인권의 문제를 안고 있는 현실에서 정규 교육과정에 인권교육 도입은 학교 내 인권교육 활성화를 통한 친인권적 학교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사들의 인권교육지도역량을 높이기 위해 시·도교육청 교사 교육 훈련기관에 인권과목개설을 추진하였다. 매년 인권강좌 개설현황을 조사 및 요청과 교육연수기획담당자 대상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인권교육 필요성 인식을 높이는데 노력하였다. 그 결과, 2004년부터 교육부의 ‘교원양성 연수기본계획’에 인권교육이 포함되기 시작하면서 시·도교육청의 각 과정에서 인권과목이 개설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교감자격연수, 교장자격연수 등에 인권강좌가 개설되는 등 교사대상 인권강좌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학교영역의 인권교육 제도화 수준을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표 8> 학교영역 인권교육 제도화 수준

영역	대상	인권교육 제도화 수준
학교 영역	초·중등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과목 개설 (자격연수과정 및 직무연수과정)</li> <li>■ 연간 교원연수계획에 인권교육 반영 (2004)</li> </ul>
	유치원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과목 도입 초기 (자격연수과정)</li> </ul>
	초·중·고등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정된 제7차 교육과정에 통합교과 형태로 인권교육 포함 (교과활동, 재량활동시간에 인권교육 실시)</li> </ul>
	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기 법대 중심으로 국제인권법 등 인권과목 개설(2002)되다가 인문사회과학대학으로 인권과목 개설확대</li> <li>■ 인권교육연구중심대학 지정 및 공익 인권 특성화 주제 로스쿨 설치 (2007-2008, 영남대학교, 전남대학교 등)</li> </ul>

**2. 초·중·고등학교 교과과정 중 인권교육의 현황**

(1)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전반적인 인권교육 내용체계 구성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기초하여 인권교육 내용 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초등학교 1-2학년에서 배우는 통합교과 교육과정에서 인권교육을 다루는 부분은 매우 적고 하위 영역도 일부에 제한되어 있다. 인권에 대한 개념적 이해가 초등학교 고학년 내지 중학년 정도에 이르러야 명확하게 형성되기는 하지만, 초등학교 1-2학년 시기에 배우는 나, 또래 집단, 학교생활, 가족생활 등의 학습내용 영역을 고려하면 인간의 존엄성 등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 감수성이나 인권적 가치 등을 내용으로 구성할 부분이 충분히 존재한다. 이 점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교과의 교육과정에서 인권 관련 내용을 좀 더 고려하여 담아 낼 필요가 있다. 인권교육의 목적 등을 고려할 때 그 필요성을 세밀히 고찰하여 내용을 구성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도덕(윤리 포함) 및 사회(역사 포함) 교과와 달리 인권을 교육과정에서 많이 포함하여 다루고 있다. 3학년부터 10학년에 이르기까지 전 학년에 걸쳐 고르게 다양한 영역에서 인권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다른 어떤 교과보다 인권교육에 적합한 교과로서 도덕 및 사회 교과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도덕 교과의 경우는 ‘인간 존엄성과 소수자의 보호’, 사회 교과의 경우 ‘인권과 사회정의와 법’과 같이, 단원명에서 구체적으로 ‘인권’을 언급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교육과정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이를 보면 두 교과에서는 교육의 중요한 내용요소로서 인권이 어느 정도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도덕 및 사회 교과의 교과서를 제외하고는 교육과정 수준에서 인권을 구체적인 내용요소로 드러내는 교과는 거의 없는 편이다. 실과(기술·가정 포함) 및 체육(보건 포함) 등의 일부 교과 교육과정에서 인권이 내용으로서 들어 있기는 하나, 이는 대부분 인권 관련 소재들이나 사례가 교육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정도이다.

넷째,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반영된 인권교육의 내용 체계를 보면, 다른 영역에 비하여 ‘Ⅱ. 인권에 대한 기본 개념’ 내용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Ⅳ. 인권문제의 합리적인 해결과 참여’ 내용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이러한 구성은 실제적으로 생활세계에서 경험하는 인권 문제에 대하여 생각하고 구체적인 해결방법 등을 논의할 수 있는 좋은 구성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인권에 대한 기본 개념 없이 이루어지는 인권문제 해결과 참여 방안의 논의가 갖는 한계도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구성에서 ‘인권에 대한 기본개념’ 또한 중요한 내용요소로 고려하여 이를 바탕으로 인권문제의 논의와 해결방안 고려 및 참여 등이 일어날 수 있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2007 개정 교육과정의 인권교육 내용분석 결과는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 고시에 의해 2011년 8월에 교과 교육과정 고시가 이루어짐에 따라 추가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2009 개정 교과 교육과정의 경우 전반적으로 교과의 학습량 감축 차원에서 이루어진 교육과정 개정의 성격이 강하기에 내용체계 구성에서 큰 변경은 없지만, 다른 교과와 달리 사회과는 많은 내용체계의 변화가 왔고 이에 따라 인권교육 내용체계의 변화가 생겼다. 이에 사회 교과에 한하여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고시된 교육과정에 반영된 인권교육 내용 체계는 2007 개정 교육과정과 차이가 있다.

기본적으로 2007 개정에 따른 사회과 교육과정의 인권교육 내용체계와 비교하여 인권교육의 내용이 상당부분 감소된 것을 알 수 있다. 2009년 개정 사회 교육과정이 기본적으로 학습량의 감축을 고려하였지만, 10학년에서의 교과의 사라지면서 여기서 다른 인권 내용이 빠졌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학년에서도 기본적으로 인권교육 내용이 적게 들어 있는 결과를 낳았다. 더구나

‘I. 인권존중의 가치와 태도’ 내용 영역은 전반적으로 교육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하여, 기본적인 인권의 가치를 익히고 이를 중요한 삶의 태도로 인식하도록 돕는 교육과정으로 작동하기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인권교육 내용체계의 축소 부분이 갖는 교육적 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현대 사회 들어 인권의 가치와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인권이 전체 교육과정 체계 안에서 어떻게 고려되고 교육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할지에 대하여 교육과정 개발 전 내용체계 구성단계에서의 관심이 요구된다.<sup>66)</sup>

## (2) 교과별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인권교육 체계 분석 결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반영된 인권 내용 분석은 인권과의 관련성이 높은 교과, 즉 도덕과, 사회과, 실과 및 체육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 네 개 교과의 경우 교육과정과 교과에서 대한 분석이 모두 이루어졌으며, 이 밖에 국어과의 경우는 교과서에 대한 내용분석만 실시하였다.<sup>67)</sup>

먼저, 도덕과 교육과정을 보면 3학년에서 10학년까지의 전 학년에 걸쳐 인권 내용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권 관련 내용요소가 주로 ‘I. 인권 존중의 가치와 태도’와 ‘IV. 인권문제의 합리적 해결 및 참여’ 영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II. 인권에 대한 기본 개념’이나 ‘III. 인권에 관한 법과 제도’ 영역과 관련한 내용요소는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 학년에 걸쳐 인권 관련 내용요소가 포함되고, 인권 존중의 가치와 태도, 인권문제의 해결 및 참여와 관련한 내용들이 많이 다뤄지고 있는 것은 2007 개정 교육과정의 도덕과 개정 방향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2007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은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적인 차원이 아니라, 인권친화적인 가치관과 생활태도를 기를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고 개정 방향을 밝히고 있다.<sup>68)</sup>

도덕과 교육과정의 이러한 특성은 도덕과 교과서에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권 관련 내용은 ‘I. 인권 존중의 가치와 태도,’ ‘IV. 인권문제 분석과 해결방안 모색’ 영역을 중심으로 다뤄지고 있었으며, 인권에 대한 기본 개념과 법, 제도 등의 내용은 상대적으로 적게 기술되어 있었다. 그러나 2007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이 중점을 두고 있는 인권친화적 가치관과 생활태도 형성을 위해서는 인권에 대한 기본 개념과 인권 보호를 위한 법, 제도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감수성’을 키우기 위한 인권 내용 또한 강화되어야 할 것

66) 정해숙 외 3인, 『초·중·고등학교 인권교육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1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2011.9, 114-115면.

67) 국어과의 경우 국어과 교육과정의 특성상 인권 측면에 초점을 두어 내용요소를 구성할 여지가 거의 없는 반면, 교과서에는 인권과 관련한 내용을 소재로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교과서 분석대상에 포함하였다.

68) 교육과학기술부,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1) : 도덕, 국어』, 2008.

으로 보인다. 도덕과 교과서에서 인권존중의 가치와 태도와 관련한 인권내용이 많이 다루어지고 있지만, 그 내용은 주로 타인의 권리를 중심으로 한 타인 존중에의 책임과 의무, 더 나아가서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룬 것이다. 이는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도덕과 교과서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sup>69)</sup> 2007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이 인권교육을 강조하고 인권 내용요소가 강화되었다고는 하나 타인이나, 사회, 국가에 대한 의무에 편향된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sup>70)</sup>

사회과 교육은 바람직한 시민적 자질의 함양을 교과 목표로 하며, 시민교육의 지향점이 인권교육이라는 점에서 사회과는 인권교육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교과이다.<sup>71)</sup> 이러한 사회과의 특성은 교육과정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사회과 교육과정에는 전 학년에 걸쳐 다양한 인권교육 내용이 들어있을 뿐 아니라, 사회과에서 다루는 역사, 지리, 정치, 경제, 법, 사회·문화 등 다양한 학문적 관점 및 경험적 사례들이 인권과 연관되어 교육과정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과와 마찬가지로 인권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한 내용이 매우 빈약하며, 그나마도 자유권적 인권에 내용이 편중되어 사회권적 인권이나 연대권적 인권에 대한 내용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회과 교육과정의 특성은 사회과 교과서에 그대로 반영되어 전 학년에 걸쳐 인권 내용 범주의 하위영역 대부분에 걸쳐 인권교육 내용이 고루 담겨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학교 교과서에서 상대적으로 인권 권련 내용이 빈약하고, 학교급에 관계없이 인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권 감수성을 길러주기 위한 내용 구성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 관련 내용의 서술에 있어서도 학생이나 청소년관련 사례가 매우 드물 뿐 아니라, 학생이나 청소년과 관련한 인권내용이 주로 사회에서의 인권문제를 다룬 것이어서 이들과 가장 밀접한 생활 세계인 학교나 가정 내에서의 부딪히는 인권문제를 다루는 교육내용이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실과/기술·가정 교과의 경우는 교육과정상 명시적으로 기술된 인권 관련 내용요소를 찾아보기 어려운 가운데, 'IV-1. 인권 문제 분석 및 해결방안 모색'과 관련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양상을 단순히 실과/기술·가정 교과가 갖는 정체성의 문제만으로 돌리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청소년기의 이해'와 같이 교육과정상 인간 존엄성과 권리문제를 다룰 수 있는 단원이 있을 뿐 아니라,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현대 사회에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인권문제 등을 고려할 때 실과/기술·가정 교과에 인권교육적 관점의 도입이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체육과의 경우 교육과정 분석 결과, 실과/기술·가정교과와 마찬가지로 인권관련 내용을 명

69) 최현호, "인권교육 개선을 위한 도덕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연구", 『한국교육』 32(3), 2005, 233-264면.

70) 이로 인해 도덕과 교육이 사회체제 유지적이며, 개인보다 위에 위치한 사회를 강조함으로써 개인이 사회를 위해 도구적 존재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남선희 2011; 이미식, 2004)을 받아왔다.

71) 조태원, "기본권분류체계로 본 사회과교육과정 및 교과서상의 인권교육 관련내용 분석-제6차, 제7차 교육과정상의 초등학교 5·6학년년을 중심으로-", 『사회과교육』 49(3), 2010, 99-116면.

시적으로 기술한 것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교육과정상 ‘보건과 안전,’ ‘건강관리’의 두 영역에서 자아존중 및 타인존중과 관련한 인권적 가치 및 태도에 관한 것과 성폭력 문제를 다루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로 인해 체육 교과서 역시 인권에 대한 내용이 매우 빈약한데 비해, 비정규 교과로 창의적 체험활동시간에 사용하기 위해 인정 교과서로 개발된 보건 교과서에는 ‘건강권, 성적 자기결정권’을 다루는 등 인권과 관련한 내용이 상대적으로 풍부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 교과서에서 인권 관련 내용이 비교적 풍부하다고 하나, 인권문제의 합리적 해결과 참여에 관한 내용이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자주 기술되는 반면,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등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어과 교과서 분석결과를 보면, 국어과의 경우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국어 지식, 문학 등 전 영역을 통해 인권과 관련한 다양한 예문을 제시하여 인권 관련 내용을 다룰 수 있음에도 실제 다뤄진 인권 내용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 관련 내용은 ‘I. 인권 존중의 가치와 태도,’ ‘IV-2. 인권문제해결을 위한 참여와 실천’ 영역에 편중되어 있고, 인권 개념에 대한 이해나 법, 제도와 관련한 내용은 매우 드물었다. 국어 교과서의 특성상 다른 교과와는 달리 사례를 통해 인권내용을 제시한 경우가 많았으며, 학생이나 청소년과 관련된 인권 내용의 경우 ‘휴대전화 휴대금지’와 같이 이들이 일상생활에서의 경험을 통해 부딪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향후 국어과 교과서 개발 시 국어과 교과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소재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노력한 인물이나 인권 관련 국제협약이나 관련 문건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등의 노력이 요청된다.<sup>72)</sup>

2003년 ‘유·초·중·고 인권교육과정 개발연구’에 이어 2004년에는 교재용 책자로 『교사를 위한 학교 인권교육의 이해』와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기본용어』를 발간하였다. 이 교재들은 학습자의 발달수준에 따른 계열성 및 다른 교과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개발한 인권교육 과정을 교사들이 학교 교육현장에서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2004년 전국의 각급 학교에 이 교재가 배부되어 인권교육에 대한 기본 이해를 넓히고 인권수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교사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2007년 개정 고시된 제7차 초·중등교육과정에 국어, 도덕, 사회 등 각 과목에 통합교과 형태로 인권내용이 대폭 보장되는 등 인권교육이 도입되었다. 도입된 교육과정에 맞추어 2009년부터 적용될 교과서를 과목별로 개발하고 있다. 이에 인권교육본부는 교육과정에 반영된 인권 관련 내용의 구체적 구성방안과 인권 친화적 교과서 집필기준을 교육부 및 교과서 집필자 등에게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각급 교육현장에서 교과활동 및 재량활동시간에 인권교육을 하는 교사를 위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인권교육프로그램과 인권교육지침서를 개발하여 보급해 오고 있다.

72) 정해숙 외 3인, 『초·중·고등학교 인권교육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1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2011.9, 117-119면.

<표 9> 초·중등 및 대학교 인권교육영역 주요 활동

대 상		개발한 교육자료	
총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사를 위한 학교인권교육의 이해</li> <li>■ 인권교육 기본용어</li> <li>■ 유엔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li> <li>■ 선생님을 위한 교사 인권+(사이버 인권교육 콘텐츠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길잡이</li> <li>■ 우리 교과서의 인권이야기</li> <li>■ 유엔 학교인권교육길라잡이(번역)</li> </ul>
	유치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아용 아동권리교육 프로그램(교구 포함)</li> </ul>	
학교	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동화: ‘엄마,엄마’, ‘흰둥이네 할머니’, ‘장한친구희완이’ ‘블루시아 가위바위보’ (4종)</li> <li>■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초등학교 인권교육 프로그램)</li> </ul>	
	중·고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 누구에게나 소중한요’ (중학교 인권교육프로그램)</li> <li>■ ‘사람이 곧 하늘이다’ (고등학교 프로그램)</li> <li>■ 중학교 인권교과서 ‘인권’ 개발(2010) 현장시범적용 중</li> </ul>	
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의 이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별의 이해’ 대학교재 개발</li> </ul>

**3. 초·중등학교 교원대상 인권교육 실시 현황<sup>73)</sup>**

국가인권위원회의 2009년도 교원연수기관 인권교육 현황조사를 보면, 2009년도 16개 시·도 교육연수원 및 교육과학기술연수원에서 개설된 인권관련 과목수는 341개 과목, 교육인원은 28,263명으로 2008년(239과목의 27,842명)에 비해 증가하였다. 단, 2007년도 435개 과목에 34,317명과 비교하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도 과목당 평균 6시간에 평균 교육인원이 82.9명으로 2008년도 과목당 교육시간 4.7시간, 평균 교육인원 116.4명과 비교하면 각 과정의 평균 강의시간은 확대되었고 과목당 교육인원은 축소되는 등 인권교육 환경은 다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하겠다.

<표 10> 시·도교육연수원 인권관련 교과목 강좌개설 현황(2006-2009년도)<sup>74)</sup>

구분	2006년도 <sup>75)</sup>			2007년도			2008년도 <sup>76)</sup>			2009년도		
	과정수	강좌 시간	교육 인원	과정수	강좌 시간 <sup>77)</sup>	교육 인원	과정수	강좌 시간	교육 인원	과정수	강좌 시간	교육 인원
계	334	541	36,349	435	3,543	34,317	239	1,116	27,842	341	2,062	28,263

73) 김철홍, “인권교육 제도화의 현황과 과제”, 『경상대학교 발표자료집』, 2011, 31-33면 참조.  
 74) 김철홍, “인권교육 제도화의 현황과 과제”, 『경상대학교 발표자료집』, 2011, 31면 참조.

과목개설수로는 대전시교육연수원 50개, 인천시교육연수원 44개로 순서로 가장 많았고, 강좌 시간으로는 경남교육연수원 735시간, 전북교육연수원이 362시간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인원으로는 광주시교육연수원 3,425명, 그리고 인천시교육연수원이 3,39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를 종합하면, 2009년도에는 광주교육연수원과 인천교육연수원이 가장 많은 인권과목을 개설하였고, 경남교육연수원과 전북교육연수원이 가장 많은 인권교육 강좌시간을 할애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하여 과목개설수, 교육시간이나 교육인원 측면에서 교육과학기술부교육연수원이 6개 과목(16시간) 252명, 충남교육연수원 5개 과목(191시간) 449명 그리고 부산교육연수원 10과목(24시간) 899명으로 순으로 저조한 편에 속하였다.

교원 신규임용 및 승진자들을 위한 자격연수과정의 인권교육은 2008년도(558시간)에 비해 2009년도에 1,429시간으로 교육시간이 139%가 증가하였으며, 전체 교육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도 50.0%에 비하여 2009년도 69.3%로 증가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초등 신규임용과 중등 1급 정교사 그리고 유치원감 자격연수 교육을 제외한 모든 자격연수과정에서 인권관련 교과목 교육시간이 증가하였고, 특히 유치원 1급 정교사, 유치원과 중등 신규임용 예정자 과정에서 100%이상 증가하였다.<sup>75)</sup>

<표 11> 자격연수에서 인권관련 교육 현황 (2008-2009)<sup>79)</sup>

교육 시간	자 격 연 수 (단위 시간)									합계
	유치원 신규임용 예정자 과정	초등 신규임용 예정자 과정	중등 신규임용 예정자 과정	유치원 1급 정교사 과정	초등 1급 정교사 과정	중등 1급 정교사 과정	교감 자격 연수	교장 자격 연수	유치원 감자격 연수	
2009	203	5	194	581	78	56	261	46	5	1,429
2008	22	22	35	50	62	79	249	27	12	558

교원연수기관에 개설된 ‘인권관련 과목’을 <표 12>와 같이 주제별로 살펴보면, 인권교육 일반(아동, 청소년 인권 등)에 대한 교육시간 비율이 2008년 189시간(16.9%)에서 2009년 716시간(35%)로 2배 이상 증가하여 양성평등(성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등)의 교육시간 475시간(23.3%)보다 더 많아지게 되었다. 그리고 다문화 관련 교육을 포함한 기타 교육시간이 2008년도 125시간(11.3%)에서 2009년도 524시간(25.6%)로 증가하였는데 반하여 장애 등 특수교육

75) 2006년도 현황은 2006. 7월 조사자료로서 상반기 실제 운영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반영한 자료로 실제 연간 운영실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76) 2008년도 현황은 2008.8. 조사자료로서 상반기 운영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반영한 자료로 실제 연간 운영실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77) 2006년도까지는 강좌수 기준, 2007년도는 강좌시간 기준임.

78) 김철홍, “인권교육 제도화의 현황과 과제”, 『경상대학교 발표자료집』, 2011, 31-32면 참조.

79) 김철홍, “인권교육 제도화의 현황과 과제”, 『경상대학교 발표자료집』, 2011, 32면 참조.

대상자와의 통합교육에 대한 교육은 2008년도 135시간(12.1%)에서 2009년도 105시간(5.2%)로 축소되었다.<sup>80)</sup>

<표 12> 인권관련 과목별 강좌시간 현황 (2008-2009)<sup>81)</sup>

구 분	인권 관련 내용별 강좌 시간 (%)					
	계 (인권관련 강좌시간)	인권교육 일반(아동·청소년 인권 포함)	특수(통합)교육 (장애포함)	양성평등/ 성교육 / 성희롱 예방 등	학교폭력예방 (생활지도) 등	기 타
2009년도	2,042	716 (35.0%)	105 (5.2%)	475 (23.3%)	222 (10.9%)	524 (25.6%)
2008년도	1,116	189 (16.9%)	135 (12.1%)	435 (38.9%)	232 (20.8%)	125 (11.3%)

시·도 교육연수원별로 인권교육일반에 대한 강좌현황을 보면, 전라북도와 충청남도 연수원은 주로 인권교육 일반에 대한 교육에 치중한 반면에 울산시와 경상남도는 양성평등 교육을, 광주시와 인천시의 경우는 장애아동 통합교육 중심으로, 그리고 경상남도과 경기도는 다문화 교육 중심으로 인권관련 강좌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부터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학생·교사 인권교육이 의무화되면서 학교 인권교육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 인권조례를 추진하고 있는 서울, 광주, 전북 등에서는 조례제정 이전에 인권교육을 정책적으로 실시하면서 학생대상 인권교육이 가파른 증가 추세에 있다.

#### 4. 인권조례 제정에 따른 인권교육 의무화

국내의 인권 동향 중 가장 뚜렷한 것 중 하나는 정신보건법과 노숙인복지법 등 개별법에 인권교육 조항을 삽입하거나 지방자치단체별 인권조례나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면서 인권교육 의무조항을 포함하는 흐름이다.

개별 법령에 인권교육 실시에 관한 규정이 도입된 대표적인 것이 ‘정신보건법’이다. 정신보건법 제6조의2(인권교육)에 보면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2009.03.22. 시행)”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는 지정한 교육기관에 대하여 그 사용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2010.01.18. 시행).

80) 김철홍, “인권교육 제도화의 현황과 과제”, 『경상대학교 발표자료집』, 2011, 32면 참조.

81) 김철홍, “인권교육 제도화의 현황과 과제”, 『경상대학교 발표자료집』, 2011, 32면 참조.

정신보건법 시행규칙(제1조의 4)을 보면,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그리고 교육의 내용은 첫째, 환자의 기본권, 입·퇴원 절차, 처우개선·퇴원 청구 등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 둘째, 환자의 권익보호 및 이익에 관한 사항, 셋째, 정신질환자의 사례 및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인권침해사례에 관한 사항, 넷째, 그 밖에 정신질환자의 인권에 관한 지식·정보와 인권에 대한 인식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정신보건시설종사자 인권교육전문기관으로 국가인권위원회, 국·공립 정신병원, 정신보건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무원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신보건시설의 종사자(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제외한다)에 대한 인권교육은 첫째, 최근 3년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을 16시간 이상 이수한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 둘째, 정신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인권교육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셋째, 인권교육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인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권 교육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인권교육의 방법, 교육기관의 지정절차, 교육 경비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였다(개정 2010.03.19.).

이외에 2011년 4월 국회에서 통과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노숙인 복지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노숙인복지법 제20조는 “노숙인시설의 종사자는 노숙인 등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노숙인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다. 현재 시행령 작업 중이고 2012년 5월에 발효될 예정이다. 노숙인 시설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법적 흐름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조례가 제정되면서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흐름을 찾아볼 수 있다. 광주시(2009.11), 경상남도(2010.03), 전라북도(2010.07) 등의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주민의 인권보장을 지향하고,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규정하는 지역주민의 인권의식을 향상시키는 변화가 촉발되고 있다. 광역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울산 북구, 부산 해운대구 등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데, ‘인권의 지역화’, ‘인권교육의 지역화’라는 매우 고무적 현상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분위기가 교육현장에도 이어져 2010년 9월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2011년 3월 1일부터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해 왔으며, 2011년 9월 인천광역시에서는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이외에도 서울, 대전, 광주 등 여러 시·도 교육청이 학생인권 또는 학생, 교사 등의 교육공동체의 권리를 보장하는 조례 등을 준비·추진 중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이나 위협, 사생활의 자유, 학습에 관한 권리, 개성

을 실현할 권리, 건강 및 급식, 학교복지, 교육환경, 문화활동 등에 관한 권리, 징계 등 절차에 관한 권리, 소수학생의 권리 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러한 권리와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들과 함께 학교 내 인권교육, 연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학생인권조례는 몇 십년동안 간헐은 학생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발했으며, ‘사랑의 매’라고 칭해져온 체벌이 금지되는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5. 우리나라 대학에서의 인권교육 현황**

(1) 대학의 인권 교과목 개설 현황<sup>82)</sup>

그동안 인권위나 NGO의 인권교육활동은 주로 초등, 중등교육, 그리고 전문가 교육(군대, 경찰)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예컨대, 초·중·고 인권연구학교 운영, 인권교육실천대회 개최, 교과서 인권 내용 수록, 교사 인권연수, 교재개발, 사례수집 등이 들 수 있다.<sup>83)</sup>

2011년 전국 433개 대학(국·공립대학 53개, 사립대학 380개)을 대상으로 인권 관련 교과목 개설 현황 설문조사에서 결과를 회신한 169개 대학 중 국·공립대학은 24개 대학에서 93개 인권교과목 개설, 사립대학은 58개 대학에서 179개의 인권과정을 개설하였다.

국·공립대학에서의 인권과목 개설은 계속 확대 추세로 2008년 대비 186%(2008년 50개⇒2010년 93개) 증가하였으며, 종합대학 > 교육대학 > 전문대학 순으로 인권과목을 개설하였다. 사립대학의 경우도 전문대학의 인권과목 개설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표 13> 국·공립대학교 인권과목 개설 추이

개설연도(년)	개설 대학 수	개설 과정 수			
		교양	학부전공	대학원전공	합계
2007	16	7	17	10	34
2008	17	5	17	28	50
2010	24	20	57	17	93

82) 홍성수, “대학 인권교육의 현황과 과제”,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인권교육연구센터, 『인권학술세미나 발표집』, 2011.11.5, 1면 이하 참조.

83) 인권위의 주요한 연구/조사 결과로,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인권교육 국제워크숍 자료집』, 국가인권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 주한영국대사관 주최(2007); 인권 동화책: “엄마, 엄마”(인권위, 2002), 인권동화책: “황둥이네 할머니”(인권위, 2002), 인권교육모범사례(2003-);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초등학교 인권교육프로그램(인권위, 2005); 구정화·설규주·송현정, 『교사를 위한 학교 인권교육의 이해』 (인권위, 2007), 『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기본용어』 (인권위, 2004); 『우리 교과서의 인권이야기』 (인권위, 2002); 이외에도 인권교육과 관련한 여러 연구용역과제가 수행된 바 있다.

2008년과 2010년 인권교육연구 중심대학의 인권 관련 교과목 개설 현황을 비교해 볼 때, 대학과정에는 ‘인권 및 민주주의’ 관련 교과목, 대학원·로스쿨에는 ‘공익 및 소수자 인권’ 관련 교과목이 증가하였다.

MOU 체결을 진행한 10개 대학 모두 인권기구를 설치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MOU 체결 당시부터 인권교육 및 연구의 거점이자 전문 인력풀 구성과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학내 인권기구의 설치와 중심적 역할을 요청하였다. 전남대학교의 ‘공익인권법센터’, 경상대학교의 ‘인권·사회 발전연구소’, 한양대학교의 ‘공익·소수자 인권센터’ 등은 독립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영남대학교, 전남대학교, 한양대학교가 인권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정기학술지들, 그 외 경상대학교, 인하대학교는 인권 분야의 연구내용을 단행본으로 출간하였다.

<표 14> 대학별 인권기구 및 기관 (2011.12.31. 기준)

학 교	인권 기구	특 성
경상대학교	인권·사회발전 연구소	총장직속
	다문화교육센터	교육연구원 산하
고려대학교	공익법률상담소(CLEC)	로스쿨 부설연구기관
부산대학교	인권법센터	법학연구소 산하
영남대학교	인권교육연구센터	법학연구소 산하
	다문화교육연구원	교육연구원 산하
이화여자대학교	회복적 사법 연구센터	법학연구소 산하
인하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법학연구소 산하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법학연구소 산하
전북대학교	인권센터	총장 직속
충남대학교	인권법 연구센터	법학연구소 산하
한양대학교	공익·소수자 인권센터	법학연구소 산하

※ 여성연구소, 양성평등연구소, 장애학생지원센터 등의 기구는 학교별 공통사항으로 제외.

인권교육연구 중심대학들은 인권기구를 거점으로 인권을 주제로 하는 국제 학술대회, 토론회,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이를 통해 인권연구의 기반과 국내·외 인권자원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표 15〉 대학별 국제학술대회, 토론회, 세미나 등

학교	연도	내 용
경상대학교	2010	‘인권기반 사회정책의 모색’ 국제학술대회
		‘비정규직 근로자, 인간배아복제와 인간의 존엄성, 인권과 사회정책’ 등 인권세미나 10회
	2011	‘소수자 인권교육의 방향’ 전국학술대회
		‘사회적 소수자 인권, 영화 속 인권’ 등 인권 세미나 12회
전남대학교	2010	‘아시아에서의 반차별 운동과 인권법’ 국제학술대회
		‘국제인권법의 동향, 인권조례운동’ 등 인권 세미나 6회
	2011	‘노동인권관점에서 고용종료를 둘러싼 법적 쟁점’ 국제학술대회
		‘인권과 법, 그리고 법률가의 역할, 인권교육’ 등 인권 세미나 4회
인하대학교	2011	‘인권위 10년, 무엇을 남겼나’ 대토론회
		‘희망을 노래하는 인권’ (세미나)
영남대학교	2011	‘제1,2,3,4차 인권정책개발 커뮤니티’ (세미나)
한양대학교	2010	‘국제 난민 인권 워크숍’ (토론회)
		‘공익변호사란 무엇인가’ 등 인권 세미나 2회
	2011	국가인권위원회설립 10주년 대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는 MOU대학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인권의식 함양과 위원회 활동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과정을 연 2회 개설·운영하였으며, 이 과정 운영을 통해 미래 법학자의 인권의식을 고취하였다.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 『대학교 인권관련 교과목 실러버스 자료집』의 분류에 따르면, 인권 관련 교과목은 먼저 인권일반, 인권과 법, 인권과 사회, 국제인권, 사회적 약자와 인권, 기타 으로 구분되고, 이것이 교양교육과 전문교육으로 재분류된다.

인권교육 내용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보통 인권, 평화, 민주주의, 개발, 사회정의 등이 언급되나 그 범위를 확정하기가 어렵다. 예컨대, 인권교육은 민주주의 교육, 관용과 연계되어 있으며, 그런 점에서 초·중등교육에서는 사회, 도덕 교과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견해가 있다.<sup>84)</sup> 비엔나 선언과 행동계획에서도 인권교육에 평화, 민주주의, 개발, 사회정의가 포함된다고 되어 있고(제1부 80절),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에도 인권교육의 내용으로 인권과 평등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민주주의, 평화, 인간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 사회정의 등이 포괄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참조하여, 아래에서는 교과목 전반에 걸쳐 ‘인권’ 이슈를 다루는 것만을 인권교과목으로 한정시켜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초·중등학교 인권교육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에서도 인권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2년도부터 예비법조인 양성기관인 법과대학내 국제인권법 등 인권과목을 도입하기 위해 대학과목 개설현황을 조사하면서 인권과목 개설을 요청하였

84)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편, 『인권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오름, 1997, 32면.

다. 2007년 조사에 의하면 국제인권법, 인권과 국가, 현대사회와 인권 등 58개 대학에서 113개 인권과목이 개설되었다. 2008년도 국·공립대학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였을 때는 17개 대학 50개 과목이었다. 2011년 조사에 따르면 2010년도 76개 대학 272개 과목, 2011년도 76개 대학 129개 과목이 개설되었다.

〈표 16〉 대학교 인권과목 개설 현황<sup>85)</sup>

년도	조사대상	조사결과 개설현황			
		개설 대학수	개설과목		
			계	교양	전공
2003	국·공·사립	43	63	321	31
2004	국·공·사립	49	71	21	50
2005	국·공·사립	15	22	7	15
2007	국·공·사립	58	113	50	63
2008	국·공립	17	50	5	45
2010	국·공립	18	93	20	73
	사립	58	179		
	계	76	272		
2011	국·공립	18	34		
	사립	58	95		
	계	76	129		
2012 개설계획	국·공립	15	34		
	사립	23	50		
	계	38	84		

인권과목은 여전히 법학 관련 과목(인권과 법, 인권법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법과대학에서 인문사회과학대학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 및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과 정보사회, 문화·예술, 종교 등과 인권의 관계를 다루는 교과목도 새롭게 개설되는 추세에 있다.

1) 교양교육<sup>86)</sup>

교양교육의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인권 교과목을 분류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세계화와 인권: 인권과 세계화, 인권과 국제사회, 지구촌사회와 인권(성공회대), 환경, 인권과 국제관계(서강대, 전남대)
- 기본적 인권이론과 역사: 인간과 윤리; 민주주의와 기본적 인권; 인권사; 인권의 이해와

85) 김철홍, “인권교육 제도화의 현황과 과제”, 『경상대학교 발표자료집』, 2011, 30면 참조.

86) 홍성수, “대학 인권교육의 현황과 과제”,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인권교육연구센터, 『인권학술세미나 발표집』, 2011.11.5, 7면 이하.

## 72 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안 관련 연구

실천; 법과 인권; 현대인권과 법; 인권과 사회; 현대사회와 인권; NGO, 인권, 세계시민사회(서울대); 지구촌평화인권특강(이화여대); 사회적 이슈와 인권(고려대), 인권, 법, 그리고 문학(고려대)

- 생활 인권: 범죄와 인권, 형사사법과 인권, 인권보호실무
- 소수자 인권(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여성과 인권, 마이노리티와 인권(고려대); 한국의 소수자문제와 소수자정책(대구대), 여성, 아동, 장애인과 형사법(고려대),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차별금지법(고려대)
- 정보화 사회와 인권: 정보화와 인권(단국대-전공), 정보와 인권(전북대)
- 복지와 인권: 인권과 복지, 인권과 사회복지(중앙대), 인권사회개발연구(선문대)
- 다문화사회와 인권: 다문화사회와 인권(부산대)
- 평화와 인권: 인권과 평화(성공회대)
- 기타: 북한인권과 탈북자문제(고려대)

### 2) 전문교육<sup>87)</sup>

다음으로, 전공학과에서 실시되는 전문교육의 차원에서 실시되는 교과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교사: 인권과 교육(서강대); 평화, 인권 교육(숙명여대); 인권교육과 상담(한경대); 글로벌 거버넌스와 인권(경희대)
- 의사: 인권의학(연세대)
- 정치학: 인권의 정치(서강대), 인권과 정의(숙명여대), 세계평화인권문제와 미국외교(가톨릭대); 정치와 인권(영남대); 지역인권보장론(이화여대)
- 사회복지학: 인권과 사회복지 실천, 청소년인권(방송대)
- 법학: 법치주의와 인권, 범죄와 인권, 형사사법, 인권법, 국제인권법, 인권법개론, 국제환경과 인권법
- 사회학: 인권사회학연구(서울대), 국제인권과 난민문제의 이해(서울대)

## (2) 대학 인권교양 현황 분석<sup>88)</sup>

### 1) 교양분야

위와 같은 대학 인권교육 현황을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과목이 양적으로 매우 부족하다. 강좌개설 수 자체가 절대 부족하다는 얘기다. 실제로, 대부분의 대학에서 교양과목으로

87) 홍성수, “대학 인권교육의 현황과 과제”,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인권교육연구센터, 『인권학술세미나 발표집』, 2011.11.5, 8면 이하.

88) 홍성수, “대학 인권교육의 현황과 과제”,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인권교육연구센터, 『인권학술세미나 발표집』, 2011.11.5, 8-9면.

개설되어 있지 않다.

교양교과목은 대개 인권개론 위주로 강좌가 개설되어 있다. 예컨대, ‘현대사회와 인권’ 등 기본적 인권강좌 위주이고, 세부 분야에 대한 다양한 인권강좌는 개설되어 있지 않다.

교육방법의 다양성이 부재하다. 대부분의 인권교육은 ‘강의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NGO 연계형이나 참여형 교육방법이 활용되고 있지 않다.

로스쿨 출범으로 인해, 그나마 있던 교양과목마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인권관련 교양 교과목의 일부는 법학부 교수들이 담당해 왔으나, 그들이 로스쿨 교육에 전념하게 되면서, 인권교양과목을 개설하기 어려워졌다. 현재 로스쿨은 교수들의 강의 시수를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고, 개별 교수들의 교육-업무 부담이 증가하면서 교양교육에까지 신경 쓰기 어려운 상황이다.

### 2) 전공 분야

전공분야의 인권교과목은 더 부족하다. 법학과를 제외하면, 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공 분야에서조차 인권교과목이 개설되고 있지 않다. 예컨대, 직업의 성격상 인권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교육관련 전공(사범대, 교대, 교육대학원 등)이나 의약계열 전공(약대, 의대, 간호대 등), 그리고 군/검/경 관련 전공(경찰학과, 교정학과, 사관학교, ROTC 교육과정 등)에서도 인권교과목이 개설된 경우는 거의 없다.

### 3) 평가

인권교육은 교양, 전공분야를 막론하고 개설과목 수 절대 부족하고, 그나마도 법학 등 일부 전공에 편중되어 있다. 강의방법 역시 대부분 강의(토론)식으로 진행되며, 참여형 프로그램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 기타 : NGO에 의한 대학생 인권교육

-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대학생 인권법캠프’
- 인권연대의 ‘대학생 인권 학교’
- 대학생 모임 [인권+ 법률]의 ‘인더법 캠프’

## (3) 대학인권교육의 과제와 전망<sup>89)</sup>

인권교육은 사회의 모든 기관에서 수행되어야 하며, 교육기관은 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여기에는 대학교육도 당연히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sup>90)</sup> 즉, 대학에서도 인권교육에 대한

89) 홍성수, “대학 인권교육의 현황과 과제”,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인권교육연구센터, 『인권학술세미나 발표집』, 2011.11.5, 9-12면.

90) 유엔 인권 교육·훈련 선언 제3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인권 교육과 훈련은 사회의 모든 부

사명을 가져야 한다. 특히, 한국의 현실에서는, 초·중등교육에서의 반인권적 환경과 부실한 인권교육을 고려할 때 대학에서의 인권교육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sup>91)</sup>

#### 1) 대학인권교육의 대상과 목표

##### ① 교양교육으로서의 인권교육

먼저, 인권교육의 대상과 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연구진은 인권교육은 이른바 자유교양교육(liberal education)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자유교양교육이란 인간의 문화적 성취를 고찰함으로써 인간과 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가능하게 해주는 교육이다. 이를 통해 사고능력의 개발, 반성적 사고, 도덕적 판단력, 사태의 이해, 문제해결 능력 함양 등의 결과를 얻게 된다. 그런데 ‘인권’은 인간과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요소이다. 인권에 대한, 위한, 통한 교육은 자유교양교육의 전형적 모습이라고 하겠다. 실제로, 문·사·철 등의 기본교양교육에서 인권은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구성요소이다. 그렇다면 다양한 학제적 인문교양 교과목이 개발될 수 있다. 예컨대, 근대사와 인권, 인간과 인권의 역사, 인권의 철학적·역사적 이해, 문학 속에서의 인권, 인문고전과 인권 등의 교과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인권교육은 대학 졸업 후 생활인으로 살아가면서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에 대한 통찰과 실무적 지식을 제공한다(예: 노동인권과 차별 등). 졸업생들은 어느 직역에서 무슨 일을 하건 인권문제와 끊임없이 부딪히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학에서의 인권교육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sup>92)</sup>

##### ② 전문교육으로서의 인권교육

인권교육은 전문직업교육으로서도 의미가 있다. 전문직업교육(professional education)이란 사회에서 필요한 전문지식을 교육함으로써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것을 말한다.<sup>93)</sup> 그렇다면, 전문분야별로 요구되는 인권적 과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것은 사범대/교대, 의대, 교정-경찰-군 관련 학과 등 직접으로 인권을 관여하는 분야뿐만 아니라, 자연과학, 공학, 약학 등에

---

분과 수준에 관련된다. 여기에는 취학 전, 초등, 중등, 고등 교육(적용가능한 곳에는 학문적 자유도 고려됨)과 공적, 사적, 공식적, 비공식적, 형식 없는 환경을 불문하고 모든 형태의 교육, 훈련, 학습도 포함된다”; 이외에도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안(2007)에서도 대학을 인권교육이 필요한 ‘공공기관’의 하나로 분류하고, 대학에서의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

91) 오완호, “대학 인권교육의 실효에 관한 접근: 영남대 ‘인권과 법’ 강의를 중심으로”, 「인권이론과 실천」 제7호,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인권교육연구센터, 2010, 108면 참조.

92) 나달숙, “인권교육의 국내·외적 현황과 지향 과제”, 「교육법학연구」, 23(1), 2011, 100면 참조.

93) 대학인권교육의 필요성으로 직업교육 또는 전문사회인력과의 관계를 지적하는 류지현·허창영, “대학생의 인권인식에 대한 요인분석 및 인권태도의 인식수준”, 「민주주의와 인권」 제8권 제1호, 2008, 182-183면 참조. 이에 따르면, 대학생은 졸업 후 전문직업인으로 인권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인권교육이 대학교육과정에서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의 전문교육과정에서도 적용된다. 이러한 관련 교과목으로는 과학기술과 인권, 의료와 인권, 생명공학과 인권, 군대와 인권 등을 들 수 있다.

### ③ 대학의 모든 구성원에 대한 인권 교육

인권교육은 학생, 교수, 직원/조교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sup>94)</sup> 이것은 위에서 이야기한 정규교과목의 형태가 아니라, 단기과정이나 교직원에 대한 교육훈련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현재 법제화되어 있는 성희롱예방교육과 같은 방식으로 인권교육이 법제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대학에서 학생인권문제의 사례와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예컨대, 학생선발이나 학생활동에서의 각종 차별, 성폭력신고기구, CCTV, 종교차별, 정치적 행동의 자유, 결사의 자유, 학교행정에 대한 학생 참여, 학생징계의 공정성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교원의 경우에도 교수 임용과정에서의 각종 차별, 표현의 자유(정치적 발언, 학교 비판), 교수징계의 공정성, 강사의 노동인권 등이 제기될 수 있다.

직원/조교 인권문제의 경우에도 기본적인 노동권 보장 여부, 각종 차별에 대한 구제기구, 종교의 자유, 대학행정에의 참여, 조교업무관련 각종 차별과 부당행위여부에 관련한 인권문제가 제기된다.

## 2) 대학 인권교육 실행과제

### ① 다양한 인권 교양 교과목 개발

지금보다 더욱 체계적이고 풍부한 인권교육이 실시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관심을 촉발할 수 있는 교과목 개발이 필요하다. 예컨대, 노동 인권, 인권과 차별, 형사사법과 인권, 다문화사회와 인권, 세계화와 인권 등 다양한 과목들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인권적 행동을 촉진하고, 국내·외 인권행동가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관련 교과목 개발이 필요하다.

### ② 전공 분야의 인권 교과목 개발

#### ㉠ 전공교육을 심화하기 위한 인권교육<sup>95)</sup>

전공교육을 심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전공과 관련된 교과목들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94) 대학에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유용한 보고서가 출간된 바 있다. 경상대학교 통일평화인권센터, 『대학 인권지표 개발 연구』, 2009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2009;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인권센터, 『대학의 정보기술 활용에 따른 학생인권 침해에 관한 연구』, 2009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참조.

95) 아래와 같이 개별 과목으로 '인권' 교과목으로 개발할 수도 있으나, 여러 교과목에서 인권교육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 정치외교학과 / 국제대학원<sup>96)</sup>: 국제정치와 인권, 유럽통합과 인권, 아시아와 인권, 개발과 인권, 국제인권례집의 이해
- 사학과: 근대사와 인권, 과거청산과 인권, 한구현대사와 인권
- 사회학과 / 인류학과: 소수자인권의 사회학, 인권의 사회사, 인권운동사, 인권과 인류학, 인권과 시민사회
- 어문계열: 문학과 인권
- 철학과: 인권과 철학, 인권사상사

⑥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한 인권교육

일부 전공의 경우에는 전문직업인 양성이 전공의 목표인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그 해당 직업에 관련된 인권교육과목이 개설되어야 하고, 수강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다.

- 사범대 / 교대: 학교와 인권, 아동과 학생의 권리
- 의대: 의료와 인권
- 육군사관학교 / 경찰대 / 교정학과: 수사와 인권, 교정과 인권, 군대와 인권
- 사회복지학과: 정신보건시설에서의 인권, 사회복지와 인권
- 언론계열: 언론윤리와 인권

공대에서의 인권교육: 현재 한국의 공과대학들은 ‘공학기술교육 인증기준’ (KTC2009)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인증기준에 따르면, 전문교양과목이 최소 9학점 이수되어야 하며, 인증기준은 학생역량으로 전공지식 외에 공학기술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이해, 시사기본지식, 직업적·윤리적 책임, 세계문화에 대한 이해와 국제협력능력 등이다. 그래서 현재 공대에서는 ‘전문교양과목’으로 과학기술과 법, 기술과 경영, 기술과 사회, 과학사, 공학경영, 공학윤리 등의 교과목이 운영되고 있다. 공학관련한 인권 교과목도 얼마든지 개설해볼 수 있는데, ‘공학과 인권’, ‘과학기술과 인권’ 등의 과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군인, 경찰 양성과정에서의 인권교육 : 육군사관학교나 경찰대학 등에서도 인권 관련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예컨대, 육사에서의 군대윤리, 군사법, 경찰대에서의 형사소송법, 형법 등의 교과목에서는 인권교육의 내용을 일부 포함하고 있다. 군대나 경찰이 인권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험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군인/경찰 양성과정에서의 인권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육사, 경찰대 등은 고등교육기관이자 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군인/경찰은 직업교육 차원에서도 인권교육이 아주 중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동일한 문제를 ‘법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과 ‘인권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sup>97)</sup> 과목명에 ‘인권’이

96) 사회과학에서 인권이 갖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프리먼, 『인권: 이론과 실천』, 아르케, 2005, 제5장 참조.

라는 말이 포함되진 않더라도, 관련 교과목의 내용을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참고로, 지난 2007년 국방부와 인권위가 군인권교육 교재를 공동 개발하는 군인권교육의 체계화를 위해 노력한 바 있고, 국방부는 이러한 성과를 담아 2008년 군 인권교육규정(국방부 훈령 제870호)을 제정하여, 친인권적 병영문화의 확립을 위해 장병들이 지속적으로 인권교육을 받도록 했다. 이러한 인권교육은 장병교육 뿐만 아니라, 지휘관 보수교육이나 간부양성기관, 사관학교 등에서도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 IV. 시민사회 영역의 인권교육 현황

##### 1.

##### 개요

- 인권의 가치가 전체 사회에 효과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일반 대중에 대한 홍보와 함께 기업·시민사회단체·가족·대중매체 등을 통한 비정규교육에 인권교육을 통합함
- 특히,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교육 지원과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둠

##### 2.

##### 필요성

- 평생을 통해 사회 모든 영역에서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 등 정규 교육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더 많은 교육에 주목해야 한다.
- 대중매체와 인터넷의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 인권교육·홍보에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함. 이는 유엔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 및 가이드의 주요 권고사항이기도 하다(제10항, 제26항).
- 세계화 및 신자유주의 질서 속에서 비국가 행위자, 새로운 권력모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행위자가 (다국적)기업, 미디어 등이다.
- 가족 등 사적 영역에 주목하는 것은 인권교육이 인권이라는 추상적인 규범에 대한 지식 획득에 머물지 않고 무엇보다도 학습자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97) 같은 맥락에서, 의대에서의 인권교육이 ‘의료법’ 또는 ‘의료윤리’라는 과목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과 ‘의료와 인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전혀 다를 수 있다.

- 사회적 약자 및 취약집단 관련 인권교육은 스스로 자기 권리의 내용과 시스템을 알고 활용하는 ‘자기능력강화(empowerment)’가 핵심이며, 이와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인권교육 및 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3. 쟁점 과제**

정 책 분 야	과 제 명
<b>3-1. 기업 대상 인권교육 강화</b>	1. 국내 활동 기업 대상 인권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의 사원 및 간부 연수교육과정에서 고용상의 차별예방 등 인권교육 실시</li> <li>■ 고용주, 인사조직 업무 관계자에 대한 고용평등 교육</li> </ul> 2. 해외진출기업 대상 인권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타문화에 대한 이해</li> <li>■ 특히, 성희롱, 노동권, 토지에 대한 권리 및 선주민 권리에 대한 이해, 분쟁지역에서의 활동 원칙 등에 대한 교육</li> </ul>
<b>3-2. 대중매체·인터넷 등을 활용한 인권교육·홍보</b>	1. 대중매체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기회 확대 및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문·방송 기자, 작가, 프로듀서, 논설·해설위원 등 종사자를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li> <li>■ 대중매체 종사자를 위한 인권 매뉴얼 제작과 활용</li> </ul> 2. 대중매체 및 인터넷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잡지 등에 대한 인권관련 모니터링</li> </ul> 3. 인권의식 강화를 위한 캠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의 내용 및 시스템·절차에 관한 홍보</li> <li>■ 핵심 인권 현안 및 대응에 관한 홍보</li> <li>■ 네티즌 등 자발적 참여조직 활용</li> </ul> 4. 인권관련 보도, 정규 프로그램 또는 기획 시리즈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술, 음악, 연극 공연 등 특별한 문화행사의 조직 권고 (제61항)</li> </ul>
<b>3-3. 사회적 취약집단 인권교육 지원 및 시스템 구축</b>	1. 절대빈곤·사회적 고립 집단을 위한 인권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IV / AIDS 환자, 장애인, 극빈층, 노인 등</li> </ul> 2. 인권현안 관련 집단을 위한 인권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금·보호시설 수용자, 이주노동자, 탈북자, 난민 등</li> </ul> 3. 사회적 취약집단 인권교육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성상 지역사회 단위에서 수행되는 것이 효과적이며 직접적인 교육실행 주체로는 시민사회단체가 중요함</li> <li>■ 이와 같은 맥락과 주체를 고려한 지원시스템 구축</li> </ul>

## 4.

## 시민사회영역 인권교육의 현황

초기 공직종사자 영역 및 학교 영역의 인권교육 확산에 노력해온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부터 조직이 확대·개편되면서 본격적으로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와 기업 및 언론영역의 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 시민분야 인권교육의 주요 대상으로 인권에 관한 사회적 영향력과 파급 효과가 큰 사회복지사, 기업·언론인 등 ‘인권옹호집단’(Human Rights Defender)을 설정하였다. 아울러, 인권위법 제26조를 근거로 평생교육시설과 사회적 약자 관련 인권교육으로 업무 범위를 확대하였다.

사회복지분야 인권교육은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 교육훈련 지침에 인권교육이 포함되었고, 특히 2008년도에는 ‘정신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정신보건법 제6조의 2)는 인권교육 의무조항이 신설되기도 하였다. 이후 사회복지시설 평가 항목에 인권교육이 반영되면서 장애·노인·아동관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이 확산되었다. 사회복지사 교육 및 시설 종사자 교육 시 인권교육이 필수적 포함되어 사회복지 영역에 인권교육이 크게 확산되었다.

기업의 영향력 증대 및 국가간 경제통합 등에 따라 기업책임에 대한 국제적 기준들이 제도화되고, 우리사회에서 기업 내 차별 등의 진정이 증가하면서 우리 사회도 ‘기업인권’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그러나 국제적 추세에 비해 우리 기업들은 아직 소극적인 태도에 머물고 있어서 기업 인권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았다. 우리 사회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업 인권’의 개념을 정립하고, 기업 인권 교육의 내용과 방식을 정리하면서, 개별 기업들과 인권교육에 대해 협의를 추진하였다. 기업대상 인권교육 교재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연구 등을 실시하면서 글로벌 콤팩 가입 기업인대상으로 수차례 인권특강을 실시해오고 있다. 그렇지만 기업에서는 인권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 인권교육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교육훈련 체계에 인권교육 도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언론인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의 주요 방송국인 KBS, MBC, CBS와 경향신문, 서울신문, 한겨레신문, 연합뉴스 등 신문사 등 언론인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03년경부터 언론재단 수습기자 등 언론인 교육과정에 인권특강이 개설되었다가 현 정부 들어서 잠시 폐지되었으나, 2011년부터 신입기자 연수과정에 인권과목이 정규과목으로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다. 최근에는 스포츠 영역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초·중등 학생선수 및 지도자, 학부모를 대상으로 각 시·도를 순회하면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기업, 언론인 대상 인권교육 도입 시발 시기로서 제도화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sup>98)</sup>

98) 김철홍, “인권교육 제도화의 현황과 과제”, 『경상대학교 발표자료집』, 2011, 33-34면 참조.

<표 17> 시민사회영역 인권교육 제도화 수준<sup>99)</sup>

영역	대 상	인권교육 제도화 수준
시민 영역	사회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복지 각 교육기관 인권과목 개설</li> <li>■ 정신보건종사자 인권교육 의무화 (년간 4시간)</li> <li>■ 노숙인시설종사자 인권교육 의무화 법 통과 (2011.04.)</li> </ul>
	언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론재단 신입기자 대상 인권과목 개설</li> </ul>
	북한이탈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나원 인권과목 정규화 (각 과정당 2시간)</li> </ul>
	기업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주노동자 고용기업, 장애인 고용기업 종사자 대상 인권과목 개설</li> <li>■ 글로벌 컴팩 가입 기업대상 인권특강 개설 (비정례적)</li> </ul>
	스포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포츠 지도자 양성 교육훈련기관내 인권과목 개설 (정례화)</li> <li>■ 학교운동선수대상 인권특강 도입</li> </ul>

5.

시민사회영역 인권교육자료 현황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국민이 인권교육을 접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인권교육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교육은 오프라인 교육과 대비할 때 강사와 교재에 해당하는 ‘사이버인권교육콘텐츠’와 교육장소에 비교될 수 있는 ‘웹사이트’, 그리고 교육자관리와 관련 있는 ‘학습관리시스템’ (Learning Management System)으로 구성된다. 2004년 처음으로 사이버 인권교육사이트를 구축하여 인터넷을 통한 인권교육을 준비하였다.

2004년 검찰, 경찰, 교도행정 등 법집행공무원들을 위한 인터넷 인권교육콘텐츠 개발을 시작으로 2005년 인권에 대한 기본 개념과 국제인권체제 등을 담은 『인권의 이해』, 아동권리협약 내용을 담은 『아동권리의 이해』, 아동, 장애,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에 대한 이해를 담은 『사회적 약자의 이해』, 교육, 복지, 환경 등 인권적 사안에 대해 행정공무원의 인권적 판단을 유도하는 『행정과 인권』을 개발하였다. 2006년에는 성차별 사례와 개념, 관련 법률을 담은 『성차별예방과정』, 장애인차별의 개념과 차별금지 내용을 담은 『장애인차별예방과정』을 개발해왔다. 현재까지 성인을 대상으로 총 9종의 사이버인권교육콘텐츠를 개발해왔으며, 아동을 위해 총 4종의 사이버인권동화를 제작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에는 사이버인권배움터라는 웹사이트를 개발했고, 2007년에 학습관리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2008년 초 현재의 인권교육센터 (edu.humanrights.go.kr)를 구축하여 활발하게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위원회는 소홀해지기 쉬운 인터넷 교육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교육신청자가 정해진 기간 내 교육콘텐츠, 과제, 시험, 토론을 마칠 수 있도록 교육자 관리와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인권교육센터를 통해 각종 인권교육자료, 어린이·청소년용 인권동화, 인권교육용어 등을 지원하고 있다.

99) 김철홍, “인권교육 제도화의 현황과 과제”, 『경상대학교 발표자료집』, 2011, 34면.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출범 초기인 2002년부터 우리 사회의 인권 감수성을 드높이고 인권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영화, 만화, 사진, 포스터 등 인권문화콘텐츠를 개발, 보급하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차별문제는 그 심각성에 비해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고 오랜 기간 내면화 되어 왔기에 이의 개선에 주목했다. 법·제도 개선뿐 아니라, 인권의식의 변화를 통해 차별예방에 방점을 둔 인권교육은 주입식, 계도적 교육방식에 비해 질과 양, 양면에 있어 실효를 거두었다.

지난 10년 동안 인권영화 <여섯 개의 시선>, <다섯 개의 시선>, <세 번째 시선>, <시선 1318>, <날아라 펭귄>, <시선너머>, 인권애니메이션 <별별이야기>, <별별이야기2-여섯빛깔무지개>, 인권만화책 『십시일反』, 『사이시웃』, 인권사진집 『눈. 밖에. 나다.』, 『어디 핀들 꽃이 아니라』, 인권포스터 26점, 인권에세이 『불편해도 괜찮아』를 개발했고 각급 학교, 공공기관, 복지시설 등 시민들에게 널리 보급하였다. 특히, 인권영화는 국내·외 영화제 약 250회, 극장유료관람객수 약 6만명, 공중파 및 케이블방송국에서도 방영되는 등 활용도의 폭이 넓어 인권교육효과가 크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 인권 증진과 차별예방, 인권교육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의 생산과 보급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sup>100)</sup> 최근 인권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sup>101)</sup>

- 2004년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결성: 노동단체와 인권교육의 만남. 교재 발간, 교육가 양성 워크숍, 청소년 대상 교육, 실태조사 등 진행
- 2005년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결성: 청소년단체와 인권교육의 만남. 청소년 인권캠프, 인권배움터, 강사 양성 워크숍, 실태조사, 초·중등교육법 개정·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입법운동 진행
- 2008년 장애인권교육네트워크 결성: 장애인단체와 인권교육의 만남. 장애인권교육가 양성 워크숍, 교육모델 개발, 장애인·시설종사자 등 대상 교육, 장애인권교육 매뉴얼 발간 등 진행
- 2009년 비정규노동인권네트워크 결성: 비정규 노동운동과 인권교육의 만남. 비정규 노동인권 상담원·교육가 양성 워크숍, 노동조합 간부 교육 등 진행
- 2011년 다문화-인권교육 방향 설정을 위한 워크숍 준비모임: 다문화·이주 운동과 인권교육의 만남. 문화교육 중심의 다문화교육을 넘어 반차별 교육에 초점을 둔 인권교육으로의 전환을 시도하기 위한 예비모임. 2011년 말 3차례의 워크숍을 통해 현황과 과제를 분석한 뒤, 2012년 이후 본격적인 활동 방향을 모색할 예정

100) 김철홍, “인권교육 제도화의 현황과 과제”, 『경상대학교 발표자료집』, 2011, 34-35면 참조.

101) 김철홍, “인권교육 제도화의 현황과 과제”, 『경상대학교 발표자료집』, 2011, 34-35면 참조.

## V. 국내 인권교육의 과제 및 방향

우리나라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출범 이후 인권교육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 이유는 압축적 경제성장과 민주화 과정에서 인권의식이 체계적으로 발전하지 못하였으며, 입시위주의 교육체계에서 인권교육을 교육기관에서 체계적으로 실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유교전통과 일제의 잔재, 군사문화 및 민주화와 통일이라는 여러 가치가 사회 전반에 혼재되어 있음으로써 인권의식의 정착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에서의 인권교육은 수요적 측면에서의 요구가 매우 강해 양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팽창하는 추세이지만, 질적인 측면인 인권교육에 대한 제도와 정책이 부재하며, 인권교육을 실시할 만한 물적 기반 또한 교육이 갖추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인권교육이 다방면에 걸쳐 실시되고는 있지만 규모면에서 매우 미비한 실정이며, 그 실효성도 의심된다. 대개 특강 및 강의위주로 진행되는 현 인권교육은 인권교육 강사 및 교재 등 인권교육을 위한 기본 인프라의 미비 등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 1.

### 인권교육의 과제

국가인권위원회는 초기 인권교육을 확산하기 위해 각급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등에 인권교육 도입을 위해 노력하였다. 공공기관영역에서는 인권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수준이 매우 낮았고, 인권교육 그 자체에 대해 부정적 인식의 상황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후 인권침해·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구제 활동으로 인해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인권침해 예방 차원에서 인권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시작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이 많아지면서 공권력 집행기관인 경찰·교정·검찰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 필요성이 가장 우선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런 필요성 인식에 의해 경찰·교정·검찰 등 영역에서 인권교육이 도입되었다. 그 이후에도 인권침해·차별 가능성이 많은 피진정기관 중심으로 교육 대상을 선정하고, 각 기관과 협의를 통해 인권교육 필요성 인식을 확산하고 인권강좌 개설 등으로 인권교육 수요 창출 등 인권교육의 양적 성장을 이룩하였다.

10년간 인권교육 제도화 중점 추진분야를 보면, 초기에는 경찰·검찰·교정공무원이 주요대상이었고, 2기에는 초·중등학교 및 군인, 사회복지사(장애인, 노인) 등이 주요대상이었으며, 2009년부터는 행정공무원을 주요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지난 10년 동안 인권침해 예방차원의 교육대상별 인권교육 접근방식으로 인권교육을 포함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정신보건법에 시설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의무화 조항 신설, 군대 인권교육 규칙 제정, 초·중등교육과정 내 인권교육 도입, 각

대학 내 인권과목 개설, 검찰·경찰 등 사법 집행 공무원 대상 교육훈련기관내 인권과목의 정규과목화 등 인권교육의 제도화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인권교육이 확산되었다.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첫째, 인권교육의 유엔 등 국제적 원칙 준수 등 인권교육의 질적 제고가 필요하다. 각 교육훈련기관에서 인권교육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1회성 특강에 그침으로써 인권교육의 효과가 미미하고 다른 정책과제의 현안 교육에 밀려 후순위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각 기관에서 인권교육을 도입한 경우에도 고유 업무 또는 (교육)기관의 본래의 목표가 주가 되므로 인권 교육 반영은 극히 제한적·보충적이다.

인권교육은 대상별 인권교육 접근과 함께 인권주체별, 교수방법별 인권교육 접근방식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누구를’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고민 필요). 즉, 인권교육 원칙을 준수하는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제시함으로써 인권교육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인권교육의 제도화도 수도권 위주에서 각 지역으로 인권교육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보다 적극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서 인권교육의 실시를 의무화하는 법제화는 필수적이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지 않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인권교육 실시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도 미비한 실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인권교육을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한 업무로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기관 혹은 단체 및 시설과 협의할 수 있는 권한만을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에 인권교육을 실시하기에는 매우 소극적인 조항이다.

유엔 인권교육 10년 계획 후속조치로서 채택된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의 부속서(2004. 12)에 “교육법에 인권교육을 포함시키고, 인권교육에 대한 특별한 법률의 제정을 권장”하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2011년 3월에 채택한 인권교육훈련선언은 국가는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책임성과 함께 이를 보장하는 입법조치 등 이행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셋째,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등과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체 구성 등 협력적 접근과 파트너십 강화 전략이 필요하고, 제도화 된 인권교육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도 중요하다. 학교, 공공 등 각 분야에서 각 기관이 자발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권교육이 유엔에서 제시한 인권교육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 인권교육에 대한 현황 및 내용분석을 통해 인권교육의 효과성을 증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인권교육 현실에 대한 진단 평가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실태조사 강화, 인권교육진단 및 컨설팅 구성·운영 등이 필요하다.

## 2.

### 인권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방향<sup>102)</sup>

### (1) 인권교육법 제정 재추진 등 인권교육 의무화 필요

모든 국민은 자신의 존엄성과 권리를 깨닫고 다른 사람도 자신과 같은 동등한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알도록 인권을 학습하고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사람에게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지만 한계가 있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다른 교육보다 인권교육을 우선시 하지 않는 경향이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책임을 부여하여 국민에게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할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유엔 등 국제사회는 미래지향적 사회통합과 인권침해·차별행위 예방 전략으로서 인권교육의 필요성과 효과를 인정하여 자유권 및 사회권 규약 위원회, 인종차별철폐 위원회, 아동권리 위원회 등 유엔의 인권기구는 우리나라 정부에게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하였지만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국제인권협약에 가입한 우리나라가 유엔의 인권교육관련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모든 사람에게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 등 공공기관의 인권교육 책무를 명확히 하며, 우리 사회 각 영역의 자발적 인권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종합적인 체계를 구축하는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 인권교육법을 제정함으로써 인권교육을 촉진·활성화하여 전사회적으로 인권교육을 정착하고 발전을 이룩하며, 나아가 인권침해·차별행위 예방과 인권 친화적 문화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

### (2) 국가 및 지자체 수준의 인권교육협력체계 및 모니터링체계 구축·운영

법무부, 국방부, 교육부, 경찰청 등 국가기관이 인권교육 기능을 강화하는 등 주된 역할을 담당하며, 민간차원의 자발적인 인권교육 활동이 증가 추세에 있다. 인권교육의 전국화를 위해 국가수준의 인권교육을 지역단위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 국가인권위는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 모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교육을 아우르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권교육 관련 상호교류와 정책조정을 위하여 관련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와 인권단체,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인권교육 협의기구 설립이 필요하다. 입법부 사법부 및 중앙부처, 인권단체, 인권교육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가차원의 (가칭) ‘인권교육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권교육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인권교육효과 등을 모니터링하는 인권교육모니터링 체

102) 김철홍, “인권교육 제도화의 현황과 과제”, 『경상대학교 발표자료집』, 2011, 37-41면 참조.

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에 의해 정부 각 기관이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들 기관의 인권교육 이행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이행력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각 기관에서 소속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 교육의 인권교육 원칙 준수 등 인권교육적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인권교육 모니터링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인권교육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개발이 필요하다.

위원회의 인권교육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여 각 정부기관 등에서 소속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담당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인권교육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인권교육을 내실화 할 필요가 있다.

### (3) 인권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권교육원 설립 등 기반 구축

한국에서의 인권교육은 초기 단계 수준이다. 인권교육에 대한 논의와 실행의 초기단계에서 인권교육에 대한 정책의 수립, 인권교육의 체계성 확보, 실효성 있는 인권교육을 위한 인권교육 전문 강사 육성 및 교재 개발 등 인권교육을 위한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에는 인권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권교육기관은 없으며, 이 역할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일부 수행해 오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공분야 중 경찰, 검찰, 교정 등 법집행공무원의 인권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최근에는 그 분야를 군대, 사회복지, 학교 분야로 확대하고 있다. 그 결과 각 분야에서 인권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고, 각 부분별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양적인 측면에서 인권교육확대에 기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인권교육에 대한 인적·물적 기반이 부족한 상태이다. 인권교육의 개념, 구성요소, 교육방법 등 기초분야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미흡하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경찰, 검찰, 군 등 공공, 학교, 시민분야에서의 인권교육에 있어서 직무교육, 입직교육, 연수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인권교육이 시도되고, 사회적으로도 인권교육 교사모임, 학부모 모임 등 교육주체의 진지한 고민이 모색되고 있다. 그러나 그 방향이 기존의 도덕 및 윤리교육, 사회교육의 변형된 형태로 굳어지지 않고, 보다 전문적인 인권교육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인권교육이 지향하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권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권교육은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인권교육 매개자에 의해 체계적으로 전달되어야 하며, 교육의 내용과 방식에 있어서도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검토와 연구가 뒤따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권교육을 시행하는 인력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하며, 인권교육의 목표와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도록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권교육의 양적 확대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인권교육

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을 정립하고 연구를 촉발시킬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

인권교육의 원칙 준수와 교육내용·교수학습방법의 적실성 확보를 위한 인권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재교육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인권교육은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인권교육가에 의해 체계적으로 전달되어야 하며, 교육의 내용과 방식에 있어서도 인권교육적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권교육을 시행하는 인력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을 마련하고, 인권교육의 목표와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인권교육 연구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인권교육의 효과적 실시를 위해서는 인권교육이 지향하는 목표와 방향이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사업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동안 교육활동들이 일회적인 프로그램 위주로 전개됨으로써 인권교육의 취지나 목표가 제대로 달성되었는지 또는 관련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인권교육의 목표를 담보하고 있는 등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효과가 검증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인권교육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인권교육원이 필요하다. 현재는 인권교육 전문가, 학자, 인권활동가들이 강사로 파견되거나, 각 분야에서 자체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인권교육을 확대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인권교육을 필요로 하는 해당 분야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인권교육강사 양성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인권교육기관이 필요하다. 더욱이 향후 인권교육을 필요로 하는 대상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인권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초 소양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도 인권교육기관의 설립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인권교육은 해당 분야의 직무수행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침해 상황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해당분야에 적합한 인권교육 과정 및 교재, 교육방법 등의 연구를 수행할 전문 기관 역시 필요하다.

이 기관을 통해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교육자료를 포함한 각종 교재, 다양하고 실질적인 교육방법 등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 (4) 인권교육의 대중화를 위한 인권교육의 사회적 인식 제고

인권교육을 일시적인 사회적·정책적 관심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의 발전과 성숙을 위한 지속적인 과제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인권교육에 대한 사회적 전반의 관심을 보다 광범위하게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인권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인권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식, 매체를 통한 인권교육관련 사회적·정책적 관심의 환기가 필요하다. 그동안 인권교육에 대한 높은 필요성에 비해 인권교육의 확산과 대중화에 대한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계획이 부재하였다.

인권교육에 대한 학문적 및 운동론적 차원의 담론 등 사회적 담론을 통하여 인권교육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인권교육의 방향성 및 정체성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권교육의 목적, 가치, 내용, 방법론, 평가방법 등에 관한 합의 틀을 형성함으로써 인권교

육 개념과 방향성을 둘러싼 혼란을 피할 수 있다. 인권과 인권교육에 대한 인문·사회과학적 차원의 담론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인권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인권에 종사하는 여러 계층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인권교육의 방향과 철학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을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인권교육의 대중화를 위해 방송, 신문, 인터넷, UCC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인권교육 체험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인권교육에 대한 인식과 이해도를 높이는 인권교육에 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가 차원의 인권교육에 대한 인식공감대 형성과 함께 다수 시민 참여를 중심에 두는 인권교육 홍보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 (5) 국가수준의 인권교육기본계획(NAP) 수립 필요

인권교육과 관련해서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과 통합해서 갈 것인지, 아니면 별도 인권교육기본계획(NAP)을 수립 추진해야 할 지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교육 일반에 대한 주관부처로 국가인권위원회를 지정하고 소속종사자에 대한 개별적 인권교육은 각 부처에서 실시하도록 업무소관을 구분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인권교육이 포함됨으로써 인권교육의 내용 및 비중이 많지 않고, 여러 인권정책과제 중 하나로서 인권교육 내용이 상대적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인권정책협의회 주요 논의 사항도 인권교육보다는 인권정책사항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협의회 참석자도 정책업무담당자가 참여하여 교육관련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가 주관을 하면서 행정부처이외에 타 국가기관인 입법부, 사법부, 헌법기관 등의 인권교육 추진계획을 포함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외에도 현재 인권교육 분야의 추진부처로 제시되지 않은 부처(행자부, 과기부, 환경부, 건교부, 여성부 등)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인권교육실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유엔은 ‘인권교육 10년 계획(1994)수립’,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시행 등에서 별도 인권교육 계획 수립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인권교육의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인권교육기본계획’을 별도 수립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sup>103)</sup> 국가인권위원회가 별도 분리 시 입법부와 사법부의 인권교육추진계획을 포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sup>104)</sup>

103) 필리핀은 필리핀의 인권교육을 국제사회에 수출하기 위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과 별도로 인권교육기본계획을 추진하였다. 이외에도 2000년 기준으로 보았을 때 튀니지, 말리, 세네갈,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멕시코, 파나마, 벨라루스, 사이프러스, 크로아티아, 체코공화국, 루마니아, 덴마크, 터키, 조지아, 인도, 일본, 필리핀 등 18개국이 별도로 수립하고 있다.

104) 김철홍, “인권교육 제도화의 현황과 과제”, 『경상대학교 발표자료집』, 2011, 37-41면 참조.

## 제3절 국외 인권교육 현황 분석: 인권교육의 국제적 차원

### 1. UN 인권교육 (Human Rights Education)의 전개

1948년 현대적 의미의 인권보장체계가 확립된 이래로 인간의 권리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은 계속적으로 확인되어 왔다.

“모든 개인과 사회의 기관은 동 선언을 깊이 되새기며, 동 선언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와 자유를 학습과 교육의 방식을 통해, 또한 점진적이고 국내적·국제적 차원의 조치를 통해 인권의 증진과 인권의 인식 및 존중이 확보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한다.”<sup>105)</sup>

개인은 자신이 누리는 인권에 대해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다수의 핵심적인 국제인권 관련 문건은 이러한 측면을 반영하고 있다. 이는 인권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인권의 실현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며, 그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국제인권 관련 문건(조약, 선언, 결의 등)을 승인한 국가는 국내의 관할권이 행사되는 범위에 있는 모든 개인에게 인권에 관한 교육을 시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뜻한다. 핵심적인 국제인권 문건은 국가로 하여금 인권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뿐만 아니라,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를 조성해야 할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다. 1945년 UN 헌장은 “사회를 존중할” 인권을 국가가 조성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sup>106)</sup> 이러한 국가의 의무는 여러 국제조약의 전문(preamble)에서도 확인되고 있다.<sup>107)</sup> 뿐만 아니라, 인권교육(human rights education)에 관한 규정은 다수의 국제 문건 안에 포함되어 있다.<sup>108)</sup>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국제인권보장 시스템에서 인권교육에 관하여 설사 직접적인 혹은

---

105) 세계인권선언 前文.

106) UN 헌장 제1조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과 증진을 UN의 설립 목적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UN 헌장 제1조 및 제55조 참조.

107) 예를 들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前文,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前文, 고문 및 기타 잔학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금지하는 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前文 등.

108) 예를 들면, 세계인권선언 제26조,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7조, 고문금지협약 제0조, 여성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제10조,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제29조,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제33조 등.

간접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다 하더라도 적극적 해석에 의해 국가는 인권교육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국가의 인권교육과 관련한 의무는 국제인권조약 하의 조약 감독기관의 관행(practice)을 통해서도 명확히 확인되고 있다.<sup>109)</sup> 예를 들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하 ICCPR)상의 이른바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HRC)는 동 규약의 이행을 감독하는 기관이며, 조약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왔는데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개인이 동 규약(동 규약의 선택의정서상도 포함)에 규정되어 있는 자신들의 권리를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국가가 이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국내의 모든 행정 및 사법기관이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동 규약은 국가의 모든 공식 언어로 출판·공표되어야 하며, 국내의 기관들이 규약의 내용과 친숙해 질 수 있는 조치를 학습의 차원에서 습득할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sup>110)</sup>

국가가 국내적으로 인권교육을 시행해야 할 국제적 의무를 진다는 것은 국가가 인권에 대한 정보를 국내적으로 제공하고, 인권의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매우 구체적인 형태로 형성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인권교육(human rights education)이란, 개념의 이해에 있어 UN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the United Nations World Programme for Human Rights Education, 이하 WPHRE)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데 제1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05-2009)은 2004년 UN 총회에서 인권교육프로그램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선언되었다.<sup>111)</sup> UN 인권고등판무관실(the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이하 OHCHR)은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의 조정과 조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UN 인권고등판무관실에 의하면,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WPHRE)은 인권교육의 기본원칙과 방법의 공동의 이해의 증진을 추구하고, 인권교육의 행동을 위한 구체적인 틀(framework)을 제공하여 국제적 차원에서부터 풀뿌리에 이르기까지 이를 위한 파트너십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sup>112)</sup>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WPHRE)의 행동계획(Plan of Action)은 인권교육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109) HRC General Comments No. 18, No. 28, No. 31.

110) HRC General Comment No. 3 (29 July, 1981), No. 31.

111) General Assembly Resolution, World Programme for Human Rights Education, UN Doc.A/Res/59/113, 2004.

112) OHCHR website, [www2.ohchr.org/english/issues/education/training/programme.htm](http://www2.ohchr.org/english/issues/education/training/programme.htm).

“인권교육이란, 지식의 공유, 기술의 보급 및 태도의 형성을 통한 인권의 보편적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교육, 훈련, 정보를 뜻한다.”<sup>113)</sup>

UN 인권고등판무관실과 UN 교육과학문화기구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이하 UNESCO)는 다음과 같이 이를 보다 정교히 규정하고 있다.

“인권에 대한 포괄적인 교육은 인권과 인권을 보호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인권을 적용하고, 보호하여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전수하는 것을 포함한다. 인권교육은 사회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자세와 행동양식을 육성하는 것이다.”<sup>114)</sup>

이와 같은 인권의 문화(culture of human rights)를 조성하기 위해 국가는 인권과 인권의 보호 및 증진 메커니즘(장치)에 대한 지식을 전수해야 하며, 인권을 증진시키고, 보호하고 적용하기 위한 기술을 제공하고 인권이 수호될 수 있도록 사회구성원들의 태도를 형성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제1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의 행동계획에서는 인권교육에 대한 개념정의가 보다 확대되고, 구체화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sup>115)</sup> 행동계획은 인권교육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인권교육이란, 지식의 공유, 기술의 보급 및 태도의 형성을 통한 인권의 보편적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교육, 훈련, 정보를 뜻하는데 구체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지향한다.

-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의 강화;
- 인격과 인격 존엄성의 완전한 개발;
- 모든 민족, 토착민(indigenous peoples), 인종·언어·종교상의 소수자간의 이해, 관용, 성의 평등 및 우애의 증진;
- 법의 지배를 받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에서의 모든 사람의 효과적인 ‘참여’ 능력의 함양;
- 평화의 건설과 유지;
- 사람 중심의 지속적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과 사회정의의 증진.”<sup>116)</sup>

113) UN, Revised Draft Plan of Action for the First Phase (2005-2007) of the World Programme for Human Rights Education, A/59/Rev.1 (2005), para. 3.

114) OHCHR & UNESCO, Booklet on Plan of Action of the UN World Programme for Human Rights Education-First Phase (2005-2007) (2006), p. 1.

115) Ibid., p. 12.

116) WPHRE Revised Plan of Action, p. 3.

이와 같은 인권교육에 대한 확대된 개념정의는 인권교육의 목적뿐만 아니라, 인권교육의 목적을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는가도 함께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인권교육이란, UN의 회원국들에 의해 다양한 조약상 규정되어 있는 인권 존중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국내 ‘사회’의 성격도 그러한 인권에 기반을 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는 국가의 정책이나 관행이 인권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sup>117)</sup>

1.

### 세계인권선언 제26조 (Article 26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세계인권선언 제26조는 교육권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제26조

1. 모든 사람은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적어도 초등교육과 기초교육 단계에서는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보통 사람들이 큰 어려움 없이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고등교육 즉, 대학교육은 다른 차별 없이 오직 학업능력에만 입각하여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개방되어야 한다.
2. 교육은 인격을 온전하게 발달시키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더욱 존중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방향을 맞춰야 한다. 교육은 모든 국가, 인종집단 또는 종교집단들이 서로 이해하고 서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포용하며 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평화유지를 위한 유엔의 활동을 촉진시켜야 한다.
3. 부모는 자기 자녀가 어떤 교육을 받을지를 우선적으로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세계인권선언 그 자체는 조약이 아닌 단지 선언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것이 구체적인 법적 기반으로 공고화되기 위해서 이른바 1966년의 쌍둥이 인권협약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인권규약(ICCPR)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인권규약(ICESCR)의 탄생을 기다려야 했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인권규약인 이른바 A 규약 제13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 규약의 당사국은 모든 사람이 교육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교육이 인격과 인격의 존엄성에 대한 의식이 완전히 발전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교육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더욱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당사국은 나아가서 교육에 의하여

117) UN Statement of Common Understanding on Human Rights-Based Approaches to Development Cooperation and Programming.

모든 사람이 자유사회에 효율적으로 참여하며, 민족 간에 있어서나 모든 인종적·종족적 또는 종교적 집단 간에 있어서 이해, 관용 및 친선을 증진시키고, 평화유지를 위한 유엔의 활동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동의한다.”

동 조항에 대한 해석이 유엔사회권위원회의 일반논평 13이다. 교육은 인격의 “존엄성 의식”을 지향해야 한다는 목적을 재확인하며 그 필수요소로서 가용성, 접근성, 수용성, 적응성이라는 4요소를 강조하고 있다. 이 요소는 초등교육 뿐 아니라, 중등교육, 기술 및 직업교육, 고등교육 단계에 공통되는 것이다. 교육권에 비추어 본질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은 교육당국이 이들 4요소를 교육주체들에게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가이다. 즉, 아이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고 있는가, 교육에 능동적 주체로서 참여하고 있는가, 그리고 모든 아이가 정당한 관심을 받고 있는가이다.<sup>118)</sup>

**2. 비엔나선언 (Vienna Declaration and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1993년에 비엔나에서 개최된 인권에 관한 세계회의는 인권교육(human rights education)의 증진을 위한 향후 국제적 노력의 촉매제 역할을 하는 중요한 분기점이었다. 동 회의 결과로 채택된 비엔나선언 및 행동계획(The 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은 171개 국가에 의해 채택되었으며 범세계적인 인권교육의 강화방안을 담고 있다.<sup>119)</sup> 동 선언은 인권교육, 인권교육 훈련 및 공공정보는 공동체간의 조화와 이해 및 평화를 이룩하고 이를 보다 증진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부분임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확인하고 있다.

“국가들은 세계인권선언,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되어 있듯이 교육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존중을 강화하는 목적이 되도록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동 선언은 교육프로그램에 인권교육을 포함시킨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가들에게도 그렇게 할 것을 요청한다. 따라서 인권에 대한 교육과 필요한 정보의 보급 및 전파는 국제적 차원뿐만 아니라, 국내적 차원에서의 교육 정책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sup>120)</sup>

비엔나 세계회의는 또한 모든 국가와 기관에 대해 “공식 혹은 비공식적인 차원의 모든 교육 기관의 교과과정에 인권, 인도법(humanitarian law),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rule of law)를 교과과목으로 포함시킬 것”을 요청하고 있다.<sup>121)</sup>

118)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General Comment No. 13: The Right to Education, December 1999 UN Doc. E/C.12/1999/10 at para. 6.

119) 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UN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UN Doc.A/Conf.157/23 (1993).

120) Ibid., para. 33.

비엔나선언은 또한 인권에 대한 훈련과 정보제공의 의무도 모든 국가에게 부과하고 있다.<sup>122)</sup>

## 3.

### 유엔인권교육 10년 (United Nations Decade for Human Rights Education, 1995-2004)

1993년 비엔나회의의 인권교육에 관한 권고를 수락하며 UN 총회는 1995년 1월1일 UN 인권교육 10개년 계획(1995-2004)을 선언하였고, UN 사무총장이 제출한 행동계획(Plan of Action)을 적극적으로 수락하였는데,<sup>123)</sup> 인권교육 10개년 계획을 선언한 결의는 각국 정부로 하여금 행동계획(Plan of Action)을 국내적으로 적극 시행하여 궁극적으로 인권증진에 기여하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sup>124)</sup>

## 4.

### 제1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Plan of Action for the first phase of the World Programme for Human Rights Education, 2005-2009)

UN 인권교육 10개년 계획은 보다 구체적으로 제1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05-2009),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10-2014)으로 발전되었다.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WPHRE)은 그 출범부터 일련의 단계(phase)로 설정되어 있었는데 제1차 단계(First Phase)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기간으로서, 공식적인 초·중등교육기관에서의 정책교육, 입법교육 분야에 있어서의 인권교육의 통합흡수, 교수법과 학습의 과정, 교육환경, 교사나 그 밖의 교육관련 종사자의 교육 및 전문성 개발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sup>125)</sup>

121) Ibid., para. 79.

122) Ibid., para. 78.

123) United Nations Decade for Human Rights Education, UN Doc.A/RES/49/184 (1995).

124) Ibid., para. 6.

125) UN의 인권교육 권고사항(2004년)인 「세계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첫 번째 시기(2005-2007년)의 행동 계획에서도 초·중등학교 체제 내의 인권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육과정에 인권교육을 포함시키는 것은 UN의 「세계 인권교육 프로그램(world programme for human rights education)」(2004년)의 초·중등학교 체제 내의 인권교육 강화 방안에서 핵심적인 권고사항이다.
- 학교 인권교육과 관련된 연구를 기반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 전반적인 국가 교육과정과 교육 성취기준(educational standards)이 기본적인 기술과 능력으로서의 인권적인 가치, 지식, 태도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 인권교육의 개념, 목적, 교수학습 목표와 접근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 특별히 인권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을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
- 교육과정 내에서 인권교육의 위상을 정하도록 해야 한다.
- 민주시민교육, 사회과학교육, 역사교육 등에서 인권교육이 완전하고 명시적인 하나의 구성요소가

아동에 대한 인권교육은 교육에 대한 권리에 기초한 접근을 증진시키고, 교육을 통한 인권, 교육에서의 인권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교육을 통한 인권이란 교육과정, 교재, 방법, 훈련을 포함한 학습의 모든 요소와 과정들이 인권을 학습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보장한다는 것을, 교육에서의 인권이란 교육제도 안에서 모든 행위자의 인권의 존중과 권리를 보장하는 의미를 갖는다.

원래 제1차 단계는 2007년에 종료를 예정으로 했으나, UN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의 결의<sup>126)</sup>에 따라 2009년으로 기간이 연장되었다.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WPHRE)의 행동계획(Plan of Action)은 인권교육의 성공적인 국내적 프로그램의 실현을 위한 다섯 가지의 핵심요소를 확인하였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 교육정책(Educational policies);
- 정책수행(Policy Implementation);
- 교수법과 학습: 과정과 도구(Teaching and Learning): Process and Tools;
- 학습환경(Learning Environment);
- 교사나 그 밖의 교육 종사자의 교육과 전문성 개발(Education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of teachers and other personnel)<sup>127)</sup>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WPHRE)을 시작하고 수행하는 데 있어 전반적인 책임과 임무는 UN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에 있다. UN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은 인권교육의 국내적 행동강령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는데, 이는 UN 총회와 과거의 인권위원회(the Commission on Human rights), 즉 현재의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에서 국가의 인권교육에 대한 국내적 이행을 촉구하는 다수의 결의에 대해 국가들의 이행을 지원하고자 하는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다.<sup>128)</sup> UN 인권고등판무관실(OHCHR)은 인권교육의 국내적 행동강령의 단계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 1단계: 인권교육을 위한 국내 차원의 위원회의 설립(Establishing A National Committee For Human Rights Education)
  - 국내의 위원회는 인권문제나 인권교육에 경험을 가진 정부 혹은 비정부 기관의 대표들로

---

되게 해야 한다.

- 대부분의 학교 교사들이 인권교육에 대한 사전교육을 거의 받은 경험이 없다는 사실을 두고 볼 때에 이러한 인권교육을 위한 가이드북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126)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6/24 (2007).

127) UN Revised Draft Plan of Action for the First Phase (2005-2007) of the World Programme for Human Rights Education, UN Doc. A/59/525/Rev.1, Appendix (2005).

128)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s 49/184, 50/177, 51/104;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solution 1995/47, decision 1997/11.

구성되어야 한다. 국내의 위원회는 인권교육의 국내적 행동계획을 개발, 이행, 그리고 평가하는 문제에 있어 직접적인 책임을 진다.

2단계: 기초조사의 수행 (Conducting a Baseline study)

- 기초조사나 요구평가(needs assessment)가 인권교육과 관련한 지역적 혹은 국내적 요구 수준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인권교육의 현재의 현황, 필요성, 관련 자원 등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며 그 결과가 폭 넓게 홍보, 배포되어야 한다.

3단계: 우선순위의 확정 및 인권교육이 필요한 집단의 확인 (Setting Priorities and Identifying Groups in Need)

- 기초조사를 기반으로 단기, 중기, 장기적인 차원에서 인권교육의 우선순위를 확립해야 한다. 이러한 우선순위는 가장 긴급한 필요성과 기회를 기초로 하여 설정된다.

4단계: 국내적 계획의 개발 (Developing the National Plan)

- 기초조사에서 확인된 필요성에 대응하여, 국내적 행동계획이 개발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인권교육의 목표, 전략, 프로그램과 함께 이에 대한 평가 메커니즘을 담고 있어야 한다.

5단계: 국내적 계획의 이행 (Implementing the National Plan)

- 국내계획은 효과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이행의 문제는 인권교육과 관련한 정책, 법, 메커니즘 및 자원 등과 같은 관련 변수들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내 계획의 이행은 기본적인 원칙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사회구성원 모두를 위한 인권교육의 증진 원칙, 인권을 확인하고 인권이 충족될 수 있음을 보장하는 지역공동체와 개인에 대한 역량 강화 원칙, 인권보호를 위한 지구적, 지역적, 국내적 관련 문건이나 도구 혹은 메커니즘을 이용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의 함양 원칙 등이라고 할 수 있다.

6단계: 국내적 계획의 검토와 수정 (Reviewing and Revising the National Plan)

- 국내적 계획은 기초조사에서 확인된 필요성을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주기적인 검토와 수정이 이루어져야 한다.<sup>129)</sup>

이상과 같은 가이드라인은 제1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WPHRE) 행동계획의 국내적 이행을 감독하고 지원하는 데 있어 유용한 도구이다. 또한, 위의 가이드라인은 인권교육의 효과적인 국내적 실행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으며,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관행 형성의 적절한 예시가 될 수 있다.<sup>130)</sup> 제1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WPHRE)은 2009년에

129)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ddendum: Guidelines for national plans of action for human rights education, 1997, UN Doc. A/52/469/Add. 1, Section III.

130) Felisa Tibbitts, *Regional European Meeting on the World Programme for Human Rights Education, 5-6 November 2007-Conference Report*,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종결되었다.

5.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Plan of Action for the first phase of the World Programme for Human Rights Education, 2010-2014)**

UN 인권고등판무관실의 자문을 거쳐, 제2차 단계의 프로그램 실행의 필요함이 결론적으로 확정되었다. UN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결의 12/4에 의하여,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WPHRE, 2010-2014)은 고등교육 차원에서의 인권교육과 모든 직급의 교사, 교육 종사자, 공무원, 법집행 공무원, 군요원(military personnel)의 인권교육 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국가는 초·중등학교 차원에서의 인권교육을 계속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반복해서 확인하고 있다.<sup>131)</sup> 게다가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WPHRE)은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WPHRE)의 목표에 대한 명확한 언급을 하고 있는 데 다음과 같다.

- 인권의 문화(culture of human rights) 발전을 증진시킬 것(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a culture of human rights);
- 인권교육의 기본원칙과 방법을 담은 국제문건에 기반을 둔 공동의 이해를 증진시킬 것(to promote a common understanding, based on international instruments of basic principles and methodologies for human rights education);
- 국내적, 지역적 및 국제적 수준의 인권교육을 보장할 것(to ensure a focus on human rights education at the nat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 모든 관계자들의 행동을 위한 공동의 집단적 틀을 제공할 것(to provide a common collective framework for action by all relevant actors);
- 모든 수준에서의 파트너십과 협력을 강화할 것(to enhance partnership and cooperation at all levels);
- 성공적인 사례를 강조하고 동기부여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현재 진행 중인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조사, 평가 및 지원하며, 보다 새로운 형태로 발전시킬 것(survey, evaluate and support existing human rights education programmes, to highlight successful practices, and to provide an incentive to continue and/or expand them and to develop new ones).<sup>132)</sup>

131) United Nations, Draft Plan of Action for the Second Phase (2010-2014) of the World Programme for Human Rights Education, UN Doc. A/HRC/15/28. 27 July 2010, para. 11;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12/4 World Programme on Human Rights Education, UN Doc. A/HRC/Res/12/4, October 2009, para. 3.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WPHRE)의 초안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국제공동체는 인권의 실현에 있어 인권교육이 근본적인 기여를 한다는 점에 대해 계속적으로 공동의 인식을 표현하고 있다. 인권교육은 모든 공동체나 사회 전반에 있어서 인권을 현실화 시켜야 하는 우리 모두의 공동의 책임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인권교육은 인권침해와 폭력적인 갈등을 장기적으로 방지하고, 평등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증진시키며 민주적 시스템 하에서의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sup>133)</sup>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WPHRE)의 이행을 위한 행동계획 (Plan of Action) 초안은 제1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WPHRE)의 그것에 비해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는데, 고등교육에서의 인권교육을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행동과 공무원, 법집행종사자, 군요원의 인권교육 훈련을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구분하고 있다. 즉, 2010년 인권이사회 결의문 12/4에 의거해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은 제1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05-2009) 행동계획의 주요한 기초자료를 참고로 하여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을 제시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세부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인권실천을 진작할 수 있는 전략으로서 고등교육과 공무원, 법집행관 및 군인 등의 훈련 프로그램에 인권교육을 포함시키고 장려하는 것;
- 관련된 지속가능한 국가적 전략의 개발, 채택, 이행을 지원하는 것;
- 인권실천을 진작할 수 있는 전략으로서 고등교육과 공무원, 법집행관 및 군인 등의 훈련 프로그램에 인권교육을 포함시키고 장려하는 것;
- 관련된 지속가능한 국가적 전략의 개발, 채택, 이행을 지원하는 것;

고등교육과 관련한 행동계획은 많은 국제인권법 관련 문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과 준거들에 영향 받은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고등교육체계에 인권교육 정책의 입안을 위해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다.

- 고등교육체계내의 인권 및 특정 인권교육의 포함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및 입법을 개발하는 것: 인권교육의 법제도화, 인권교육 관련 조사연구에 기반한 인권교육정책, 인권원칙에 부합하는 대학정책 및 규정개발, 인권원칙 존중 교원의 채용, 심사, 보상, 징계, 승

132) United Nations Draft Plan of Action for the Second Phase (2010-2014) of the World Programme for Human Rights Education, UN Doc. A/HRC/15/28, 27 July 2010, para. 15.

133) Ibid., para. 1.

진정책 및 방침 수립, 채용, 고용, 훈련 및 승진에 있어서 성별 편견 철폐 정책 검토, 장애인 포함 취약집단에 접근권 보장 및 차별금지, 국가 자격 및 인증 기준에 인권훈련기준 포함;

- 관련 정책간의 응집성, 연관성 및 상승효과를 보장할 것: 국가고등교육계획, 전국민교육을 위한 국가계획, 지속가능한 발전교육 10년(2005-2014) 수립 및 통합적 교육정책에 인권교육을 포함;
- 교원을 위한 종합적인 인권교육 훈련정책을 채택할 것: 강사양성을 위한 인권교육 훈련, 교원에 대한 사전교육(pre-service), 현직훈련(in-service), 비정부기구와 시민사회단체의 인권교육활동 인정과 자격부여 및 지원, 인권교육 종사자 자격기준 마련;
- 인권교육에 대한 국제적 의무 이행: 교육권과 인권교육 관련 국제조약 비준 촉구, 유엔 각종 조약기구 제출 국가보고서에 인권교육관련 정보 포함, 국제인권감독기구가 제시한 권고사항 및 공지와 이행

공무원, 법집행관, 군인 등 관련 본 행동계획은 유엔 또는 그 외 전문가들이 인권기준에 부합하여 책무를 실천하도록 하며, 다음과 같은 국제인권기준의 문서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적용할 것을 제시하고 있으며 각국은 이와 같은 행동계획에 따라 이행된 방안에 대한 최종평가보고서를 프로그램 종결에 즈음하여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재직 전(pre-service) 및 현직(in-service) 훈련정책에 인권교육과정의 포함과 재직전 연수에 인권교육과정 의무설치 검토 및 포괄적인 인권교육정책 채택의 진작;
- 아동, 여성, 소수자, 장애인, 원주민 등 사회 취약집단에 적합한 공무원 채용, 훈련정책 채택;
- 인권훈련의 제도화로서 공무원, 법집행관, 군인 등의 건전한 국가훈련체계 구축 장려, 모든 관련 과목의 인권원칙 및 기준의 통합을 위한 적절한 인권훈련과정의 개발, 대학, 정부기관, 경찰대학 및 사관학교 등에 인권센터의 설립과 인권전문가 배치, 교육자 양성교육의 우선순위, 인센티브제도 도입, 인권훈련 평가와 영향 평가 메커니즘의 구축;
- 인권훈련의 인권기준 적합 여부, 전문성 강화에의 유익성, 감사체계 구축.

위에서 언급했듯이, 인권교육의 요소들은 기본적으로 정책, 정책이행, 교수법 및 학습, 교육 환경과 지속적인 전문성 함양을 포함하고 있다.<sup>134)</sup> 그리고 이러한 각 요소에 대해서는 일련의

134) UN General Assembly, Revised Draft Plan of Action for the First Phase (2005-2007) of the World Programme for Human Rights, UN Doc. A/59/525/Rev. 1 (2005), Appendix.

‘기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제1차 및 제2차(WPHRE)의 행동계획상으로 취해진 접근을 고려해 보면, 인권교육의 요소들을 다음과 같이 추출해볼 수 있을 것이다.

- ‘정책’은 입법과 정책 차원에서 인권교육을 강화하려는 국가의 공약(commitments)과 관계되며;
- ‘정책이행’은 그러한 정책적 공약 실현을 지원하고 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메커니즘과 조종의 제단계와 관계되며;
- ‘교수법과 학습’은 인권교육과 인권교육 훈련과정의 질적 향상을 이룩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교육, 훈련 및 학습에 대한 접근 그 자체와 관계되며;
- ‘학습 및 작업환경’은 인권이 실제 실행되고 체험되는 학습이나 작업의 공간 혹은 그 이상의 범위에서의 인권 문화의 증진을 위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과 관계되며;
- ‘계속적인 전문성 함양’은 인권교육이 결국 인권교육에 대한 전문적 기술을 갖고 있는 전문가에 의한 계속적인 전문성의 함양 없이는 현실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없다는 점에서 중요한 인권교육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 6.

**유엔인권교육훈련선언 (2011. 4)**

지난 2011년 12월 유엔총회결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된 유엔인권교육훈련선언(Declaration on Human Rights Education and Training)<sup>135)</sup>은 모든 사람들이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인권교육이 세대와 연령을 초월한 모든 사람의 평생교육의 과정임을 선언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권교육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져야하며 인권교육은 공식적인 형태나 비공식적인 형태의 교육을 모두 포함한다고 하였다. 동 선언은 무슨 내용의 인권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인권교육이 행해져야 하는지도 규정하고 있다. 즉, 인권교육은 교육하는 자와 교육받는 자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방식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인권교육이 왜 행해져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결국 개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그리고 완전하게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킬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남의 인권도 존중해줄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UN 인권교육 훈련선언의 채택은 국내 차원의 인권교육 담당자나 정책결정자에게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계속적으로 주의·환기시키고 있다.

135) 이 선언은 2008년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에서 그 초안이 작성되기 시작하여 2011년 3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되었고 2011년 12월 19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었다;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A/HRC/RES/16/1 (8 April 2011).

동 선언은 전문과 총 1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권교육의 정의 및 원칙과 함께 처음으로 인권교육 접근법(right to human rights education)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인권교육의 정의에 대해서는 인권에 대한 교육(지식적 측면)이며 인권을 통한 교육(기술적 방법-교수학습방법)이며, 인권을 위한 교육(자기존중 및 타인존중 태도)이다. 제3조는 인권교육은 평생교육으로서 사회 각 영역의 인권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제9조는 인권교육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책임은 국가에게 있고, 구체적으로 인권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국가정책 수립,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훈련 등을 강조하고 있다. 제10조에서는 NGO 등 민간영역의 인권교육의 중요성과 NGO 소속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제공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제11조에서는 인권교육을 위한 유엔 등 국제기구에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13조에서는 국제적 및 지역적 인권기구의 인권교육 역할 부여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제14조에서는 인권교육 훈련선언의 이해를 위한 국가적 조치의무 부여에 관해 규정한다.

## 7.

## UNESCO

UNESCO는 교육, 훈련, 정보 보급을 통한 인권지식의 증진 분야에 오랫동안 기여해왔다. UNESCO는 기본적으로 인권교육이야말로 인간 존엄의 가치를 건설하기 위한 매우 강력한 도구임을 강조한다. 인권에 대한 지식습득은 모든 사회와 공동체에서 인권이 단순한 이상이 아닌 현실로 자리매김하는 데 있어 매우 필수적인 요소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UNESCO를 통한 인권에 대한 지식의 보급은 특히 다음과 같은 일련의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 교육, 훈련, 연구 및 정보 보급을 통한 인권의 증진;
- 인권, 평화, 민주주의, 관용 그리고 국제적 이해의 증진;
- 주요한 국제인권보호 기준에 대한 지식의 보급;
- 인권보호의 위협과 장애에 대한 단행본, 매뉴얼 및 그 밖의 자료의 출판 및 보급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WPHRE)의 지원을 위한 UNESCO와 UNICEF의 공동 문건인 A Human Rights-Based Approach to Education for All이 중요하게 언급될 필요가 있다. 이 문건은 UN 차원의 인권교육을 위한 노력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이를 보다 공고화(consolidation)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동 문건은 교육에 대한 권리를 입법, 정책 그리고 프로그램의 차원으로 옹기는 포괄적인 전략 및 행동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sup>136)</sup>

136) UNESCO/UNICEF A Human Rights-Based Approach to Education for All, 2007.

## 8.

## 결론

유엔은 세계인권선언 이후 국제적으로 유엔인권교육의 기준을 국제적 문건을 통해 제시해왔다. 인권교육은 이제 세계적 차원의 보편적 흐름이며, 이에 따른 인권교육의 제도화가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국내에서의 인권보호의 문제는 동시에 국제적 차원을 갖게 되며, 동시에 국제적 인권기준은 국내적으로 미비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인권보호의 현실을 확인시켜 줌으로써 국내법적 권리의 신장에 기여할 수 있다. 물론, 개개 국가마다 서로 다른 문화적·정치적 구조 및 역사적 기원의 차이에 따른 상대성의 노정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음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인권교육과 관련된 국내정책결정자나 활동가들은 인권의 원칙과 가치, 기술을 지향하되 국제적 기준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권교육을 국가와 사회에 연계하며 실천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설치되면서 한국사회는 인권국가로의 새로운 출발에 나섰다. 한국사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으로 인권침해로부터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로 발전해왔다. 물론, 한국사회가 국제적 수준의 인권보호가 실질적으로 구현되고 있는 사회로 완전히 확립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인권교육’을 통하여 인권을 보다 실질화하고 확인하는 사회가 되어야한다는 점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유엔인권교육프로그램의 발전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 즉, 유엔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한국을 국제적 수준의 인권교육 시행 국가로 확고히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제적 인권과 인권교육의 확고한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이 시민인권교육, 인권교육의 평생화로 실천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국제적 흐름에 적극적으로 협력, 대처해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지적해야 할 것은 제2차 세계인권프로그램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인권교육과 훈련에 대한 평가 및 영향 평가의 중요성 등 인권교육의 내용과 측면이 다차원적으로 발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권교육의 환경조성, 전략수립 이행뿐만 아니라, 인권교육과 훈련, 인권교육에 대한 감독, 평가도 인권교육의 중요한 측면으로 인식되고 있다. 동시에 인권훈련의 실시도 인권교육 정책의 하나로 이해되고 있다.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은 지식의 공유, 기술의 전수, 태도의 형성 등을 통해 보편적인 인권문화 증진을 목표로 하는 교육, 훈련, 정보, 학습활동을 인권교육이라고 보고 있다. 유엔이 제시한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의 실천이행은 결국 한국을 진정한 인권국가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한국은 유엔회원국으로서 주요한 국제적 조약을 체결하고 이들 조약이 제시하는 규정들을 국내적으로 이행하려는 노력을 해왔다. 정부는 유엔이 제시한 인권에 대한 국내적 증진을 위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시행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인권증진 보호와 국제적 인권기준을 실천 행동을 보여 왔다. 한국은 유엔이 제시한 국제적 인권교육의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이 끝나는 2015년에 유엔의 프로그램 이행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국내적으로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이 제시한 인권교육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 II. 인권교육의 세계적 현황

### 1.

#### 서론

현재의 인권교육의 현황에 대해 각국 별로 자세한 관행을 모두 파악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인권교육은 국가기관과 비정부단체 등 인권교육의 당사자들이 상당히 폭넓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현황 파악의 문제는 인권 기구적 측면의 유형 사례와, 인권정책, 정책이행, 교수법과 학습, 학습 및 작업환경, 계속적 전문성 함양 및 인권교육의 평가 매커니즘을 중심의 논의를 주요국별 현황 차원에서 개괄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한다.<sup>137)</sup> 그러나 이 모든 기준에 부합하는 적절한 국가별 예시를 매우 구체적으로 해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힘든 작업이기 때문에 파악 가능한 범위에서 선별적으로 소개를 시도하였다.

### 2.

#### 인권 기구적 측면의 유형 사례

##### (1) 영국

영국의 경우 인권대책반을 내무부 산하에 설치하고 인권과를 헌법부 산하에 설치하였다. 인권과는 인권법(Human Rights Act)를 충실히 이행하는 데 그 주요 목적이 있다. 공교육 분야에서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개요를 살펴보면 시민성의 세 측면으로서 사회적, 도덕적 책임감, 지역사회 참여, 정치적 지각의 영역에서 민주주의와 관

137) 국가별 현황 파악을 위해 *Human Rights Education in the School Systems of Europe, Central Asia and North America: A Compendium of Good Practice*, Published by the OSCE Office for Democratic Institutions and Human Rights (ODIHR)를 참조하였음.

련하여 인권을 다루고 있으며, 인권법에 따라 인권 훈련프로그램의 자료개발 진행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시민의 권리와 의무, 편견과 차별, 갈등해소, 시민사회의 자발적 시민활동, 공공 서비스, 법률 및 형사제도, 여론의 형성, 지역공동체 활동, 경제체제 등이다. 영국은 인권정책을 관장하는 국가기구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권교육이 높은 수준의 책임성을 가지고 전개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또한, 시민성 교육이라는 이름하에 인권교육이 포함되어 있어서 인권교육의 독자성이나 정체성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 (2) 프랑스

프랑스의 경우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였는데 이 기구는 11개 관련 부처의 대표로 구성되며 주로 인권교육 실태조사, 인권교육 관련 수요 조사, 인권교육 행동계획의 실행 등에 관여한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내부적으로 4개의 활동 조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초·중등학교 영역, 대학 및 고등교육기관 영역, 성인교육(경찰, 군대, 법관, 교사, 사회복지사 등 특정 전문직 포함), 시민단체, 조합 및 노조 등의 영역이 그것이다.

## (3)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는 인권교육 서비스센터를 1997년 설립하였는데 설립의 주체는 외무부, 교육과학 문화부, 루드비히 볼츠만 인권연구소이다. 이 서비스센터의 목적은 공교육 내에서의 인권교육을 발전시키고 교사들에 대한 인권교육 훈련이다. 인권교육서비스센터는 주요 교사들에 대한 훈련, 인권관련 자료 개발 및 배포, 인터넷 소식지 배포, 교육프로그램 제공 등을 하고 있다. 주요한 활동의 사례로 언급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당국과 정기적으로 협력하여 기념행사 및 프로그램 개발 주도, 그라쯔(Graz) 시에서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필수 과정으로 채택, 1999년부터 공무원연수원에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선택 과정으로 개설, 1998년 민간 인권단체에 약 5억원의 인권활동 프로젝트 비용 지원(국가인권위원회, 2003a) 등이다.

## (4) 덴마크

덴마크는 국가인권연구소(The 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의 정보교육국(Information and Education Department)에 의한 활동이 있다. 덴마크는 전반적으로 국가의 인권보장 수준 및 국민들의 인권 의식이 높은 편에 속하고 국가 차원의 인권교육이 활발하다고 평가된다. 국가인권연구소의 정보교육국은 인권교육 사업을 국내, 국제교육으로 구분하여 시행, 인권에 관한 지식 전파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교육대상은 인권전문가, 사법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 국내 국립경찰대학, 민간단체, 교육기관 등이다.

국가인권연구소는 그 활동에 있어 유럽연합 및 유럽평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주요활동으로는 교육대상자별 인권교육 실시로 여기에는 첫째, 인권보호 및 향상은 사법 관련 기관의 변화에서 가능하다고 보고 경찰심문, 구금, 재판전 구금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둘째, 변호사, 검사 등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셋째, 국제파트너쉽 프로그램을 통해 30여개 국에서 인권관련 기본연수 실시 넷째, 국가인권기구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다섯째, Department of Partnership Programmes(DPP)를 통해 국제 및 지역인권제도에 대한 기본 지식을 참가 협력기관의 대표들에게 보급 여섯째, 전략적 사업계획으로서, 향후 새로운 목표그룹(target group)으로서 사기업 대표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 고려 일곱째, 파트너쉽을 맺은 국가를 상대로 1년에 2회, 1회에 2-3주간 인권연수 실시(예: 30여명 집단교육 시 20여명은 덴마크 외교부가 지원하고, 다른 10여명은 자비로 실시), 다음으로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활동이 있는바 여기에는 첫째, 주로 법집행공무원을 상대로,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에 15개의 파트너와 연수 프로그램, 연수교재, 이행계획 및 방법 등 개발 둘째, 인권과 경찰 훈련프로그램 개발 셋째, 교사, 사회복지사, 젊은 변호사, 대학생 등을 상대로 실시하는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더불어서 다양한 국제인권 세미나 개최, 인권도서관 운영(국가인권위원회, 2005b) 등을 언급할 수 있다.

### 3.

## 인권정책, 지침 및 기준의 현황

### (1) 스웨덴

스웨덴의 경우 차별 및 부당대우 금지법(Act Prohibiting Discrimination and other Degrading Treatment)을 2009년 제정하였는데 주관기관은 스웨덴 평등 옴부즈맨(Swedish Equality Ombudsman)이며, 이 법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책적 목적은 학교 교육의 현장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은 경험은 일생을 통해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하여 궁극적으로 인권교육을 학교에서부터 확실히 뿌리내리고자 하는데 있다. 동 법은 2009년 1월 발효하였으며, 이 법은 2006년에 학교에서의 차별금지를 목적으로 하는 차별금지법을 통합하여 그 적용대상을 광범위하게 확장시켰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즉, 학교 이외의 분야를 포괄하고 있는데, 이의 집행을 위해 ‘평등 옴부즈맨’(a single Equality Ombudsman)을 임명하였다. 동 법은 성별, 인종적 기원, 종교, 그 밖의 종교적 신념, 성적 경향, 장애 여부 등의 이유 등으로 차별받아서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법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사설기관에도 적용된다. 동 법은 특히 학교 당국으로 하여금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동 법의 장점은 특히 학교의 경우 광범위하게 존재할 수 있는 불평등이나 차별의 문제를 다

를 수 있다는 점이며, 동 법에 위반되는 상황에 대한 감독을 위한 메커니즘에 대해 정교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전반적인 동 법의 집행은 위에서 언급한 옴부즈맨의 감독 책임 하에 진행됨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이행 메커니즘을 확보하고 있다.

## (2) 스페인

스페인 바스크 자치 지역의 경우 ‘인권과 평화를 위한 바스크 지역 교육계획’(Basque Education Plan for Peace and Human Rights (2008-2011))이라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의 주관기관은 바스크 자치정부 법무부 산하 인권감독국(Human Rights Directorate, Department of Justice, Work and Social Security, Basque Government)이다. 이 제도가 의도하는 정책적 파급효과의 주요 대상은 교육정책 담당자, 교육 종사자, 학교 교사, 시민단체, 언론 등이다.

동 교육계획의 목적은 바스크 지역의 다양한 인권교육 종사자들 간의 상호이해를 촉진시키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동 계획은 UN 인권고등판무관실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국내적으로 이행하자는 취지가 있으며 인종, 종교상의 대립 가능성이 충분한 바스크 지역에서 교육을 통한 인권의 보호와 증진의 중요성을 명확히 확인하는 데 그 강조점을 두고 있다. 동 계획은 네 가지의 전략적 목표를 갖고 있는데,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이해의 고양, 인권에 대한 사회적 교육 시행, 인권교육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작동, 그리고 바스크 지역의 인권교육 정책의 조율 등이 그것이다.

동 계획의 장점은 교육계획의 실행에 있어 바스크 자치정부와 시민사회 조직이 함께 연계하여 정책을 집행해 나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계획의 실천과 이행에 대한 감독과 평가의 메커니즘을 함께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다.

## (3) 독일

독일의 경우 ‘학교 내에서의 인권기준(Standards of Human Rights Education in Schools)’을 마련하였다. 이 제도의 주관기관은 ‘인권포럼’(Forum Menschenrechte, Working Group on Human Rights Education, Forum on Human Rights)이며, 이 제도가 영향을 미치려는 주요대상은 학교의 교과과정을 마련하는 담당자나 인권정책 담당자들이다. 이 제도의 목적은 모든 단계의 학교 교육과정에서 인권을 가르치는 포괄적인 프레임워크를 공급함으로써 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을 활성화시키고자 함이다.

이러한 ‘학교 내에서의 인권기준’은 초·중교 및 직업학교에서 인권에 대해 학생들이 ‘무엇을’, 그리고 ‘왜’ 배워야 하는가의 기본적 문제에 대한 개념적 설명을 담고 있으며, 인권교육의 항목을 다른 교과과정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독립적으로 발전시키고 그 질적 평가 기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깊다. 동 제도는 특히 독일이 가입하고 있는 인권조약을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특히, 비정부기구와 정부당국이 공조하여 인권교육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점에서도 그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 (4) 스위스

스위스의 경우 취리히주 공립학교에서의 “이슬람 학생들 보호를 위한 기준”(Muslim Pupils in State Schools: Recommendations of the Canton of Zurich)이라는 제도를 마련하였는데 주관기관은 취리히주 교육청(Department of Education, Canton of Zurich)이며, 이 제도의 정책적 파급효과 대상은 주로 교육당국, 학교장 및 교사들이다.

이 제도의 목적은 학교에서 이슬람 문화와 종교를 조화롭게 수용하며 운용하려는 것이다. 1989년 이슬람 지역공동체와의 협의를 거친 이후 취리히주 교육청은 공립학교에서의 이슬람 학생들의 보호와 통합의 문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다. 이슬람교는 스위스에서 주요한 종교가 되고 있으며, 이슬람 학생들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989년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그 후 여러 관련 단체와 종사자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발전적으로 개정되었다. 동 제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종교적으로 성스러운 날의 학교 수업 일시 휴강
- 라마단 시기의 개인 교습 일시 중지;
- 금요 기도를 위한 특별 시간 부여;
- 체조나 수영 교습에 있어서의 특별 규정 마련;
- 캠프나 수학여행에서 있어서의 참여 규정;
- 제복상의 규제 마련;
- 종교적 공휴일에 관한 규정 사항

이 제도의 장점은 학교장이나 교육종사자들에게 이슬람 문화의 중요성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켜주며, 이슬람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을 고려한 학교정책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1989년의 권고적 가이드라인이 관련 교육 종사자를 광범위하게 포함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발전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1) 벨기에

벨기에의 경우 다문화적 협동교육(Co-operative Learning in Multicultural Groups (CLIM))이라는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주관기관은 Ghent 대학의 다문화, 다양성 존중 센터(Steunpunt Diversiteit & Leren, Centre for Diversity and Learning)이며, 이 정책은 주로 모든 단계의 학교의 교사와 교사 양성 기관을 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동 프로그램의 목적은 학생들로 하여금 다문화적 환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끔 하기 위함이며, 이는 학교 교실에서부터의 다문화적 환경에 대한 적극 참여교육이 결과적으로 다문화사회인 벨기에 사회의 학생들로 하여금 그러한 환경에 적극적으로 적응하고 참여하게끔 하기 위함이다.

이 프로그램은 실제 학교 수업에서 다문화적 환경을 이해하고 그런 환경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전략을 적용함으로써 실천되고 있다. 학생들로 하여금 과제물 수행이나 프로젝트 수행 등의 방식으로 다문화적 환경에 노출된 학생들이 상호협력과 상호연구 등을 중심이 된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프로그램상의 장점은 다문화적 환경에 학생들이 스스로 노출됨으로써 소수민족에 속한 학생들의 애로점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줌으로써 상호이해와 상호협력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점이다.

## (2)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의 경우 ‘모든 사람들은 권리 교육’(Everybody has Rights/is Right?! Trainings for Everyday Life Together)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주관기관은 학교에서의 시민교육을 위한 오스트리아센터(The Austrian Centre for Citizenship Education in Schools)이며, 이 정책에 영향을 받도록 의도하는 주요대상은 초·중고교 교사들이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라는 장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인권을 존중하는 기술과 근본을 강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갈등을 해결하는 효과적인 능력은 오늘날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가치관과 신념의 다양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런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능력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상호존중과 상호협력의 중요성을 교육할 뿐만 아니라, 이 정책은 차별적인 관행이 존재할 경우 이에 대해 대항하는 기술을 배양하는 데도 그 목적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연속적인 워크숍을 통해 시행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 특색이다. 이 연속적인 워크숍은 다섯 개의 기본 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2시간 30분정도 진행된다. 기본 주제는 다음과 같다.

- 다양성의 관리 (Managing diversity);
- 비폭력적인 갈등 해결 (Non-violent conflict resolution);

- 상호존중 (Mutual respect);
- 의사소통과 인격 (Communication and personal integrity);
- 교실에서의 민주주의와 협력 (Democracy and co-operation in the classroom).

이 프로그램의 장점은 교실에서의 인간관계를 통한 상호이해와 상호존중 및 갈등조정의 사회적 기술을 육성한다는 것이며 이것은 인권존중의 가장 중요한 측면으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에 실로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러한 교실에서의 인권교육의 훈련을 통한 인권교육 정책의 실행은 사실상 정부의 교육당국과 비정부기구 및 민간연구소 등의 상호협력 하에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 (3) 미국

미국의 경우 ‘인권과 봉사 매뉴얼’ (Human Rights and Service-Learning Manual)을 일선 교육현장에 배포함으로써 인권교육의 정책적 수행이 진행되고 있다. 이 정책의 주관기관은 Human Rights Education Associates, Inc. (HREA)와 Amnesty International USA이며, 정책적 파급효과의 주요대상은 중학교 교사나 초급대학의 교수들이다.

이 프로그램은 종종 ‘봉사교육’ (service-learning)이라고 명명되기도 하는데, 지역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봉사의 정신을 내면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봉사교육은 사회적 책임의식을 고양시키며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의 교육과정을 위한 구체적인 커리큘럼에 통합되어 직접적인 교육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인권과 봉사 매뉴얼’은 특히 다음과 같은 목적달성을 의도하고 있다. 즉,

- ‘봉사교육’을 통해 중학교에서부터 초급대학의 교육 담당자들을 인권교육의 실천적 차원으로 끌어들이며 (Engage educators currently utilizing service-learning in the practice of human rights education);
- 인권교육 전문가나 인권교육 훈련담당자들이 ‘봉사교육’을 통해 인권교육을 가르치게 할 수 있으며 (Enable human rights educators and trainers to teach through service learning);
- ‘인권과 봉사 매뉴얼’에 나타나는 행동의 범위를 넘어서서 일선의 교육 담당자에게 인권교육을 증진시킬 수 있는 도구와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Provide the tools and building blocks for teachers to promote human rights education and service-learning far beyond the scope of the activities included in this manual).

‘인권과 봉사 매뉴얼’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그것은 인권에 대한 개괄적인 행동 소개, 어떻게 행동을 구성할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인권과 봉사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20여 가지의 교육계획이다. 또 부록으로는 인권관련 문건과 관련 용어에 대한 해설, 그 밖의 인권과 봉사교육에 대한 참고문헌 등이 수록되어 있다.

구체적인 교육계획(lesson plans)은 다섯 개의 주제로 나누어지는데, 그것은 환경, 빈곤, 차별, 교육에 대한 아동권리, 건강 및 법과 정의이다. 각각의 분야는 세 개 혹은 네 개의 봉사교육 프로젝트를 포함하고 있다.

인권의 차원은 개개 봉사교육의 프로젝트 안에 포섭되어 있다. 그리고 동 매뉴얼은 일선 교육 담당자들로 하여금 봉사교육 프로젝트와 관련된 인권의 차원을 추출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예를 들면, 노숙자들의 거처 마련을 위한 봉사교육 프로젝트를 주거에 대한 인권(right to housing)과 결합시킴으로써 교육을 받는 주체들이 지역공동체의 노숙자들의 주거문제와 다른 나라에서의 주거에 대한 권리(right to housing) 침해 문제를 상호연관해서 비교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주거가 없다는 것이 개인의 여타 인권의 접근 가능성, 이를테면, 건강권이나 근로권 등에 어떠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러한 인권침해의 현실을 종식시키기 위해 행동을 취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우게 된다.

이러한 매뉴얼의 크나큰 장점이라면 사회봉사교육에 참여하는 일선 교육 종사자들에게 인권의 차원을 소개시켜줄 수 있다는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인권교육의 직접적인 상호작용 효과를 낳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 (4) 영국

영국의 경우 Impetus Youth Award: Project-Based Learning to Promote Human Rights 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주관기관은 Impetus/Institute for Global Ethics이다.

동 프로그램의 목적은 아동과 청소년들로 하여금 인권의 개념을 탐구하게 하는 동기를 부여하고 지역사회의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 그러한 인권 지향적 교육적 효과를 적용하기 위함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영국의 인권법(Human Rights Act)의 바탕에 깔려있는 정신과 가치의 중요성을 아동과 청소년들이 분명히 인식하게끔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Impetus Youth Award’ 프로젝트를 통해 아동과 청소년들은 인권의 의미를 심도 있게 배우고 시민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게 된다. 이 프로젝트는 그룹별로 진행되며 각각의 성과에 대한 보고서는 Impetus Youth Award의 웹사이트에 제출된다.

동 정책의 장점은 인권교육 활동, 지역공동체 프로젝트 그리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홍보의 차원이 하나로 통합될 수 있어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Impetus Youth Award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 및 인정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 5.

## 인권교육의 교습법과 학습 현황

## (1) 스웨덴

스웨덴의 경우 Life-Link Peace Education Programme: Action Projects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주관기관은 Life-Link Friendship-Schools Association 이 프로그램이 정책적으로 염두하고 있는 주요대상은 초등학교 수준의 아동과 청소년이다. 이 프로그램은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평화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교실이나 학교의 정원, 혹은 인근 지역에서 시행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은 학교 내의 학생 조직을 통해서 실행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2시간 반 정도의 시간으로 진행되는 것을 기본 틀로 하지만, 내용에 따라서는 수일에 걸쳐 연속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그리고 실천적 측면은 주제와 함께 연관되게끔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테면, 개인적 권리보호와 타인에 권리존중, 자연환경의 보존 등의 주제로 연속성을 띠며 실천적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주제를 다양하게 확대시킬 수 있는데, 학생의 권리 및 책임의식 고양, 성의 평등, 장애인에 대한 보호의식 등이 그것이다. 학교당국은 이러한 학생들의 인권교육의 성과를 해당 웹사이트에 보고하게 된다. 학교당국이 그와 같은 리포트를 제출하게 되면 Life-Link network에 자동적으로 등록되게 된다.

이 웹사이트는 교실과 학교에서 벌어지는 실천적 인권교육의 내용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수록한다. 또한, 일정한 실천적 교육과정을 완수하면 이수증서(diplomas)를 수여하기도 한다. 별도의 매뉴얼도 제공되는 데 약 60페이지 정도의 분량인 매뉴얼은 Life-Link에 의해 제공되는 다양한 인권교육 네트워크에 대한 간단한 지침 등이 소개되어 있다. 예를 들면, 스웨덴의 Uppsala에서는 약 75개의 학교가 매년 5월에 3시간 정도 ‘청결 캠페인’(clean-up)이라는 실천적 인권교육을 실행하고 있다. 이 활동은 학교의 교과과정의 일환으로 통합되어 있으며(가령, 생물학, 사회학 또는 물리학 교과과정에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실천적 인권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Like-Link과 지역 조직에 의해서 일종의 수료증(certificates)이 수여된다. 2000년 이래로 3000여개의 다양한 실천적 인권교육의 프로그램이 Life-Link 웹사이트에 등록되어 있으며, 이에 관련된 학생 수는 25,000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그리고 매년 10,000명의 부모와 2,000명의 학교 교사들 및 상당수의 전문가들이 이 프로그램에 관여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장점은 인터넷을 통해 공공적으로 실천교육을 공유하고 학생, 교사를 함께 연결하면서 외연을 대폭적으로 넓혀갈 수 있다는 점이다.

## (2) 미국

미국의 경우 Human Rights for All! (책자) 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주관기관은 Street Law, Inc.이며 프로그램이 노리는 주요 파급 효과적 대상은 아동 및 청소년이다.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 12세 이상의 청소년들에게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의 가치와 중요성 및 관련 문제와 쟁점들에 대해서 교육시키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다른 곳 이 아닌 바로 미국에서 여러 형태의 인권침해의 문제가(예를 들면, 빈곤, 건강보호의 미흡한 사회적 시설,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차별, 고문 등)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내용은 인권의 다양한 차원에 대한 다섯 개의 장(chapter)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기본 틀은 세계인권선언이다. 다섯 개의 섹션은 다음과 같다.

- 인권이란 무엇인가(What are Human Rights?);
- 민주국가에서의 정치적 권리(Political Rights in a Democracy);
- 국가안보와 구속에 따는 공정 절차(National Security and Fair Procedures Following Arrest);
- 사회적 및 경제적 권리(Social and Economic Rights); and
- 언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가와 그런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When Human Rights Abuses Occur: What Can Be Done?)

이 책자를 이용한 방식으로 다양한 인권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학생들로 하여금 소집단을 구성해서 상호토론과 사례분석을 하게 하고 발표하는 방식 등이 그것이다. 이 프로그램의 장점은 국가의 정치질서와 법의 지배(rule of law)라는 헌법적 원칙을 교육시킴과 동시에 그것이 인권보호의 근본적 원리임을 주지시키면서 실천적 인권교육으로 확장되게끔 유도하는 것이다. 즉, 학생들은 인권의 문제를 헌법적 가치 및 경찰행정 그리고 국가안보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이를 현실에서 실천하는 교육을 습득하게 된다.

## (3) 프랑스

프랑스의 경우는 Shared Rights - From Human Rights to Children's Rights: An Online Library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주관기관은 기관은 Association Droits Partagé (Shared Rights Association)이며, 이 프로그램이 정책적으로 파급효과를 의도하는 주요 대상은 유치원 아동부터 초급대학생 및 학교 교사, 학부모 등이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학생들로 하여금 일상생활에서 남과 ‘더불어’ 사는 인권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함이다. 이 Shared Rights라는 프로그램은 일종의 온라인 도서관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며, 이는 인권문제의 주제별(thematic)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 도서관을 통해 학생과 교사들은 인권에 관련된 다양한 문헌자료 및 영상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 또한, 이들 자료들은 계속적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다. 온라인 도서관을 통해 교사와 학생은 학습상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인권관련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웹사이트에는 학교 교사들을 위한 섹션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서 학생들의 교육 단계에 따른 다양한 교수법과 멀티미디어 자료들이 마련되어 있다. 교사들을 위한 섹션은 또한, 학교에서 개발한 다양한 실천적 인권교육의 행동사례와 교사들끼리의 교수법에 관한 정보교환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도서관은 유네스코(UNESCO), 프랑스 교육부 등 공적기관의 후원도 받고 있으며, 또한 긴밀히 연계되어 프로그램을 개발·발전시키고 있다.

이러한 온라인도서관 방식을 통한 인권교육의 방식의 장점은 인권 관련 담당자들이 자신들의 관심 주제에 맞는 다양한 자료나 정보를 얻으면서 적절한 교육환경에 신속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 (4)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는 Understanding and Teaching Human Rights: Teachers' In - Service Training이라는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주관기관은 ETC - European Training and Research Centre for Human Rights and Democracy이며, 이 프로그램이 의도하는 정책적 파급효과의 대상은 초·중등학교 교사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인권교육에 대한 트레이닝을 받은 교사들은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인권의식을 함양시킴으로써 학생들의 인권의식에 큰 교육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불어 이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교실의 분위기가 보다 친인권적으로 변할 수 있으며 학교 전체도 친인권적인 환경으로 바뀔 수 있다.

이 프로그램 역시 인터넷의 웹사이트를 통해 다양한 인권 매뉴얼을 제공한다. 학교 교육 담당자들은 이러한 웹사이트상의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여 인권교육의 프로젝트를 구체화시키며 교실에서 실천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 매뉴얼은 14개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2006년에는 영어로 출판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NGO와 연계한 다양한 워크숍을 통해 교실에서의 인권교육의 내실화에 대해 상호의견을 교환한다. 2009년까지 약 500명의 교사들이 참여했다.

### (1) 미국

미국의 경우 Holocaust and Human Behavior: An Online Seminar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주관기관은 Facing History and Ourselves라는 NGO이다. 이 프로그램이 노리는 주요대상은 중고등학교 선생님과 교육 종사자 및 NGO 간부 등이다.

이 프로그램은 일련의 세미나로 운영되는데 세미나의 목적은 교육 종사자들로 하여금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학생들이 인권과 관련된 좌절과 희망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인권의식을 고양하고 시민적 책임의식을 공고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 종사자가 유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 세미나는 온라인상으로 웹사이트에 접근가능하기 때문에 학생 및 교육 종사자에게 폭넓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온라인 세미나로서 “Holocaust and Human Behavior”는 나치체제하에서의 민주주의 붕괴와 대규모 인권침해의 문제를 심도 있게 토론한다. 이 세미나는 나치의 대두 역사와 이로 인한 홀로코스트의 참상을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Facing History and Ourselves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종류의 자료와 연구방법론도 심층적으로 검토한다. 세미나 참가자들은 유대인 및 소수인종 집단이 어떠한 차별과 탄압을 받았는가를 배우며 결코 역사란 것이 필연적인 과정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한다. 세미나의 종결 세션에서는 이미 토론되었던 주제들을 종합적으로 토론했으며 그러한 대규모 인권 탄압과 관련된 사람들의 개별적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들이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는가에 대해 심층적으로 고민해본다. 나아가 궁극적으로 차별방지와 배타적인 사회구조의 타파 및 윤리에 기반을 둔 정책결정, 민주주의 제도에서의 개개인의 참여 문제 등에 대해서도 생각해본다.

이러한 세미나를 통해 매우 중요하게 지적해야 할 점은, 홀로코스트에 대한 역사적 이해를 통해 우리 시대의 문제점과 비교, 연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홀로코스트의 경험과 관련된 학살 및 과거 남아프리카 사태를 연계해서 비교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온라인 세미나’는 보통 8주 정도 기간으로 진행되는데, 매주 세미나 참석자들은 문헌 자료 검토, 비디오 자료를 통한 시청각 교육 및 온라인상의 다양한 토론에 참여한다. 세미나 참가자들은 매주 4시간 정도의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요구되며 이러한 교육훈련 과정을 통해서 교육 종사자들은 다양한 루트를 통해 관련 문제들의 귀중한 동료들을 만들어가는 경험도 쌓게 된다.

세미나의 참가 후에 교육 종사자들은 ‘Facing History and Ourselves’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자료와 정보와 접근할 수 있다. 예를 들면,

- 중·고교의 일선 교육현장에서 유사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의 온라인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Personalized on-line support in implementing the programme in their middle or high school classroom);

## 114 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안 관련 연구

- 인권교육 세미나와 관련된 20여 이상 종류의 참고서적과 안내 책자에 접근할 수 있으며 (over 20 resource books and study guides that relate the programme to issues in the world today);
- 인권교육 학습방식이나 교과목 모델 및 그 밖의 관련 자료들에 접근할 수 있으며 (Facing History's on-line educator resources with lesson plans, curriculum modules and other resources); and
- 온라인을 통한 혹은 직접적인 대면 형식의 워크숍, 포럼, 세미나 혹은 컨퍼런스에 접근할 수 있다 (On-line and face-to-face workshops, forums, seminars and conferences).

2009년까지 세계 31개국의 교육 종사자들이 이러한 온라인 세미나 과정을 이수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장점은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교육과정(자료의 독해, 토론, 멀티미디어 시청 및 각종 상호작용적 행동들)을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점이며, 이러한 온라인 방식은 지리적인 한계를 극복하며 다양한 곳에서의 교육 종사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 (2) 벨기에

벨기에의 경우 Religious Diversity and Anti-Discrimination Training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주관기관은 CEJI - A Jewish Contribution to an Inclusive Europe이고, 이 교육훈련 과정의 주요대상은 교육 종사자, 학교 선생님, 젊은 지도자 그룹이다.

이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를 깊이하고, 문화적 편견과 차별과 싸우며 상호이해와 상호존중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특히, 일선 교육현장에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종교적 배타성이 교실에 스며들지 않도록 하는 "training of trainers"라는 종교적 다양성의 존중을 강조하는 워크숍이 있다.

종교적 다양성 존중과 차별금지 교육훈련 프로그램(Religious Diversity and Anti - Discrimination Training programme)은 이틀에 걸친 훈련 세션과 5일에 걸친 워크숍으로 구성된다. 동 프로그램은 갈등적 요소의 종교적 대립 문제에 대처하는 교수법을 제공한다. 워크숍 참가자들은 상호이해의 문화적 학습방법을 이용하면서 각종의 연계된 상호작용적 행동을 습득하게 된다. 이것은 교육 종사자를 위한 핸드북(Handbook for Adult Educators)에 잘 나타나 있다.

## 7.

## 인권교육 시행의 평가 및 측정 메커니즘 현황

## (1) 영국

영국의 경우 University of Sunderland 주도의 인권교육 평가시스템이 시행되고 있는데, 본 제도의 목적은 초등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의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 등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한 평가시스템의 구축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종사자가 직접 참여하여 인권교육의 현황을 조사하여 평가하는 것으로서 26명의 학교교사가 직접 참여하여 이루어졌으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시행되었다. 각 초등학교마다 평가의 방법은 구체적으로 다를 수 있지만, 학교 내에서의 차별금지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런던 등 16개 지역에서 지역에서 시행되었으며, 대상학교는 모두 초등학교이다. 이러한 인권정책교육 평가방법은 학교교사들이 직접 일선에서 보고 느낀 점을 참고해서 평가한다는 점에서 독특한 방식이라고 보이며 결과적으로 인권교육 정책에서 긍정적인 피드백 효과를 냄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정책적 전환을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 (2) 캐나다

캐나다의 경우 International Centre for Human Rights Education이라는 기관에서 인권교육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3주간의 교육담당자가 참석한 이 평가 메커니즘의 목적은 인권교육을 평가함으로써 피드백 효과를 높이고자 함이다. 평가는 설문지 방식에 의한다. 3주간의 교육담당자 세미나가 끝남과 동시에 설문작업이 끝나고 그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이는 평가리포트 작성으로 이어지고 평가에 따른 권고사항을 담는다. 이 보고서는 웹사이트 등으로 공시하여 외부에서도 접근 가능하도록 한다.

##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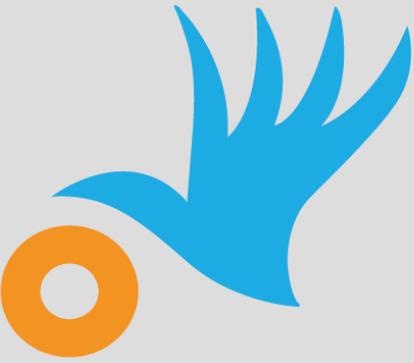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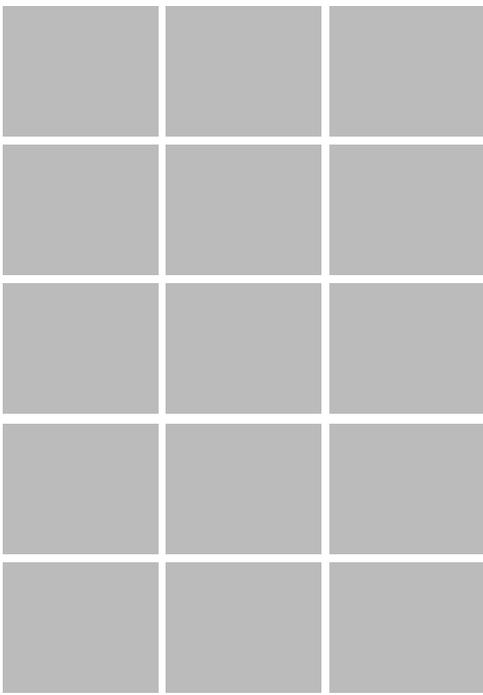
## 인권교육 국별 현황의 시사점

위에서 살펴본 각국의 인권교육의 현황은 개개 국가의 문화적 특수성, 역사적 배경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그 장단점을 논하기는 힘들 것이다. 다만, 전반적인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고 할 것이다. 즉, 인권교육의 다양화, 전문화, 집중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위에서 살펴본 사례들은 다양한 대상과 방법, 내용을 포함하는 실질적인 인권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인권교육의 대상 선정 및 교육, 인권교육 전문가 양성을 주도하는 조직 중심의 인권교육이 체계적으로 집중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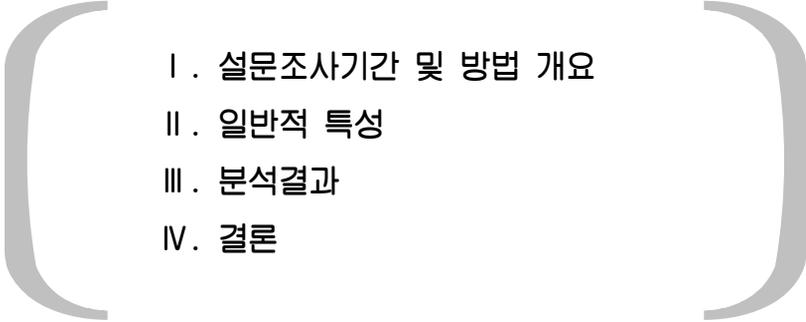
한국의 경우 인권교육의 연구와 교육 등이 주로 국가인권위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민간단체에서 보다 활발하고 체계적인 인권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인권교육 교재 발간, 전문가 양성 등의 문제가 민간단체 차원에서 활발히 이루어짐으로써 인권교육의 전문화가 보다 심화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유관 정부부처 및 민간단체의 긴밀한 협조체제하에서 인권교육 내용의 다양화뿐만 아니라, 전문가 양성과 인권교육 평가 메커니즘의 구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위의 국별 사례는 민간단체 중심의 인권활동과 인권교육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과 운용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국가기관을 중심으로 한 인권교육의 중요성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민간기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인권교육의 효용성에서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모든 개인이 다양한 인권교육을 언제 어디서든지 제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민간기구의 인권교육 제공자의 역할을 국가는 보장하고 지원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인권교육은 평생교육이며, 시민성 의식의 성장과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인식하고 다양한 계층과 분야에서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차원으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 제 3 장

# 인권교육에 대한 전문가 실태조사 분석

- 
- Ⅰ. 설문조사기간 및 방법 개요
  - Ⅱ. 일반적 특성
  - Ⅲ. 분석결과
  - Ⅳ. 결론



# 제3장 인권교육에 대한 전문가 실태조사 분석

## 1. 설문조사기간 및 방법 개요

### 1. 조사기간

2011년 11월 15일-12월 9일 (25일간)

### 2. 조사방법

이메일을 통한 설문지 배포 및 수거, 면대면 조사

### 3. 조사대상

총 278명

- ▶ 인권교육 직접 실시 및 인권교육 정책 수립에 경험이 있는 전문가
- ▶ 인권교육 연구모임에 참여하는 전문가
  - 국가인권위원회: 현직 직원 - 30명, 전직 - 4명, 인권위원 - 10명
  - 시민사회: 인권, 복지, 이주, 장애, 감염인, 성소수자, 교육, 기타
  - 정부기관: 교육청 - 8명, 시청 - 1명

### 4. 응답자

총 51명

- ▶ 국가인권위원회: 15명

- ▶ 초·중등 교원: 1명
- ▶ 대학교: 17명 (16명)
- ▶ 시민사회: 19명

<표 18> 각 영역별 설문조사 응답률

	국가인권위원회	초·중등	대학	시민사회	정부기관	기타(복지, 보건의료 등)	총계
배포수	44	6	42	171	9	6	278
응답수	15	1	16	19	0	0	51
응답률	34	16.7	38	11.1	0	0	18.3

## 5. 분석방법

### (1) 자료 처리

분석인원: 51명

- ▶ 인권에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전문가 51명의 응답을 근거로 분석
- ▶ 분석도구: IBM SPSS Statistics 19

### (2) 분석방법

- 설문조사에 응한 51명의 전문가들의 일반적 특성과 인권교육에 대한 관련한 질문에 대해 빈도분석을 하였다.
- 인권교육의 가장 큰 장애요인 3가지에 대해 다중응답분석을 실시하였다.
- 순위에 따른 선택 문항에서는 순위에 따라 각각 가중치를 취하여 다중응답빈도 분석 및 순위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 인권교육활동 평가에 관한 질문은 5점 척도 측정 된 것을 점수로 사용하여 기술통계량을 계산하였으며, 영역에 대한 전체 평가점수를 계산하여 이를 일반적인 특성에 대해 t-test, 분산분석을 하였다.
- 소규모 조사로 t-test나 분석 적용이 맞지 않은 경우는 일부 항목에서 Mann-Whitney

test나 Kruskal-Wallis test을 적용하였다. 단 자료 해석은 평균을 이용하였다.

- 각 항목에 대해 일반적 특성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6.86\%$

## II. 일반적 특성

### 1.

#### 인구통계학적 특성

인권교육발전 10개년 기본계획 연구를 위한 조사에 응답한 전문가 51명의 성별, 연령, 인권교육 경력, 활동영역은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났다.

전문가들의 성별은 남자 70.6%(36명), 여자 29.4%(15명)이었다. 연령은 30-39세가 27.5%(14명), 40-49세 52.9%(27명), 50-59세 19.6%(10명)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의 인권교육경력은 0-5년 27.5%(14명), 6-10년 35.3%(18명), 11-20년 27.5%(14명), 21-30년 5.9%(3명), 31년 이상과 무응답은 각각 2.0%(1명)로 나타났다. 활동영역은 초·중등학교 2.0%(1명), 대학교 31.4%(16명), 시민사회 33.3%(17명), 국가인권위원회 25.5%(13명), 기타 2.0%(1명), 무응답 5.9%(3명)로 나타났다.

특성	범주	빈도 (명)	퍼센트 (%)
성별	남자	36	70.6
	여자	15	29.4
연령	30-39세	14	27.5
	40-49세	27	52.9
	50-59세	10	19.6
인권교육경력	0-5년	14	27.5
	6-10년	18	35.3
	11-20년	14	27.5
	21-30년	3	5.9
	31년 이상	1	2.0
	무응답	1	2.0
활동영역	초·중등학교	1	2.0
	대학교	16	31.4
	시민사회	17	33.3
	국가인권위원회	13	25.5
	기타	1	2.0
	무응답	3	5.9
<b>합계</b>		<b>51</b>	<b>100.0</b>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분석에서는 성별과 연령은 위의 조사결과와 동일하게 사용했으나 인권교육경력은 11년-20년, 21년-30년, 30년 이상을 묶어 11년 이상으로 처리하여 분석하였으며, 활동영역이 초·중등학교와 기타인 전문가는 활동영역에 따른 분석에서는 제외하여 활동영역별 분석에서는 대학교, 시민사회, 국가인권위원회 3가지 영역의 전문가들에 따라 분석하였다.

특성	범주	빈도 (명)	퍼센트 (%)
인권교육경력	0-5년	14	27.5
	6-10년	18	35.3
	11년 이상	18	35.3
	무응답	1	2.0
활동영역	대학교	16	31.4
	시민사회	17	33.3
	국가인권위원회	13	25.5
	무응답	5	9.8
합계		5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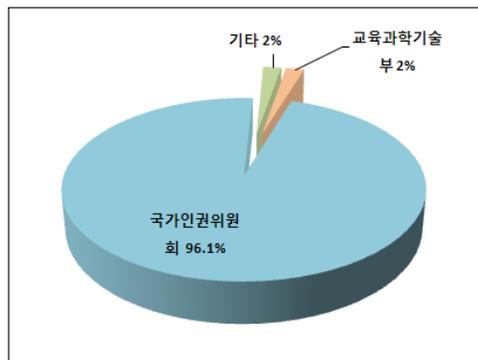
### III. 분석결과

#### 1. 인권교육 수행주체

##### (1) 인권교육의 정부 내 주무부처

인권교육의 정부 내 주무부처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 96.1%(49명)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과학기술부, 기타로 각각 2.0%(1명)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 목	빈도 (명)	퍼센트 (%)
교육과학기술부	1	2.0
국가인권위원회	49	96.1
기타	1	2.0
합계	5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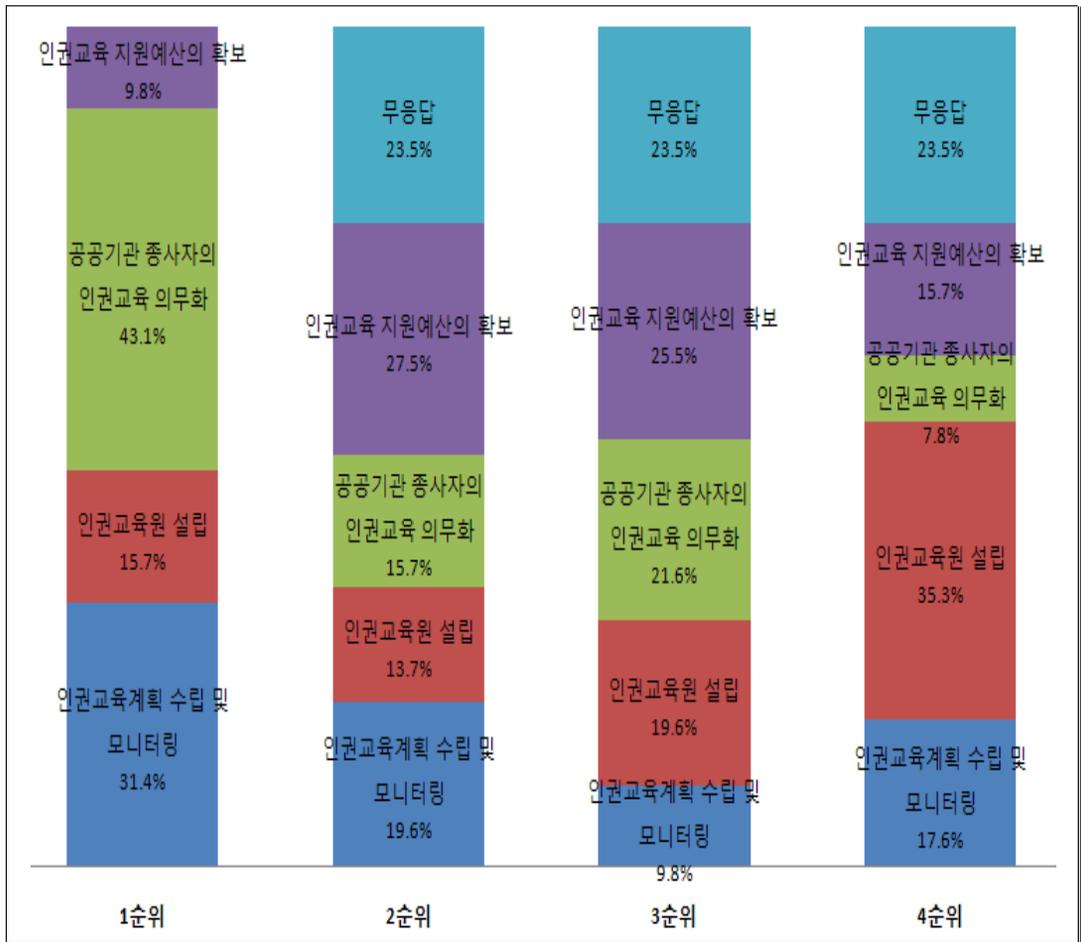


## (2) (가칭) 인권교육법을 제정 시 중점사항(우선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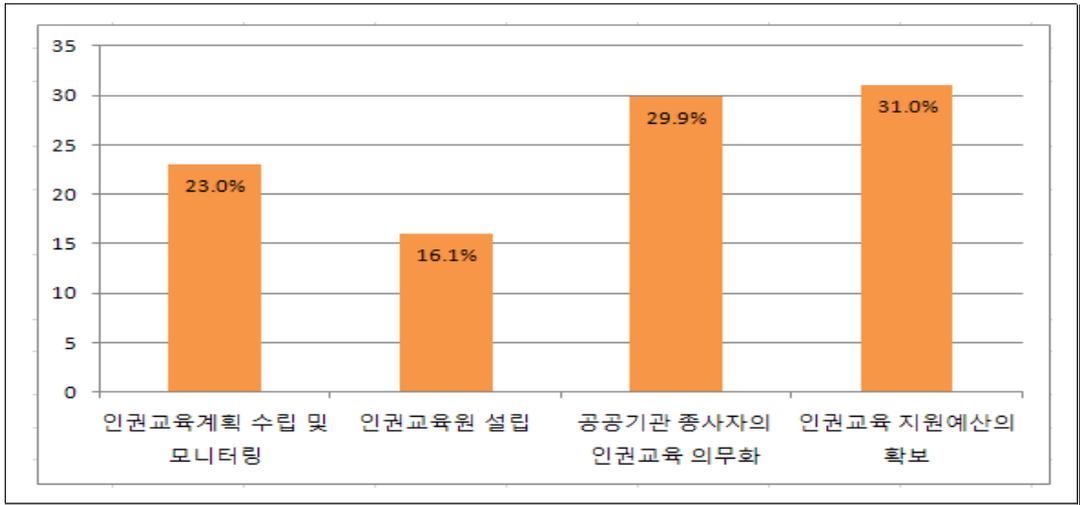
인권교육법을 제정 시 중점을 두어야 하는 사항으로 전문가들은 1순위를 공공기관 종사자의 인권교육 의무화가 43.1%(22명)로 가장 많았고, 인권교육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은 31.4%(16명), 인권교육원 설립과 인권교육 지원예산의 확보가 각각 15.7%, 9.8%인 것으로 나타났다. 2순위는 인권교육 지원예산의 확보가 27.5%(14명)로 나타났으며 인권교육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공공기관 종사자의 인권교육 의무화, 인권교육원 설립이 각각 19.6%, 15.7%, 13.7%로 나타났다. 3순위는 인권교육 지원예산의 확보가 25.5%(13명)이었으며 공공기관 종사자의 인권교육 의무화 21.6%(11명), 인권교육원 설립, 인권교육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이 각각 19.6%, 9.8%이었다. 4순위는 인권교육원 설립이 35.3%(18명), 인권교육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이 17.6%(9명), 인권교육 지원예산의 확보가 15.7%(8명), 공공기관 종사자의 인권교육 의무화가 7.8%(4명)로 나타났다. 무응답은 1순위만 선택하고 2, 3, 4순위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가 23.5% (12명)이었다.

	항 목	빈도 (명)	퍼센트 (%)
1순위	인권교육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16	31.4
	인권교육원 설립	8	15.7
	공공기관 종사자의 인권교육 의무화	22	43.1
	인권교육 지원예산의 확보	5	9.8
2순위	인권교육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10	19.6
	인권교육원 설립	7	13.7
	공공기관 종사자의 인권교육 의무화	8	15.7
	인권교육 지원예산의 확보	14	27.5
	무응답	12	23.5
3순위	인권교육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5	9.8
	인권교육원 설립	10	19.6
	공공기관 종사자의 인권교육 의무화	11	21.6
	인권교육 지원예산의 확보	13	25.5
	무응답	12	23.5
4순위	인권교육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9	17.6
	인권교육원 설립	18	35.3
	공공기관 종사자의 인권교육 의무화	4	7.8
	인권교육 지원예산의 확보	8	15.7
	무응답	12	23.5
	<b>합계</b>	<b>51</b>	<b>100.0</b>

122 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안 관련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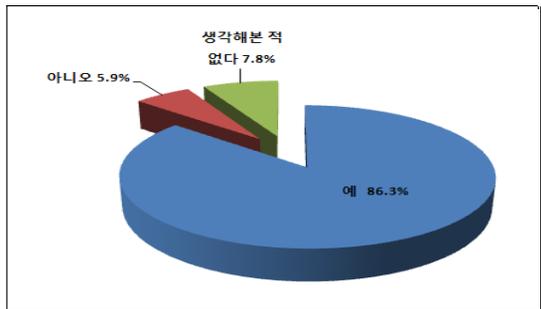
항 목	빈도 (명)	퍼센트 (%)
인권교육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103	23.0
인권교육원 설립	72	16.1
공공기관 종사자의 인권교육 의무화	134	29.9
인권교육 지원예산의 확보	139	31.0
<b>합계</b>	<b>448</b>	<b>100.0</b>



인권교육법을 제정 시 중점을 두어야 하는 사항을 순위별로 조사한 자료를 1순위를 가중치 4로 2순위에서 4순위를 각각 3, 2, 1의 가중치를 사용하여 순위가 높을수록 많이 선택한 것으로 하여 전체적인 인권교육법 제정 시 중점사항에 분석한 결과 인권교육 지원예산의 확보와 공공기관 종사자의 인권교육의 의무화가 각각 31.0%, 29.9%로 높게 나타났으며 인권교육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이 23.0%, 인권교육원 설립이 16.1%로 각각 나타났다.

(3) (가칭) 인권교육원의 설립 필요여부

항 목	빈도 (명)	퍼센트 (%)
예	44	86.3
아니오	3	5.9
생각해본 적 없다	4	7.8
합계	51	100.0



인권교육원의 설립이 필요한지에 대해 전문가들의 86.3%(44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생각해본 적 없다와 필요하지 않다가 각각 7.8%(4명), 5.9%(3명)로 대부분의 인권 전문가들은 인권교육원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의 성별, 연령, 인권교육경력, 활동영역에 따른 인권교육원 설립에 대한 생각이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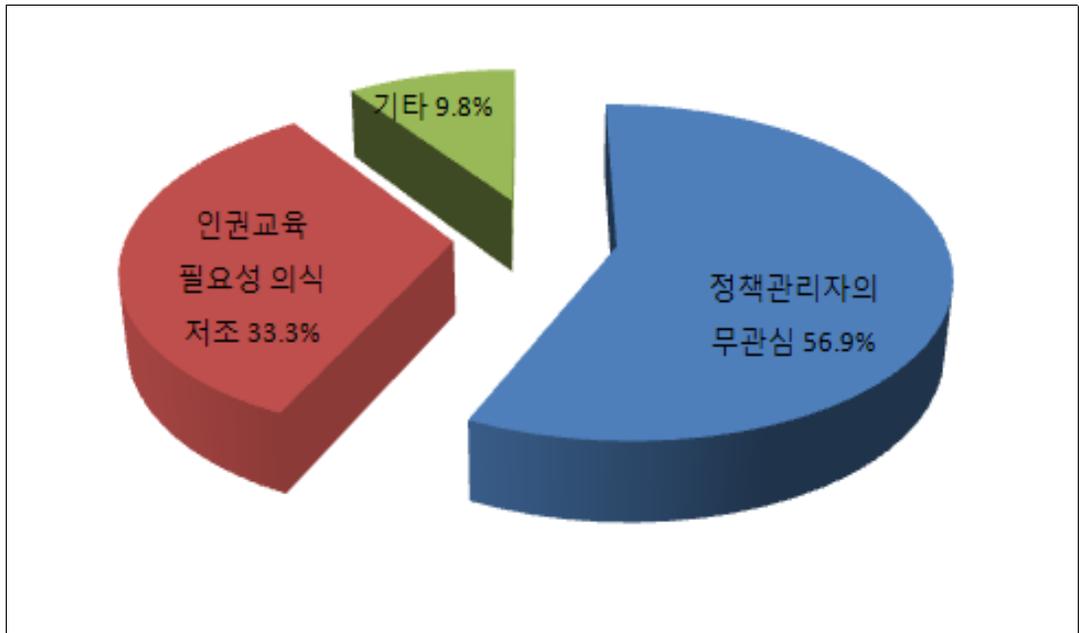
124 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안 관련 연구

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유의수준 0.05수준에서는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활동 영역부분과 필요성에 대한 생각은 유희확률이 0.054로 대학교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은 각각 93.8%,와 100.0%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시민사회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64.7%,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17.6%, 생각해 본적이 없다는 응답이 17.6%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구 분		(가칭) 인권교육원의 설립이 필요여부				$\chi^2$ (p-value)		
		예	아니오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전체			
성별	남자	빈도	30	3	3	36	1.004 (0.805)	
		%	83.3	8.3	8.3	100.0		
	여자	빈도	14	0	1	15		
		%	93.3	0.0	6.7	100.0		
전체	빈도	44	3	4	51			
	%	86.3	5.9	7.8	100.0			
연령	30-39세	빈도	13	1	0	14		3.444 (0.412)
		%	92.9	7.1	0.0	100.0		
	40-49세	빈도	21	2	4	27		
		%	77.8	7.4	14.8	100.0		
	50-59세	빈도	10	0	0	10		
		%	100.0	0.0	0.0	100.0		
전체	빈도	44	3	4	51			
%	86.3	5.9	7.8	100.0				
경력	0-5년	빈도	13	1	0	14	4.270 (0.358)	
		%	92.9	7.1	0.0	100.0		
	6-10년	빈도	15	0	3	18		
		%	83.3	0.0	16.7	100.0		
	11년 이상	빈도	15	2	1	18		
		%	83.3	11.1	5.6	100.0		
전체	빈도	43	3	4	50			
%	86.0	6.0	8.0	100.0				
영역	대학교	빈도	15	0	1	16	6.958 (0.054)	
		%	93.8	0.0	6.3	100.0		
	시민사회	빈도	11	3	3	17		
		%	64.7	17.6	17.6	100.0		
	국가인권 위원회	빈도	13	0	0	13		
		%	100.0	0.0	0.0	100.0		
전체	빈도	39	3	4	46			
%	84.8	6.5	8.7	100.0				

□ (가칭) 인권교육원 설립의 가장 큰 장애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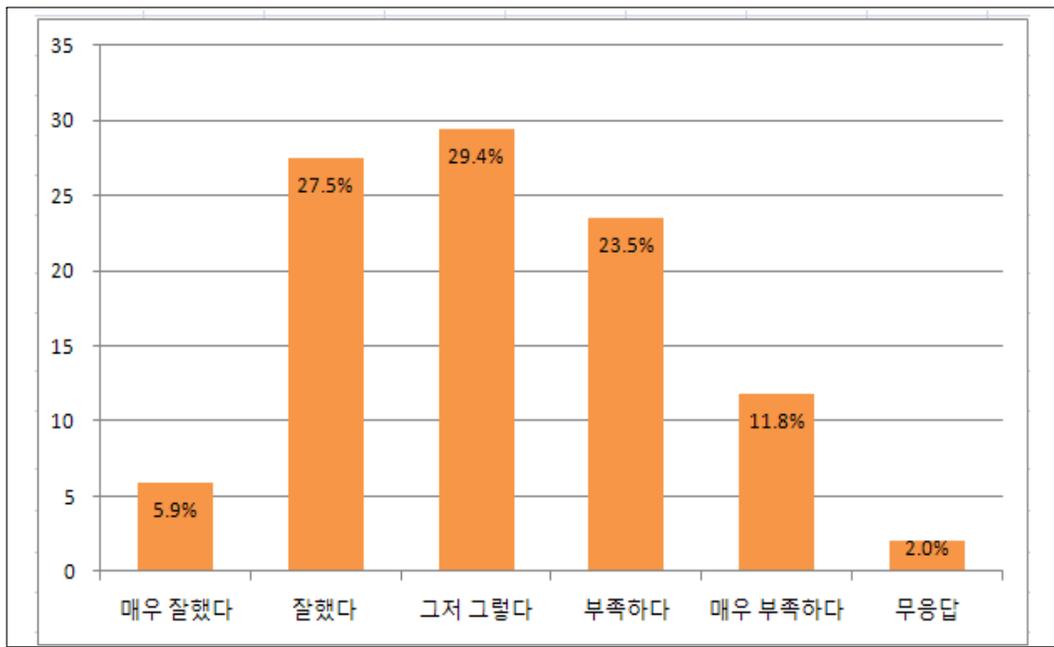
장애요인	빈도 (명)	퍼센트 (%)
정책관리자의 무관심	29	56.9
인권교육 필요성 의식 저조	17	33.3
기타	5	9.8
<b>합계</b>	<b>51</b>	<b>100.0</b>



인권교육원 설립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요인에 대해 정책관리자의 무관심이 56.9%(29명)로 가장 많았으며, 인권교육 필요성 의식 저조가 33.3%(17명), 기타가 9.8%(5명)로 나타나 과반 수가 넘는 전문가들이 정책관리자의 무관심이 인권교육원의 설립에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 활동 평가

항 목	빈도 (명)	퍼센트 (%)
매우 잘했다	3	5.9
잘했다	14	27.5
그저 그렇다	15	29.4
부족하다	12	23.5
매우 부족하다	6	11.8
무응답	1	2.0
<b>합계</b>	<b>51</b>	<b>100.0</b>



지난 10년간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 활동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평가는 그저 그렇다가 29.4%(15명), 잘했다 27.5%(14명), 매우 잘했다는 5.9%(3명)로 긍정적 평가는 33.4%로 나타났으며 부족하다 23.5%(12명), 매우 부족하다 11.8%(6명)로 부정적 평가는 35.3%로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 활동 평가						$(p-\chi^2 \text{value})$			
		매우 잘했다	잘했다	그저 그렇다	부족 하다	매우 부족하다	전체				
성별	남자	빈도	1	11	10	9	5	36	3.001 (0.576)		
		%	2.8	30.6	27.8	25.0	13.9	100.0			
	여자	빈도	2	3	5	3	1	14			
		%	14.3	21.4	35.7	21.4	7.1	100.0			
	전체	빈도	3	14	15	12	6	50			
		%	6.0	28.0	30.0	24.0	12.0	100.0			
연령	30-39세	빈도	1	4	5	3	1	14	4.804 (0.827)		
		%	7.1	28.6	35.7	21.4	7.1	100.0			
	40-49세	빈도	1	9	7	5	4	26			
		%	3.8	34.6	26.9	19.2	15.4	100.0			
	50-59세	빈도	1	1	3	4	1	10			
		%	10.0	10.0	30.0	40.0	10.0	100.0			
	전체	빈도	3	14	15	12	6	50			
		%	6.0	28.0	30.0	24.0	12.0	100.0			
	경력	0-5년	빈도	0	6	4	2	2		14	8.344 (0.384)
			%	0.0	42.9	28.6	14.3	14.3		100.0	
6-10년		빈도	2	5	5	6	0	18			
		%	11.1	27.8	27.8	33.3	0.0	100.0			
11년 이상		빈도	1	3	5	4	4	17			
		%	5.9	17.6	29.4	23.5	23.5	100.0			
전체		빈도	3	14	14	12	6	49			
		%	6.1	28.6	28.6	24.5	12.2	100.0			
영역		대학교	빈도	1	4	5	5	1	16	14.691 (0.037)	
			%	6.3	25.0	31.3	31.3	6.3	100.0		
	시민사 회	빈도	0	1	5	5	5	16			
		%	0.0	6.3	31.3	31.3	31.3	100.0			
	국가인 권 위원회	빈도	2	7	2	2	0	13			
		%	15.4	53.8	15.4	15.4	0.0	100.0			
	전체	빈도	3	12	12	12	6	45			
		%	6.7	26.7	26.7	26.7	13.3	100.0			

전문가들의 성별, 연령, 인권교육경력, 활동영역과 지난 10년간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 활동 평가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활동영역에 따라서 평가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활동영역이 대학교인 경우는 잘했다가 25.0%, 그저 그렇다와 부족하다로 각각 31.3%이고, 활동영역이 시민사회인 전문가는 잘했다가 6.3%, 부족하다와 매우 부족하다가 각각 31.3%로 나타났으며, 활동영역이 국가인권위원회인 전문가는 잘했다가 53.8%로 대학교나 시민사회에서 활동하는 전문가에 비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 지난 10년간의 인권교육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잘한 점

인권교육의 필요성 및 중요성 확산

- 인권교육이 권리임을 인식
- 일반국민의 인권에 대한 민감성 제고
- 인권 침해적 국가 행정에 대한 문제제기
- 인권교육의 확산과 활성화 그리고 인권증중문화의 확산에 기여
- 인권교육의 제도적 필요성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
- 인권교육포럼 등 인권교육의 양적 질적 확대
-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한 점
- 국민과 국가기관의 인권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 인권의 의미와 그 존재성을 갖게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한 기초 확립

인권교육의 체계화 및 제도화

- 인권교육네트워크 형성 및 촉진 우수
- 인권교육의 법적 의무화(정신보건 등)
- 인권연구학교운영 및 시·도 교육연수원과의 협력
- 인권교육관련 조사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한 점
- 소수자 약자의 입장에서 다양한 교육을 제안하고 실천한 점
- 체계적 인권교육 자체가 부재하였던 한국사회에 직·간접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
- 교육과정 내 인권 단원 생성, 남녀 평등인식 등 학교인권교육의 제도화 측면
- 인권교육 5개년 계획을 비롯하여 공공기관 종사자의 인권교육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
- 정신보건 분야 등 사회적 약자 영역에서 의무교육을 이끌어 냄
- 정신보건 종사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및 학교 인권 교육의 법제화를 위한 노력

- 법집행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의 필요성 인식 및 제도화
- 각종 법령에 인권교육 의무화 조항이 포함되는 계기 마련
- 차별시정, 인권침해 시정권고

인권교육 자원 발굴 및 개발

- 분야별 다양한 인권교육교재 개발·발간
- 다양한 인권교육의 프로그램 및 콘텐츠 제작
- 인권교육 관련 교재, 영화, 만화, 소설 등을 개발하여 보급
- 장애, 정신보건 분야, 다문화, 공공기관 등 분야별 전문강사 양성
- 다양한 인권교육 강사단 양성 운영 등 경험 축적
- 인권교육 강사 양성, 사이버 교육센터 및 자료 제작 등
- 교과서 안 인권 찾기(모니터링 학생추진단)를 통해 학생들 스스로 교과서에 수록된 인권차별 실태를 조사하고 시정 권고하는 과정에 참여토록 한 것.
- 학생인권 교육자료 제공과 공무원의 인권교재 발간 및 인권교육의 중요성 발표 등
- 인권강사 양성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

다양한 집단 대상의 인권교육 실시

- 인권교육의 전반적 사항을 인권교육행동계획 등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전문가 집단에 대해 인권교육 시도한 점
- 다문화 인권교육, 학생인권교육,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등 운영경험 축적
- 교사, 사회복지사, 경찰, 공무원 등 인권관련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 공공기관 및 학교 인권교육의 확대
- 각종 시설 및 공공기관 대상으로 실시된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교육에 대한 수요 증대

2)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중점사항

다양한 대상들의 인권교육

- 교사집단에 대한 정기적인 인권감수성 교육
- 교사집단에 대한 꾸준하고 적극적인 인권감수성 교육에 중점
-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높이기 위한 인권교육 의무화, 학교 인권교육의 강화
- 직무상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직업집단(경찰, 사법종사자, 교도관, 사회복지사, 교사) 등에 대한 체계적인 인권교육

## 130 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안 관련 연구

- 학교인권교육 공공기관 종사자의 인권교육(교육감, 장학사, 교장 및 교감 등)
- 인권 취약 분야 종사자 교육
- 공공기관의 임직원 인권감수성 교육
- 공공기관 및 기업들의 관계자 인권교육 및 인권문화 확산
-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에 중점
- 국민 인권의식의 함양을 위한 교육, 캠페인

### □ 인권교육의 인적 물적 확보

- 다양한 인권 콘텐츠 개발(교재, 프로그램) 및 보급
- 인권중문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는 영화, 만화, 소설 등 다양한 매체를 개발하여 보급
-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부교재 개발(동영상 등 개발)
- 성인대상 평생교육차원의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 민간분야 전문가 및 단체와 협력하여 교육 프로그램 및 내용을 구성하는 작업
- 교육방식에 있어서 일방적인 강의가 아닌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의 개발
- 대상의 특성에 따른 창의적인 방법론 개발
- 전문적인 인권강사 양성 및 현실적인 강의로 책정
-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 강사들의 역량강화
- 강사진에 대한 다양한 지원 시스템
- 인권교육 강사로서 법학 전공자나 변호사 뿐 아니라 인권운동가 또는 철학, 사회과학 등 다양한 영역 강사의 참가가 필요

### □ 인권교육의 제도화

- 학교 교직원의 인권교육이수 의무
- 초·중·고, 대학교 및 공공기관의 인권교육 확대 실시, 의무화
- 단위학교의 친인권적 문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확장
- 인권시민사회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 인권교육의 제도적 정착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
-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적으로 인권교육 법제도 완비 추진
- 인권교육 의무화를 위한 제도 정비 및 제도화
- 예산 확보 및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담아 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 공무원의 인권정책
- 정부부처 관료들 및 정책시행자들의 인권교육 의무화
- 인권교육의 개념 정립과 체계화, 정규프로그램화

- 인권법 통과, 국가정책 수립
- 인권교육법 제정을 통한 문화 확산
- 인권전문가 중심의 정책 결정 구조 형성

#### □ 인권교육의 주체적 운영

- 인권교육에 대한 조정자 역할
- 인권교육의 양적 확대에 치중하기보다는 이를 실질화하는 데 역점
- 국가 인권위의 독립적 기구 위상확보 및 권한 강화
- 전략의 부재와 폐쇄적 운영을 지양
- 정치적 독립성
-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교육의 주체화
- 유엔의 인권교육 행동 계획을 국내에 적용
- 그간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외부 인권교육 전문가 풀파의 네트워크 활성화
- 시행되고 있는 인권교육영역에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질적 보완
- 관 주도가 아닌 현장의 다양한 인권단체나 개별 활동가, 학교, 기업, 공공기관의 인권교육을 지원하고 장려하는 방식(콘텐츠 개발, 정보 공유, 재정 등)

#### □ 기관설립

- 인권교육원 등의 교육 중추 기관 설립
- 인권전문교육기관과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여 함께 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

#### □ 여러 기관과의 협조

- 교과부와의 협력체제 구축
- 인권단체들과의 인권교육 공조체제 구축
- 기관으로서의 인권위와 전문집단으로 활동하는 단체와 상호 연계를 함으로써 교육의 시너지 효과
- 인권단체와 관련 NGO와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
- 국제적으로 다양한 인권교육 기관 및 단체와 교류 활성화

#### □ 인권의식 고양

- 국민들의 인권의식 확장
- 인권에 대한 편견 제거
- 인권 및 인권교육에 대한 인식 개선

- 자기존중과 성장을 위한 자기 돌봄과 쉼
- 성찰과 비전 만들기의 시간을 마련
- 인권 또는 인권교육이 이념적으로 편향된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불식
- 인권은 꼭 지켜져야 하지만, 한 쪽의 인권만 강요하지 않는다는 신뢰감을 기반으로 한 인 권에 대해 올바르게 정의

2.

**인권교육의 주요대상**

인권교육의 주요 대상으로 유엔에서 제시한 학교영역, 공공기관 영역, 시민사회 영역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학교영역은 학생, 교육, 기타로 나뉘며, 기타에는 유치원, 교육청, 교육청 간부, 해당학교, 교육청 고위 공무원, 학부모, 교육 공무원, 대학 등을 포함하였다.

공공기관은 입법관계자, 사법부, 행정부, 기타로 나뉘며, 공무원, 교원, 언론, 권력기관 공무원, 초·중·고 교장선생님, 자치단체공무원, 교육자, 다수인, 지자체 공무원, 정신병원의사, 교육청, 입·사법관계자는 기타로 처리하였다. 시민사회는 전문 집단, 사회적 영향력 집단, 사회적 약자 집단, 기업인, 일반시민으로 이 5개 집단에 속하지 않은 대표자, 운영위원, 고위공무원, 청소년, 관리자급 직책을 가진 사람들, 경로당 어르신들 및 시민, 각 위원회의 위원들 및 기업 고용주로 응답한 대상은 기타로 처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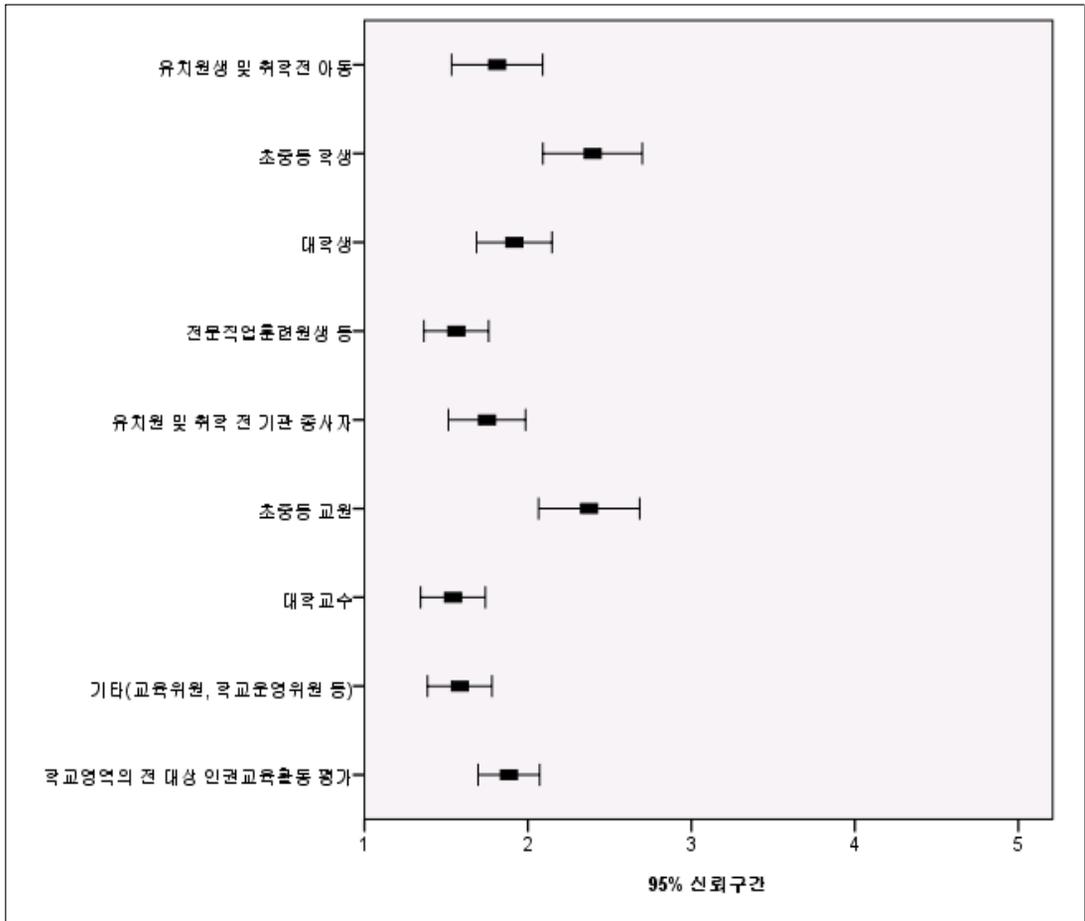
**(1) 학교 영역**

1) 학교영역의 대상별 인권교육활동 평가

학교 영역의 대상에 대해 인권교육 활동의 평가를 매우 부족하다를 1점, 부족하다 2점, 그저 그렇다 3점, 잘했다. 4점 매우 잘 했다는 5점으로 사용하여 각 대상별로 전문가들의 평가점수를 계산한 결과 아래 표와 같다. 학교영역은 전체평균이 1.89점으로 인권교육이 부족하다고 평가되었다. 대상별로 살펴보면 초·중등 학생과 초등학교 교원의 평가 점수가 각각 2.40과 2.37로 평가되었으며, 대학생, 유치원 및 취학 전 아동, 유치원 및 취학 전 기관 종사자가 각각 1.92, 1.81, 1.76이고, 대학교수, 전문직업 훈련원생, 기타 각각 1.55, 1.57, 1.59로 평가되어 학교영역에서는 초·중등 학생과 초등학교 교원의 인권교육이 다른 대상에 비해 다소 높게 평가되었다.

<표 19> 학교영역의 대상별 인권교육활동 평가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유치원생 및 취학 전 아동	48	1	4	1.81	0.960
초·중등 학생	48	1	5	2.40	1.047
대학생	49	1	3	1.92	0.786
전문직업 훈련원생 등	49	1	4	1.57	0.677
유치원 및 취학 전 기관 종사자	49	1	4	1.76	0.804
초·중등 교원	49	1	4	2.37	1.055
대학교수	49	1	3	1.55	0.679
기타(교육위원, 학교운영위원 등)	49	1	3	1.59	0.674
<b>학교영역</b>	<b>49</b>	<b>1.00</b>	<b>3.43</b>	<b>1.89</b>	<b>0.642</b>



&lt;표 20&gt; 학교 영역의 대상별 인권교육 활동 전체 평가

		N	평균	표준편차	$t, F$ ( $p$ -value)
성별	남자	36	1.89	0.663	0.047 (0.963)
	여자	13	1.88	0.603	
연령	30-39세	13	1.80	0.730	0.196 (0.823)
	40-49세	26	1.90	0.628	
	50-59세	10	1.97	0.609	
경력	0-5년	13	1.88	0.553	1.028 (0.366)
	6-10년	17	2.06	0.744	
	11년 이상	18	1.75	0.607	
영역	대학교(b)	16	1.90	0.564	7.639 (0.001)
	시민사회(a)	16	1.48	0.414	
	국가인권위원회(b)	13	2.26	0.636	
합계		49	1.89	0.642	

학교 영역 전 대상에 대한 인권교육활동 평가점수를 전문가들의 성별, 연령, 경력, 활동영역에 따라 비교한 결과, 전문가들의 활동영역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와 국가인권위원회의 평가점수는 각각 1.90, 2.26으로 시민사회의 평가 점수 1.48에 비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민사회에 활동하는 전문가들이 대학교, 국가인권위원회 활동 전문가에 비해 다소 낮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N	평균	표준 편차	<i>t, F</i> ( <i>p-value</i> )	
유치원생 및 취학 전 아동	성별	남자	36	1.94	1.040	161.000*
		여자	12	1.42	0.515	(0.157)
	연령	30-39세	13	1.54	0.967	0.719
		40-49세	25	1.92	0.954	(0.493)
		50-59세	10	1.90	0.994	
	경력	0-5년	12	1.75	0.965	1.951
		6-10년	17	2.18	1.015	(0.154)
		11년 이상	18	1.56	0.856	
	영역	대학교(ab)	16	1.81	1.047	3.481
		시민사회(b)	16	1.31	0.479	(0.040)
		국가인권위원회(a)	13	2.15	0.987	
	합계		48	1.81	0.960	
초·중등 학생	성별	남자	36	2.39	1.076	0.079
		여자	12	2.42	0.996	(0.938)
	연령	30-39세	13	2.38	1.044	0.248
		40-49세	25	2.32	0.945	(0.781)
		50-59세	10	2.60	1.350	
	경력	0-5년	12	2.42	1.084	2.063
		6-10년	17	2.76	1.033	(0.139)
		11년 이상	18	2.06	0.998	
	영역	대학교(ab)	16	2.38	1.088	6.605
		시민사회(b)	16	1.81	0.750	(0.003)
		국가인권위원회(a)	13	3.00	0.707	
	합계		48	2.40	1.047	
대학생	성별	남자	36	1.89	0.785	0.425
		여자	13	2.00	0.816	(0.675)
	연령	30-39세	13	1.69	0.751	0.838
		40-49세	26	1.96	0.824	(0.439)
		50-59세	10	2.10	0.738	
	경력	0-5년	13	2.00	0.707	0.073
		6-10년	17	1.94	0.899	(0.929)
		11년 이상	18	1.89	0.758	
	영역	대학교(ab)	16	2.00	0.816	4.496
		시민사회(b)	16	1.50	0.632	(0.017)
		국가인권위원회(a)	13	2.31	0.751	
	합계		48	1.92	0.786	

\* 비모수적 방법인 Mann-Whitney검정을 적용하였다.

		N	평균	표준 편차	<i>t, F</i> ( <i>p-value</i> )	
전문직업 훈련원생	성별	남자	36	1.58	0.732	0.203
		여자	13	1.54	0.519	(0.840)
	연령	30-39세	13	1.46	0.877	0.343
		40-49세	26	1.58	0.578	(0.712)
		50-59세	10	1.70	0.675	
	경력	0-5년	13	1.46	0.519	1.699
		6-10년	17	1.82	0.809	(0.194)
		11년 이상	18	1.44	0.616	
	영역	대학교	16	1.56	0.629	1.633
		시민사회	16	1.31	0.479	(0.207)
		국가인권위원회	13	1.69	0.630	
	<b>합계</b>		<b>49</b>	<b>1.57</b>	<b>0.677</b>	
유치원 및 취업 전 기관 종사자	성별	남자	36	1.83	0.878	1.136
		여자	13	1.54	0.519	(0.262)
	연령	30-39세	13	1.46	0.660	1.205
		40-49세	26	1.85	0.784	(0.309)
		50-59세	10	1.90	0.994	
	경력	0-5년	13	1.69	0.630	0.249
		6-10년	17	1.88	0.781	(0.780)
		11년 이상	18	1.72	0.958	
	영역	대학교	16	1.75	0.931	2.456
		시민사회	16	1.38	0.619	(0.098)
		국가인권위원회	13	2.00	0.707	
	<b>합계</b>		<b>49</b>	<b>1.76</b>	<b>0.804</b>	
초·중등 교원	성별	남자	36	2.36	1.018	0.068
		여자	13	2.38	1.193	(0.946)
	연령	30-39세	13	2.54	1.127	0.226
		40-49세	26	2.31	1.050	(0.799)
		50-59세	10	2.30	1.059	
	경력	0-5년	13	2.46	1.050	0.223
		6-10년	17	2.41	1.176	(0.801)
		11년 이상	18	2.22	1.003	
	영역	대학교(ab)	16	2.38	0.885	5.567
		시민사회(b)	16	1.81	0.834	(0.007)
		국가인권위원회(a)	13	3.00	1.155	
	<b>합계</b>		<b>49</b>	<b>2.37</b>	<b>1.055</b>	

		N	평균	표준 편차	$t, F$ ( $p$ -value)	
대학 교수	성별	남자	36	1.53	0.654	-0.395 (0.694)
		여자	13	1.62	0.768	
	연령	30-39세	13	1.54	0.776	0.047 (0.954)
		40-49세	26	1.58	0.643	
		50-59세	10	1.50	0.707	
	경력	0-5년	13	1.54	0.660	0.375 (0.690)
		6-10년	17	1.65	0.786	
		11년 이상	18	1.44	0.616	
	영역	대학교(ab)	16	1.63	0.719	3.900 (0.028)
		시민사회(b)	16	1.19	0.403	
		국가인권위원회(a)	13	1.85	0.801	
	합계		49	1.55	0.679	
기타(교 육위원, 학교운영 위원등)	성별	남자	36	1.53	0.654	-1.109 (0.273)
		여자	13	1.77	0.725	
	연령	30-39세	13	1.46	0.660	0.377 (0.688)
		40-49세	26	1.62	0.637	
		50-59세	10	1.70	0.823	
	경력	0-5년	13	1.54	0.519	0.093 (0.912)
		6-10년	17	1.65	0.786	
		11년 이상	18	1.61	0.698	
	영역	대학교	16	1.56	0.727	1.323 (0.277)
		시민사회	16	1.44	0.512	
		국가인권위원회	13	1.85	0.801	
	합계		49	1.59	0.674	

학교영역의 주요 대상을 개별적으로 전문가들의 성별, 연령, 경력, 활동영역에 따라 차이를 비교한 결과 대부분 전문가들의 활동영역에 따라서 평가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생 및 취학 전 아동에서는 성별과 활동영역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초·중등학생, 대학생, 초·중등교원, 대학교수에 대한 평가에서는 전문가들의 활동영역에서 평가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문직업훈련원생, 유치원 및 취업 전 기관 종사자, 기타 대상에서는 평가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생 및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인권교육활동 평가는 활동영역에 따라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평가점수는 2.15로 시민사회의 평가점수 1.31에 비해 높게 평가하였다.

초·중등 학생에 대한 인권교육활동 평가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평가점수는 3.00, 시민사회는 1.81로 평가하여 시민사회가 국가인권위원회보다 낮게 평가하였다.

대학생에 대한 인권교육활동 평가 국가인권위원회의 평가점수는 2.31로 시민사회의 평가점수는 1.50로 시민사회의 평가가 국가인권위원회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등 교원에 대한 인권교육활동 평가에서는 시민사회의 평가점수는 1.81로 국가인권위원회의 평가점수보다 낮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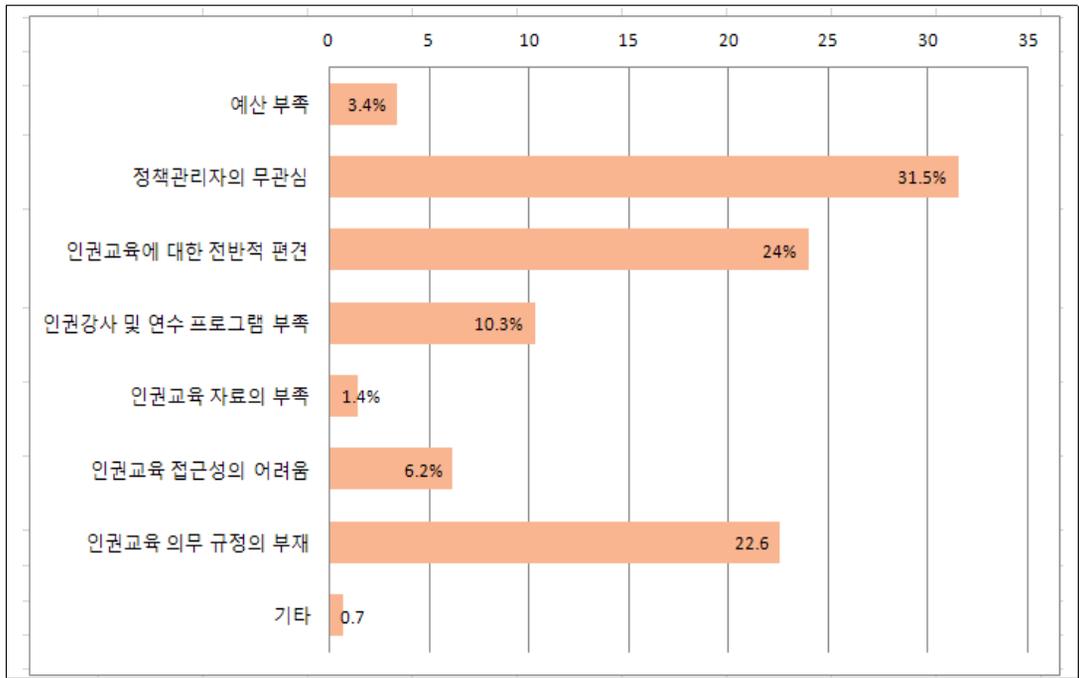
대학교수에 대한 인권교육활동 평가는 시민사회의 평가점수는 1.19, 국가인권위원회의 평가점수는 1.85로 시민사회가 국가인권위원회보다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유치원생 및 취학 전 아동에 대한 평가가 여성전문가가 남성 전문가에 비해 낮게 평가하였으며, 초·중등학생, 전문가들의 활동영역에 따라 평가의 차이가 있는 대학생, 초·중등교원, 대학교수에 대한 평가에서는 시민사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라 평가의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시민사회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비해 낮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① 학교영역 인권교육의 가장 큰 장애요인 (3가지)

항 목	응 답		케이스 퍼센트
	빈도 (명)	퍼센트 (%)	
예산 부족	14	9.2	27.5
정책관리자의 무관심	45	29.6	88.2
인권교육에 대한 전반적 편견	34	22.4	66.7
인권강사 및 연수 프로그램 부족	25	16.4	49.0
인권교육 자료 부족	8	5.3	15.7
교사의 과도한 업무부담	17	11.2	33.3
모니터링 활동이 미미함	4	2.6	7.8
기타	5	3.3	9.8
<b>합계</b>	<b>152</b>	<b>100.0</b>	<b>298.0</b>

학교영역 인권교육의 가장 큰 장애요인에 대해 다중응답 분석한 결과, 전문가들은 정책관리자의 무관심이 29.6%(45명)였으며, 인권교육에 대한 전반적 편견이 22.4%(34명)로 높게 나타났다. 인권강사 및 연수 프로그램 부족 16.4%(25명), 교사의 과도한 업무부담 11.2%(17명), 예산 부족 9.2%(14명), 인권교육 자료 부족 5.3%(8명), 기타 3.3%(5명), 모니터링 활동이 미미함 2.6%(4명)로 나타났다. 특히, 정책관리자의 무관심은 전문가들의 88.2%가 선택하여 학교영역 인권교육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선택하였다.



학교영역 인권교육의 가장 큰 장애요인에 대해 성별, 연령, 경력, 활동영역에 따라 다중응답 분석을 한 결과,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전문가와 여성전문가 모두 정책관리자의 무관심을 88.9%와 86.7%로 응답하였으나, 남성전문가들이 인권강사 및 연수프로그램부족이 52.8%가 선택하여 여성전문가 40.0%에 비해 높았으며, 여성전문가는 오히려 인권교육에 대한 전반적 편견이 73.3%로 남성전문가 63.9%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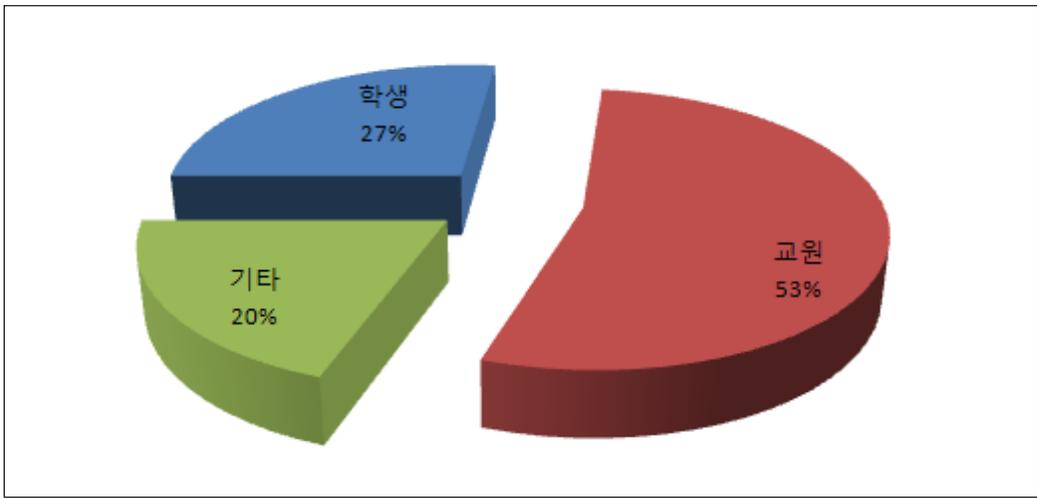
전문가의 경력에 따라서는 정책관리자의 무관심 5년 이하인 전문가는 92.9%, 11년 이상은 100.0%로 거의 대부분이 선택한 반면, 경력이 6년에서 10년 이하인 전문가는 77.8%로 선택하지 하지 않은 전문가들의 비율이 높았다.

시민사회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이 인권교육에 대한 전반적 편견이 82.4%로 대학교 68.8%, 국가인권 위원회 53.8%에 비해 높았다. 반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학교영역 인권교육의 가장 큰 장애요인 3가지								합계		
		예산 부족	정책관 리자의 무관심	인권 교육에 대한 전반적 편견	인권강 사 및 연수 프로그램 부족	인권 교육 자료 부족	교사의 고도한 업무부 담	모니 터링 활동이 미미함	기타			
성별	남자	총계	10	32	23	19	7	12	3	2	36	
		%	27.8	88.9	63.9	52.8	19.4	33.3	8.3	5.6		
	여자	총계	4	13	11	6	1	5	1	3	15	
		%	26.7	86.7	73.3	40.0	6.7	33.3	6.7	20.0		
	합계		총계	14	45	34	25	8	17	4	5	51
연령	30-39세	총계	3	12	9	7	3	5	1	1	14	
		%	21.4	85.7	64.3	50.0	21.4	35.7	7.1	7.1		
	40-49세	총계	7	24	18	14	3	8	3	4	27	
		%	25.9	88.9	66.7	51.9	11.1	29.6	11.1	14.8		
	50-59세	총계	4	9	7	4	2	4	0	0	10	
		%	40.0	90.0	70.0	40.0	20.0	40.0	0.0	0.0		
합계		총계	14	45	34	25	8	17	4	5	51	
경력	0-5년	총계	2	13	9	7	4	4	1	1	14	
		%	14.3	92.9	64.3	50.0	28.6	28.6	7.1	7.1		
	6-10년	총계	5	14	10	10	2	9	2	2	18	
		%	27.8	77.8	55.6	55.6	11.1	50.0	11.1	11.1		
	11년 이상	총계	6	18	14	7	2	4	1	2	18	
		%	33.3	100.0	77.8	38.9	11.1	22.2	5.6	11.1		
합계		총계	13	45	33	24	8	17	4	5	50	
영역	대학교	총계	7	14	11	8	2	4	1	1	16	
		%	43.8	87.5	68.8	50.0	12.5	25.0	6.3	6.3		
	시민 사회	총계	3	17	14	8	0	5	1	3	17	
		%	17.6	100.0	82.4	47.1	0.0	29.4	5.9	17.6		
	국가인권 위원회	총계	3	10	7	7	4	6	1	1	13	
		%	23.1	76.9	53.8	53.8	30.8	46.2	7.7	7.7		
합계		총계	13	41	32	23	6	15	3	5	46	

## ② 학교영역 인권교육에서 우선되어야 할 대상

항 목	응 답		케이스 퍼센트
	빈도 (명)	퍼센트 (%)	
학생	38	26.8	79.2
교원	76	53.5	158.3
기타	28	19.7	58.3
합계	142	100.0	295.8



학교영역 인권교육에서 우선되어야 할 대상으로 3집단을 선택하는 질문에 대해 각각의 전문가들의 응답을 유엔이 정한 기준에 근거하여 3개 집단으로 정리한 결과 교원 53.5%(76명)로 가장 많았으며, 학생 26.8%(38명), 기타 19.7%(28명)로 나타났다. 기타에 속한 대상들은 유치원, 교육청, 교육청 간부, 해당학교, 교육청 고위 공무원, 학부모, 교육 공무원, 대학 등이었다.

학교영역 인권교육에서 우선되어야 할 대상에 대해 성별, 연령, 경력, 활동영역에 따라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이 교원을 173.3%, 남성은 151.5%로 다소 높았으며 남·여 모두 교원에 속하는 대상을 적어도 1명 이상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의 연령에서도 우선대상으로 교원이 모두 150%이상 나타났으며, 학생은 40세 이상은 80%가 넘는 반면 30세에서 39세 전문가는 69.2%로 다른 전문가들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전문가의 경력에 따라서는 5년 이하인 전문가가 176.9%가 교원을 선택하여 경력이 6년에서 10년 이하인 전문가 144.4%보다 교원에 포함되는 대상을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사회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은 교원을 135.3%로 대학교 171.4%에 비해 낮았으며 학생은 대학교와 시민사회가 각각 92.9%, 94.1%로 국가인권위원회 50.0%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학교영역 인권교육에서 우선되어야 할 대상			합계
			학생	교원	기타	
성별	남자	총계	29	50	19	33
		%	87.9	151.5	57.6	
	여자	총계	9	26	9	15
		%	60.0	173.3	60.0	
<b>합계</b>		<b>총계</b>	<b>38</b>	<b>76</b>	<b>28</b>	<b>48</b>
연령	30-39세	총계	9	22	7	13
		%	69.2	169.2	53.8	
	40-49세	총계	21	39	17	26
		%	80.8	150.0	65.4	
	50-59세	총계	8	15	4	9
		%	88.9	166.7	44.4	
<b>합계</b>		<b>총계</b>	<b>38</b>	<b>76</b>	<b>28</b>	<b>48</b>
경력	0-5년	총계	7	23	8	13
		%	53.8	176.9	61.5	
	6-10년	총계	15	26	12	18
		%	83.3	144.4	66.7	
	11년 이상	총계	15	25	8	16
		%	93.8	156.3	50.0	
<b>합계</b>		<b>총계</b>	<b>37</b>	<b>74</b>	<b>28</b>	<b>47</b>
영역	대학교	총계	13	24	5	14
		%	92.9	171.4	35.7	
	시민사회	총계	16	23	12	17
		%	94.1	135.3	70.6	
	국가인권위원회	총계	6	19	9	12
		%	50.0	158.3	75.0	
<b>합계</b>		<b>총계</b>	<b>35</b>	<b>66</b>	<b>26</b>	<b>43</b>

③ 학교영역 인권교육이 더 잘 되기 위해 필요한 점

환경 개선

- 학급과밀화 해소
- 적정시수의 확보와 소규모 교육(최대 1학급)
- 교사의 과도한 업무 해소, 적절한 업무량
- 지나친 경쟁주의와 성과주의 지양
- 입시 위주 교육제도 개혁

교육인력 및 지원

- 전문 인권 강사를 양성하여 교육하거나 교사를 대상으로 인권교육 실시
- 인권강사, 인권교육가 양성 및 연수프로그램 확충
- 민간 전문가들과의 협력 구축
- 예산확보
- 체계적인 인권교육 전문기관 필요

#### 교육방법

-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험적 인권교육
- 일상생활 속에서 인권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교육 필요
- 학교운영위의 관심과 학생 스스로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교육 교재와 강사 발굴
- 인권 감수성 캠프와 같은 유연하고 영적인 성장을 포함할 수 있는 프로그램
- 다양하고 전문적이며 접근 용이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 아이들의 집중시간이 매우 짧기에 동영상과 그림으로 된 인권교육 자료의 개발
- 수준별 교육방법과 교재 필요
- 인권교육 중심의 교과서 내용 확대 개편
- 모니터링 활동 증대
- 대상의 다양화, 교육과정 기획, 운영, 평가 단계별 피교육자의 참여 방안 마련 및 활성화
- 인권교육에 대한 필요성 인식 및 교육의 체계화

#### 제도적 의무화

- 초·중등교육법에서의 인권교육 명시 또는 인권교육 법제화
- 교육기관 종사자 인권교육 의무화, 인권강사 육성
- 학교 관리자의 인권교육 의무화
- 교사들에 대한 직무연수에도 의무 이수과정으로 설정
- 교사와 예비 교사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
- 학교인권교육 과목의 개설
- 법제화, 교육과정에 필수 교과목으로 지정
- 인권교육의 시간을 연간 몇 시간 이상으로 의무화
- 인권 침해를 한 학생과 교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교육 시킬 것
- 정규 교과과정에 인권교육과목을 신설하고 교육
- 인권과목개설
- 인권교육 그 자체가 하나의 권리로 인식되는 문화+조례 등을 통한 제도적 근거 마련

□ 인식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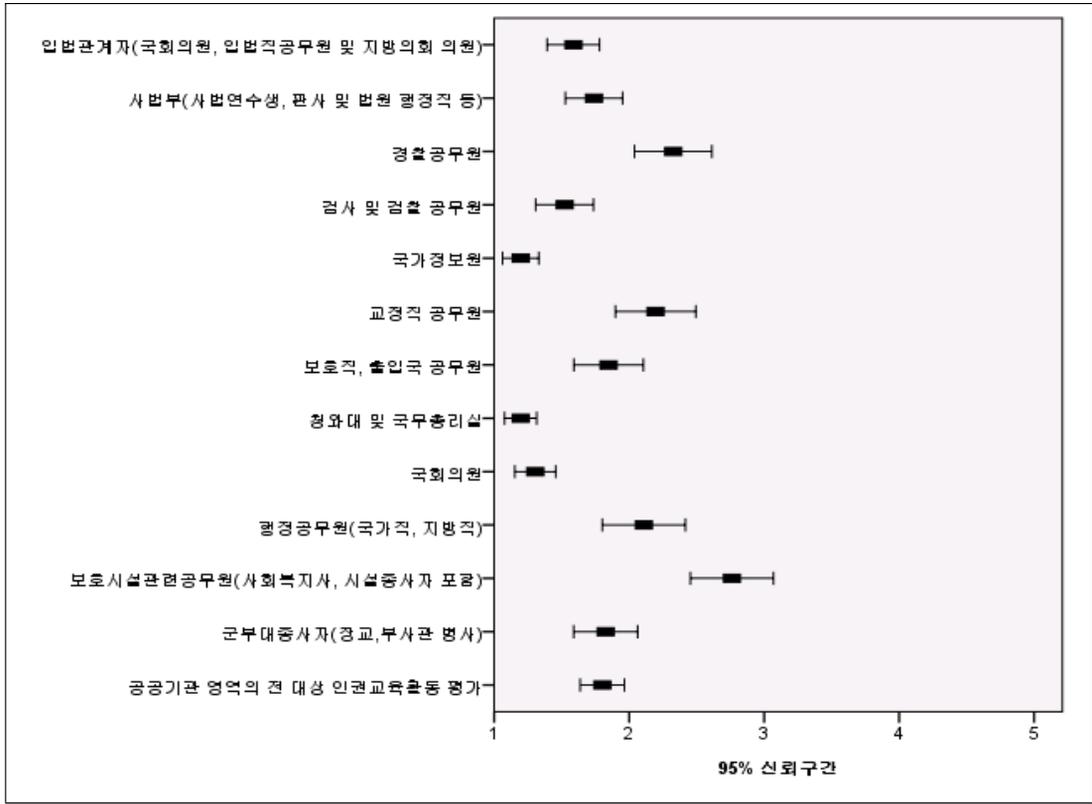
- 학생이 인권의 주체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학교장 및 고위 교육 공무원의 인식전환
- 학생인권조례 제정 및 교육과학기술부의 인권교육에 대한 필요성 인식
- 관리자(교장 등), 교사, 학생, 학부모 간의 소통이 필요
- 교장, 장학사 등 인권교육을 집행할 수 있는 관리자들의 인권교육에 대한 관심
- 성적제일주의 교육풍토에서 아동권리 존중 및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으로 인식 전환 필요
- 인권에 대한 편견을 제거
- 정부차원의 인권교육위 필요성 인식
- 정책 관리자의 관심과 적극적인지지

(2) 공공기관 영역의 대상별 인권교육활동 평가

공공기관 영역의 대상에 대해 인권교육 활동의 평가를 매우 부족하다 1점, 매우 잘했다를 5점으로 하여 각 대상별로 전문가들의 평가점수를 분석하면 아래 <표 21>과 같다. 공공기관 영역은 전체평균이 1.77점으로 인권교육이 부족하다고 평가되었다. 대상별로 살펴보면, 보호시설 관련 공무원이 2.74로 3점 이하로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나, 다른 대상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공무원이 2.30, 교정직 공무원이 2.17, 행정공무원이 2.09로 나타났으며, 보호직, 출입국 공무원이 1.85, 군부대 종사자, 1.81, 사법부 1.74, 입법관계자와 검사 및 검찰공무원이 각각 1.56과 1.51로 나타났다. 국가정보원 1.19,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1.19, 국회의원 1.3으로 고위 공무원들의 인권교육활동에 대한 평가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공공기관 영역의 대상별 인권교육활동 평가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입법관계자	48	1	3	1.56	0.649
사법부	46	1	4	1.74	0.713
경찰공무원	47	1	4	2.30	0.976
검사 및 검찰 공무원	47	1	3	1.51	0.718
국가정보원	47	1	3	1.19	0.449
교정직 공무원	47	1	4	2.17	1.007
보호직, 출입국 공무원	46	1	4	1.85	0.868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47	1	2	1.19	0.398
국회의원	47	1	3	1.30	0.507
행정공무원	47	1	4	2.09	1.039
보호시설관련공무원	47	1	5	2.74	1.031
군부대종사자	47	1	4	1.81	0.798
<b>공공기관 영역</b>	<b>48</b>	<b>1.00</b>	<b>3.00</b>	<b>1.77</b>	<b>0.562</b>



<표 22> 공공기관 영역의 대상별 인권교육 활동 전체 평가

		N	평균	표준편차	<i>t, F</i> ( <i>p-value</i> )
성별	남자	36	1.77	0.578	-0.020
	여자	12	1.77	0.534	(0.984)
연령	30-39세(ab)	13	1.74	0.540	3.984
	40-49세(b)	25	1.94	0.573	(0.026)
	50-59세(a)	10	1.38	0.369	
경력	0-5년	13	1.88	0.583	2.262
	6-10년	17	1.92	0.618	(0.116)
	11년 이상	17	1.55	0.446	
영역	대학교(a)	16	1.58	0.517	9.944
	시민사회(a)	15	1.52	0.344	(0.000)
	국가인권위원회(b)	13	2.25	0.550	
<b>합계</b>		<b>48</b>	<b>1.77</b>	<b>0.562</b>	

공공기관 영역 전 대상에 대한 인권교육활동 평가점수를 전문가들의 성별, 연령, 경력, 활동영역에 따라 비교한 결과 전문가들의 연령과 활동영역에서 평가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는 40-49세는 1.94로 부족하다고 평가한 반면, 50-59세는 1.38로 매우 부족하다고 가까운 평가를 하여 50-59세가 40-49세 보다 좀 더 낮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영역에 따라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학교, 시민사회에 비해 높게 평가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평가점수는 2.25로 대학교와 시민사회의 평가점수 1.58, 1.52에 비해 높게 평가하였다.

각각의 대상에 따라서는 전문가들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정직 공무원과 보호시설관련 공무원에 대한 평가점수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행정공무원의 평가에서는 경력에 따른 차이가 다소 나타났다.

전문가들의 활동영역에 따라서는 입법관계자, 경찰공무원, 검사 및 검찰공무원 교정직 공무원, 보호직, 출입국 공무원, 행정직 공무원, 보호시설관련 공무원, 군부대 종사자에 인권교육활동 평가에 차이가 나타났다.

입법관계자(국회의원, 입법직 공무원 및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인권교육활동 평가점수는 1.56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전문가의 활동영역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평가점수는 1.92로 대학교와 시민사회의 평가점수는 각각 1.31, 1.40에 비해 높게, 부족하다는 2점 보다는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활동 평가에서는 전문가들의 활동영역이 국가인권위원회인 경우가 3.00으로 그저 그렇다 라는 평가를 하였으며 대학교와 시민사회의 평가점수는 각각 2.19, 1.79로 부족하다는 2점에 가까운 점수로 평가하였다.

검사 및 검찰 공무원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활동하는 전문가가 1.92로 평가하였으며 대학교와 시민사회는 각각 1.31, 1.29로 국가인권위원회 활동 전문가가 다른 전문가에 비해 좀 더 높게 평가하였다. 교정직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활동 평가에서는 연령, 영역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는 50-59세가 1.40로 30-39세, 40-49세의 평가점수 2.33, 2.40에 비해 더 낮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영역에 따라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평가점수가 3.15로 대학교와 시민사회가 1.75, 1.86인 것에 비해 다소 높게 평가하였다.

보호직, 출입국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활동 평가에서는 연령, 활동영역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는 50-59세가 1.20로 매우 부족하다고 평가한데 비해 30-39세, 40-49세의 평가점수 2.16로 50-59세에 비해 다소 점수가 높았다. 활동영역에 따라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평가점수가 2.62로 대학교와 시민사회가 1.56, 1.43인 것에 비해 다소 높게 평가하였다.

행정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활동 평가 결과 평균 2.09로 부족하다고 평가하였으며 경력, 활동영역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영역이 대학교와 시민사회인 경우는 각각 1.69, 1.64로 국가인권위원회 2.92에 비해 좀 더 낮게 평가하였다. 보호시설관련(사회복지사, 시설종사자 포함)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활동 평가는 연령, 영역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서는 50-59세가 2.00로 30-39세, 40-49세의 평가점수 3.08, 2.88에 비해 더 낮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영역에 따라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평가점수가 3.77로 잘했다에 가까운

평가를 한 것에 비해 대학교와 시민사회가 2.31, 2.36로 부족하다 정도의 평가를 하였다.

군부대종사자(장교, 부사관, 병사)에 대한 인권교육활동 평가는 전문가의 활동영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평가점수가 2.31로 대학교와 시민사회가 1.69, 1.43인 것에 비해 다소 높게 평가하였다.

		N	평균	표준편차	$t, F$ ( $p$ -value)	
입법 관계자 (국회의 원, 입법직공 무원 및 지방의회 의원)	성별	남자	36	1.56	0.652	-0.127
		여자	12	1.58	0.669	(0.899)
	연령	30-39세	13	1.54	0.660	0.489
		40-49세	25	1.64	0.700	(0.616)
		50-59세	10	1.40	0.516	
	경력	0-5년	13	1.62	0.768	0.899
		6-10년	17	1.71	0.686	(0.414)
		11년 이상	17	1.41	0.507	
	영역	대학교(a)	16	1.31	0.479	4.430
		시민사회(a)	15	1.40	0.507	(0.018)
국가인권위원회(b)		13	1.92	0.760		
합계		48	1.56	0.649		
사법부 (사법연 수원생, 판사, 및 법원행정 직 등)	성별	남자	35	1.74	0.741	0.063
		여자	11	1.73	0.647	(0.950)
	연령	30-39세	11	1.64	0.505	1.174
		40-49세	25	1.88	0.726	(0.319)
		50-59세	10	1.50	0.850	
	경력	0-5년	11	1.73	0.467	1.948
		6-10년	17	2.00	0.866	(0.155)
		11년 이상	17	1.53	0.624	
	영역	대학교	16	1.63	0.957	0.148
		시민사회	14	1.71	0.469	(0.863)
국가인권위원회		13	1.77	0.599		
합계		46	1.74	0.713		
경찰 공무원	성별	남자	35	2.26	1.010	-0.484
		여자	12	2.42	0.900	(0.630)
	연령	30-39세	12	2.50	1.000	1.750
		40-49세	25	2.40	0.866	(0.186)
		50-59세	10	1.80	1.135	
	경력	0-5년	12	2.67	1.155	2.172
		6-10년	17	2.41	0.870	(0.126)
		11년 이상	17	1.94	0.899	
	영역	대학교(a)	16	2.19	1.047	7.137
		시민사회(a)	14	1.79	0.579	(0.002)
국가인권위원회(b)		13	3.00	0.816		
합계		47	2.30	0.9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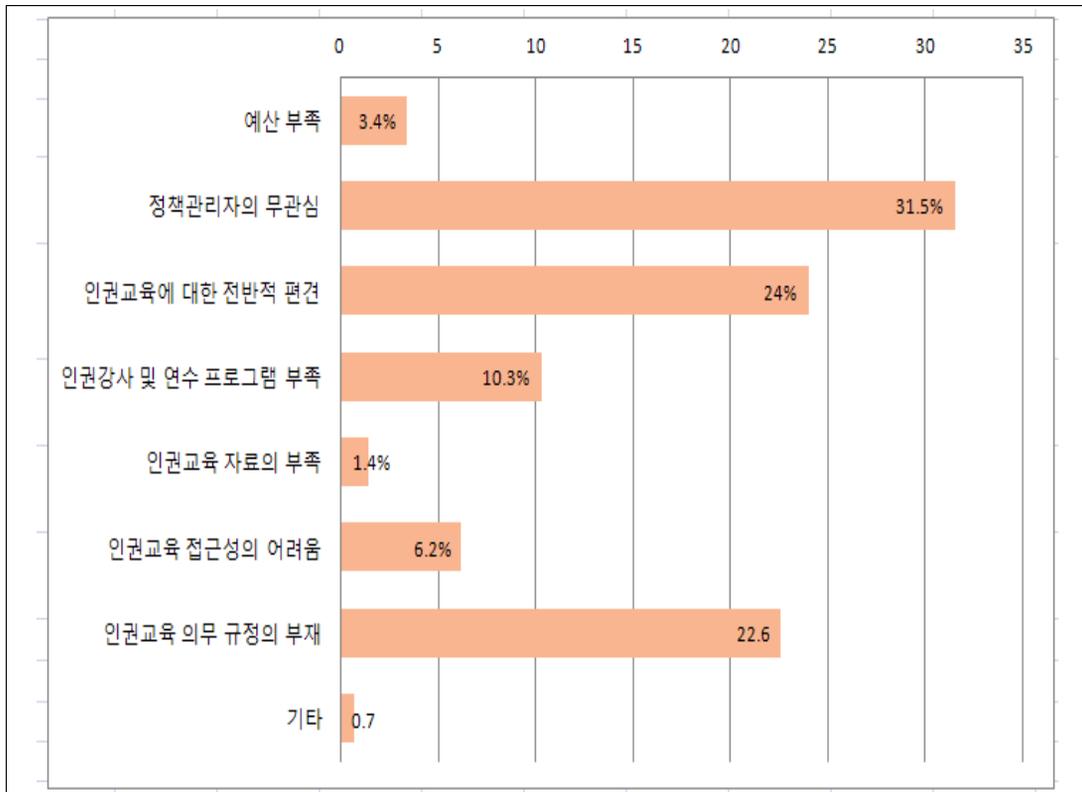
		N	평균	표준편차	<i>t, F</i> ( <i>p-value</i> )	
검사 및 경찰 공무원	성별	남자	35	1.46	0.741	-0.869
		여자	12	1.67	0.651	(0.389)
	연령	30-39세	12	1.58	0.669	2.211
		40-49세	25	1.64	0.810	(0.122)
		50-59세	10	1.10	0.316	
	경력	0-5년	12	1.75	0.754	2.081
		6-10년	17	1.59	0.795	(0.137)
		11년 이상	17	1.24	0.562	
	영역	대학교(a)	16	1.31	0.602	4.096
		시민사회(a)	14	1.29	0.469	(0.024)
국가인권위원회(b)		13	1.92	0.862		
합계		47	1.51	0.718		
국가 정보원	성별	남자	35	1.17	0.453	-0.519
		여자	12	1.25	0.452	(0.606)
	연령	30-39세	12	1.08	0.289	2.422
		40-49세	25	1.32	0.557	(0.101)
		50-59세	10	1.00	0.000	
	경력	0-5년	12	1.25	0.452	0.392
		6-10년	17	1.24	0.562	(0.678)
		11년 이상	17	1.12	0.332	
	영역	대학교	16	1.19	0.544	0.123
		시민사회	14	1.14	0.363	(0.884)
국가인권위원회		13	1.23	0.439		
합계		47	1.19	0.449		
교정직 공무원	성별	남자	35	2.20	0.933	0.343
		여자	12	2.08	1.240	(0.733)
	연령	30-39세(a)	12	2.33	0.985	4.264
		40-49세(a)	25	2.40	1.041	(0.020)
		50-59세(b)	10	1.40	0.516	
	경력	0-5년	12	2.50	1.168	2.247
		6-10년	17	2.29	1.047	(0.118)
		11년 이상	17	1.76	0.752	
	영역	대학교(a)	16	1.75	0.683	11.765
		시민사회(a)	14	1.86	0.663	(0.000)
국가인권위원회(b)		13	3.15	1.144		
합계		47	2.17	1.007		

		N	평균	표준편차	$t, F$ ( $p$ -value)	
보호직, 출입국 공무원	성별	남자	35	1.86	0.810	0.128
		여자	11	1.82	1.079	(0.898)
	연령	30-39세(ab)	11	1.73	0.647	5.381
		40-49세(b)	25	2.16	0.943	(0.008)
		50-59세(a)	10	1.20	0.422	
	경력	0-5년	11	2.18	0.874	2.840
		6-10년	17	2.00	0.935	(0.070)
		11년 이상	17	1.47	0.717	
	영역	대학교(a)	16	1.56	0.629	10.175
		시민사회(a)	14	1.43	0.646	(0.000)
국가인권위원회(b)		13	2.62	0.961		
합계		46	1.85	0.868		
청와대 및 국무 총리실	성별	남자	35	1.20	0.406	0.248
		여자	12	1.17	0.389	(0.805)
	연령	30-39세	12	1.08	0.289	3.184
		40-49세	25	1.32	0.476	(0.051)
		50-59세	10	1.00	0.000	
	경력	0-5년	12	1.17	0.389	0.129
		6-10년	17	1.24	0.437	(0.880)
		11년 이상	17	1.18	0.393	
	영역	대학교	16	1.13	0.342	1.194
		시민사회	14	1.29	0.469	(0.313)
국가인권위원회		13	1.08	0.277		
합계		47	1.19	0.398		
국회 의원	성별	남자	35	1.29	0.519	-0.278
		여자	12	1.33	0.492	(0.782)
	연령	30-39세	12	1.17	0.389	0.579
		40-49세	25	1.36	0.569	(0.565)
		50-59세	10	1.30	0.483	
	경력	0-5년	12	1.42	0.515	0.896
		6-10년	17	1.18	0.393	(0.416)
		11년 이상	17	1.35	0.606	
	영역	대학교	16	1.25	0.447	0.047
		시민사회	14	1.29	0.469	(0.954)
국가인권위원회		13	1.31	0.630		
합계		47	1.30	0.507		

			N	평균	표준편차	<i>t, F</i> ( <i>p-value</i> )
행정공 무원(국 가직, 지방직)	성별	남자	35	2.14	1.061	0.647
		여자	12	1.92	0.996	(0.521)
	연령	30-39세	12	2.17	1.267	2.167
		40-49세	25	2.28	0.980	(0.127)
		50-59세	10	1.50	0.707	
	경력	0-5년(ab)	12	2.17	0.937	5.624*
		6-10년(b)	17	2.53	1.179	(0.060)
		11년 이상(a)	17	1.65	0.786	
	영역	대학교(a)	16	1.69	0.873	9.692
		시민사회(a)	14	1.64	0.745	(0.000)
국가인권위원회(b)		13	2.92	0.954		
<b>합계</b>			<b>47</b>	<b>2.09</b>	<b>1.039</b>	
보호시 설관련 공무원( 사회복 지사, 시설종 사자 포함)	성별	남자	35	2.74	1.094	-0.020
		여자	12	2.75	0.866	(0.984)
	연령	30-39세(b)	12	3.08	0.996	3.907
		40-49세(b)	25	2.88	0.971	(0.027)
		50-59세(a)	10	2.00	0.943	
	경력	0-5년	12	3.00	1.044	1.580
		6-10년	17	2.94	1.144	(0.218)
		11년 이상	17	2.41	0.870	
	영역	대학교(a)	16	2.31	0.946	13.884
		시민사회(a)	14	2.36	0.633	(0.000)
국가인권위원회(b)		13	3.77	0.832		
<b>합계</b>			<b>47</b>	<b>2.74</b>	<b>1.031</b>	
군부대 종사자( 장교, 부서관, 병사)	성별	남자	35	1.86	0.845	0.710
		여자	12	1.67	0.651	(0.481)
	연령	30-39세	12	1.75	0.754	2.168
		40-49세	25	2.00	0.816	(0.126)
		50-59세	10	1.40	0.699	
	경력	0-5년	12	2.08	0.793	2.073
		6-10년	17	1.94	0.827	(0.138)
		11년 이상	17	1.53	0.717	
	영역	대학교(a)	16	1.69	0.793	5.067
		시민사회(a)	14	1.43	0.514	(0.011)
국가인권위원회(b)		13	2.31	0.855		
<b>합계</b>			<b>47</b>	<b>1.81</b>	<b>0.798</b>	

1) 공공기관 영역 인권교육의 가장 큰 장애요인

항 목	응 답		케이스 퍼센트
	빈도 (명)	퍼센트 (%)	
예산 부족	5	3.4	10.2
정책관리자의 무관심	46	31.5	93.9
인권교육에 대한 전반적 편견	35	24.0	71.4
인권강사 및 연수 프로그램 부족	15	10.3	30.6
인권교육 자료의 부족	2	1.4	4.1
인권교육 접근성의 어려움	9	6.2	18.4
인권교육 의무 규정의 부재	33	22.6	67.3
기타	1	0.7	2.0
<b>합계</b>	<b>146</b>	<b>100.0</b>	<b>298.0</b>



공공기관 영역 인권교육의 가장 큰 장애요인을 다중응답 분석한 결과, 146개 선택항목 중 정책관리자의 무관심이 31.5%(46명)로 가장 많았으며, 인권교육에 대한 전반적 편견 24.0%(35명), 인권교육 의무 규정의 부재 22.6%(33명), 인권강사 및 연수 프로그램 부족 10.3%(15명), 인권교육 접근성의 어려움 6.2%(9명), 예산부족 3.4%(5명), 인권교육 자료의 부족 1.4%(2명), 기타 0.7%(1명)로 나타났다. 특히, 정책관리자의 무관심은 전문가들의 93.9%가 선택하여 거의 대부분이 전문가들이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꼽았다.

		공공기관 영역 인권교육의 가장 큰 장애요인 3가지									합계
		예산 부족	정책 관리 자의 무관 심	인권 교육 에 대한 전반적 편견	인권 강사 및 연수 프로 그램 부족	인권 교육 자료 의 부족	인권 교육 접근 성의 어려 움	인권 교육 의무 규정 의 부재	기타		
성별	남자	총계	5	33	27	10	1	7	24	1	36
		%	13.9	91.7	75.0	27.8	2.8	19.4	66.7	2.8	
	여자	총계	0	13	8	5	1	2	9	0	13
		%	0.0	100.0	61.5	38.5	7.7	15.4	69.2	0.0	
<b>합계</b>		<b>총계</b>	<b>5</b>	<b>46</b>	<b>35</b>	<b>15</b>	<b>2</b>	<b>9</b>	<b>33</b>	<b>1</b>	<b>49</b>
연령	30-39세	총계	1	11	8	4	1	3	9	1	13
		%	7.7	84.6	61.5	30.8	7.7	23.1	69.2	7.7	
	40-49세	총계	4	25	18	8	1	3	19	0	26
		%	15.4	96.2	69.2	30.8	3.8	11.5	73.1	0.0	
	50-59세	총계	0	10	9	3	0	3	5	0	10
	%	0.0	100.0	90.0	30.0	0.0	30.0	50.0	0.0		
<b>합계</b>		<b>총계</b>	<b>5</b>	<b>46</b>	<b>35</b>	<b>15</b>	<b>2</b>	<b>9</b>	<b>33</b>	<b>1</b>	<b>49</b>
경력	0-5년	총계	0	14	9	5	0	3	9	1	14
		%	0.0	100.0	64.3	35.7	0.0	21.4	64.3	7.1	
	6-10년	총계	3	14	10	5	2	3	14	0	17
		%	17.6	82.4	58.8	29.4	11.8	17.6	82.4	0.0	
	11년이상	총계	1	17	15	5	0	3	10	0	17
	%	5.9	100.0	88.2	29.4	0.0	17.6	58.8	0.0		
<b>합계</b>		<b>총계</b>	<b>4</b>	<b>45</b>	<b>34</b>	<b>15</b>	<b>2</b>	<b>9</b>	<b>33</b>	<b>1</b>	<b>48</b>
영역	대학교	총계	1	16	12	5	0	5	9	0	16
		%	6.3	100.0	75.0	31.3	0.0	31.3	56.3	0.0	
	시민사회	총계	2	15	13	3	0	1	10	1	15
		%	13.3	100.0	86.7	20.0	0.0	6.7	66.7	6.7	
	국가인권 위원회	총계	2	11	7	6	2	1	10	0	13
	%	15.4	84.6	53.8	46.2	15.4	7.7	76.9	0.0		
<b>합계</b>		<b>총계</b>	<b>5</b>	<b>42</b>	<b>32</b>	<b>14</b>	<b>2</b>	<b>7</b>	<b>29</b>	<b>1</b>	<b>44</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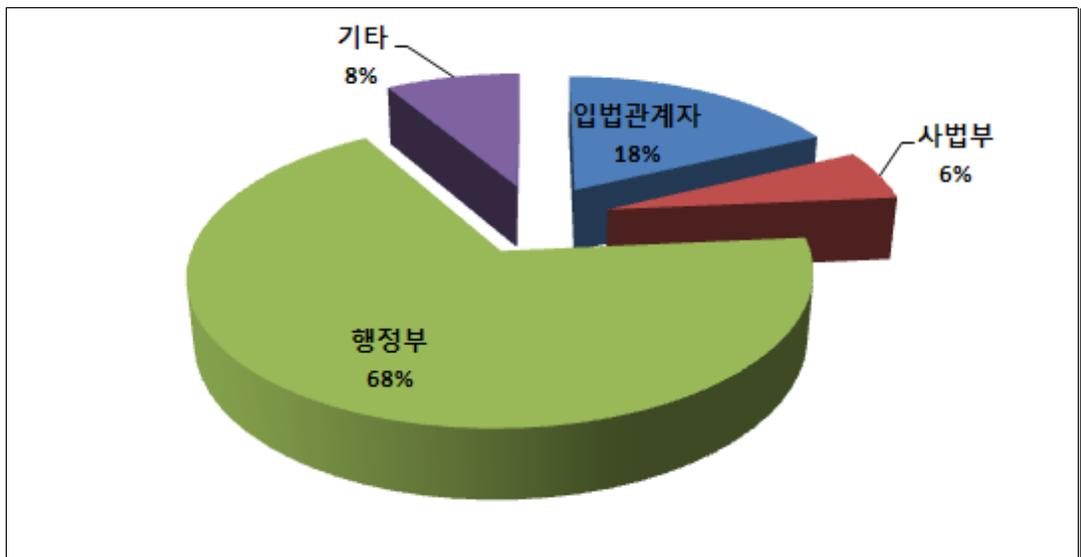
공공기관 인권교육의 가장 큰 장애요인에 대해 성별, 연령, 경력, 활동영역을 기준으로 하여 다중응답분석을 한 결과, 연령에 따라서 정책관리자의 무관심을 모두 가장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로 선택하였다. 그러나 40-49세는 인권교육의무규정의 부재가 73.1%, 인권교육에 대한 전반적 편견이 69.2%로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비해, 50-59세의 전문가는 인권교육에 대한 전반적 편견이 90.0%, 인권교육의무규정의 부재가 50%로 40대 전문가들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전문가의 경력에 따라서는 6-10년이 인권교육의무규정의 부재가 82.4%, 인권교육에 대한 전반적 편견이 58.8%였으며, 11년 이상인 전문가는 인권교육에 대한 전반적 편견이 88.2%, 인권교육의무규정의 부재가 58.8%로 경력이 6년에서 10년 사이인 전문가들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시민사회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은 인권교육에 대한 전반적 편견이 86.7%, 인권교육의무규정의 부재가 66.7%인데 비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교육에 대한 전반적 편견이 53.8%, 인권교육의무규정의 부재가 79.9%로 나타나 시민사회는 인권교육에 대한 전반적 편견이,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교육의무규정의 부재가 각각 더 높게 나타났다.

2) 공공기관 영역 인권교육에서 우선되어야 할 대상

항 목	응 답		케이스 퍼센트
	빈도 (명)	퍼센트 (%)	
입법관계자	25	17.9	53.2
사법부	8	5.7	17.0
행정부	95	67.9	202.1
기타	12	8.6	25.5
합계	140	100.0	297.9



공공기관 영역 인권교육에서 우선되어야 할 대상에 대해 다중응답 분석한 결과 행정부 67.9%(95명)로 가장 많았으며, 입법관계자 17.9%(25명), 기타 8.6%(12명), 사법부 5.7%(8명) 순으로 나타났다. 행정부는 응답자의 202.1%가 선택하여 다수의 응답자가 행정부를 복수응답으로 선택하였다.

공공기관영역 인권교육에서 우선되어야 할 대상에 대해 성별, 연령, 경력, 활동영역을 기준으로 하여 살펴보면, 우선 전문가의 경력에 따라서는 11년 이상인 전문가의 217.6%가 행정부를 선택하여 경력이 6년에서 10년 이하인 전문가가 선택한 176.5%보다 더욱 많은 수가 행정부를 그 대상으로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력이 11년 이상인 전문가는 행정부에 속하는 대상을 적어도 2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영역이 시민사회인 전문가들은 행정부에 포함되는 대상을 231.3%로 대학교 178.6%에 비해 더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영역 인권교육에서 우선되어야 할 대상 3집단				합계
			입법관계자	사법부	행정부	기타	
성별	남자	총계	18	7	70	7	34
		%	52.9	20.6	205.9	20.6	
성별	여자	총계	7	1	25	5	13
		%	53.8	7.7	192.3	38.5	
<b>합계</b>		<b>총계</b>	<b>25</b>	<b>8</b>	<b>95</b>	<b>12</b>	<b>47</b>
연령	30-39세	총계	8	2	22	0	11
		%	72.7	18.2	200.0	0.0	
	40-49세	총계	15	5	55	6	27
		%	55.6	18.5	203.7	22.2	
	50-59세	총계	2	1	18	6	9
		%	22.2	11.1	200.0	66.7	
<b>합계</b>		<b>총계</b>	<b>25</b>	<b>8</b>	<b>95</b>	<b>12</b>	<b>47</b>
경력	0-5년	총계	7	3	25	0	12
		%	58.3	25.0	208.3	.0	
	6-10년	총계	12	3	30	6	17
		%	70.6	17.6	176.5	35.3	
	11년	총계	6	2	37	6	17
이상	%	35.3	11.8	217.6	35.3		
<b>합계</b>		<b>총계</b>	<b>25</b>	<b>8</b>	<b>92</b>	<b>12</b>	<b>46</b>
영역	대학교	총계	7	4	25	6	14
		%	50.0	28.6	178.6	42.9	
	시민사회	총계	8	1	37	2	16
		%	50.0	6.3	231.3	12.5	
	국가인권위원회	총계	7	3	24	4	13
		%	53.8	23.1	184.6	30.8	
<b>합계</b>		<b>총계</b>	<b>22</b>	<b>8</b>	<b>86</b>	<b>12</b>	<b>43</b>

## 3) 공공기관 영역 인권교육이 더 잘되기 위해 필요한 점

 교육대상

- 시민의 접촉이 많은 기관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효과 있는 인권교육을 할 필요가 있음
- 대상 분야 확대

 인권교육의 인적 물적 기반 조성

- 공공영역 전문강사단 양성
- 당사자 그룹 내에서 중간 교육자 양성을 통한 관심 불러일으키기
- 인권강사 양성과 교재의 개발
- 체계적인 프로그램 수립
- 인권교육의 자료 확보
- 다양한 인권교육의 방식과 접근이 필요
- 업무 밀접 사례 발굴 및 활용 교육을 확대하여 교육 효과 제고 필요
- 인권의 철학적 기반이 있는 교육적 내용(교재개발) 필요
- 인권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가진 인권강사가 필요(인권강사의 자질강화 및 인권교육 강화)
- 특정 공공기관이 가장 침해하기 쉬운 사례를 중심으로 실용성 있는 인권교육을 실시
- 자체 인력보다 해당 분야를 감시하는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인권교육을 실시

 교육의 의무화

- 승진 시 인권감수성 지수 체크제 도입
- 인권교육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
- 인권교육이 의무화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필요
- 예산확보 법제화
- 인권침해를 한 경우에는 즉각 시정조치를 하고, 인권 침해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세우는 차원의 인권교육이 중요
- 인권교육의 법제화(의무화, 강제화) 관리자 및 리더층 교육
- 연간 일정시간 인권 교육 의무화
- 공공기관 종사자 인권교육 의무화
- 모든 공공기관 영역에 대한 연간 직무연수로 인권교육 수강 의무화
- 인권교육법 제정을 통한 공공분야 인권교육 의무화 및 예산, 정책 수립
- 인권교육 의무교육의 이수규정 필요
- 인권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인권교육 의무화
- 인권교육법 제정을 통한 교육의 의무화

- 인권관련 기관의 공무원의 교육 필수화, 인권침해 사례 가해공무원의 강력한 처벌, 인권준수사항 의무화
- 인권교육법 제정, 인권교육법 통과
- 각 기관의 교육원 교육프로그램에 연수과정 또는 교과목 설치를 의무화 할 필요

지원 기관 및 예산

- 국가인권위의 인권강사 양성을 위한 교육원 설립 필요
- 체계적인 인권교육 전문기관 필요
- 민간 자원의 협조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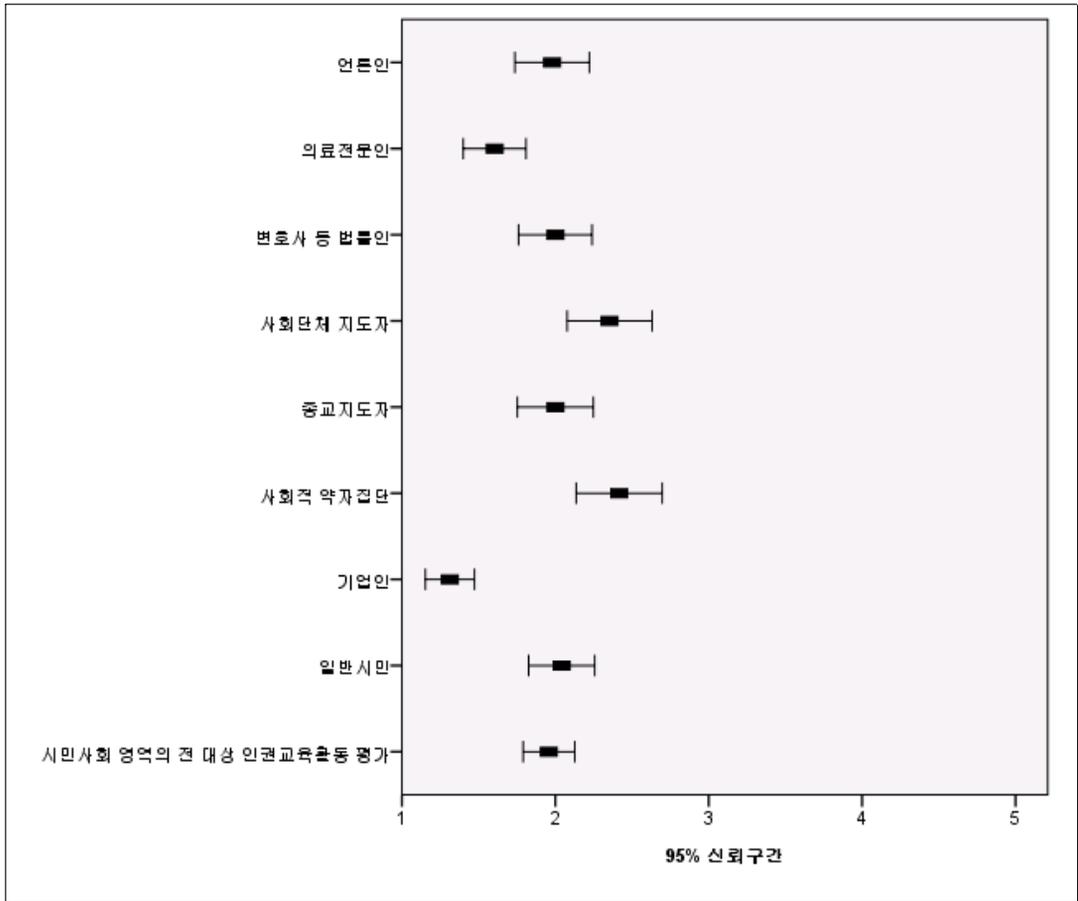
의식 변화

- 사회적 약자나 피해자에 대한 인권의식 함양
- 인권교육이 사회발전과 교육에 장애가 된다는 편견 제거
- 인권교육에 대한 정책관리자의 무관심 혹은 전반적 편견을 배제하는 작업이 우선
- 인권은 불편한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이라는 인식
- 인권교육을 하려는 의지가 필요
- 내부에서의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
- 기관장의 관심과 협조가 필수적
- 정부의 관심 제고
- 정부차원의 인권교육 필요성 인식
- 전시행정적 인권교육을 넘어 인권교육에 진실성을 담보
- 인권을 거추장스러운 걸림돌 정도로 여기는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팽배

(3) 시민사회 영역의 대상별 인권교육활동을 평가

<표 23> 시민사회 영역의 대상별 인권교육활동 평가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언론인	48	1	4	1.98	0.838
의료전문인	48	1	3	1.60	0.707
변호사 등 법률인	48	1	4	2.00	0.825
사회단체 지도자	48	1	4	2.35	0.956
종교지도자	48	1	4	2.00	0.851
사회적 약자집단	48	1	4	2.42	0.964
기업인	48	1	3	1.31	0.552
일반시민	48	1	3	2.04	0.743
<b>시민사회 영역</b>	<b>48</b>	<b>1.00</b>	<b>3.29</b>	<b>1.96</b>	<b>0.580</b>



시민사회 영역의 인권활동 평가는 1.96점으로 부족하다는 평가를 하였으며, 대상별 인권교육 활동을 평가하는 사회적 약자집단과 사회단체 지도자가 각각 2.42점, 2.35점으로 다른 대상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일반시민이 2.04점, 변호사 등 법률인, 종교지도자가 각각 2.00점으로 나타났으며, 의료전문인과 기업인이 각각 1.60과 1.31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언론인은 1.98점으로 인권교육활동이 부족하다고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시민사회 영역의 대상별 인권교육활동 평가는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lt;표 24&gt; 시민사회 영역의 대상별 인권교육 활동 전체 평가

		N	평균	표준편차	<i>t, F</i> ( <i>p-value</i> )
성별	남자	36	2.00	0.589	0.776 (0.442)
	여자	12	1.85	0.563	
연령	30-39세	13	1.85	0.596	0.594 (0.556)
	40-49세	25	2.05	0.554	
	50-59세	10	1.89	0.649	
경력	0-5년	13	1.89	0.506	1.020 (0.369)
	6-10년	17	2.13	0.626	
	11년 이상	17	1.88	0.567	
영역	대학교	16	1.83	0.706	1.640 (0.207)
	시민사회	15	1.82	0.580	
	국가인권위원회	13	2.18	0.400	
<b>합계</b>		<b>48</b>	<b>1.96</b>	<b>0.580</b>	

시민사회 영역 전 대상에 대한 인권교육활동 평가와 성별, 연령, 경력, 활동영역에 따른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종교지도자, 사회단체 지도자에 대한 인권교육활동 평가의 경우에는 경력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이 0-5년의 경력을 가진 응답자들의 평가점수는 1.77점으로 6-10년, 11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가들이 각각 내린 평가점수인 2.76점, 2.47점에 비해 낮게 평가하였다.

종교지도자에 대한 인권교육활동 평가는 연령에 따라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즉, 30-39세 응답자들의 평가점수는 1.62점으로 40-49세 평가점수인 2.28점에 비해 낮게 평가하였다.

일반시민에 대한 인권교육활동 평가에서는 전문가들의 활동영역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가령, 국가인권위원회의 평가점수는 2.54점으로 대학교와 시민사회 각각의 평가점수인 1.81점, 1.67점에 비해 높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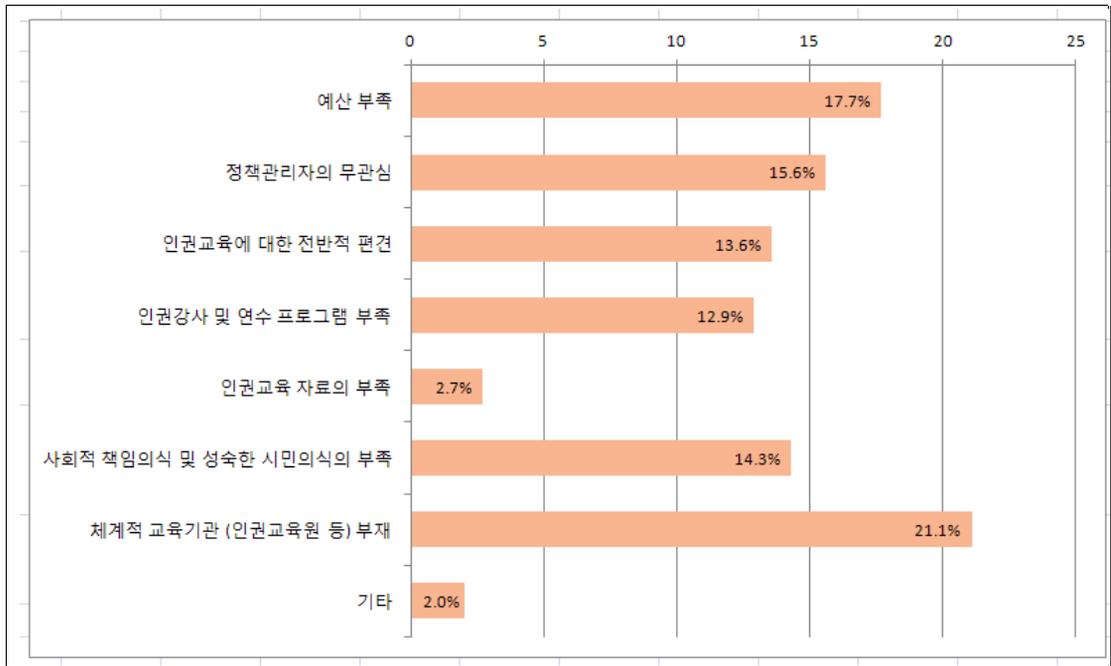
		N	평균	표준편차	$t, F$ ( $p$ -value)	
언론인	성별	남자	36	2.06	0.860	1.097
		여자	12	1.75	0.754	(0.278)
	연령	30-39세	13	2.15	0.987	2.208
		40-49세	25	2.08	0.759	(0.122)
		50-59세	10	1.50	0.707	
	경력	0-5년	13	2.23	0.725	1.131
		6-10년	17	2.00	1.061	(0.332)
		11년 이상	17	1.76	0.664	
	영역	대학교	16	1.75	0.856	1.672
		시민사회	15	1.87	0.743	(0.200)
		국가인권위원회	13	2.31	0.947	
	<b>합계</b>		<b>48</b>	<b>1.98</b>	<b>0.838</b>	
의료 전문인	성별	남자	36	1.61	0.688	0.117
		여자	12	1.58	0.793	(0.908)
	연령	30-39세	13	1.62	0.768	0.002
		40-49세	25	1.60	0.707	(0.998)
		50-59세	10	1.60	0.699	
	경력	0-5년	13	1.62	0.768	0.028
		6-10년	17	1.65	0.786	(0.972)
		11년 이상	17	1.59	0.618	
	영역	대학교	16	1.63	0.719	0.627
		시민사회	15	1.40	0.632	(0.539)
		국가인권위원회	13	1.69	0.855	
	<b>합계</b>		<b>48</b>	<b>1.60</b>	<b>0.707</b>	
변호사 등 법률인	성별	남자	36	2.06	0.893	0.805
		여자	12	1.83	0.577	(0.425)
	연령	30-39세	13	1.77	0.599	1.054
		40-49세	25	2.16	0.800	(0.357)
		50-59세	10	1.90	1.101	
	경력	0-5년	13	1.92	0.760	1.118
		6-10년	17	2.24	0.903	(0.336)
		11년 이상	17	1.82	0.809	
	영역	대학교	16	2.06	1.124	0.205
		시민사회	15	1.87	0.743	(0.816)
		국가인권위원회	13	2.00	0.577	
	<b>합계</b>		<b>48</b>	<b>2.00</b>	<b>0.825</b>	

		N	평균	표준편차	<i>t, F</i> ( <i>p-value</i> )	
사회 단체 지도자	성별	남자	36	2.42	0.996	0.781
		여자	12	2.17	0.835	(0.439)
	연령	30-39세	13	1.92	0.954	1.881
		40-49세	25	2.52	0.823	(0.164)
		50-59세	10	2.50	1.179	
	경력	0-5년(a)	13	1.77	0.725	4.913
		6-10년(b)	17	2.76	0.970	(0.012)
		11년 이상(b)	17	2.47	0.874	
	영역	대학교	16	2.19	1.167	0.442
		시민사회	15	2.33	0.900	(0.646)
국가인권위원회		13	2.54	0.877		
<b>합계</b>		<b>48</b>	<b>2.35</b>	<b>0.956</b>		
종교 지도자	성별	남자	36	2.08	0.841	1.181
		여자	12	1.75	0.866	(0.244)
	연령	30-39세(a)	13	1.62	0.768	3.243
		40-49세(b)	25	2.28	0.737	(0.048)
		50-59세(ab)	10	1.80	1.033	
	경력	0-5년	13	1.69	0.855	2.517
		6-10년	17	2.35	0.862	(0.092)
		11년 이상	17	1.94	0.748	
	영역	대학교	16	1.75	1.000	1.030
		시민사회	15	2.20	0.775	(0.366)
국가인권위원회		13	2.00	0.816		
<b>합계</b>		<b>48</b>	<b>2.00</b>	<b>0.851</b>		
사회적 약자 집단	성별	남자	36	2.50	1.000	1.038
		여자	12	2.17	0.835	(0.305)
	연령	30-39세	13	2.15	1.068	0.709
		40-49세	25	2.48	0.918	(0.497)
		50-59세	10	2.60	0.966	
	경력	0-5년	13	2.38	0.768	0.289
		6-10년	17	2.59	1.121	(0.750)
		11년 이상	17	2.35	0.931	
	영역	대학교	16	2.38	1.025	2.829
		시민사회	15	2.07	0.799	(0.071)
국가인권위원회		13	2.92	1.038		
<b>합계</b>		<b>48</b>	<b>2.42</b>	<b>0.964</b>		

		N	평균	표준편차	$t, F$ ( $p$ -value)	
기업인	성별	남자	36	1.31	0.525	-0.149
		여자	12	1.33	0.651	(0.882)
	연령	30-39세	13	1.31	0.630	0.005 (0.995)
		40-49세	25	1.32	0.557	
		50-59세	10	1.30	0.483	
	경력	0-5년	13	1.31	0.630	0.421 (0.659)
		6-10년	17	1.41	0.618	
		11년 이상	17	1.24	0.437	
	영역	대학교	16	1.31	0.602	0.177 (0.838)
		시민사회	15	1.20	0.414	
		국가인권위원회	13	1.23	0.599	
	<b>합계</b>		<b>48</b>	<b>1.31</b>	<b>0.552</b>	
일반 시민	성별	남자	36	2.00	0.717	-0.669
		여자	12	2.17	0.835	(0.507)
	연령	30-39세	13	2.15	0.899	0.321 (0.727)
		40-49세	25	2.04	0.676	
		50-59세	10	1.90	0.738	
	경력	0-5년	13	2.23	0.599	1.476 (0.240)
		6-10년	17	2.18	0.809	
		11년 이상	17	1.82	0.728	
	영역	대학교(a)	16	1.81	0.750	7.205 (0.002)
		시민사회(a)	15	1.67	0.617	
		국가인권위원회(b)	13	2.54	0.519	
	<b>합계</b>		<b>48</b>	<b>2.04</b>	<b>0.743</b>	

1) 시민사회 영역 인권교육의 가장 큰 장애요인

항 목	응 답		케이스 퍼센트
	빈도 (명)	퍼센트 (%)	
예산 부족	26	17.7	53.1
정책관리자의 무관심	23	15.6	46.9
인권교육에 대한 전반적 편견	20	13.6	40.8
인권강사 및 연수 프로그램 부족	19	12.9	38.8
인권교육 자료의 부족	4	2.7	8.2
사회적 책임의식 및 성숙한 시민의식의 부족	21	14.3	42.9
체계적 교육기관(인권교육원 등) 부재	31	21.1	63.3
기타	3	2.0	6.1
<b>합계</b>	<b>147</b>	<b>100.0</b>	<b>300.0</b>



시민사회 영역 인권교육의 가장 큰 장애요인 3가지를 선택하는 문항에서 응답자들은 체계적 교육기관(인권교육원 등) 부재 21.1%(31명)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이어서 예산부족 17.7%(26명), 정책관리자의 무관심 15.6%(23명), 사회적 책임의식 및 성숙한 시민의식의 부족 14.3%(21명), 인권교육에 대한 전반적 편견 13.6%(20명), 인권강사 및 연수 프로그램 부족 12.9%(19명), 인권교육 자료의 부족 2.7%(4명), 기타 2.0%(3명)를 선택하였다. 시민사회 영역에서는 전문가들의 63.3%가 체계적 교육기관(인권교육원 등) 부재를 선택하였다.

			시민사회 영역 인권교육의 가장 큰 장애요인 3가지								합계
			예산 부족	정책 관리 자의 무관심	인권교 육에 대한 전반적 편견	인권강 사 및 연수 프로 그램 부족	인권 교육 자료의 부족	사회적 책임 의식 및 성숙한 시민 의식의 부족	체계적 교육 기관 (인권 교육원 등) 부재	기타	
성별	남자	총계	17	19	15	15	4	14	24	0	36
		%	47.2	52.8	41.7	41.7	11.1	38.9	66.7	0.0	
	여자	총계	9	4	5	4	0	7	7	3	13
%		69.2	30.8	38.5	30.8	0.0	53.8	53.8	23.1		
	합계	총계	26	23	20	19	4	21	31	3	49
연령	30-39세	총계	9	1	7	8	1	6	6	1	13
		%	69.2	7.7	53.8	61.5	7.7	46.2	46.2	7.7	
	40-49세	총계	13	15	10	9	2	11	17	1	26
		%	50.0	57.7	38.5	34.6	7.7	42.3	65.4	3.8	
	50-59세	총계	4	7	3	2	1	4	8	1	10
%		40.0	70.0	30.0	20.0	10.0	40.0	80.0	10.0		
	합계	총계	26	23	20	19	4	21	31	3	49
경력	0-5년	총계	6	4	7	6	2	6	8	0	13
		%	46.2	30.8	53.8	46.2	15.4	46.2	61.5	0.0	
	6-10년	총계	12	5	6	8	1	7	13	2	18
		%	66.7	27.8	33.3	44.4	5.6	38.9	72.2	11.1	
	11년이상	총계	8	14	6	4	1	7	10	1	17
%		47.1	82.4	35.3	23.5	5.9	41.2	58.8	5.9		
	합계	총계	26	23	19	18	4	20	31	3	48
영역	대학교	총계	7	8	6	6	1	7	12	1	16
		%	43.8	50.0	37.5	37.5	6.3	43.8	75.0	6.3	
	시민사회	총계	11	10	8	4	0	7	7	1	16
		%	68.8	62.5	50.0	25.0	0.0	43.8	43.8	6.3	
	국가인권위원회	총계	7	2	4	8	3	6	8	1	13
%		53.8	15.4	30.8	61.5	23.1	46.2	61.5	7.7		
	합계	총계	25	20	18	18	4	20	27	3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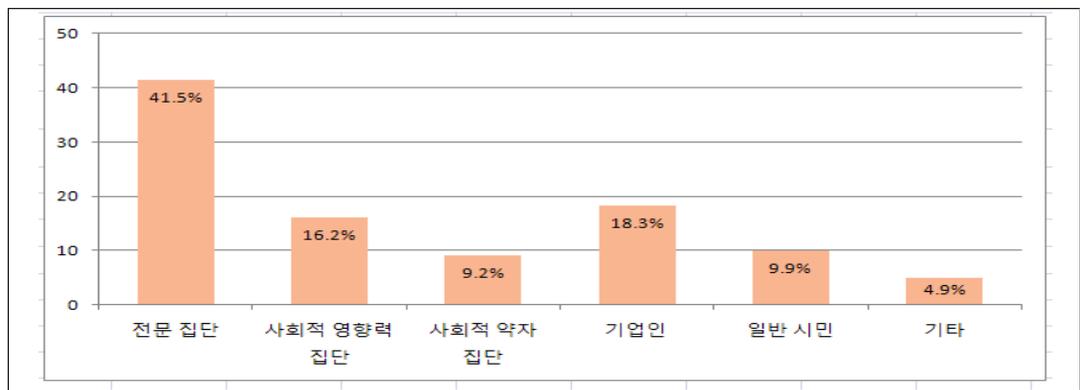
시민사회영역 인권교육에서 우선되어야 할 대상에 대해 성별, 연령, 경력, 활동영역에 따라 살펴보면, 먼저 성별을 기준으로 보면 남성의 경우는 체계적 교육기관부재가 66.7%로 가장 많았으며, 여성은 예산부족이 69.2%로 가장 많았다. 다음 연령을 기준으로 보면, 50-59세의 전문가들의 경우에는 체계적 교육기관부재가 80.0%로 가장 많았으며, 30-39세의 경우에는 예산부족과 인권강사 및 연수프로그램 부족이 각각 69.2%, 61.5%로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의 경력을 기준으로 보면, 11년 이상인 전문가의 경우에는 정책관리자의 무관심이 82.4%로 가장 높았으며, 경력이 6년에서 10년 이하인 전문가의 경우에는 체계적 교육기간 부재가 72.2%, 예산부족이 66.7%, 경력에 5년 이하인 전문가의 경우에는 체계적 교육기간 부재가 61.5%로 높게 나타났다.

활동영역이 시민사회인 전문가들의 경우에는 예산부족이 68.8%,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에는 인권강사 및 연수프로그램 부족과 체계적 교육기간 부재가 각각 61.5%였으며, 대학교에서 활동하는 전문가의 경우에는 체계적 교육기간 부재가 75.0%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 2) 시민사회 영역 인권교육에서 우선되어야 할 대상

항 목	응 답		케이스 퍼센트
	빈도 (명)	퍼센트 (%)	
전문 집단	59	41.5	122.9
사회적 영향력 집단	23	16.2	47.9
사회적 약자 집단	13	9.2	27.1
기업인	26	18.3	54.2
일반 시민	14	9.9	29.2
기타	7	4.9	14.6
<b>합계</b>	<b>140</b>	<b>100.0</b>	<b>295.8</b>



시민사회 영역 인권교육에서 우선되어야 할 대상 3개 집단을 다중응답분석한 결과 전문집단이 41.5%(59명)로 가장 많았으며, 기업인 18.3%(26명), 사회적 영향력 집단 16.2%(23명), 일반시민 9.9%(14명), 사회적 약자 집단 9.2%(13명), 기타 4.9%(7명)로 나타났다. 특히, 전문집단은 122.9%로 모든 응답자가 적어도 1개 이상 전문집단에 포함되는 대상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3) 시민사회 영역 인권교육이 더 잘되기 위해 필요한 점

#### 교육의 의무화 및 규제

- 인권교육 의무화
- 초·중·고 및 대학교에서 인권교육 의무화
- 인권교육 미 이행에 대한 규제
- 인권교육법 통과

#### 인권교육의 대중화

- 공영방송에서도 인권교육 프로그램 방송
- 언론의 관심
- 일반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
- 인권교육의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전략
- 시민인권교육의 활성화
- 시민 홍보를 통한 공감대 형성
- 일반 시민 대상 인권 학교 개최

#### 의식

- 시민들로 하여금 건강한 시민사회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낸다는 의식을 갖게 한다.
- 특정 집단과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사회구성원 전체의 노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시민 의식이 필요
- 인권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접근
- 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사회전반의 태도가 필요
- 인권교육에 대한 편견 해소 및 필요성 공감
- 인권교육은 인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각인시킬 필요
- 정부차원의 인권교육의 필요성 인식
- 인권교육에 대한 편견 제거
- 시민사회의 전문가적 영역이 많아서 그 사람들의 전문가적 권위를 뛰어넘어선 사회적 책임 의식 필요
- 약자에 대한 배려와 인권존중의식을 높여야 함

□ 인적 물적 기반 조성

- 교육과정 설치
- 시민사회의 인권교육 인프라 조성
-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다양한 교육자료 확보
- 대상별 전문화된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인권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 인권교육프로그램 운영
  - ▶ 각종 교육기관을 활용한 인권교육프로그램 운영
  - ▶ 직장 내(보수)교육 프로그램에 인권교육 포함
  - ▶ 인권교육단체 등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
- 인권교육을 위한 물적 기반(교육센터, 다양한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
-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내부 교양 프로그램 필요
- 평생학습 차원의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 인권교육 접근성 제고
- 틀에 박힌 인권교육자를 배제(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한 의식 없는 인권교육자 선임 배제)
- 인권강사 육성방안
  - ▶ 인권교육의 노하우와 의지를 가진 단체나 교사모임 등에 집중적인 지원을 해서 사람부터 키우는 풍토
  - ▶ 인권강사단 지원
  - ▶ 인권강사 양성 및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 개발
- 시민사회영역 인권교육 연수 도입, 해외 인권연수지원
- 인권교육의 자료를 개발
  - ▶ 특정 시민사회 영역에 맞춤형 교육자료를 개발
  - ▶ 가급적 해당분야의 직무집단과 함께 교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형식이 바람직
- 감시하는 형식이 아닌 자체 집단에서 역량강화를 하는 차원에서 인권교육이 활성화
- 일상생활의 반인권적 실태를 충분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 교육기관 설립 및 예산

- 체계적 인권교육 확산을 위한 인권교육원(교육기관) 설립
- 인권교육의 전문성을 위한 교육기관
- 인권교육을 책임 있게 추진해 할 운영 주체의 설립
- 인권교육 예산지원
- 조직력을 갖추는 방안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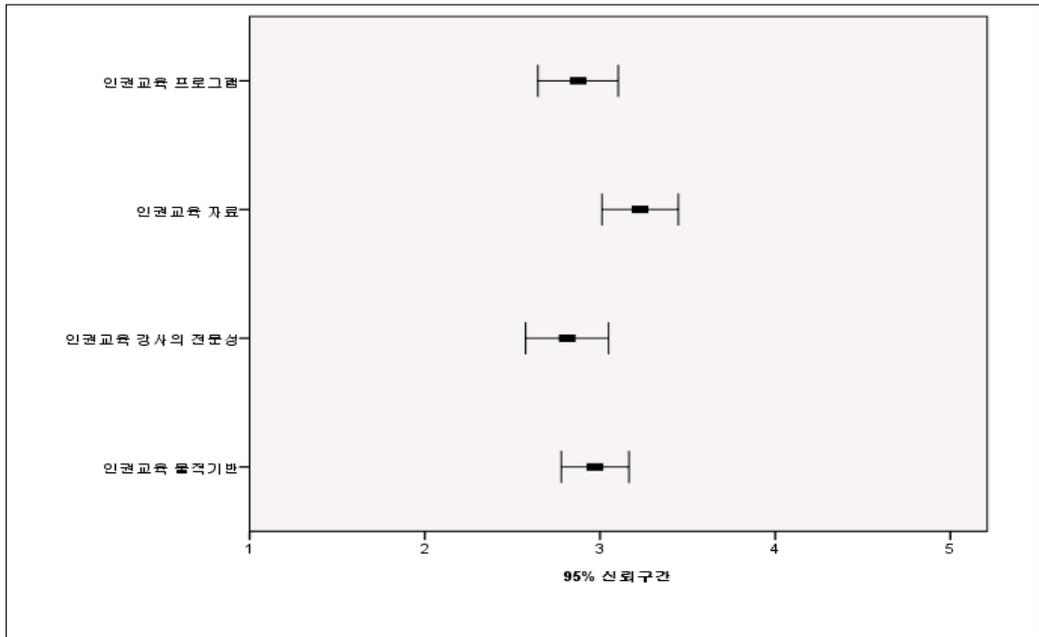
### 3. 인권교육의 물적기반

#### (1) 인권교육프로그램과 자료, 강사의 전문성 평가

인권교육프로그램과 자료, 강사의 전문성을 포함한 인권교육의 물적 기반에 대해서는 평균 2.97점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교육프로그램은 2.88점, 인권교육자료는 3.23점, 인권교육 강사의 전문성은 2.81점으로 인권교육자료에 대한 평가가 3가지 항목 중에서는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25> 인권교육의 물적기반 평가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인권교육 프로그램	48	2	4	2.88	0.789
인권교육 자료	48	2	5	3.23	0.751
인권교육 강사의 전문성	48	1	4	2.81	0.816
인권교육의 물적기반	48	1.67	4.00	2.97	0.666



&lt;표 26&gt; 인권교육 프로그램과 자료, 강사의 전문성 전체 평가

		N	평균	표준편차	<i>t, F</i> ( <i>p-value</i> )
성별	남자	35	2.97	0.716	-0.013 (0.989)
	여자	13	2.97	0.535	
연령	30-39세	12	2.94	0.736	0.364 (0.697)
	40-49세	26	2.92	0.662	
	50-59세	10	3.13	0.632	
경력	0-5년	12	2.83	0.541	2.230 (0.119)
	6-10년	17	3.25	0.572	
	11년 이상	18	2.85	0.752	
영역	대학교	16	2.98	0.704	0.151 (0.861)
	시민사회	15	2.58	0.541	
	국가인권위원회	13	3.38	0.542	
<b>합계</b>		<b>48</b>	<b>2.97</b>	<b>0.666</b>	

성별, 연령, 경력, 영역에 따라 인권교육의 물적 기반인 인권교육 프로그램, 자료, 강사의 전문성 전체에 대한 평가의 차이를 알아 본 결과, 성별, 연령, 경력, 영역 각각에 대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연령, 경력, 영역에 따른 인권교육 프로그램 평가 차이를 알아 본 결과, 성별, 연령, 경력, 영역 각각에 대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평균 점수는 2.88점으로 ‘그저 그렇다’의 3점보다 약간 낮은 결과로 나타났다.

인권교육의 물적 기반에 해당하는 인권교육 프로그램, 자료, 강사의 전문성 각각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성별, 연령, 경력, 활동영역에 따른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인권교육자료와 인권교육 강사의 전문성에 대해 전문가들의 활동영역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영역에 따라 인권교육자료에 대해 평가한 것을 보면, 대학교와 국가인권위원회의 평가점수는 각각 3.44점, 3.69점으로 잘했다는 측면에 중점을 둔 평가를 한 반면, 시민사회의 평가점수는 2.60점으로 부족하다는 평가를 하였다. 인권교육 강사의 전문성에 대한 평가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평가점수는 3.31점으로 3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대학교와 시민사회의 평가점수는 각각 2.56점, 2.53점으로 부족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N	평균	표준편차	<i>t, F</i> ( <i>p-value</i> )	
인권교육 프로그램	성별	남자	35	2.89	0.796	0.153
		여자	13	2.85	0.801	(0.879)
	연령	30-39세	12	2.75	0.866	0.564 (0.573)
		40-49세	26	2.85	0.732	
		50-59세	10	3.10	0.876	
	경력	0-5년	12	2.67	0.651	0.683 (0.510)
		6-10년	17	3.00	0.791	
		11년 이상	18	2.94	0.873	
	영역	대학교	16	2.94	0.854	1.863 (0.168)
		시민사회	15	2.60	0.632	
국가인권위원회		13	3.15	0.801		
<b>합계</b>		<b>48</b>	<b>2.88</b>	<b>0.789</b>		
인권교육 자료	성별	남자	35	3.23	0.808	-0.009
		여자	13	3.23	0.599	(0.993)
	연령	30-39세	12	3.08	0.669	0.475 (0.625)
		40-49세	26	3.23	0.815	
		50-59세	10	3.40	0.699	
	경력	0-5년	12	3.17	0.577	3.183 (0.051)
		6-10년	17	3.59	0.618	
		11년 이상	18	3.00	0.840	
	영역	대학교(b)	16	3.44	0.814	11.843 (0.000)
		시민사회(a)	15	2.60	0.507	
국가인권위원회(b)		13	3.69	0.480		
<b>합계</b>		<b>48</b>	<b>3.23</b>	<b>0.751</b>		
인권교육 강사의 전문성	성별	남자	35	2.80	0.868	-0.172
		여자	13	2.85	0.689	(0.864)
	연령	30-39세	12	3.00	0.953	0.646 (0.529)
		40-49세	26	2.69	0.736	
		50-59세	10	2.90	0.876	
	경력	0-5년	12	2.67	0.651	2.587 (0.087)
		6-10년	17	3.18	0.809	
		11년 이상	18	2.61	0.850	
	영역	대학교(a)	16	2.56	0.814	4.435 (0.018)
		시민사회(a)	15	2.53	0.834	
국가인권위원회(b)		13	3.31	0.630		
<b>합계</b>		<b>48</b>	<b>2.81</b>	<b>0.816</b>		

### 1) 개발해야 할 프로그램이나 자료

#### 강사 관련

- 체계적인 강사 양성 프로그램 정착과 활용
- 인권교육강사 교육프로그램 체계화
- 전문강사들의 교육기법 공유 및 확산
- 인권강사단 양성 프로그램을 통한 인권강사 감수성 교육 필요
- 인권강사에게는 인권감수성 뿐만 아니라, 인권전문성도 중요
- 좌중을 압도할 만한 인권교육 강사 자질의 개발 훈련
- 인권교육 강사의 분야별 편중 지양

#### 자료의 전문화 및 대상별 세분화

- 일반 영역의 인권과 개별, 특수 영역에 대한 인권 자료들의 전문화
- 각 대상별 인권교육의 자료 및 교재의 세분화
- 교육대상별로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내용을 선정하여 교재 개발
- 진부한 기존 인권교육의 자료와 내용 및 진행 개선
- 인권의 출발은 개체의 자각이므로, 개인주의가 사회전체의 구성원리와 조화를 이루기 위한 작업이 필요
- 기존의 인권교육 강사들이 사용하는 콘텐츠와 방법들이 모두 제각각인 점을 보완
-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 활용
- 교육대상이 기존에 실시하는 각종 연수프로그램에 인권교육시간을 추가

#### 강의자료

- 현실성이나 실효성 있는 인권교육 자료나 프로그램이 필요
- 기초적인 인식 제고를 넘어선 내용이 별로 없음
- 각급 공무원 집단을 위한 자료들이 약간의 내용을 담고 있으나, 일반적이고 원론적임
- 가정, 회사, 군대, 교정기관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동영상 자료 및 교재
- 교재 중심의 강의안 개발도 중요하지만, 시청각 자료를 개발하고 보급도 필요
- 전체적으로 모든 분야에 걸쳐 인권교육 프로그램이나 자료가 부족
- 온라인 강의 또는 문화 예술을 통한 인권교육 방법론
- 공통적인 인권교안 작성과 내용 확보를 위한 자료실 운영
- 사례와 실무를 조합한 자료의 개발
- 실제 현장에서 쓸 수 있는 더욱 세밀한 자료가 필요
- 쉽고 대중적인 자료 부족

- 표준적인 교재 개발
- 영역별 사례를 인권적 관점에서 읽을 수 있는 읽을거리 자료
- 해외 인권교육의 동향, 흐름 등 소개자료
- 인권에 대한 인식을 사회 전반에 스며들게 하는 대중적 콘텐츠 개발
- 인권교육을 위한 총론 수준의 교재(예: 독일의 콤팩트)의 개발 필요
- 사이버 콘텐츠 보강이 필요

#### 다양한 프로그램

- 소통형, 참여형 프로그램들 개발 필요
-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다양한 모듈 개발 필요
- 맞춤형 프로그램
- 다양한 대상별 전문화된 자료 개발
  - ▶ 유아 및 유아교사 대상 인권교육 프로그램
  - ▶ 대학생을 위한 인권자료
  - ▶ 종교지도자 대상 인권교육 프로그램
- 프로그램의 세분화 계층화
  - ▶ 현 프로그램을 기초과정, 전문과정, 지도자양성과정 등으로 세분화
  - ▶ 단시간 교육, 일일교육, 며칠 동안 하는 교육, 학기제 교육 등
- 소수자에 대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부문별, 분야별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 인권교육이 요청되는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훈련프로그램 개발
- 영역별 세부적 프로그램도 필요하나, 큰 틀의 활용도가 높은 프로그램 제시가 필요
- 현장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 관계에 대한 성찰할 수 있는 프로그램
- 다양한 영역에서 실현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에서 방법론을 활용
  - ▶ 문화예술교육 영역이나 여성주의 상담에서 실현하고 있는 관계의 평등성, 소통과 공감의 기술, 놀이의 방식, 소시오 사이코드라마나 통합예술치료의 기법들을 응용
- 스스로 서로 배우는 방식이 필요
- 일정한 공간에 모여서 진행되는 강의 또는 참여형 외에 다양한 프로그램
- 다양한 프로그램과 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해설서 개발, 연수 프로그램 운영개발 필요
- 설명 교육보다 인권이 유린당한 예시를 바탕으로 한 의식개선을 위한 참여교육 강화

#### 기타

- 인권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법제화되기 전까지 홍보 및 각종 인센티브가 필요
  - ▶ 학교의 경우 교육 이수 시 학생 인권 홍보대사 등

## 2) 인권교육 강사들을 교육하고 양성할 방안

### 강사양성기관 및 교육 지원

- 인권교육원을 설립하여 인권교육강사를 교육하고 양성
- 체계적이고 전문적 양성기관 설립
- 인권교육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및 자기주장만 강한 리더는 제외
  - ▶ 군간부 출신이나 전·현직 출신의 법조인들은 선별과정 엄격
  - ▶ 현재의 국가 인권위원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 프로그램 개발-실험-시범 모델 제안을 위한 연구모임
- 전공별, 활동영역별 강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 인권교육 내용의 매뉴얼과 공통교재를 발간
- 인권교육 강사단을 지역별로 운영하고, 전국적인 차원에서 네트워크 형성
- 인권단체 활동가 네트워크 창설 및 연수 지원
- 인권시민사회가 위축된 상황에서 인권위원회의 교육역량강화보다는 인권시민사회와의 네트워크 활용이 더욱 중요
- 강사를 교육하고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법제도 안에 포함
- 인권단체는 현장 활동가 활용과 교육원 설치, 국가인권위에서는 독립적 교육원 설치
- 한국인권교육학회를 만들어 강사들의 자발적으로 역량강화 계기 마련
- 인권위가 강사양성에 대한 기본 원칙과 내용을 개발하고 시민사회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

### 강사활동

- 인권교육 강사들이 인권교육에 전문적인 지식과 프로그램을 공유
- 인권교육 강사의 활동이 인권정책에 반영
- 현재 강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통해 서로의 노하우를 개방하고 지식과 기술, 지혜를 나누는 방식
- 교재 공동개발
- 민간 전문가와의 교류 협력
- 중·장기 인권교육 계획 마련, 그동안의 실시 내용에 대한 평가
- 매년 활동을 기록하며 매년 재교육의 기회 제공
  - ▶ 양성평등교육원의 성희롱예방교육 강사 활동을 인터넷으로 보고하는 방식 참고

### 강사양성 방법

- 인권교육 강사는 현장 경험에 기반
  - 다양한 강사양성과정 필요
    - ▶ 학계, 시민사회계 등 구분 없이 전문강사양성과정
    - ▶ 공공영역의 전문강사 양성과정
    - ▶ 지방자치단체의 전문강사 양성과정(지자체 인권조례 확산 관련)
    - ▶ 학부모 인권강사 육성(학부모 단체와 협력)
    - ▶ 학생강사 발굴
  - 직업강사 육성
  - 기존의 단체나 활동가와 협력
    - ▶ 인권교육은 인권이나 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사례를 접해본 사람들이 가장 잘 파악
  - 일반강사(여러 분야에서 두루 활동)와 전문강사(사회복지분야, 보건의료분야, 법률분야 등의 특정분야 활동)로 나뉘어 양성
  - 관련 영역의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헌법과 국제인권법, 국제인권기준과 관련 판례 중심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운영
  - 인권위가 주체가 되어 교육대상에 맞는 다양한 강사를 선발, 양성 인권강사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일정기간 이수하고 자격이 된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인권강사 자격증 부여, 지속적인 재교육
  - 매뉴얼에 의존하는 강사가 아닌 인권현장 활동가들과 당사자들로 하여금 교육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조
  - 인권관련활동을 하는 NGO, GO, 대학교 등의 추천을 받아서 어느 정도 인권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고급 수준의 인권교육 강사로 개발하고, 이들이 중심이 되어서 중급 수준의 강사를 양성
  - 기존 인권관련 단체 책임자나 종사자를 강사로 훈련
  - 인권교육 체계화를 통한 자격화 방안
  - 인권강사양성과정의 전문화
  - 장기간에 걸친 단계별 강사양성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모의 프로그램 운영
  - 교육운영 모니터링 실시
  -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강사양성은 불필요하거나 적절치 않음
  - 사이버 교육도 좀 더 확대 보장 및 시민들 대상 교육에도 노력
- 강사 연수 및 보수교육
- 인권교육 강사진의 역량 강화를 위해 연수과정 필요
  - 보수교육을 실시하며 보수교육에 반드시 참여하도록 유인책 강구
  - 모니터링 및 지속적 심화교육 실시

강사교육 내용

- 인권교육 강사를 훈련시 인권감수성을 지니고 인권을 생활전반에 적용하는 부분을 고민할 줄 아는 것이 필요
- 별도의 인권감수성 및 전문성 강화 훈련
- 꾸준한 교육활동과 교육 실습활동을 통해 양성
- 지속적인 보수 교육 및 표준 강의안 개발이 필요
  - ▶ 강사들의 질적 수준이나 교육 내용들이 강사별로 차이가 존재하므로, 일정한 질적 수준과 강의기법 개선을 위해
- 민간영역의 전문가들을 투입하여 교육내용자문단, 교재개발, 강의기법연구등을 향상
- 인권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일관성 있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자료개발과 매뉴얼 필요

**4. 향후 10년간 인권교육 기본계획**

(1) 향후 10년간 인권교육계획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인권교육의 방향

- 인권교육과 내용이 비정치적, 정부정책에 의해 정치적 교화의 과정으로 사용 방지
- 인권이 우리나라 전반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인권에 대한 교육, 인권친화적인 방식으로 교육, 인권실천 및 증진활동으로서 교육, 세 가지 측면이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기획, 운영, 평가
  - ▶ 평가 및 개선 과정에서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의 활발한 참여 유도
- 글로벌 리스크의 심화를 염두에 둔 인간안보 감수성 확산, 복지사회 정착을 위한 상생의 가치 내면화를 위한 인권의식 확산
- 권리나 법 중심에서 벗어난 인간 존중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실천적 전략
- 교육의 한 분야로서의 인권교육이 아닌 21세기 민주시민사회를 유지·성숙시키기 위한 기본교육으로써의 인권교육으로 인식 전환을 이루기 위한 전략
-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한 인권의 철학적 기초를 마련
- 인권교육의 내용적 성숙을 위한 전문성 강화

인권교육의 제도화 및 의무화 방안 마련

- 인권교육의 법적 안정화 및 제도화 추진

-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수강
- 정규 교과과정에 인권교육을 포함
- 인권교육법을 제정인권교육 의무화 대상 확대
- 국가인권위 기능 강화
- 인권억압 시 처벌 규정
- 인권교육의 체계적 운용을 위한 제도 구축
- 공공분야에 대한 인권교육 의무화를 전면 확대하는 부분 우선
- 고위직 공무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의무화 할 수 있는 방안
  - ▶ 현재 인권교육은 대부분 사회적 관계에서 약자들에게 시행되나 인권침해는 대부분 상대적으로 우위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 침해
  - ▶ 교원집단에 대한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노력

#### 인권교육의 운영

- 2002년 이후 인권교육의 추진에 관한 평가
- 현재 무분별하게(형식적) 기관별로 추진되고 있는 인권교육 모니터링 체계 확보
- 인권교육원 설립
- 인권교육에 대한 예산 지원
- 인권교육 개념 정립, 교육 전 과정과 전 분야에 걸친 교육프로그램 수립
- 인권교육에 대해 고민하는 전국의 활동가들의 연수나 세미나 필요
- 인권교육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
- 기존 시스템과의 통합(기관 및 업무 평가에 인권교육 및 인권개선 항목 포함)

#### 인권교육의 대상

- 인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좀 더 중점적인 인권교육이 필요
- 공공기관, 기업, 학교 영역의 최고 관리자들의 집중 인권교육 이수
- 어릴 때부터 인권교육 실시
  - ▶ 유치원부터 인권교육이 시작
  - ▶ 초등학교부터 중등학교까지 인권 관련 내용을 필수 교과목으로 지정
- 정부차원의 인권교육의 필요성 인식
-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당국자들과 국회의원들로부터 인권 및 인권교육의 개념이 필요
- 일반시민들의 인권감수성 교육 확대를 위한 다양한 교육 매뉴얼과 예산 필요
- 이주민 인권 등 다문화 사회의 도래를 준비
- 각 조직에 인권교육이 뿌리내릴 수 있게 하는 전략, 홍보, 전 국민 캠페인 등 필요

인권교육환경 개선

- 강사진 운영과 인권교육 교재 발간 등
- 모든 국민이 인권교육을 접할 수 있는 제도적, 물적 토대 마련
- 인권관련 내용 확대된 교과서 전면 개편이 시급
- 학교 인권교육의 안정화, 공공부분 인권교육의 정착화, 시민사회 인권교육의 확산
- 인권교육을 진행할 인프라의 구축
  - ▶ 인권강사 양성
  - ▶ 교재 및 자료의 개발
  - ▶ 지식, 기술, 태도, 인권감수성, 다양한 교육방법과 프로그램 개발
- 시대와 상황에 맞는 시의적절한 콘텐츠의 꾸준한 개발
- 인권교육을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현장의 꾸준한 발굴과 확대
- 학생들이 스스로 인권에 대한 관심과 권리에 대한 자기주장을 할 수 있는 민주적 교육 풍토

(2) 향후 10년간 인권교육계획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한 방안

인권교육

- 인권교육의 체계화 및 제도화
- 아동권리와 관련된 사안, 종사자들을 위한 인권교육 제도화
- 강사의 역량강화
  - ▶ 전문적인 강사양성 및 확보
  - ▶ 인권교육강사 양성
  - ▶ 전문 자격증
- 프로그램 및 모듈 개발
- 다양한 형태의 인권강의 모델을 개발하여 보급
- 대상 및 영역별 차별화된 교육자료 만들기
- 인권 감수성 관련 기본교육이 갖추어져 있는 보통 사람들에게 인권 전문성을 갖춘 인권강사단이 동기부여를 하는 방향의 인권교육 체계 마련
- 인권위가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 지원하는 데 중점
- 인권위가 실행을 독점 또는 주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민사회와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한 교육

인권관련 제도, 정책

- 로드맵 작성
- 단기 및 중·장기적 계획 수립

- 기본계획 수립 후 인권정책기본계획(NAP)과 별도로 국가기관에 권고하는 등 제도화 수준을 높여 가야할 것
- 인권교육법 제정 및 통과, 법제도화, 인권 관련 제도의 시행
- 예산 확보
- 인권교육 의무화
  - ▶ 공공기관 및 공무원 인권교육 의무화
  - ▶ 교육과정에서 인권과목 필수화
  - ▶ 공공기관에 필수 교육 커리큘럼
- 인권교육역량 인프라 구축
- 공영방송에서도 인권교육프로그램을 방송
- 국가인권위의 독립성 확보
- 인권교육 관련 기관 설립
  - ▶ 인권연구소 설립
  - ▶ 인권교육 지원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관 설립
  - ▶ 인권교육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할 수 있는 인권교육원 설립
  - ▶ 국가와 민간, 이중 구조의 교육원 설치와 지원
  - ▶ 전문적인 인권교육기관 설립
  - ▶ 인권위 내에 인권교육을 전담하는 별도의 기구(인권교육원 등)를 설치
  - ▶ 교육을 이끄는 중심기관(연도별 계획, 대상별 계획, 시기별 계획 등을 고려)
  - ▶ 국가적 차원의 인권교육 계획 수립 및 총괄, 실행기구인 일종의 ‘인권교육 실행위원회’와 같은 상설기구(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계획 수립 및 실행에 있어서 인권(교육)전문 단체, 관련 기관들이 유기적 협조를 지원할 기구)
- 인권교육 네트워크 구축
  - ▶ 통합적 망 아래 전문적, 구체적 네트워크 형성 및 발전
  - ▶ 각계의 인권교육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일반 인권교육과 특정 집단 대상의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
  - ▶ 전문가들의 상시적 회의체계 구축
- 인권교육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직원의 빈번한 인사교체 지양
- 대중적 확산을 위한 방안, 제도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안 마련
- 실무적 접근방안과 다각도의 접근방안이 공동 꾸준히 진행이 필요(관련기관의 협력과 압력 등)
- 업무분담
  - ▶ 인권위가 인권교육 기본계획을 수립
  - ▶ 정부, 사법부, 입법부 등은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인권교육체계를 구축

□ 인권에 대한 인식 및 필요성

- 정책관리자의 관심
- 정부 차원의 인권교육의 필요성 인식 및 인권교육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중요
- 시민운동가나 단체의 책임적인 인권의식 확보, 이에 대한 정책 수립 요구 및 관철
- 정책 결정권자가 인권을 중요시하고 존중하는 게 가장 기본이자 급선무
- 인권위원회의 인권친화성 회복
-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지속적인 인권교육 모니터링에 힘쓰는 것
- 시민 인권의식 확장
- 소신 있게 판단하고 행동함으로써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내는 게 급선무
- 타 부처와의 관계 설정 및 개선
- 인권교육업무에 대한 인권위 주도성 확보와 추후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조를 위해 (특히, 교육부)

□ 기타 구체적 방안

- 학교, 공공기관, 시민사회영역별로 세부 대상자별로 인권교육을 위한 3단계(도입기, 전개기, 발전기 등)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관련 NGO, GO등과 협력하여 특정 분야의 인권교육의 실천은 해당분야를 대표하는 전국적 조직과 협력하여 수행

ex> 사회복지사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한다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협력하여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에 인권교육을 반영시키고,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와 함께 ‘사회복지와 인권’이란 교과목을 만들어서 대학교에 보급하는 방식임.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를 3년에 한 번씩 할 때,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했는지, 생활인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했는지, 인권침해사례가 없었는지 등을 중요 평가기준으로 삼도록 하고, 해당 분야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인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스스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함.

- 이전 10여년간의 평가로서 우선 현재 기관 및 단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인권교육의 현황과 내용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토대로 하여 향후 10년간도 단계별 계획(우선 필요한 영역 등으로 세분화)을 세울 필요가 있음. 아울러 각 기관별로 자체적으로 인권교육을 추진하는 체계를 구축하되, 인권위는 인권교육의 정책과 콘텐츠를 제공하고, 모니터링체계 구축하여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 필요
-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언론이나 각종 홍보를 통해 알리고, 외국의 인권교육 상황과 실태를 비교하여 한국의 상황을 알려야 할 것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때 인권교육원

설립 및 인권교육 법제화가 가능해질 것임. 단계적으로 우선 공무원 조직의 인권교육의 무화를 시작으로 하여 학교, 민간 기업 및 일반 시민들에게 확대해 나가는 전략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

#### IV. 결론

인권교육의 정부 내 주무부처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를 96.1%의 인권전문가들이 선택하였으며, 인권교육법을 제정할 때 중점을 두어야 하는 사항으로 순위를 통합한 결과 인권교육 지원 예산의 확보와 공공기관 종사자의 인권교육의 의무화가 각각 31.0%, 29.9%로 높게 나타났다. 순위별로는 1순위로 공공기관 종사자의 인권교육 의무화가 43.1%로 가장 많았고, 인권교육 지원 예산의 확보는 2순위에서 4순위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들의 86.3%가 인권교육원의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으며, 인권교육원 설립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과반수이상의 전문가가 정책관리자의 무관심을 꼽았다.

지난 10년간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 활동에 대해서 잘했다는 긍정적 평가는 33.4%, 부족하다는 부정적 평가는 35.3%로 전문가들의 평가가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가는 활동영역이 국가인권위원회인 전문가는 잘했다가 53.8%로, 대학교나 시민사회에서 활동하는 전문가에 비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지난 10년간 인권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인권교육이 권리임을 인식하게 하였으며, 학교교육 및 교육과정에서의 제도화 및 다양한 인권자료 개발에 노력한 부분 등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그러나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점을 두어야 할 점 역시, 인권교육을 할 강사 양성 및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보급을 꼽아 아직은 더 많은 부분에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학교에서의 인권교육 의무화와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직업이나 정책시행자들의 공공기관 관료에 대한 인권교육의 의무화의 의견이 많았다.

각 영역별로 인권교육 활동의 평가는 학교영역은 1.89점, 공공영역은 1.77점, 시민사회 영역의 인권활동 평가는 1.96점으로 모든 영역에서 인권교육활동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하였다. 대상별로 살펴보면 학교영역에서는 초·중등 학생과 초등학교 교원의 평가 점수가 각각 2.40점과 2.37점으로 평가되었으며, 대학생, 유치원 및 취학 전 아동, 유치원 및 취학 전 기관 종사자가 각각 1.92점, 1.81점, 1.76점이고, 대학교수, 전문직업 훈련원생, 기타 각각 1.55점, 1.57점, 1.59점으로 평가되어 학교영역에서는 초·중등 학생과 초등학교 교원의 인권교육이 다른 대상에 비해 다소 높게 평가되었다. 공공기관 영역에서는 보호시설관련 공무원이 2.74점으로 다른 대상에 비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경찰공무원이 2.30점, 교정직 공무원이 2.17점, 행정공무원이 2.09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보호직, 출입국 공무원이 1.85점, 군부대 종사자 1.81점, 사법부 1.74점, 입법관계자와 검사 및 검찰공무원이 각각 1.56점과 1.51점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가정보원 1.19점,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1.19점, 국회의원 1.3점으로 고위 공무원들의 인권교육활동에 대한 평가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에서는 시민을 대면하는 공무원들에 비해 정책결정을 하는 고위 공무원들 대상의 인권교육활동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시민사회영역에서는 사회적 약자집단과 사회단체 지도자가 각각 2.42점, 2.35점으로 다른 대상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료전문인과 기업인이 각각 1.60과 1.31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언론인은 1.98점으로 인권교육활동이 부족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영역별 각 대상들에 대한 인권활동로 평가에 있어서도 대체적으로 시민사회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에 비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영역별로 인권교육의 가장 큰 장애요인에 대해서는 학교영역과 공공기관 영역에서는 정책관리자의 무관심이 각각 29.6%와 3.5%로 가장 높았으며, 시민사회영역에서는 체계적 교육기관 부재가 21.1%, 예산부족 17.7%, 정책관리자 무관심 15.6%, 사회적 책임의식 및 성숙한 시민의식 부족 14.3%, 인권교육에 대한 전반적 편견 13.6%, 인권강사 및 연수프로그램 부족이 12.9%로 전문가들에 따라 매우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학교영역 인권교육에서 우선되어야 할 대상으로 교원 53.5%, 학생 26.8%(38명)이었으며, 공공기관영역에서는 행정부에 소속된 대상이 67.9%로서 입법 관계자 17.6%, 사법부 5.7%에 비해 매우 높았다. 그리고 시민사회 영역에서는 전문집단이 41.5%로 높았으며, 사회적 영향력 집단과 기업인이 각각 16.2%와 18.3%로 나타났다.

각 영역별로 인권교육이 잘 되기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모든 영역에서 인권교육의 의무화 및 제도화에 대한 의견이 많았으며, 예산지원 또는 인권강사 및 인력 양성과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학교영역에서는 학급 환경개선 부분과 학생 수준별 다양한 인권자료에 대한 의견이 있었으며, 공공기관에서는 인권교육의 의무화 및 모니터링 체계와 교육 대상의 다양화 및 인권 준수 사항 의무화 및 처벌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시민사회에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에 대한 인식 및 의식 고취와 대중화를 위한 홍보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현재의 인권교육프로그램과 강사의 전문성 등 인권교육의 인적 물적 기반에 대한 평가로 인권교육프로그램은 2.88점, 인권교육자료는 3.23점, 인권교육 강사의 전문성은 2.81점으로 인권교육자료에 대한 평가가 3가지 항목 중에서는 가장 높았으며, 특히 인권교육자료에서 활동영역이 대학교와 국가인권위원회인 경우의 평가점수는 각각 3.44점, 3.69점으로 잘했다는 측면에 평가가 있는 반면, 시민사회의 평가점수는 2.60점으로 차이를 보였다. 강사의 전문성에 대한 평가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평가점수는 3.31점으로 대학교와 시민사회의 평가점수인 2.56점, 2.53점에 비해 높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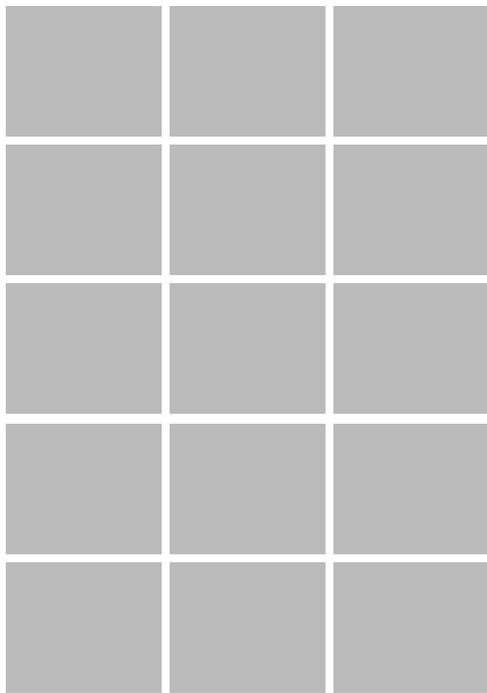
개발되어야 할 인권교육의 자료나 프로그램으로 자료의 전문화 및 교육대상별 세분화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또한, 자료의 현실성과 실제 사례위주의 자료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대중적

이고 쉬운 교재와 표준화된 교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강사 양성에 있어서는 강사 양성기관 설립이, 양성교육에 필요한 매뉴얼 공통 교재 개발, 강사들의 연수 및 보수교육 필요하다는 의견과 인권교육 강사의 지식과 자료 공유와 단계별 양성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향후 10년간 인권교육계획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비정치적이고 사회 전반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권에 대한 교육, 인권친화적인 방식으로 교육, 인권 실천 및 증진 활동으로의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인권교육의 의무화와 공공기관, 기업, 학교 영역의 최고 관리자 등의 교육 어릴 때부터 인권교육 실시 등으로 인권교육의 확산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또한, 향후 10년간 인권교육계획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한 방안으로 역시 인권교육의 체계화 및 제도화 강사들의 역량강화 및 다양한 교육자료 개발 단기 및 중·장기적 계획 수립 등 국가차원의 제도화 수준을 높여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및 인권관련 기관 및 연구소 설립과 각계의 인권교육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 제4장

# 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 추진체계

제1절 서론

제2절 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 추진체계 기본구상

제3절 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 실행과제 분석

제4절 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 로드맵

제5절 각 영역별 중점추진과제



# 제4장 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 추진체계

## 제1절 서론

이 제4장에서는 제2장과 제3장에서 다루었던 국내·외 인권교육 현황분석을 토대로 하여, 앞으로 10년 동안 적용할 인권교육 행동계획 추진체계를 구상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1절에서는 일종의 ‘서론’으로서 이 연구에서 연구진은 어떤 과정과 절차를 통해 인권교육 행동계획 추진체계를 구상하였는지, 이러한 인권교육 행동계획 추진체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비전과 핵심목표는 과연 무엇을 근거로 하여 설정하였는지, 이러한 인권교육 행동계획은 누가 주체가 되어 추진해야 하는지를 다루고자 한다.

### 1. 인권교육 행동계획 추진체계 구상절차

1.

#### 기본정보

이 연구에서 연구진은 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 추진체계를 구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 및 정보들을 사용하였다.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는 제2장 제2절 및 제3절에서 국내·외 인권교육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한 문헌분석을 통해 획득한 결과 및 시사점들을 사용하였다. 이와 함께 제3장에서 수행한 인권교육 실태조사 분석을 통해 얻은 각종 통계결과, 의견, 제언 등을 비중 있게 고려하였다. 이 같은 기본정보를 토대로 하여, 연구진은 아래에서 다루게 될 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 추진체계를 설계하였다.

2.

#### 구상절차

연구진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 추진체계를 설계하였다.

### (1) 제1단계로서 국내·외 인권교육 현황 분석

앞으로 적용해야 할 인권교육 행동계획을 설계하려면, 그 전에 그 동안 인권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성과는 무엇인지, 여기에 어떤 한계가 있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가장 먼저 밟아야 할 단계는 국내·외 인권교육 현황을 분석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연구진은 전통적인 문헌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그 동안 이루어진 국내·외 인권교육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는 제2장 제2절 및 제3절에서 찾아볼 수 있다.

### (2) 제2단계로서 국내 인권교육 전문가 그룹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나아가 제2단계로서 연구진은 국내 인권교육 전문가 그룹을 선정하여 인터넷 및 면대면 조사 방식을 병행함으로써 인권교육 현황 및 과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인권교육에 대한 현황을 정확하게 분석하려면, 문헌분석 방법 이외에 다른 조사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문헌분석 방법만으로 인권교육 현황을 예리하게 드러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연구진은 인권교육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 그룹을 선정하여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은 상당히 유익하였다. 왜냐하면, 이 과정을 통해 국내 인권교육의 현황뿐만 아니라, 인권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유익한 의견 등도 획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 (3) 제3단계로서 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 추진체계 구상

이렇게 제1단계와 제2단계를 거쳐 분석한 국내·외 인권교육 현황에 기반을 두어,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 추진체계를 구상해 보았다. 그러나 이는 잠정적인 것으로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여러 논의를 거쳐 수정·보완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 (4) 제4단계로서 중간보고 및 공청회 등을 통한 행동계획 추진체계의 객관성 및 타당성 검증

다음으로 네 번째 단계에서는 이렇게 초안으로서 구상한 인권교육 행동계획 추진체계 구상을 중간보고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해 검토하고,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을 거침으로써, 좀 더 완성도 있고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인권교육 행동계획 추진체계를 설계할 수 있었다.

### (5) 제5단계로서 인권교육 행동계획 추진체계 확정

이상과 같은 절차를 거쳐 비로소 앞으로 10년 동안 적용할 인권교육 행동계획 추진체계를 확정하였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4장 제2절에서 살펴볼 것이다.

## II. 인권교육 행동계획 추진체계 설정배경: 특히 4대 핵심목표를 중심으로 하여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연구진은 인권교육 행동계획의 핵심목표로서 인권교육의 권리화, 인권교육의 전문화, 인권교육의 제도화, 인권교육의 지역화를 제안한다. 그러면 과연 어떤 배경에서 인권교육 행동계획의 핵심목표를 이처럼 설정하였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고자 한다. 이미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연구진은 인권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우선 문헌분석 방법 및 전문가 설문조사 방법을 통해 국내·외 인권교육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런데 이를 통해 연구진은 다음과 같은 경향의 요청사항을 발견할 수 있었다.

### 1.

#### 인권교육에 대한 의식 전환

가장 우선적으로 인권교육에 대한 의식을 전환해야 한다는 요청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다수의 인권교육 전문가들은 인권교육에 대한 편견이나 무관심 때문에 인권교육이 다수의 영역에서 실질화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인권교육을 실행해야 할 주체들이 인권교육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지 않아 인권교육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인권교육에 대한 의식을 긍정적으로 전환시켜야 할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하였다. 연구진은 이 같은 요청에 부응하고자 인권교육의 권리화를 첫 번째 핵심목표로 설정하였다. 즉, 인권교육을, 우리네 삶을 구성하는 필수적인 요소이자 권리, 더 나아가 인권의 일종으로서 각인시킴으로써, 인권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나 편견을 해소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것이다.

### 2.

#### 인권교육에 대한 전문성 강화

다음으로 다수의 문헌이나 설문조사 분석결과에서 인권교육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요청을 읽을 수 있었다. 국내 인권교육에 대한 현황이 시사하는 것처럼, 그 동안 인권교육이

양적으로 확장되기는 하였지만, 전문성의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인권교육 전문가들이 이를 지적하고 있다. 그 때문에 지금보다 인권교육을 더욱 전문화해야 한다는 요청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주장되고 있다. 첫째는 인권교육프로그램의 전문화이고, 둘째는 인권교육강사의 전문화이며, 셋째는 인권교육교재의 전문화이다. 바로 이 같은 이유에서 연구진은 인권교육의 전문화 요청에 부응하고자 인권교육의 전문화를 두 번째 핵심목표로 설정하였다.

**3.**

**인권교육의 의무화 및 제도화**

이어서 다수의 문헌과 실태조사 결과에서 인권교육이 실효성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이를 의무화하거나, 이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청들을 읽어낼 수 있었다. 이에 대한 예로서 다수의 의견들이 인권교육법 제정, 인권교육원 설립 등을 제안하였다. 이에 부응하고자 연구진은 인권교육의 제도화 역시 핵심목표에 포함하였다.

**4.**

**인권교육의 대중화 및 소통 강조**

이외에도 인권교육이 다수의 일반대중들로부터 공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를 대중화하거나, 인권교육에 대한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청들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부응하고자 연구진은 인권교육의 지역화를 핵심목표에 추가하였다. 이 때 인권교육의 지역화란 좀 더 넓은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서, 인권교육의 대중화와 소통강화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연구진은 인권교육의 지역화를 이러한 의미로 설정함으로써, 이를 통해 인권교육의 대중화 및 인권교육에 대한 소통, 아울러 인권교육에 대한 네트워킹 확보라는 목표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Ⅲ. 인권교육 행동계획 추진주체**

마지막으로 이러한 인권교육 행동계획을 누가 중심이 되어 추진해야 하는가에 관해 간략하게 다루도록 한다.

## 1.

**추진주체로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가 시사하는 것처럼, 연구진은 인권교육 행동계획의 추진주체는 독자적인 인권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법무부나 교육과학기술부는 정부조직에 속하는 자신들이 인권교육의 추진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인권교육 자체가 갖고 있는 특수성,<sup>138)</sup> 즉 인권교육이 법교육과는 구별된다는 점, 그리고 인권교육은 기존의 교육과는 다른 원칙과 방식을 토대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법무부나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현재로서는 인권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장 풍부하게 축적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교육 행동계획에 대한 추진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2.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 인권교육의 관계 설정**

다만, 이와 관련하여 논의해야 할 문제가 한 가지 더 남아 있다. 인권교육에 관해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 인권교육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가 그것이다. 인권교육 실행에 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좀 더 주도권을 확보해야 하는가, 아니면 현장에서 인권교육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시민사회 인권교육 전문가가 좀 더 주도권을 갖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일종의 독립적인 정부기구라는 점에서 제도적으로 좀 더 실효성 있게 인권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정부기구라는 틀에서 쉽게 벗어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자칫 인권교육을 형식화할 위험성 역시 안고 있다. 이와 반대로 시민사회 인권교육은 인권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달리 말해 인권교육 참여자와 인권교육에 관해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권감수성이 살아 있는 인권교육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시민사회 인권교육은 제도화의 틀 안에서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실효성 있는 인권교육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요컨대,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점은 시민사회 인권교육의 단점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단점은 시민사회 인권교육 장점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이러한 근거에서 연구진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일단 인권교육 행동계획을 추진하는 주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적인 정부기구로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전체 인권교육을 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

138) 이에 대한 상세한 점은 앞의 제2장 제1절 참고.

법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제도적 틀을 상대적으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인권교육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을 그 어느 조직보다 풍부하게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그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인권감수성이 살아 있는 인권교육을 현장에서 인권교육 참여자와 직접 소통하면서 전달하는 시민사회 인권교육의 장점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자신의 단점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시민사회 인권교육과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인권교육 행동계획에 대한 주도권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쥐면 서도,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교육 행동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 인권교육과 서로 협력하는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 그래야만 앞으로 실행하게 될 인권교육 행동계획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제2절 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 추진체계 기본구상

### 1. 비전

우선 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의 출발점으로서 인권교육 행동계획의 비전(vision)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이 문제는 왜 우리가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와도 관련을 맺는다. 많은 이들이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인권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를 넘어서 인권교육은 인권교육 참여자에게 인권감수성을 불러일으키고, 이를 통해 인권교육 참여자가 인권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말하자면, 인권교육이 지향하는 바는 인권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권실천이 지향하는 바는, 모든 이들이 자신의 인권을 최대한 누릴 수 있는 사회, 즉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139)</sup> 요컨대, 우리는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인권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철학적인 견지에서 보면, ‘공정한 사회’는 - 이를 철학적으로 정립한 롤스(J. Rawls)에게서 확인할 수 있듯이 - ‘자유주의’(liberalism)에 기반을 두는 개념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유주의적인 공정함을 넘어서 다함께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는, 달리 말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동반해서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즉, 공정함의 의미를 자유주의적인 공정함을 넘어서 ‘공생’의 의미까지 확장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권교육을 통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공정한 사회의 의미를 포함하는 ‘공생사회’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인권교육 ⇨ 인권에 대한 지식 및 감수성 향상 ⇨ 인권실천  
⇨ 인권친화적 구조개혁 ⇨ 공생사회 실현**

<그림 3> 인권교육의 방향

이 같은 맥락에서 연구진은 앞으로 실행해야 할 인권교육 행동계획의 비전을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39) ‘공정함’(fairness)을 정의의 내용으로 추구한 롤스(J. Rawls)는 개인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간략한 소개는 마이클 센델, 이창신 (옮김), 『정의란 무엇인가』, 김영사, 2010, 197면 아래 참고.

**인권교육 실질화를 통한 공생사회 실현**

<그림 4> 인권교육 행동계획의 비전

**II. 기본원칙**

인권교육 행동계획은 이와 같은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구체화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인권교육에 대한 몇 가지 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원칙으로서 연구진은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인권교육은 이 세 원칙을 통해 실시되어야만, 인권교육이 본래 추구해야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b>기본 원칙</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리로서 인권교육</li> <li>■ 통합적 접근대상으로서 인권교육</li> <li>■ 역사적·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인권교육</li> </ul>
------------------	---

<그림 5> 인권교육에 대한 세 가지 기본원칙

<b>1.</b>	<b>권리로서 인권교육</b>
-----------	------------------

첫째, 인권교육은 인권교육 참여자에게 권리로 이해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권리라는 의미를 갖는다는 점은,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당사자에게 인권교육을 행할 것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를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당사자의 측면에서 보면,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당사자의 재량사항이 아니라, 법적인 의무가 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각 인권주체들은 인권교육주체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인권교육주체들은 이에 의무로서 응해야 한다. 연구진은 이렇게 인권교육을 일종의 권리로써, 더 나아가 인권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만, 현재 인권에 대해 막연하게 존재하는 거부감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한다.<sup>140)</sup>

140) 인권교육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을 없애는 것도 인권교육 행동계획안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전략과제라고 생각한다.

## 2.

**통합적 접근대상으로서 인권교육**

둘째, 인권교육은 어느 한 관점, 즉 어느 일방의 서사방식만을 담아서서는 안 된다는 점을 원칙으로 제시할 수 있다. 인권교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려면, 전문적 서사방식과 근원적 서사방식 그리고 응용적 서사방식을 모두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sup>141)</sup>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각기 이질적인 전문적 서사방식과 근원적 서사방식 그리고 응용적 서사방식을 동시에 균형 있게 담아내는 것은 쉽지 않다. 가령 공무원 인권교육은 공무원을 교육참여자로 한다는 점에서 응용적 서사방식에 치우치기 쉽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인권 자체가 갖고 있는 복합적이면서 통합적인 성격을 놓치기 쉽다.<sup>142)</sup> 그러므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때는 각기 다양한 시각과 관점들이 적절하게 교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야만 인권교육에 대해 존재하는 일정한 편견 역시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3.

**역사적·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인권교육**

셋째, 인권교육을 실시할 때 각각의 인권 및 인권교육 참여자들이 처한 역사적·문화적 배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제2차 세계인권교육 프로그램이 강조하는 점이기도 하다. 한편으로 인권교육은 보편성을 지향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인권교육은 해당 인권이 적용되는 영역의 역사적·문화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인권교육이 이루어지면, 그 인권교육은 해당 인권교육 참여자들에게는 주입식 강압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는 공감도 실천도 불러일으킬 수 없다. 그러므로 인권교육의 실질화를 위해 역사적·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Ⅲ. 4대 핵심목표**

다음으로, 위에서 설정한 비전과 원칙을 기반으로 하여 앞으로 추구해야 할 인권교육의 핵심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여기서 연구진은 인권교육의 행동계획안으로서 4대 핵심목표를 제안하고자 한다. 여기서 4대 핵심목표란 인권교육의 권리화, 인권교육의 전문화, 인권교육의 제도화,

141) 여기서 말하는 서사방식에 관해서는 우선 조효제, 『인권의 문법』, 후마니타스, 2007, 16-21면 참고.

142) 이러한 인권의 속성을 지적하는 양천수, “인권법의 통합과학적 성격”, 『인권이론과 실천』 제2호, 영남대학교 인권교육연구센터, 2007.10, 117-129면.

인권교육의 지역화를 말한다.

<b>핵심 목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교육의 권리화</li> <li>■ 인권교육의 전문화</li> <li>■ 인권교육의 제도화</li> <li>■ 인권교육의 지역화</li> </ul>
------------------	--

<그림 6> 인권교육에 대한 4대 핵심목표

**1. 인권교육의 권리화**

우선 인권교육의 권리화는 인권교육을 인권으로서, 더 나아가 실정법상 권리로 파악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인권교육을 평생교육으로 보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또한, 그 동안 인권교육에서 제외된 부분을 인권교육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도 인권교육의 권리화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인권교육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인권에 대한 - 근거 없는 - 편견이나 오해를 없애는 것도 인권교육의 권리화에 속하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인권교육의 전문화**

나아가 인권교육의 전문화를 핵심목표로 설정할 수 있다. 여기서 인권교육의 전문화는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한다. 인권교육의 형식적 전문화와 내용적 전문화가 그것이다. 여기서 인권교육의 형식적 전문화는 달리 인권교육의 체계화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인권교육을 전문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권교육 자체가 체계화될 수 있어야 한다. 인권교육을 체계화한다는 것은, 형식과 절차 면에서 인권교육을 더욱 다듬는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점에서 인권교육의 체계화는 인권교육을 형식적인 측면에서 전문화한다는 것으로 새길 수 있다. 이렇게 인권교육이 체계화되어야만 비로소 인권교육을 내용적으로 전문화할 수 있다. 여기서 인권교육의 전문화란 인권교육의 내용을 사회의 각 전문영역에 맞춰 전문화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인권교육전문가, 공무원, 법집행관, 군인 등과 같은 전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제2차 세계인권교육 프로그램의 방향에 상응하는 것이기도 하다.

## 3.

**인권교육의 제도화**

다음으로 인권교육의 제도화를 핵심목표로 제시할 수 있다. 여기서 인권교육의 제도화란 인권교육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법적·제도적 여건을 확충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인권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인권교육 제도화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인권교육이 제도화되어야만 인권교육이 더욱 안정된 틀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 4.

**인권교육의 지역화**

마지막으로 인권교육의 지역화를 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의 핵심목표로 거론할 수 있다. 인권교육의 지역화란 말 그대로 인권교육이 서울로 상징화되는 중앙에서만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에서도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적·물적·제도적 여건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인권교육지역협의체를 마련하는 것이나, 인권조례제정을 지원하는 것 등이 인권교육의 지역화에 해당하는 과제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인권교육의 지역화는 인권교육을 대중화하고 인권교육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라는 요청 또한 포함한다. 요컨대, 인권교육의 중앙화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인권교육의 지역화가 좁은 의미의 지역화라면, 인권교육의 대중화와 소통 강화를 포함하는 인권교육의 지역화는 넓은 의미의 지역화라고 말할 수 있다. 연구진이 인권교육의 핵심목표로 설정한 인권교육의 지역화는 바로 넓은 의미의 지역화라고 할 수 있다.

**IV. 성과목표**

위에서 연구진은 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의 비전, 기본원칙, 4대 핵심목표를 제시하였다. 그런데 이들은 아주 추상적이어서, 이들만으로는 구체적인 행동계획이나 실천과제를 도출할 수 없다. 따라서 이보다 좀 더 구체적인 목표, 즉 성과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같은 이유에서 연구진은 각각의 핵심목표 아래에, 이러한 핵심목표를 좀 더 구체화하는 성과목표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아래에서는 각각의 핵심목표에 상응하는 성과목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성과 목표	인권교육의 권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교육에 대한 홍보 강화</li> <li>■ 일상생활 친화적인 인권교육여건 마련</li> </ul>
	인권교육의 전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교육내용의 전문화</li> <li>■ 인권교육강사의 전문화</li> <li>■ 인권교수방식의 전문화</li> <li>■ 인권교육실행체계의 전문화</li> <li>■ 특정분야 인권교육 강화</li> </ul>
	인권교육의 제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교육실행에 필요한 제도적 기초 확보</li> <li>■ 인권교육의 실효성을 위한 제도적 여건 조성</li> <li>■ 인권친화적 교육환경 조성</li> <li>■ 인권교육에 필요한 물적 기반 확보</li> </ul>
	인권교육의 지역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와 인권교육 협력 강화</li> <li>■ 지역시민사회와 인권교육 협력 강화</li> <li>■ 지역대학과 인권교육 협력 강화</li> <li>■ 인권교육에 대한 국제적 협력 강화</li> </ul>

<그림 7> 인권교육에 대한 구체적 성과목표

## 1.

**인권교육의 권리화**

첫 번째 핵심목표인 인권교육의 권리화를 구체화하는 성과목표로서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인권교육에 대한 홍보 강화와 일상생활 친화적인 인권교육여건 마련이 그것이다.

**(1) 인권교육에 대한 홍보 강화**

인권교육의 권리화라는 핵심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권에 대해 존재하는 부정적 인식, 즉 인권에 대한 오해나 편견을 없애야 한다. 다시 말해 인권을 우리 삶에서 꼭 필요한 구성요소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인권교육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 역시 불식시킬 수 있고, 더 나아가 인권교육 그 자체를 독자적인 권리로 설정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인권 그리고 인권교육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을까? 연구진은 인권교육에 대한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인권 및 인권교육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바로 이 점에서 인권교육에 대한 홍보 강화를 인권교육의 권리화를 실현하기 위한 성과목표로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 일상생활 친화적인 인권교육여건 마련**

나아가 일상생활 친화적인 인권교육여건 마련을 인권교육의 권리화를 위한 성과목표로 언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권과 인권교육에 대해 존재하는 근거 없는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려면, 인권과 인권교육이 일종의 권리이자 우리 일상생활에 꼭 필요하면서 친근한 그 무엇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인권이 투쟁적이고 차가우며 그래서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친근하고 따뜻하며 그래서 꼭 필요한 것으로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인권교육 자체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녹아들 수 있어야 한다. 바로 이 같은 이유에서 일상생활 친화적인 인권교육여건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 2.

**인권교육의 전문화**

두 번째 핵심목표인 인권교육의 전문화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성과목표로서는 크게 다섯 가지를 거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권교육내용의 전문화, 인권교육강사의 전문화, 인권교수방식의 전문화, 인권교육실행체계의 전문화, 특정분야 인권교육 강화가 그것이다.

**(1) 인권교육내용의 전문화**

인권교육의 전문화를 실현하려면, 우선 인권교육내용, 즉 인권교육의 콘텐츠를 전문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인권교육의 질적인 측면을 구성하는 인권교육내용 자체가 전문화되어야만 인권교육의 전문화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인권교육내용의 전문화를 꾀할 수 있을까? 이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첫째는 인권교육에 필요한 인권교과목을 전문화하는 것이다. 둘째는 이렇게 개발한 전문인권교과목에 필요한 전문인권교재를 개발하는 것이다.

## (2) 인권교육강사의 전문화

나아가 인권교육을 담당하는 인권교육강사를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 물론, 지금도 다수의 전문적인 인권교육강사가 존재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강사들이 어느 일정영역에 다소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가령 인권의 특성상 시민사회영역에는 전문적인, 그러니까 인권현장경험이 풍부한 인권강사가 다수 존재한다. 이에 반해 공공영역에는 인권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현장경험 및 인권감수성을 고루 갖춘 인권강사를 찾기 어려울 때가 많다. 그 때문에 공공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인권교육은 자칫 형식적인 것으로 전락할 우려가 상존한다. 바로 이 같은 이유에서 인권교육강사의 전문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이 때 두 가지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인권교육강사를 양성하는 과정을 체계화하는 것이다. 둘째는 인권교육강사의 전문성 정도를 통일하는 것이다. 전자가 인권교육강사 양성과정을 전문적으로 체계화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인권교육강사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 (3) 인권교수방식의 전문화

다음으로 인권교수방식의 전문화를 성과목표로 언급할 수 있다. 아무리 인권교육내용이 전문화되고 이를 담당하는 인권교육강사가 전문성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인권교육내용을 전달하는 인권교수방식 자체가 전문화되어 있지 않으면, 성공적인 인권교육을 수행할 수 없다. 특히, 가장 전형적인 교수방식인 주입식 강의방식으로 인권교육을 실행하면, 인권감수성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인권교육을 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수평적인 쌍방향 소통방식에 상응하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인권교수방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러한 인권교수방식의 전문화는 인권교육강사를 전문화하는 것과는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인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고 또 현장경험이 풍부한 인권강사의 경우에는 이미 인권교육방식에 대한 독자적인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인권에 대한 전문성이 높은데도 인권을 교육한 경험이 적어 인권교육에 필요한 적절한 교수방식을 갖추지 못한 경우도 다수 발견할 수 있다. 자기 전공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높은 교수가 오히려 관련 대학 강의를 잘 하지 못하는 경우를 곧잘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바로 이러한 까닭에서 인권교육강사의 전문화와는 별도로 인권교수방식의 전문화를 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4) 인권교육실행체계의 전문화

이어서 인권교육실행체계의 전문화를 성과목표로 제시할 수 있다. 인권교육을 전문화하기 위해서는 인권교육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절차 및 체계 역시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이러한 인권교육실행체계를 전문화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교과목과 인권교육강사 그리고 교수법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인권교육을 제대로 실행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인권교육 자체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인권교육실행체계 역시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sup>143)</sup>

##### 1) 좁은 의미의 인권교육실행체계의 전문화

이러한 인권교육실행체계의 전문화는 다시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인권교육 투입(input)의 측면과 인권교육 산출(output)의 측면이 그것이다. 우선 인권교육 투입과 관련된 체계를 전문화해야 한다. 이는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구조, 절차, 과정 등을 전문화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좁은 의미의 인권교육실행체계를 전문화하는 것이라고 바꿔 말할 수 있다.

##### 2) 인권교육평가체계의 전문화

나아가 인권교육 산출과 관련된 체계를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인권교육이 제대로 산출되었는지, 다시 말해 인권교육이 원래 목표한 바대로 실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체계를 전문화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인권교육평가체계를 전문화하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인권교육평가체계를 전문화해야만 인권교육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인권교육평가체계에는 인권교육에 대한 평가내용을 환류(feedback)시키는 체계까지 포함한다.

#### (5) 특정분야 인권교육 강화

마지막으로, 특정분야 인권교육 강화를 성과목표로 생각할 수 있다. 이 성과목표는 앞으로 우선적으로 인권교육을 강화해야 할 분야가 있는 경우 유용하다. 최근 들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정보인권이나 기업과 인권 그리고 사회복지와 인권 등이 이 같은 분야라고 말할 수 있다. 이들 분야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인권교육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 3.

### 인권교육의 제도화

143) 최근 몇 년 전부터 국정목표로 강조된 '선진화' 역시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핵심목표인 인권교육의 제도화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성과목표로는 크게 세 가지를 떠올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권교육실행에 필요한 제도적 기초 확보, 인권교육의 실효성을 위한 제도적 여건 조성, 인권친화적 교육환경 조성, 인권교육에 필요한 물적 기반 확보가 그것이다.

### (1) 인권교육실행에 필요한 제도적 기초 확보

우선 인권교육실행에 필요한 제도적 기초 확보를 인권교육 제도화의 성과목표로 생각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인권교육이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제도적 기초를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인권교육을 전문화하거나 체계화하는 것만으로는 인권교육이 현실적으로 실행되는 것을 담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인권교육이 안정적으로 그리고 지속가능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무엇보다도 법적 장치를 확보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인권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인권교육법’으로 약칭한다)을 제정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 (2) 인권교육의 실효성을 위한 제도적 여건 조성

다음으로 인권교육의 실효성을 위한 제도적 여건 조성을 성과목표로 제시할 수 있다. 인권교육이 성공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인권교육을 단순히 실행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만약, 인권교육을 실행시키는 것에만 주안점을 두면, 인권교육은 자칫 외형에만 치중할 수 있다. 그동안 이루어진 인권교육의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인권교육의 형식화는 바로 이처럼 인권교육을 양적으로 실행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으로써 야기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권교육이 성공적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으려면, 인권교육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를 위해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 여기서도 ‘투입-산출 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위에서 언급한 성과목표, 즉 인권교육실행에 필요한 제도적 기초 확보는 인권교육을 투입하는 것과 관련을 맺는다. 이에 반해 두 번째 성과목표인 인권교육의 실효성을 위한 제도적 여건 조성은 인권교육의 산출과 관련을 맺는다고 생각한다. 즉, 인권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권교육이 제대로 산출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로서 인권교육에 대한 평가체계를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인권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협력 네트워크를 마련하는 것도 인권교육의 실효성을 위한 제도적 여건 조성에 해당한다.

### (3) 인권친화적 교육환경 조성

나아가 인권친화적 교육환경 조성을 성과목표로 언급할 수 있다. 인권교육이 성공적으로 이

루어지려면, 인권교육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실행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만약, 인권교육이 이루어지는 교육환경이 비인권적으로 조성되어 있다면, 아무리 좋은 강사가 좋은 콘텐츠와 교수방식으로 인권을 교육한다고 하더라도, 이 인권교육은 인권감수성을 전달할 수 있는 인권교육을 실현할 수 없다. 따라서 인권교육이 이루어지는 교육환경 역시 인권친화적으로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 (4) 인권교육에 필요한 물적 기반 확보

마지막으로, 인권교육에 필요한 물적 기반 확보를 성과목표로 거론할 수 있다. 현대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일정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요건을 필수적으로 충족해야 한다. 첫째는 법적 기반이고, 둘째는 물적 기반이다.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하더라도 물적 기반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이는 인권교육정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인권교육을 실행하는 데는 당연히 물적 기반, 즉 예산이 필요하다.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권교육을 적절하게 실행할 수 없다. 이 점에서 인권교육에 필요한 물적 기반을 확보하는 것은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 4.

### 인권교육의 지역화

마지막으로, 인권교육의 지역화를 실현하기 위한 성과목표로는 크게 지방자치단체와 인권교육 협력 강화, 지역시민사회와 인권교육 협력 강화, 지역대학과 인권교육 협력 강화, 인권교육에 대한 국제적 협력 강화를 꼽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인권교육의 지역화에서는 인권교육에 관한 중앙과 지방 사이의 소통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 인권교육에 관해 중앙과 지방 사이에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야만 인권교육의 지역화를 실현할 수 있다.

#### (1) 지방자치단체와 인권교육 협력 강화

첫째, 지방자치단체와 인권교육에 관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교육청이 인권교육에 협력하지 않으면, 인권교육을 전국적으로 파급시킬 수 없다. 이는 무엇보다도 최근 각 지역에서 제정되고 있는 인권조례정책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2) 지역시민사회와 인권교육 협력 강화

둘째, 지역시민사회와 인권교육에 관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지역시민사회와 인권교육에 관

해 협력하지 못하면, 자칫 Top Down 방식의 하향식 인권교육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인권교육이 본래 지향하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 인권감수성 함양을 중요하게 여기는 인권교육은 하향식 교육방식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역시민사회와 그 중에서도 지역인권단체와 인권교육에 관한 협력을 강화해야만 한다.

### (3) 지역대학과 인권교육 협력 강화

셋째, 지역대학과 인권교육에 관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제2차 세계인권교육 프로그램이 강조하는 고등교육상 인권교육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몇몇 유망 지역대학을 인권교육연구중심대학으로 선정하여 서로 협력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선 이들 인권교육연구중심대학과 인권교육에 대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고등교육상 인권교육의 지역화를 꾀할 수 있다. 아울러 다른 지역대학과도 추가적으로 인권교육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 (4) 인권교육에 대한 국제적 협력 강화

넷째, 인권교육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인권교육의 지역화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여기서 말하는 국제적 협력은 특히 동아시아 공동체를 염두에 둔 것이므로, 넓은 의미의 지역화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이제는 한국, 일본, 중국을 주축으로 한 동아시아 공동체 안에서 인권교육에 관한 협력을 강화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 V. 실행과제 개관

이제 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의 마지막 단계로서 인권교육 실행과제를 살펴보도록 한다. 여기에서는 먼저 전체 실행과제를 개관한 후, 아래 제2절에서 각각의 실행과제를 상세하게 다루도록 한다.

### 1.

### 인권교육의 권리화

#### (1) 인권교육에 대한 홍보 강화

- 인권교육 홍보광고 추진 (1-1-1)
- 인권교육 뉴스레터 발간 (1-1-2)
- 전국 대학생 대상 모의 인권위원회 대회 개최 (1-1-3)
- 인권교육 논문공모전 실시 (1-1-4)

## (2) 일상생활 친화적인 인권교육여건 마련

- 인권도시사업 지원 (1-2-1)
- 인권교육도시사업 지원 (1-2-2)
- 인권체험마을 조성사업 지원 (1-2-3)

## 2.

## 인권교육의 전문화

### (1) 인권교육내용의 전문화

- 기존 인권교과목의 전문화 (2-1-1)
- 전문인권교과목 개발 (2-1-2)
- 통합형 인권교과목 개발 (2-1-3)
- 기존 인권교육교재 개정 (2-1-4)
- 각 분야별 인권교육교재 개발 (2-1-5)
- 전문인권교육교재 개발 (2-1-6)
- 통합형 인권교육교재 개발 (2-1-7)
- 인권교육사례집 개발 (2-1-8)

### (2) 인권교육강사의 전문화

- 인권교육강사 양성과정 체계화 (2-2-1)
- 전문분야별 인권교육강사 양성 (2-2-2)

### (3) 인권교수방식의 전문화

- 인권친화적 교수법 개발 (2-3-1)

- 다양한 교수방식의 인권교과목 개발 (2-3-2)
- 인권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2-3-3)
- 인권교육 교수법 매거진 발간 (2-3-4)

#### (4) 인권교육실행체계의 전문화

- 각 영역별 인권교육프로그램 표준모델 개발 (2-4-1)
- 각 영역별 인권교육 평가지표 개발 (2-4-2)

#### (5) 특정분야 인권교육 강화

- 정보인권에 대한 교육 강화 (2-5-1)
- 기업인권에 대한 교육 강화 (2-5-2)
- 사회복지인권에 대한 교육 강화 (2-5-3)
- 아동인권에 대한 교육 강화 (2-5-4)
- 교원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2-5-5)
- 고위행정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2-5-6)

### 3.

## 인권교육의 제도화

#### (1) 인권교육실행에 필요한 제도적 기초 확보

- “인권교육법” 제정 (3-1-1)
- “인권교육법시행령” 제정 (3-1-2)
- 인권교육원 설립 (3-1-3)
- 인권전문대학원 설립 모색 (3-1-4)

#### (2) 인권교육의 실효성을 위한 제도적 여건 조성

- 인권교육에 대한 감독 및 평가체계 제도화 (3-2-1)
- 시민사회 인권교육단체와 네트워크 방안 모색 (3-2-2)
- 인권교육강사 협의회 운영 검토 (3-2-3)
- 각종 국가시험에 인권교과목 추가 모색 (변호사시험, 공무원시험, 교원임용시험) (3-2-4)

**(3) 인권친화적 교육환경 조성**

- 각 영역별 인권친화성 지표 개발(3-3-1)
- 대학평가항목에 인권지표 포함 추진(3-3-2)

**(4) 인권교육에 필요한 물적 기반 확보**

- 예산확보방안 모색(3-4-1)
- 인권교육펀딩체계 구축(3-4-2)

**4.****인권교육의 지역화****(1) 지방자치단체와 인권교육 협력 강화**

- 각종 인권조례제정 지원(4-1-1)
- 지방인권교육에 인권교육강사 지원(4-1-2)

**(2) 지역시민사회와 인권교육 협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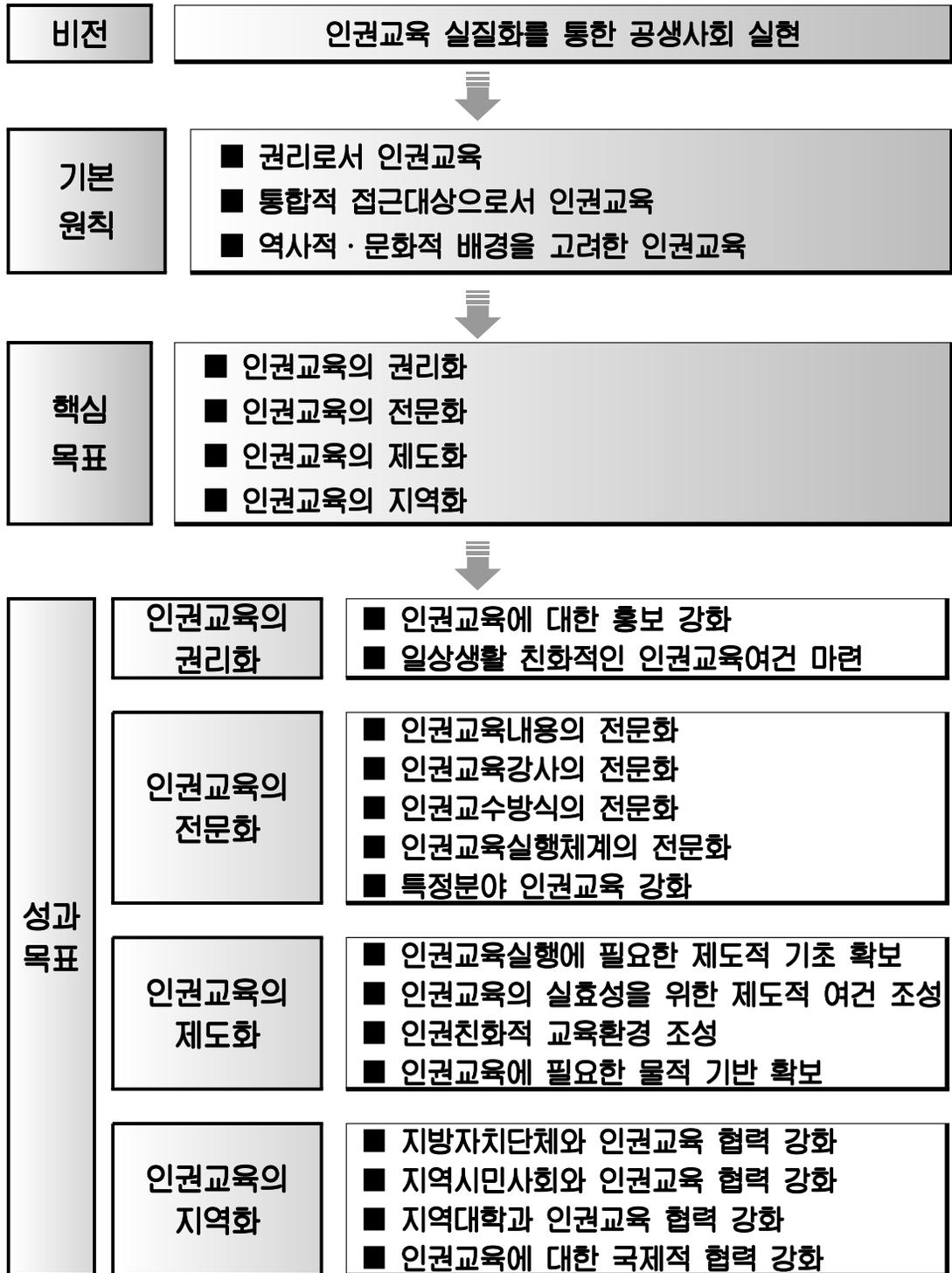
- 지역인권교육협의체 운영(4-2-1)
- 시민사회 - 대학 인권강사 매칭 프로그램 개발(4-2-2)

**(3) 지역대학과 인권교육 협력 강화**

- 인권교육연구중심대학 협의체 운영(4-3-1)
- 각 대학 인권교육센터와 네트워킹 구축(4-3-2)
- 대학 인권교과목 개발 지원(4-3-3)

**(4) 인권교육에 대한 국제적 협력 강화**

- 동아시아 인권레짐 구축 추진(4-4-1)
- 동아시아 국가인권위원회 협의체 창설(4-4-2)



<그림 8> 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 추진체계

<b>실행 과제</b>	<b>인권교육의 권리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인권교육에 대한 홍보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교육 홍보광고 추진</li> <li>· 인권교육 뉴스레터 발간</li> <li>· 전국 대학생 대상 모의 인권위원회 대회 개최</li> <li>· 인권교육 논문공모전 실시</li> </ul> </li> <li>■ <b>일상생활 친화적인 인권교육여건 마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도시사업 지원</li> <li>· 인권교육도시사업 지원</li> <li>· 인권체험마을 조성사업 지원</li> </ul> </li> </ul>
	<b>인권교육의 전문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인권교육내용의 전문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인권교과목의 전문화</li> <li>· 전문인권교과목 개발</li> <li>· 통합형 인권교과목 개발</li> <li>· 기존 인권교육교재 개정</li> <li>· 각 분야별 인권교육교재 개발</li> <li>· 전문인권교육교재 개발</li> <li>· 통합형 인권교육교재 개발</li> <li>· 인권교육사례집 개발</li> </ul> </li> <li>■ <b>인권교육강사의 전문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교육강사 양성과정 체계화</li> <li>· 전문분야별 인권교육강사 양성</li> </ul> </li> <li>■ <b>인권교수방식의 전문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친화적 교수법 개발</li> <li>· 다양한 교수방식의 인권교과목 개발</li> <li>· 인권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li> <li>· 인권교육 교수법 매거진 발간</li> </ul> </li> <li>■ <b>인권교육실행체계의 전문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영역별 인권교육프로그램 표준모델 개발</li> <li>· 각 영역별 인권교육 평가지표 개발</li> </ul> </li> <li>■ <b>특정분야 인권교육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인권에 대한 교육 강화</li> <li>· 기업인권에 대한 교육 강화</li> <li>· 사회복지인권에 대한 교육 강화</li> <li>· 아동인권에 대한 교육 강화</li> <li>· 교원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li> <li>· 고위행정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li> </ul> </li> </ul>

<그림 8> 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 추진체계 (계속)

<b>실행 과제</b>	<b>인권교육의 제도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인권교육실행에 필요한 제도적 기초 확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교육법” 제정</li> <li>· “인권교육법시행령” 제정</li> <li>· 인권교육원 설립</li> <li>· 인권전문대학원 설립 모색</li> </ul> </li> <li>■ <b>인권교육의 실효성을 위한 제도적 여건 조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교육에 대한 감독 및 평가체계 제도화</li> <li>· 시민사회 인권교육단체와 네트워킹 방안 모색</li> <li>· 인권교육강사 협의회 운영 검토</li> <li>· 각종 국가시험에 인권교과목 추가 모색 (변호사시험, 공무원시험, 교원임용시험)</li> </ul> </li> <li>■ <b>인권친화적 교육환경 조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영역별 인권친화성 지표 개발</li> <li>· 대학평가항목에 인권지표 포함 추진</li> </ul> </li> <li>■ <b>인권교육에 필요한 물적 기반 확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확보방안 모색</li> <li>· 인권교육펀딩체계 구축</li> </ul> </li> </ul>
	<b>인권교육의 지역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지방자치단체와 인권교육 협력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인권조례제정 지원</li> <li>· 지방인권교육에 인권교육강사 지원</li> </ul> </li> <li>■ <b>지역시민사회와 인권교육 협력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인권교육협의체 운영</li> <li>· 시민사회-대학 인권강사 매칭 프로그램 개발</li> </ul> </li> <li>■ <b>지역대학과 인권교육 협력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교육연구중심대학 협의체 운영</li> <li>· 각 대학 인권교육센터와 네트워킹 구축</li> <li>· 대학 인권교과목 개발 지원</li> </ul> </li> <li>■ <b>인권교육에 대한 국제적 협력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아시아 인권레짐 구축 추진</li> <li>· 동아시아 국가인권위원회 협의회 창설</li> </ul> </li> </ul>

<그림 8> 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 추진체계 (계속)

## 제3절 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 실행과제 분석

지금까지 제2절에서는 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의 추진체계를 개관하였다. 이어 제3절에서는 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이 마련하고 있는 각각의 실행과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 1. 인권교육의 권리화

#### 1.

#### 인권교육에 대한 홍보 강화

##### (1) 인권교육 홍보광고 추진 (1-1-1)

인권과 인권교육을 부정적이고 투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친근한 그 무엇으로 각인시키려면, 인권 및 인권교육에 대한 이미지를 긍정적인 것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인권교육 홍보광고를 통해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대중매체와 이미지가 지배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사람들을 이성적으로 설득하려 하기보다는 이미지를 매개로 한 감성적인 전략으로 설득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이 점에서 공익광고 형식으로 인권교육 홍보광고를 제작해서 소통시키면, 인권과 인권교육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요즘 에이즈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고자 에이즈 공익광고를 펼치는 것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 (2) 인권교육 뉴스레터 발간 (1-1-2)

인권교육 뉴스레터를 발간하는 것도 인권과 인권교육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사항을 담은 뉴스레터를 발간하여 이메일을 통해 전파하고 있는데, 이 같은 방식으로 인권교육 뉴스레터를 전문적으로 발간·전파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만약, 인권교육 뉴스레터를 독자적으로 발간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면, 기존의 뉴스레터에 인권교육 분야를 특화하거나 강화하여 발간·전파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3) 전국 대학생 대상 모의 인권위원회 대회 개최 (1-1-3)**

전국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하여 모의 인권위원회 대회를 개최하는 것도 인권과 인권교육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유익하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여 모의 인권위원회 대회를 개최하면, 앞으로 유능한 법률가 자원을 국가인권위원회로 끌어들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이미 가인법정변론대회, 모의세계검찰총장대회,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대회 등 각종 대회들이 법학전문대학원생들과 같은 고급인력을 유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차원에서 모의 인권위원회 대회를 개최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4) 인권교육 논문공모전 실시 (1-1-4)**

인권교육에 관한 논문공모전을 실시하는 것도 인권교육의 권리화를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 인권교육에 관한 논문을 스스로 작성해 봄으로써, 인권과 인권교육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에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도 인권논문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에 더하여 인권교육 논문공모전을 별도로 실시하는 것이 행정상 번거로운 일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일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인권논문 공모전을 실시할 때 인권교육 논문에 관한 파트를 별도로 특화시키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2. 일상생활 친화적인 인권교육여건 마련**

**(1) 인권도시사업 지원 (1-2-1)**

현재 광주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인권도시사업이야말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인권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sup>144)</sup> 도시 전체가 인권친화적으로 구조화된다면, 이 도시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인권의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환경 속에서는 인권교육 자체를 일상생활에 필수적이면서 친근한 삶의 요소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인권도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인권교육도시사업 지원 (1-2-2)**

144) 인권도시사업에 관해서는 우선 Stephen P. Marks 외, 국가인권위원회 (역), 『인권도시: 사회발전을 위한 시민의 약속』, 국가인권위원회, 2011, 참고.

인권도시사업이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면, 이와 별도로 인권교육만을 특화하여 인권교육도시사업을 지원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인권교육도시는 - 말 그대로 - 인권교육을 전문적으로 체계화하고 실행하는 도시라고 말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용역으로 이미 연구된 바 있는 평생학습도시 구상을 응용하는 것도 유용하리라 생각한다.<sup>145)</sup> 인권교육과 평생학습도시를 결합시킨 것이 바로 인권교육도시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 (3) 인권체험마을 조성사업 지원 (1-2-3)

이보다 더욱 규모가 작은 사업으로서 인권체험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을 생각할 수 있다. 인권체험마을이란 - 영어마을처럼 - 각종 인권상황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인공적 마을을 말한다. 장애인체험과 같은 인권적 상황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인공적 장치를 마을에 조성함으로써, 인권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인권체험마을은 인권도시나 인권교육도시 안에 설치할 수도 있지만, 이와는 별도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도록 지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 II. 인권교육의 전문화

### 1.

### 인권교육내용의 전문화

#### (1) 기존 인권교과목의 전문화 (2-1-1)

인권교육내용을 전문화하려면, 가장 먼저 기존의 인권교과목을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 정확하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은 수정·보완하고, 내용이 시대상황에 뒤떨어진 경우에는 이를 현 상황에 맞게 업데이트해야 한다. 나아가 현대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문적 분화현상에 발맞춰서 기존의 인권교과목을 전문적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경찰공무원 인권교과목을 각 전문영역에 맞게 ‘교통경찰과 인권’, ‘수사경찰과 인권’, ‘시위진압과 인권’ 등으로 세분화시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 (2) 전문인권교과목 개발 (2-1-2)

145) 이에 관해서는 이해주 외, 『평생학습에서의 인권교육 접목방안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08, 참고.

그러나 인권교육내용을 전문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문인권교과목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전문화되면서,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전문인권영역이 출현하고 있다. 정보인권이나 기업과 인권 영역 등이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난 2011년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면서, 이와 관련된 정보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인권’이나 ‘기업과 인권’ 등과 같은 새로운 전문인권교과목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와 인권’이나 ‘의료와 인권’ 등도 현 시점에서 필요한 전문인권 교과목이라고 말할 수 있다.

### (3) 통합형 인권교과목 개발 (2-1-3)

전문인권교과목을 개발하는 것 이외에도 통합형 인권교과목을 개발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동인권과 장애인인권을 통합한 ‘아동장애인의 인권’이라는 교과목을 생각할 수 있다. 아니면 여성과 아동 그리고 장애인을 통합한 ‘여성아동장애인의 인권’과 같은 교과목도 모색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의료와 사회복지 및 인권을 결합한 통합형 인권교과목 등도 고려할 수 있다. 물론, 전문인권교과목과 통합형 인권교과목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다. 많은 경우 양자가 겹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양자를 개념적·영역적으로 구별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 (4) 기존 인권교육교재 개정 (2-1-4)

인권교과목을 전문화하는 것과 동시에 교과목을 뒷받침하는 교재 역시 전문화해야 한다. 우선 기존에 출간되어 있는 인권교육교재를 현 상황에 맞게 개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특히 공공영역의 인권교육에 필요한 인권교육교재를 다수 발간하였다.<sup>146)</sup> 그러나 이들 교재들은 2005년 전·후에 만들어진 것으로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 교재들은 현 시대적 상황에 맞게 업데이트해야 할 필요가 있다.

### (5) 각 분야별 인권교육교재 개발 (2-1-5)

각 영역 및 분야에 적합한 인권교육교재를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테면, 공공영역, 학

146) 예를 들어, 국가인권위원회, 『검찰공무원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인권전문 인력양성 연수교재, 2005; 국가인권위원회, 『군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인권전문 인력양성 연수교재, 2005; 국가인권위원회, 『교정공무원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인권전문 인력양성 연수교재, 2005 등.

교영역, 시민사회영역에 적합한 인권교육교재를 개발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공공영역의 인권교육교재도 각 세부영역별로 구분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다. 가령, 경찰공무원 인권교육교재, 군인권 교육교재, 법원공무원 인권교육교재, 검찰공무원 인권교육교재, 일반행정공무원 인권교육교재가 그것이다. 학교영역의 인권교육교재도 초등학교용 인권교육교재, 중등학교용 인권교육교재, 대학용 인권교육교재로 나누어 개발할 필요가 있다.

#### (6) 전문인권교육교재 개발 (2-1-6)

전문인권교과목을 실행할 수 있도록 전문인권교과목도 개발해야 한다. 이를테면, ‘정보인권’이나 ‘기업과 인권’, ‘사회복지와 인권’, ‘의료와 인권’ 등과 같은 교과목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에 적합한 전문인권교육교재를 개발해야 한다. 다만, 이 실행과제는 인권교육의 전문성을 위해 성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시간을 들여 치밀하게 준비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시간을 충분하게 투자해야만 전문성과 완성도가 높은 인권교육교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 (7) 통합형 인권교육교재 개발 (2-1-7)

이렇게 전문인권교육교재를 개발하는 것과 함께 통합형 인권교육과목을 운영할 수 있도록 통합형 인권교육교재 역시 개발해야 한다. 이 실행과제를 추진하는 방식은 전문인권교육교재를 개발하는 방식과 같다. 이에 대해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연구진에게 외부용역을 주어 과제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8) 인권교육사례집 개발 (2-1-8)

인권교육을 생동감 있게, 다시 말해 인권감수성이 생생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실행하려면, 추상적인 인권이론을 중심으로 하여 인권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대신 다양한 인권사례를 제시하면서 인권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인권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쌍방향의 수평적 소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만 인권감수성이 생생하게 교육참여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 따라서 함께 고민하고 토론할 만한 인권교육사례를 발굴하여 이를 사례집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 2.

## 인권교육강사의 전문화

### (1) 인권교육강사 양성과정 체계화 (2-2-1)

인권교육강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권교육강사 양성과정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인권교육강사 양성과정 표준모델을 만들어서, 각 부처나 영역별 혹은 지역별로 다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인권교육강사 양성과정을 통일적으로 체계화해야 한다. 또한, 양성과정 자체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이 양성과정을 수료하려면 자연스럽게 인권교육강사들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2) 전문분야별 인권교육강사 양성 (2-2-2)

아울러 각 전문분야를 다룰 수 있는 인권교육강사를 양성해야 한다. 인권교육강사가 인권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분야에 걸쳐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지만, 이와 동시에 자기가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야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전문성 역시 겸비하고 있어야 한다. 마치 대학교원들이 기본적인 수준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신만의 전공을 통해 개별적 전문성을 획득하고 있듯이, 인권교육강사 역시 기본적 전문성과 개별적 전문성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

## 3.

### 인권교수방식의 전문화

#### (1) 인권친화적 교수법 개발 (2-3-1)

교재개발과 더불어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인권교육에 적합한 교수법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인권교육에 필요한 교수법이나 방법론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이미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졌다.<sup>147)</sup> 그러나 이러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 대학에 몸담고 있는 연구진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교수자의 경우 흔히 자신은 전문가라는 생각에 자신의 사용하는 교수법에 별 문제를 느끼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 자신의 교수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어렵다는 점 역시 사실이다. 아울러 참여와 토론 혹은 창의적인 교수법이 중요하고 또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을 하면서도, 막상 이를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막막해 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근거에서 요즘 각 대학들은 교수학습센터 등을 설립하여 지속적으로 교수법 강좌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147) 예를 들어, 이종태 외, 『인권교육 개념 및 방향 정립 모색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2005 등 참고.

연구진 역시 이러한 교수법 강좌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연구진 자신이 알지 못했던 것을 배운 경우가 많다.<sup>148)</sup> 그러므로 인권교육이 실질적으로 전문화될 수 있도록 인권친화적 교수법을 개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2) 다양한 교수방식의 인권교과목 개발 (2-3-2)

다양한 교수방식을 적용하는 인권교과목을 개발하는 것도 고민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일단 요즘 확산되고 있는 사이버 강좌를 활성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사이버 강좌는 교수자와 참여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사이버공간을 통해 소통한다는 점에서, 자칫 지식전달 위주의 강좌가 되기 쉽다. 이는 소통과 참여를 강조하는 인권교육에 다소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사이버 강좌가 지닌 강점을 살리면서 그 약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방식의 교과목을 개발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즉, 온라인 강좌와 오프라인 강좌를 혼합하는 방식이다. 온라인을 통해서만 인권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는 데 역점을 두고, 오프라인 강좌에서는 교수자가 참여자와 직접 소통하면서 참여와 토론을 유도함으로써, 인권감수성을 제고하는 인권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 이외에도 다수의 교수자가 협력해서 강좌를 운영하는 팀티칭 방식의 교과목을 적극 개발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sup>149)</sup> 다양한 시각과 목소리를 지닌 교수자가 다수 참여하여 교과목을 운용하면, 참여자 역시 인권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목소리를 접할 수 있을 것이다.

### (3) 인권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2-3-3)

인권교육에 대한 교수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권교육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전파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인권교육강사와 같은 전문가들은 흔히 자신이 사용하는 교수방식에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 이 때 성공적으로 인권교육을 수행하는 우수사례를 알려주면, 자신의 교수법을 개선하는 데 아주 유익하리라 생각한다.

### (4) 인권교육 교수법 매거진 발간 (2-3-4)

위에서 언급한 ‘인권교육 우수사례 전파’는 인권교육 교수법매거진을 발간함으로써 좀 더 체

148) 독일의 사회학자인 니클라스 루만(N. Luhmann)이 강조한 것처럼, 인식주체는 자신이 볼 수 있는 것만 볼 수 있을 뿐이고, 자신이 볼 수 없는 것은 볼 수 없다.

149) 이를 제안하는 홍성수, “한국 대학에서의 인권교육 현황과 과제”, 「제1회 인권교육 정책토론회: UN 인권교육프로그램과 한국의 대학(원)에서의 인권교육 자료집」, 한국인권재단, 2011.4.25, 41면 참고.

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 만약, 이를 별도로 발간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면, 인권교육 뉴스레터 안에서 인권교육 교수법 분야를 특화시키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교수법 매거진을 발간하여 관련자들에게 전파하고 있는데, 이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4.

**인권교육실행체계의 전문화**

(1) 각 영역별 인권교육프로그램 표준모델 개발 (2-4-1)

인권교육실행체계를 전문화하려면, 먼저 각 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인권교육프로그램 표준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지금보다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인권교육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일단 다음 세 가지 영역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공공영역과 학교영역 그리고 시민사회영역이 그것이다. 이러한 공공영역과 학교영역, 그리고 시민사회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인권교육프로그램 표준모델을 개발함으로써, 인권교육의 통일화·체계화·합리화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2) 각 영역별 인권교육 평가지표 개발 (2-4-2)

한편, 인권교육이 원래 목표한 바대로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으려면, 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인권교육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평가지표가 개발되어야만 인권교육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고, 이러한 평가결과를 인권교육에 다시 환류시킬 수 있다. 이러한 인권교육 평가지표도 크게 공공영역, 학교영역, 시민사회영역에 맞춰 개발할 필요가 있다.

5.

**특정분야 인권교육 강화**

(1) 정보인권에 대한 교육 강화 (2-5-1)

오늘날 정보화가 급속하게 진척되고 이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 역시 덩달아 증가하면서, 정보인권이 새로운 인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아직도 사회 각 영역에서는 정보인권의 중요성에 대해 실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정보인권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2) 기업인권에 대한 교육 강화 (2-5-2)

정보인권과 함께 요즘 새로운 인권의 화두로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기업인권이다. 과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이 화두가 되었는데, 지금은 이를 넘어서 인권경영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이는 그 만큼 기업 안에서 인권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제고되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에 발맞추어 기업인권이란 무엇인지, 왜 이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3) 사회복지인권에 대한 교육 강화 (2-5-3)

사회복지인권에 대한 교육 역시 강화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에 대한 복지문제가 점점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이를 넘어서 사회복지가 새로운 정책 적 이슈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가령 사회복지사의 역할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의 역할은 사회복지인권과 직결된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인권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는 것은,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권을 강화한다는 의미도 함께 내포한다.

### (4) 아동인권에 대한 교육 강화 (2-5-4)

‘나영이 사건’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오늘날 아동들은 성적 폭행이나 유괴, 아동학 대와 같은 각종 인권침해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힘없는 아동이 인권침해의 대상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아동인권에 대한 교육 역시 강화해야 한다.

### (5) 교원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2-5-5)

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에 대한 실태조사결과가 시사하는 것처럼, 인권교육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교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높다. 교원이야말로 학교영역에서 인권교육을 담당하는 직접적인 주체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약 교원 자신이 인권이나 인권교육에 대해 무지하거나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면, 인권교육이 제대로 수행될 리 만무하다. 교원 자신이 인권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을 지니고 있어야만, 제대로 된 인권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교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6) 고위행정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2-5-6)

실태조사 결과가 보여주는 것처럼, 행정공무원은 공공영역에서 가장 인권교육을 필요로 하는 대상이다. 이는 이미 지난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로 제출된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난다. 이에 따르면, 법무분야, 군대분야, 경찰분야, 행정분야, 사회복지분야 등에서 인권교육이 그 이전보다 양적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 연구용역보고서는 인권교육의 체계와 기반 구축, 인권교육과정 운영 측면에서 볼 때 경찰분야가 상대적으로 진일보하였다고 평가한다. 예를 들어, 경찰과 군대분야에서는 인권교육 전담조직이 자체적으로 구성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하여 직무교육의 일환으로 인권교육을 독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05년부터는 135개 교육과정에 인권과목을 정규과목으로 채택하기도 하였다.<sup>150)</sup> 이에 비해 이 연구용역보고서는 행정분야에서는 인권교육이 거의 전무하다고 평가하고 있다.<sup>151)</sup> 물론,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를 보면, 일반행정 분야에서도 - 상대적으로 적은 횟수이기는 하지만 - 인권교육이 정례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152)</sup> 다만, 이 자료를 보면, 인권 전반에 걸쳐 교육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주로 다문화에 초점을 맞추어 인권교육이 진행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이처럼 일반행정공무원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인권교육이 등한시되고 있다. 이는 그 대상을 고위직 공무원으로 삼게 되면 더욱 심해진다. 그러므로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공영역에 대한 인권교육을 성공시키려면, 고위행정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 III. 인권교육의 제도화

#### 1.

#### 인권교육실행에 필요한 제도적 기초 확보

##### (1) “인권교육법” 제정 (3-1-1)

인권교육의 제도화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실행과제는 “인권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인권교육법’으로 약칭함)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sup>153)</sup> 인권교육의 제도화

150) 이를 지적하는 배경내, “인권교육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연구 - 인권운동 영역에서의 좌표 모색을 중심으로 -”, 『인권법평론』, 제4호, 2009, 12면(여기에는 연구진과 갖고 있는 논문초고로 인용한다).

151) 정원오 외, 『국내·외 공공분야 인권교육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2006, 2면.

152) 나달숙,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에 비추어 본 공무원 인권교육의 현황과 과제”, 『제2회 인권교육정책 토론회: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공무원 교육』, 한국인권재단, 2011.6.23, 49-53면.

153) 이에 관해서는 우선 허종렬, “인권교육지원법 제정의 필요성과 추진과정 검토”, 『법과인권교육연구』, 제4권 제2호, 2011.8, 19면 아래 참고.

에 속하는 이 과제는 - 많은 연구가 지적하는 것처럼 - (공무원) 인권교육을 실질화하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인 인권교육법(안)은 (공무원) 인권교육을 실질화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인권교육의 정의 및 기본원칙,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교육 책무, 인권교육종합계획, 인권교육위원회, 인권교육협의회, 인권교육센터, 인권교육 실시 및 평가, 인권교육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권교육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제정되면, 그 동안 (공무원) 인권교육을 실시하면서 제기되었던 상당수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인권교육법(안)’은 인권교육에 대한 총괄주무기관으로 국가인권위원회를 상정하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해 가령 법무부는 다른 의견을 개진하고 있기는 하지만,<sup>154)</sup> 만약, 이 상태로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수행되는 모든 인권교육을 계획, 실행, 감독,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공무원) 인권교육의 실질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급하게 인권교육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2) “인권교육법시행령” 제정 (3-1-2)

만약, 인권교육법이 제정되어 시행되면, 이 법률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인권교육법시행령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인권교육법이 다소 불완전하더라도 인권교육법시행령을 촘촘하게 만들 수 있다면, 실제적으로 인권교육법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적어질 것이다.

## (3) 인권교육원 설립 (3-1-3)

다음으로 역점을 두어야 할 과제는 가칭 인권교육원을 설립하는 것이다. 이 역시 인권교육의 제도화에 속하는 실행과제이다. 인권교육을 총괄하는 인권교육원을 설립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논의되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안도 연구용역을 통해 제시된 상태다.<sup>155)</sup> 그러나 현재 계류 중인 인권교육법(안)은 인권교육원의 규모 및 기능을 축소하여, 이를 인권교육센터로 예정하고 있다(법안 제11조). 그렇지만, 이렇게 인권교육원을 인권교육센터로 축소하면, 인권교육원이 본래 예정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연구진은 인권교육원이 인권에 대한 교육, 연구 및 평가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154) 이를 보여주는 홍관표, “인권교육법제 및 정책현황과 과제 토론문”, 「제2회 인권교육정책 토론회: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공무원 교육」, 한국인권재단, 2011.6.23, 35-38면 참고; 이 지정토론문은 현재의 인권교육법(안)이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를 조목조목 제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로서는 이러한 비판에 대응할 수 있는 반박논리를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

155) 이에 관해서는 하미승 외, 『인권교육원 설립방안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2006 참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인권교육원이 인권교육을 실질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인권교육원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소속된 인권교육센터로 조직화하기보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산하에서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전문연구교육기관으로 설립해야 한다. 마치 헌법재판소가 산하에 헌법재판연구원을 또는 법무부가 산하에 형사정책연구원을 두고 있는 것처럼, 국가인권위원회도 산하에 독자적인 인권교육연구기관으로서 인권교육원을 둘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연구진은 인권교육원을 제도화된 인권교육과 제도화되지 않은 인권교육을 연결하는 공간, 다시 말해 ‘네트워크 복합체’로 조직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도화된 인권교육과 제도화되지 않은 인권교육은 각기 장점과 단점을 지니고 있다. 이 두 인권교육은 서로가 서로를 보완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 연구진은 이러한 역할을 바로 인권교육원이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권교육원에서 인권교육을 실시할 때 현장의 인권교육전문가를 인권강사로 위촉한다면, 인권교육원에서 제도화된 인권교육과 제도화되지 않은 인권교육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점에서 인권교육원을 국가인권위원회 산하의 기관으로 설립할 수도 있지만, 한국연구재단처럼 독립된 공법인으로 설립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다만, 인권교육원을 독립법인으로 설립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감독권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 (4) 인권전문대학원 설립 모색 (3-1-4)

그 밖에 인권교육의 제도화에 관한 전략과제로서 인권전문대학원(Human Rights School)을 설립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각 권역별로 인권교육연구중심대학을 지정하여 인권교육 및 연구를 지원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 같은 방안만으로는 본래 의도했던 목표를 실현하기 어렵다. 한두 명의 인권전문가가 한 대학의 방향을 주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현재 상당수의 법학전문대학원이 인권교육연구중심대학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변호사시험이라는 현실적인 장벽 때문에 이들이 과연 얼마나 인권교육 및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없지 않다. 이 점에서 아예 인권전문교육 및 인권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는 인권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소수의 대학과 협력하여 인권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이렇게 인권전문대학원을 설립하여 운용한다면, 인권전문대학원의 최고위과정 등을 활용하여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권교육도 좀 더 손쉽게 행할 수 있을 것이다.<sup>156)</sup>

## 2.

### 인권교육의 실효성을 위한 제도적 여건 조성

156) 만약, 현실적으로 인권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현재 인권교육연구중심대학이 각각 마련하고 있는 인권교육연구센터에서 단기코스의 인권전문가 양성과정을 개설하도록 지원하는 것도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를 시사해주신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의 홍성수 교수님께 감사를 드린다.

### (1) 인권교육에 대한 감독 및 평가체계 제도화(3-2-1)

인권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인권교육에 대한 감독 및 평가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 만약, 이를 제도화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 인권교육을 감독하고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지 않으면, 인권교육이 형식적인 것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물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인권교육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다른 법적 제도를 통해서도 감독 및 평가체계를 분명하게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2) 시민사회 인권교육단체와 네트워킹 방안 모색(3-2-2)

인권교육의 실질화를 위해서는 현장일선에서 인권교육을 담당하는 시민사회 인권교육단체와 지속적으로 네트워킹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 인권교육단체가 정기적으로 회합할 수 있는 모임을 정례화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 (3) 인권교육강사 협의회 운영 검토(3-2-3)

전국의 인권교육강사가 지속적으로 회합할 수 있는 인권교육강사 협의회를 운영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 인권교육강사 협의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면, 이 협의회 모임을 통해 인권교육강사들의 유대 및 전문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인권교육에 대한 절차, 수준, 방법 등을 전문화·통일화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4) 각종 국가시험에 인권교과목 추가 모색(3-2-4)

공무원 인권교육이 실질적인 측면에서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 중에는 상당수의 고위공무원들이 인권교육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찾아볼 수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스스로 법과 인권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믿는 법무영역의 공무원 집단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래서 경찰이나 군대분야에 비해 법무분야에서는 인권교육 역시 상대적으로 미약하게 이루어졌다. 연구진이 볼 때, 이들 집단에서는 법이 인권을 포함하는 분야인데 자신들은 이 법에 대한 전문가에 해당하므로 굳이 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지 못할 것이라고 추측된다. 그러나 법과 인권이 서로 일치하는 개념도 아니고, 법교육과 인권교육이 지향하는 바도 서로 같지 않은 않다는 점에서,<sup>157)</sup>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는 이러한 태도는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연구진은 이를 위한 한 방안으로서 공무원시험에 인권교과목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법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필수적인 관문인 변호사시험에 인권교과목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sup>158)</sup> 다만, 이 방안은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없지 않다. 왜냐하면, 오는 2012년 1월에 예정되어 있는 제1회 변호사시험은 본래 취지와는 달리 난이도가 상당히 높게 설정되어 있고, 출제범위나 과목수도 상당히 많아 수험생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탈락률 역시 예상보다 높아질 듯싶어, 법학전문대학원 자체가 일종의 과행으로 치닫고 있다.<sup>159)</sup> 이러한 상황에서 시험과목으로 인권교과목을 추가하는 것은, 수험생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권교과목이 본래 의도하는 취지를 살릴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만약 인권교과목을 변호사시험에 어떻게든 추가하고자 한다면, 다음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는 현재 예비시험으로 실시되고 있는 법조윤리시험처럼 인권시험을 Pass/Fail 형식으로 운영하는 방안이다. 둘째는 인권교과목을 일종의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에 관해 미국의 권위 있는 하버드 로스쿨이 지난 2006년부터 국제인권법을 포함한 국제공법을 1학년 과목으로 지정한 것이 의미 있는 시사를 한다고 생각한다.<sup>160)</sup>

이외에도 고위공직자를 선발하는 행정고등고시나 각종 공무원시험에 인권교과목을 추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sup>161)</sup>

### 3.

### 인권친화적 교육환경 조성

#### (1) 각 영역별 인권친화성 지표 개발 (3-3-1)

인권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면, 일정한 교육환경이 인권친화적인 환경인지 여부를 판단해주는 객관적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인권친화성 지표이다. 그리고 이 지표는 각 영역별로 세분화하여 개발해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공공영역, 학교영역, 시민사회영역으로 구분하여 인권친화성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표가 개발되면, 더 나아가 각 영역을 다시 세분화하여 인권친화성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157) 이에 관해서는 이종태 외, 이종태 외, 『인권교육 개념 및 방향정립모색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2005, 90-92면.

158) 이 방안은 인권교육의 권리화에 속하는 전략과제라 말할 수 있다.

159) 이 문제를 지적하는 김창록, “한국 로스쿨, 제3차 ‘수(數) 과동’: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을 둘러싼 논란”, 『법과 사회』, 제39호, 2010.12, 343면 아래 참고.

160) 조효제, 『인권의 문법』, 후마니타스, 2007, 27면.

161) 이를 지적해주신 백석대학교의 나달숙 교수님께 감사를 드린다.

## (2) 대학평가항목에 인권지표 포함 추진 (3-3-2)

대학평가항목에 인권지표를 포함하는 것도 인권친화적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요즘 ‘중앙일보’나 ‘조선일보’ 등이 실시하는 대학평가는 각 대학들의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데 무시하지 못할 영향력을 발휘한다. 대학평가항목에 새로운 평가기준을 추가하면, 대학들은 이렇게 추가된 평가기준에 부응하기 위해 대학정책을 손쉽게 바꾸고 있는 한다. 지난 2010년에 새롭게 추가된 강의평가점수 공개가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 ‘중앙일보’ 대학평가가 이 항목을 새롭게 추가하자, 각 대학들은 그 동안 수용하지 않았던 강의평가점수공개를 곧장 받아들이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대학평가항목에 인권지표를 추가하는 것은 특히 각 대학들이 인권친화적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4.

### 인권교육에 필요한 물적 기반 확보

#### (1) 예산확보방안 모색 (3-4-1)

인권교육에 필요한 물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예산확보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자본주의에 기반을 둔 오늘날의 민주적 법치국가 사회에서 국가가 일정한 정책을 수행하려면 두 가지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첫째는 정책을 수행하는 데 기반이 되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고, 둘째는 정책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다. 여기서 첫째 요건은 우선 ‘인권교육법(안)’이 제정되면 상당 부분 충족할 수 있다. 문제는 두 번째 요건이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교육을 위해 확보한 예산규모를 보면, 이는 현실적으로 인권교육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적절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이는 연구진 역시 막막하게 생각하는 과제인데, 기능적인 방안으로서 전문 로비스트 그룹을 운용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 (2) 인권교육펀딩체계 구축 (3-4-2)

인권교육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인권교육펀딩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인권교육에 필요한 재원으로서 국가적 예산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펀딩에 기대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여기서 고려해야 할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기관이라는 점에서 펀딩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는 점이다. 펀딩의 주체로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관리할 수 있는 공익재단을 설립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아니면, 한국인권재단과 같은 민간법인과 협력하여 펀드레이징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다.

## IV. 인권교육의 지역화

### 1.

#### 지방자치단체와 인권교육 협력 강화

##### (1) 각종 인권조례제정 지원 (4-1-1)

우선 각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 등이 적극적으로 인권 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인권의 의미나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인권교육조례를 제정하도록 지원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게 여의치 않다면, 학생인권조례 등과 같은 학교 관련 인권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가령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 (2) 지방인권교육에 인권교육강사 지원 (4-1-2)

지방자치단체와 인권교육에 관해 협력하는 방안으로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교육강사를 지원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물론, 이는 이미 실행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인권교육강사를 요청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전문성과 감수성을 고루 갖춘 인권교육강사를 지원하면, 인권교육을 지역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2.

#### 지역시민사회와 인권교육 협력 강화

##### (1) 지역인권교육협의체 운영 (4-2-1)

지역시민사회와 인권교육에 관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우선 각 지역별로 인권교육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지역인권교육협의체를 운영하면, 이를 매개로 하여 국가인권위원회와 지역시민사회, 특히 지역인권교육단체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물

론, 지역인권교육협의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인권단체만 염두에 둘 필요는 없다. 여기에 각 지방자치단체도 포함시키면, 인권교육에 관해 좀 더 통합적인 소통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 (2) 시민사회-대학 인권강사 매칭 프로그램 개발 (4-2-2)

각 지역의 시민사회와 대학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가 기여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각 지역대학들이 인권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전문성과 인권감수성을 고루 갖춘 인권교육강사가 없어 이를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현장에서 다년간 인권교육강사로 활동했던 시민사회의 활동가를 각 대학들이 인권교육강사로 활용할 수 있다면, 인권교육강사 수급에 따른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문제는 각 대학들이 자신들에게 필요한 인권교육활동가를 적절하게 구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시민사회-대학 인권강사 매칭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하면, 각 대학들이 자신들에게 적합한 인권교육활동가를 손쉽게 구할 수 있을 것이다.

### 3.

## 지역대학과 인권교육 협력 강화

### (1) 인권교육연구중심대학 협의체 운영 (4-3-1)

지역대학과 인권교육에 관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인권교육연구중심대학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각 지역별로 인권교육연구중심대학을 지정하고 있으므로, 우선적으로는 이들 대학들과 인권교육에 관해 협력할 필요가 있다. 그간 이에 대한 시도가 몇 번 이루어지는 했지만,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인권교육연구중심대학 협의체를 운영하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 (2) 각 대학 인권교육센터와 네트워킹 구축 (4-3-2)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교육연구중심대학으로 선정된 대학 이외에도 인권교육에 관심이 있어 인권교육센터를 설치한 경우도 있다. 인권교육센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인권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대학이 있을 수 있다. 이들 대학들과도 지속적으로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3) 대학 인권교과목 개발 지원 (4-3-3)

각 대학들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대학들이 다양한 인권교과목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것도 제시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동안 인권교육에 관해 축적한 노하우를 각 대학들에게 지원해주면 자신들에게 적합한 인권교과목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때 인권교과목은 크게 두 가지로 유형화하여 개발할 수 있다. 교양교과목으로서 인권교과목과 전문교과목으로서 인권교과목이 그것이다.

## 4.

### 인권교육에 대한 국제적 협력 강화

#### (1) 동아시아 인권레짐 구축 추진 (4-4-1)

현재 동아시아는 독자적인 인권레짐을 갖추고 있지 않은 유일한 지역이다. 그러므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인권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쥐기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아시아 인권레짐을 구축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물론, 이 작업은 매우 방대한 작업이므로, 장기적으로 넓은 비전과 안목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

#### (2) 동아시아 국가인권위원회 협의회 창설(4-4-2)

동아시아 인권레짐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방대하고 장기적인 일일 것이므로, 우선적으로는 동아시아 국가인권위원회 협의회를 창설하는 것도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동아시아 국가인권위원회 협의회를 창설하여 운영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동아시아 인권레짐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각국의 국가인권위원회의 교류·협력하는 것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제4절 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 로드맵

### 1. 고려사항

아래에서는 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의 로드맵을 간략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 추진체계의 맨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실행과제들을 크게 단기과제(1-3년), 중기과제(4-6년), 장기과제(7-10년)로 구분하여 제시하려 한다.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실행과제를 단기, 중기, 장기과제로 구획할 수 있는가? 여기에서는 이에 대한 기준으로서 크게 네 가지 기준을 언급하고자 한다. 중요성, 전문성, 난이도, 예산소요정도가 그것이다.

1.

#### 중요성

첫째, 실행과제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과제의 로드맵을 정해야 한다. 만약 해당 과제가 중요한 것으로서 당장 추진해야 할 것이라면, 단기과제로서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중요하다고 해서 무조건 단기과제로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해당 과제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난이도가 높고, 또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좀 더 장기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바로 이 때문에 다른 기준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

#### 전문성

둘째, 과제의 전문성을 고려해야 한다. 만약, 해당 과제가 매우 전문적인 것이어서, 관련 전문가들이 장기간 고민해야 할 과제라면, 단기과제로서 당장 실행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이와 달리 전문성의 정도가 낮아 단기간에 쉽게 실행할 수 있는 것이라면, 단기과제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해당 실행과제의 전문성은 로드맵을 정할 때 고려할 수밖에 없다.

3.

#### 난이도

셋째, 해당 실행과제의 난이도 역시 고려해야 한다. 당장 실행하기에는 난이도가 높은 과제는

당연히 단기과제가 아닌 장기과제로 설정해야 한다. 이와 달리 난이도가 낮은 과제라면, 단기과제로서 신속하게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 ‘난이도’ 기준은 많은 경우 두 번째 기준으로 언급한 ‘전문성’ 기준과 겹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과제의 난이도는 해당 과제의 전문성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와만 결부되는 것은 아니다. 과제의 난이도는 그 과제를 둘러싼 사회적·정치적 상황이나 가치관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일정한 과제를 둘러싸고 사회적으로 팽팽하게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면, 비록 그 과제의 전문성이 다소 낮다 하더라도 이 과제의 난이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처럼 과제의 전문성이 낮은데도, 정치적 상황 때문에 과제를 실행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4.

**예산소요정도**

넷째, 해당 과제를 실행하는 데 얼마나 많은 예산을 소요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예산을 그다지 필요로 하지 않는 과제라면, 이는 당장 그리고 지속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 이와 달리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과제라면, 이를 실행하는 데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부분 장기과제로 설정해야 할지 모른다. 이처럼 해당 과제가 예산을 얼마나 소요하는가 여부는 과제의 로드맵을 짤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기준이다.

5.

**결론**

결국, 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의 로드맵은 위에서 언급한 중요성, 전문성, 난이도, 예산소요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이 때 어느 기준이 절대적으로 우선순위를 갖는다고 말할 수 없으므로, 각 기준을 어떻게 배합할 것인가 여부는 구체적으로 주어진 상황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아래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과제의 중요성, 전문성, 난이도, 예산소요정도를 고려하여 연구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단기계획, 중기계획 및 장기계획을 제시해 보도록 한다.

**II. 단기계획 (2012-2014)**

1.

**단기 성과목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할 단기계획은 무엇을 성과목표로 삼아야 하는가? 연구진은 이 기간에는 인권교육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여건이나 체계, 즉 인권교육 기본체계를 제도화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이 기간에는 인권교육이 일종의 권리로서 좀 더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틀 안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단기 성과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 인권교육 권리화를 위한 기본체계 제도화

### 2.

### 단기 실행과제

인권교육을 일종의 권리로서 안착시키는 데 필요한 기본체계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실행과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인권교육 홍보광고 추진 (1-1-1)
- 인권교육 뉴스레터 발간 (1-1-2)
- 전국 대학생 대상 모의 인권위원회 대회 개최 (1-1-3)
- 인권교육 논문공모전 실시 (1-1-4)
- 기존 인권교과목의 전문화 (2-1-1)
- 기존 인권교육교재 개정 (2-1-4)
- 인권교육강사 양성과정 체계화 (2-2-1)
- 인권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2-3-3)
- 각 영역별 인권교육프로그램 표준모델 개발 (2-4-1)
- 각 영역별 인권교육 평가지표 개발 (2-4-2)
- 정보인권에 대한 교육 강화 (2-5-1)
- 기업인권에 대한 교육 강화 (2-5-2)
- 사회복지인권에 대한 교육 강화 (2-5-3)
- “인권교육법” 제정 (3-1-1)
- “인권교육법시행령” 제정 (3-1-2)
- 인권교육에 대한 감독 및 평가체계 제도화 (3-2-1)

- 각 영역별 인권친화성 지표 개발(3-3-1)
- 예산확보방안 모색(3-4-1)
- 지방인권교육에 인권교육강사 지원(4-1-2)
- 지역인권교육협의체 운영(4-2-1)
- 인권교육연구중심대학 협의체 운영(4-3-1)

### Ⅲ. 중기계획 (2015-2017)

1.

#### 중기 성과목표

중기단계에서는 단기단계에서 마련한 인권교육의 기본 틀 위에서 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전문화·체계화하고, 더 나아가 각 지역과 소통하는 것을 성과목표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기간 동안 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 추진체계에서 핵심목표로 설정했던 ‘인권교육의 전문화’와 ‘인권교육의 지역화’를 대부분 실현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그러므로 중기계획의 성과목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 인권교육의 지속적 전문화 · 체계화 · 소통화

2.

#### 실행과제

이 기간 동안 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전문화·체계화·소통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실행과제들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전문인권교과목 개발(2-1-2)
- 통합형 인권교과목 개발(2-1-3)
- 각 분야별 인권교육교재 개발(2-1-5)
- 전문인권교육교재 개발(2-1-6)
- 통합형 인권교육교재 개발(2-1-7)

- 인권교육사례집 개발(2-1-8)
- 전문분야별 인권교육강사 양성(2-2-2)
- 인권친화적 교수법 개발(2-3-1)
- 다양한 교수방식의 인권교과목 개발(2-3-2)
- 인권교육 교수법 매거진 발간(2-3-4)
- 아동인권에 대한 교육강화(2-5-4)
- 교원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2-5-5)
- 고위행정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2-5-6)
- 시민사회 인권교육단체와 네트워크 방안 모색(3-2-2)
- 인권교육강사 협의회 운영 검토(3-2-3)
- 인권교육 펀딩체계 구축(3-4-2)
- 각종 인권조례제정 지원(4-1-1)
- 시민사회 - 대학 인권강사 매칭 프로그램 개발(4-2-2)
- 각 대학 인권교육센터와 네트워크 구축(4-3-2)
- 대학 인권교과목 개발 지원(4-3-3)

#### IV. 장기계획 (2018-2020)

1.

#### 장기 성과목표

마지막으로, 장기계획에서는 인권교육의 제도화·체계화·전문화 및 지역화를 넘어서, 인권교육이 우리 삶의 일부로서, 다시 말해 일종의 평생교육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실현해야 한다. 인권교육이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녹아들게 함으로써, 인권교육이 우리에게 친근하면서도 필수적인 - 마치 물과 같은 - 매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장기계획의 성과목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 인권교육의 평생교육화에 필요한 기본여건 실현

2.

#### 실행과제

인권교육을 평생교육으로 각인시키는 데 필요한 기본여건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실행과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인권도시사업 지원 (1-2-1)
- 인권교육도시사업 지원 (1-2-2)
- 인권체험마을 조성사업 지원 (1-2-3)
- 인권교육원 설립 (3-1-3)
- 인권전문대학원 설립 모색 (3-1-4)
- 각종 국가시험에 인권교과목 추가 모색 (3-2-4)
- 대학평가항목에 인권지표 포함 추진 (3-3-2)
- 동아시아 인권레짐 구축 추진 (4-4-1)
- 동아시아 국가인권위원회 협의회 창설 (4-4-2)

<표 27> 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단기·중기·장기계획) 성과목표 및 실행과제

구분	성과목표	실행과제
<p>단기계획 (2012-2014)</p>	<p>인권교육 권리화를 위한 기본체계 제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교육 홍보광고 추진 (1-1-1)</li> <li>· 인권교육 뉴스레터 발간 (1-1-2)</li> <li>· 전국 대학생 대상 모의 인권위원회 대회 개최 (1-1-3)</li> <li>· 인권교육 논문공모전 실시 (1-1-4)</li> <li>· 기존 인권교과목의 전문화 (2-1-1)</li> <li>· 기존 인권교육교재 개정 (2-1-4)</li> <li>· 인권교육강사 양성과정 체계화 (2-2-1)</li> <li>· 인권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2-3-3)</li> <li>· 각 영역별 인권교육프로그램 표준모델 개발 (2-4-1)</li> <li>· 각 영역별 인권교육 평가지표 개발 (2-4-2)</li> <li>· 정보인권에 대한 교육 강화 (2-5-1)</li> <li>· 기업인권에 대한 교육 강화 (2-5-2)</li> <li>· 사회복지인권에 대한 교육 강화 (2-5-3)</li> <li>· “인권교육법” 제정 (3-1-1)</li> <li>· “인권교육법시행령” 제정 (3-1-2)</li> <li>· 인권교육에 대한 감독 및 평가체계 제도화 (3-2-1)</li> <li>· 각 영역별 인권친화성 지표 개발 (3-3-1)</li> <li>· 예산확보방안 모색 (3-4-1)</li> <li>· 지방인권교육에 인권교육강사 지원 (4-1-2)</li> <li>· 지역인권교육협의체 운영 (4-2-1)</li> <li>· 인권교육연구중심대학 협의체 운영 (4-3-1)</li> </ul>

&lt;표 27&gt; 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단기·중기·장기계획) 성과목표 및 실행과제 (계속)

구 분	성 과 목 표	실 행 과 제
<p style="text-align: center;"><b>중기계획</b> (2015-2017)</p>	<p style="text-align: center;"><b>인권교육의 지속적 전 문화·체계화·소통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인권교과목 개발 (2-1-2)</li> <li>· 통합형 인권교과목 개발 (2-1-3)</li> <li>· 각 분야별 인권교육교재 개발 (2-1-5)</li> <li>· 전문인권교육교재 개발 (2-1-6)</li> <li>· 통합형 인권교육교재 개발 (2-1-7)</li> <li>· 인권교육사례집 개발 (2-1-8)</li> <li>· 전문분야별 인권교육강사 양성 (2-2-2)</li> <li>· 인권친화적 교수법 개발 (2-3-1)</li> <li>· 다양한 교수방식의 인권교과목 개발 (2-3-2)</li> <li>· 인권교육 교수법 매거진 발간 (2-3-4)</li> <li>· 아동인권에 대한 교육강화 (2-5-4)</li> <li>· 교원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2-5-5)</li> <li>· 고위행정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2-5-6)</li> <li>· 시민사회 인권교육단체와 네트워킹 방안 모색 (3-2-2)</li> <li>· 인권교육강사 협의회 운영 검토 (3-2-3)</li> <li>· 인권교육 펀딩체계 구축 (3-4-2)</li> <li>· 각종 인권조례제정 지원 (4-1-1)</li> <li>· 시민사회-대학 인권강사 매칭 프로그램 개발 (4-2-2)</li> <li>· 각 대학 인권교육센터와 네트워킹 구축 (4-3-2)</li> <li>· 대학 인권교과목 개발 지원 (4-3-3)</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장기계획</b> (2018-2020)</p>	<p style="text-align: center;"><b>인권교육의 평생교육 화에 필요한 기본여건 실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권도시사업 지원 (1-2-1)</li> <li>· 인권교육도시사업 지원 (1-2-2)</li> <li>· 인권체험마을 조성사업 지원 (1-2-3)</li> <li>· 인권교육원 설립 (3-1-3)</li> <li>· 인권전문대학원 설립 모색 (3-1-4)</li> <li>· 각종 국가시험에 인권교과목 추가 모색 (3-2-4)</li> <li>· 대학평가항목에 인권지표 포함 추진 (3-3-2)</li> <li>· 동아시아 인권레짐 구축 추진 (4-4-1)</li> <li>· 동아시아 국가인권위원회 협의회 창설 (4-4-2)</li> </ul>

## 제5절 각 영역별 중점추진과제

마지막으로 이 제5절에서는 인권교육의 각 영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가 무엇인지 개관해 보도록 한다. 여기에서 연구진은 인권교육의 영역을 공공영역, 학교영역, 시민사회영역으로 구획하여 중점추진과제를 제시해 보았다. 이 때 중점추진과제는 이 연구보고서의 제2장 및 제3장에서 수행한 인권교육현황 분석결과에서 획득한 각 영역의 구조적 특징과 현황 및 요청사항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였다.

### 1. 공공영역

1.

#### 성과목표

우선 공공영역의 성과목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자 한다.

#### 공공영역 인권교육의 실질화

국내 인권교육에 대한 현황분석이 시사하는 것처럼, 그 동안 공공영역에서 이루어진 인권교육은 양적으로 확장되는 성과를 거두기는 했지만, 인권교육이 외형에만 신경 쓰는 형식화의 문제점을 노정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공공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인권교육이 성공할 수 있으려면, 이를 실질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연구진은 공공영역 인권교육의 성과목표로서 “공공영역 인권교육의 실질화”를 제시하고자 한다.

2.

#### 실행과제

공공영역 인권교육을 실질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실행과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기존 인권교과목의 전문화(2-1-1)
- 전문인권교과목 개발(2-1-2)
- 통합형 인권교과목 개발(2-1-3)
- 기존 인권교육교재 개정(2-1-4)
- 각 분야별 인권교육교재 개발(2-1-5)
- 전문인권교육교재 개발(2-1-6)
- 통합형 인권교육교재 개발(2-1-7)
- 인권교육사례집 개발(2-1-8)
- 인권교육강사 양성과정 체계화(2-2-1)
- 전문분야별 인권교육강사 양성(2-2-2)
- 인권친화적 교수법 개발(2-3-1)
- 다양한 교수방식의 인권교과목 개발(2-3-2)
- 인권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2-3-3)
- 인권교육 교수법 매거진 발간(2-3-4)
- 정보인권에 대한 교육 강화(2-5-1)
- 고위행정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2-5-6)
- “인권교육법” 제정(3-1-1)
- “인권교육법시행령” 제정(3-1-2)
- 인권교육원 설립(3-1-3)
- 인권교육에 대한 감독 및 평가체계 제도화(3-2-1)
- 각종 국가시험에 인권교과목 추가 모색(3-2-4)
- 예산확보방안 모색(3-4-1)
- 인권교육펀딩체계 구축(3-4-2)
- 각종 인권조례제정 지원(4-1-1)

## II. 학교영역

1.

**성과목표**

나아가 학교영역의 인권교육 성과목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자 한다.

## 인권친화적 인권교육환경 실현

학교영역 인권교육에 대한 현황분석을 보면, 학교영역에서는 주로 인권과 거리가 먼 교육환경이 인권교육의 장애요인으로 많이 언급되었다. 인권교육환경 자체가 비인권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학교인권교육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연구진은 “인권친화적 인권교육환경 실현”을 학교영역 인권교육의 성과목표로 설정하고자 한다.

### 2.

### 실행과제

인권친화적 인권교육환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실행과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전국 대학생 대상 모의 인권위원회 대회 개최 (1-1-3)
- 각 분야별 인권교육교재 개발 (2-1-5)
- 인권친화적 교수법 개발 (2-3-1)
- 다양한 교수방식의 인권교과목 개발 (2-3-2)
- 인권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2-3-3)
- 인권교육 교수법 매거진 발간 (2-3-4)
- 교원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2-5-5)
- 인권전문대학원 설립 모색 (3-1-4)
- 각 영역별 인권친화성 지표 개발 (3-3-1)
- 대학평가항목에 인권지표 포함 추진 (3-3-2)
- 인권교육연구중심대학 협의체 운영 (4-3-1)
- 각 대학 인권교육센터와 네트워크 구축 (4-3-2)
- 대학 인권교과목 개발 지원 (4-3-3)

### Ⅲ. 시민사회영역

1.

#### 성과목표

마지막으로 시민사회영역 인권교육의 성과목표로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 제도화된 인권교육영역과 네트워킹 강화

인권교육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가 시사하는 것처럼, 시민사회영역의 인권교육 전문가들은 국가인권위원회를 필두로 하는 제도화된 인권교육영역과 시민사회영역과 같이 제도화되지 않은 인권교육 전문가 및 단체들이 서로 협력적으로 소통하고 네트워킹 할 것을 강하게 주문하였다.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고자 연구진은 “제도화된 인권교육영역과 네트워킹 강화”를 시민사회영역 인권교육의 성과목표로 제안하고자 한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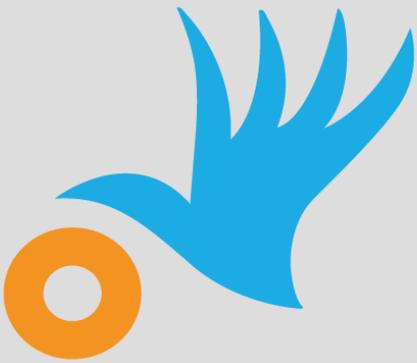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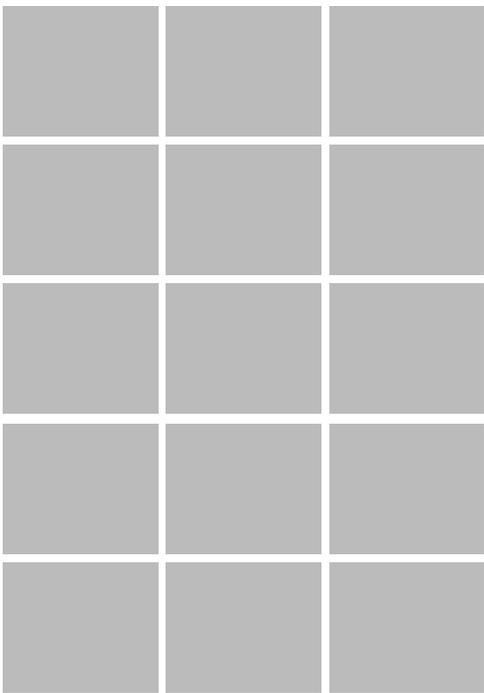
#### 실행과제

시민사회 인권교육과 제도화된 인권교육 사이의 네트워킹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실행과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기업인권에 대한 교육 강화 (2-5-2)
- 사회복지인권에 대한 교육 강화 (2-5-3)
- 아동인권에 대한 교육 강화 (2-5-4)
- 시민사회 인권교육단체와 네트워킹 방안 모색 (3-2-2)
- 인권교육강사 협의회 운영 검토 (3-2-3)
- 지방인권교육에 인권교육강사 지원 (4-1-2)
- 지역인권교육협의체 운영 (4-2-1)
- 시민사회 - 대학 인권강사 매칭 프로그램 개발 (4-2-2)

<표 28> 각 영역별 (공공영역·학교영역·시민사회영역) 중점추진과제

구분	성과목표	실행과제
공공영역	공공영역 인권교육의 실질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인권교과목의 전문화 (2-1-1)</li> <li>· 전문인권교과목 개발 (2-1-2)</li> <li>· 통합형 인권교과목 개발 (2-1-3)</li> <li>· 기존 인권교육교재 개정 (2-1-4)</li> <li>· 각 분야별 인권교육교재 개발 (2-1-5)</li> <li>· 전문인권교육교재 개발 (2-1-6)</li> <li>· 통합형 인권교육교재 개발 (2-1-7)</li> <li>· 인권교육사례집 개발 (2-1-8)</li> <li>· 인권교육강사 양성과정 체계화 (2-2-1)</li> <li>· 전문분야별 인권교육강사 양성 (2-2-2)</li> <li>· 인권친화적 교수법 개발 (2-3-1)</li> <li>· 다양한 교수방식의 인권교과목 개발 (2-3-2)</li> <li>· 인권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2-3-3)</li> <li>· 인권교육 교수법 매거진 발간 (2-3-4)</li> <li>· 정보인권에 대한 교육 강화 (2-5-1)</li> <li>· 고위행정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2-5-6)</li> <li>· “인권교육법” 제정 (3-1-1)</li> <li>· “인권교육법시행령” 제정 (3-1-2)</li> <li>· 인권교육원 설립 (3-1-3)</li> <li>· 인권교육에 대한 감독 및 평가체계 제도화 (3-2-1)</li> <li>· 각종 국가시험에 인권교과목 추가 모색 (3-2-4)</li> <li>· 예산확보방안 모색 (3-4-1)</li> <li>· 인권교육편당체계 구축 (3-4-2)</li> <li>· 각종 인권조례제정 지원 (4-1-1)</li> </ul>
학교영역	인권친화적 인권교육환경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 대학생 대상 모의 인권위원회 대회 개최 (1-1-3)</li> <li>· 각 분야별 인권교육교재 개발 (2-1-5)</li> <li>· 인권친화적 교수법 개발 (2-3-1)</li> <li>· 다양한 교수방식의 인권교과목 개발 (2-3-2)</li> <li>· 인권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2-3-3)</li> <li>· 인권교육 교수법 매거진 발간 (2-3-4)</li> <li>· 교원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2-5-5)</li> <li>· 인권전문대학원 설립 모색 (3-1-4)</li> <li>· 각 영역별 인권친화성 지표 개발 (3-3-1)</li> <li>· 대학평가항목에 인권지표 포함 추진 (3-3-2)</li> <li>· 인권교육연구중심대학 협의체 운영 (4-3-1)</li> <li>· 각 대학 인권교육센터와 네트워킹 구축 (4-3-2)</li> <li>· 대학 인권교과목 개발 지원 (4-3-3)</li> </ul>
시민사회 영역	제도화된 인권교육영역과 네트워킹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인권에 대한 교육 강화 (2-5-2)</li> <li>· 사회복지인권에 대한 교육 강화 (2-5-3)</li> <li>· 아동인권에 대한 교육 강화 (2-5-4)</li> <li>· 시민사회 인권교육단체와 네트워킹 방안 모색 (3-2-2)</li> <li>· 인권교육강사 협의회 운영 검토 (3-2-3)</li> <li>· 지방인권교육에 인권교육강사 지원 (4-1-2)</li> <li>· 지역인권교육협의체 운영 (4-2-1)</li> <li>· 시민사회-대학 인권강사 매칭 프로그램 개발 (4-2-2)</li> </ul>



## 제 5 장

### 결 론



## 제5장 결론

연구진은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국내·외 인권교육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앞으로 10년 동안 적용해야 할 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 추진체계의 구체적인 모습을 제시해 보았다. 그러면 결론으로서 지금까지 조사·분석하고 제시한 내용들을 요약하도록 한다.

먼저, 제1장에서는 이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그리고 연구방법 및 순서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 제2장에서는 국내·외 인권교육 현황을 조사·분석하였다. 우선 제1절에서는 인권교육의 개념과 원리 등에 관해 그 동안 축적된 연구성과들을 분석·정리함으로써,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인권교육이란 무엇인지, 인권교육의 원칙과 방법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등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제2장 제2절에서는 그 동안 각 분야별로 이루어진 국내 인권교육의 성과 및 한계 등을 분석·정리하였다. 이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국내의 인권교육은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공공부문 인권교육, 시민사회부문 인권교육, 학교부문 인권교육 등이다.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면서 인권교육에 대한 총체적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지난 10년간 사업의 흐름은 세 시기로 분류할 수 있다. 인권교육 도입기(2002-2005), 인권교육 성장기(2006-2008), 인권교육 확립기(2009-현재)이다.

공무원 인권교육 현황의 전제로서 인권교육에 대해 가장 기본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있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중 공무원 인권교육을 개관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무원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의식이 제고되면서, 공무원 인권교육 역시 그 이전보다 양적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공무원 인권교육의 형식화, 미흡한 인권교육방법 등이 한계로 보인다. 군이나 경찰의 경우에도 인권교육을 실시해오고 있지만, 인권교육 시간이 너무 짧고 인권교육 교재가 미비하며, 인권교육 교관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교육이 매우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학교 인권교육은 사실상 독립된 과목이나 교육과정에서의 특별한 내용적 강조 없이, 단지 관련 교과에서 미미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개별적으로 인권관련 교육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교원 신규임용 및 승진자들을 위한 자격연수과정의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교육시간의 증가는 바람직하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조례가 제정되면서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흐름을 찾아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주민의 인권보장을 지향하고,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규정하는 지역주민의 인권의식을 향상시키는 변화가 유발되고 있다.

대학에서의 인권과목은 법학 관련 과목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법과대학에서 인문 사회과학대학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학에서 인권과목수의 증가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대학에서 다양한 인권관련 교과목 개발이 요청된다.

다음으로 제2장 제3절에서는 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권교육 현황을 조사·분석해 보았다. 이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유엔은 세계인권선언 이후 국제적으로 유엔인권교육의 기준을 국제적 문건을 통해 제시해왔다. 인권교육은 이제 세계적 차원의 보편적 흐름이며, 이에 따른 인권교육의 제도화가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국내에서의 인권보호의 문제는 동시에 국제적 차원을 갖게 되며, 동시에 국제적 인권기준은 국내적으로 미비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인권보호의 현실을 확인시켜 줌으로써 국내법적 인권보호 신장에 기여할 수 있다.

인권교육과 관련된 국내정책결정자나 활동가들은 국내적 정책 입안과 실천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동시에 국제적 기준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권교육을 국가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치환시켜 실질화, 구체화시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한국사회가 국제적 수준의 인권보호가 실질적으로 구현되고 있는 사회로 완전히 확립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인권교육’을 통하여 인권을 보다 실질화하고 확인하는 사회가 되어야한다는 점에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유엔인권교육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한국을 국제적 수준의 인권교육 시행 국가로 확고히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제적 인권과 인권교육의 확고한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이 시민인권교육, 인권교육의 평생화로 실천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국제적 흐름에 적극적으로 협력, 대처해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은 유엔회원국으로서 주요한 국제적 조약을 체결하고, 이들 조약이 제시하는 규정들을 국내적으로 이행하려는 노력을 해왔다. 정부는 유엔이 제시한 인권에 대한 국내적 증진을 위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시행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인권증진 보호와 국제적 인권기준을 실천행동으로 보여 왔다. 한국은 유엔이 제시한 국제적 인권교육의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고,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이 끝나는 2015년에 유엔의 프로그램 이행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국내적으로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이 제시한 인권교육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각국의 인권교육의 현황은 개개 국가의 문화적 특수성, 역사적 배경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그 장단점을 논하기는 힘들지만, 전반적인 차원에서 볼 때 인권교육의 다양화, 전문화, 집중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각국의 인권교육 현황에 대한 사례 검토는 많은 국가들이 다양한 대상과 방법, 내용을 포함하는 실질적인 인권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인권교육의 대상 선정 및 교육, 인권교육 전문가 양성을 주도

하는 조직 중심의 인권교육이 체계적으로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의 경우 인권교육의 연구와 교육 등이 주로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민간단체에서 보다 활발하고 체계적인 인권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인권교육 교재 발간, 전문가 양성 등의 문제가 민간단체 차원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짐으로써 인권교육의 전문화가 보다 심화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제3장에서는 인권교육에 대한 전문가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정리하였다. 이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우선 인권교육의 정부 내 주무부처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를 96.1%의 인권전문가들이 선택하였으며, 인권교육법을 제정할 때 중점을 두어야 하는 사항으로 순위를 통합한 결과 인권교육 지원예산의 확보와 공공기관 종사자의 인권교육의 의무화가 각각 31.0%, 29.9%로 높게 나타났다. 순위별로는 1순위로 공공기관 종사자의 인권교육 의무화가 43.1%로 가장 많았고, 인권교육 지원예산의 확보는 2순위에서 4순위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문가들의 86.3%가 인권교육원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으며, 인권교육원 설립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과반수이상의 전문가가 정책관리자의 무관심을 꼽았다.

지난 10년간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 활동에 대해서 잘했다는 긍정적 평가는 33.4%, 부족하다는 부정적 평가는 35.3%로 전문가들의 평가가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평가는 활동영역이 국가인권위원회인 전문가는 잘했다가 53.8%로, 대학교나 시민사회에서 활동하는 전문가에 비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지난 10년간 인권교육활동에 대해서는 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인권교육이 권리임을 인식하게 하였으며, 학교교육 및 교육과정에서의 제도화 및 다양한 인권자료 개발에 노력한 부분 등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그러나 인권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점을 두어야 할 점 역시, 인권교육을 할 강사 양성 및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보급을 꼽아 아직은 더 많은 부분에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학교에서의 인권교육 의무화와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직업이나 정책시행자 등의 공공기관 관료에 대한 인권교육의 의무화의 의견이 많았다.

각 영역별로 인권교육 활동의 평가는 학교영역은 1.89점, 공공영역은 1.77점, 시민사회 영역의 인권활동 평가는 1.96점으로 모든 영역에서 인권교육활동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하였다. 대상별로 살펴보면 학교영역에서는 초·중등 학생과 초등학교 교원의 평가 점수가 각각 2.40점과 2.37점으로 평가되었으며, 대학생, 유치원 및 취학 전 아동, 유치원 및 취학 전 기관 종사자가 각각 1.92점, 1.81점, 1.76점이고, 대학교수, 전문직업 훈련원생, 기타가 각각 1.55점, 1.57점, 1.59점으로 평가되어 학교영역에서는 초·중등 학생과 초등학교 교원의 인권교육이 다른 대상에 비해 다소 높게 평가되었다. 공공기관 영역에서는 보호시설관련 공무원이 2.74점으로 다른 대상에 비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경찰공무원이 2.30점, 교정직 공무원이 2.17점, 행정공무원이 2.09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보호직, 출입국 공무원이 1.85점, 군부대 종사자 1.81점, 사법부 1.74점, 입법관계자와 검사 및 검찰공무원이 각각 1.56점과 1.51점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가정보원 1.19점,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1.19점, 국회의원이 1.3점으로 고위 공무원들의 인권교육활동에 대한 평가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에서는 시민을 대면하는 공무원들에 비해 정책결정을 하는 고위 공무원들 대상의 인권교육활동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시민사회 영역에서는 사회적 약자집단과 사회단체 지도자가 각각 2.42점, 2.35점으로 다른 대상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료전문인과 기업인이 각각 1.60과 1.31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언론인은 1.98점으로 인권교육활동이 부족하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영역별, 각 대상들에 대한 인권활동 평가에 있어서도 대체적으로 시민사회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에 비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영역별로 인권교육의 가장 큰 장애요인에 대해서는 학교영역과 공공기관 영역에서는 정책관리자의 무관심이 각각 29.6%와 3.5%로 가장 높았으며, 시민사회 영역에서는 체계적 교육기관 부재가 21.1%, 예산부족 17.7%, 정책관리자 무관심 15.6%, 사회적 책임의식 및 성숙한 시민의식 부족 14.3%, 인권교육에 대한 전반적 편견 13.6%, 인권강사 및 연수프로그램 부족이 12.9%로 전문가들에 따라 매우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학교영역 인권교육에서 우선되어야 할 대상으로 교원 53.5%, 학생 26.8%(38명)이었으며, 공공기관영역에서는 행정부에 소속된 대상이 67.9%로서 입법 관계자 17.6%, 사법부 5.7%에 비해 매우 높았다. 그리고 시민사회 영역에서는 전문집단이 41.5%로 높았으며, 사회적 영향력 집단과 기업인이 각각 16.2%와 18.3%로 나타났다.

각 영역별로 인권교육이 잘 되기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모든 영역에서 인권교육의 의무화 및 제도화에 대한 의견이 많았으며, 예산지원 또는 인권강사 및 인력 양성과 다양한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학교영역에서는 학급 환경개선 부분과 학생 수준별 다양한 인권자료에 대한 의견이 있었으며, 공공기관에서는 인권교육의 의무화 및 모니터링 체계화와 교육대상의 다양화 및 인권 준수 사항 의무화 및 처벌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시민사회에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에 대한 인식 및 의식 고취와 대중화를 위한 홍보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현재의 인권교육프로그램과 강사의 전문성 등 인권교육의 인적·물적 기반에 대한 평가로 인권교육프로그램은 2.88점, 인권교육자료는 3.23점, 인권교육 강사의 전문성은 2.81점으로 인권교육자료에 대한 평가가 3가지 항목 중에서는 가장 높았으며, 특히 인권교육자료에서 활동영역이 대학교와 국가인권위원회인 경우의 평가점수는 각각 3.44점, 3.69점으로 잘했다는 측면에 대한 평가가 있는 반면, 시민사회의 평가점수는 2.60점으로 차이를 보였다. 강사의 전문성에 대한 평가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평가점수는 3.31점으로, 대학교와 시민사회의 평가점수인 2.56점, 2.53점에 비해 높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되어야 할 인권교육의 자료나 프로그램으로 자료의 전문화 및 교육대상별 세분화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또한, 자료의 현실성과 실제 사례위주의 자료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대중적

이고 쉬운 교재와 표준화된 교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강사 양성에 있어서는 강사 양성기관 설립이, 양성교육에 필요한 매뉴얼 공통 교재 개발, 강사들의 연수 및 보수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인권교육 강사의 지식과 자료 공유와 단계별 양성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향후 10년간 인권교육계획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비정치적이고 사회 전반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권에 대한 교육, 인권친화적인 방식으로 교육, 인권 실천 및 증진 활동으로의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인권교육의 의무화와 공공기관, 기업, 학교 영역의 최고 관리자들의 교육, 어릴 때부터 인권교육 실시 등으로 인권교육의 확산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또한, 향후 10년간 인권교육계획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한 방안으로 역시 인권교육의 체계화 및 제도화 강사들의 역량강화 및 다양한 교육자료 개발 단기 및 중·장기적 계획 수립 등 국가차원의 제도화 수준을 높여야 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및 인권관련 기관 및 연구소 설립과 각계의 인권교육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마지막으로, 제4장에서는 이 연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 추진체계를 다루었다. 연구진은 우선 비전으로서 ‘인권교육 실질화를 통한 공생사회 실현’을 제안하였다.

이어서 인권교육의 기본원칙으로서 세 가지 원칙을 내놓았는데, ‘권리로서 인권교육’, ‘통합적 접근대상으로서 인권교육’, ‘역사적·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인권교육’이 그것이다.

다음으로 인권교육의 4대 핵심목표를 제시하였다. ‘인권교육의 권리화’, ‘인권교육의 전문화’, ‘인권교육의 제도화’, ‘인권교육의 지역화’가 그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인권교육의 4대 핵심목표를 구체화하는 성과목표를 각 핵심목표 아래 설정하였다. 먼저, 인권교육의 권리화를 실현하기 위한 성과목표로는 ‘인권교육에 대한 홍보강화’, ‘일상생활 친화적인 인권교육여건 마련’을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인권교육의 전문화를 실현하기 위한 성과목표로는 ‘인권교육내용의 전문화’, ‘인권교육강사의 전문화’, ‘인권교수방식의 전문화’, ‘인권교육실행체계의 전문화’, ‘특정분야 인권교육 강화’를 설정하였다. 나아가 인권교육의 제도화를 실현하기 위한 성과목표로는 ‘인권교육실행에 필요한 제도적 기초 확보’, ‘인권교육의 실효성을 위한 제도적 여건 조성’, ‘인권친화적인 교육환경 조성’, ‘인권교육에 필요한 물적 기반 확보’를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권교육의 지역화를 실현하기 위한 성과목표로는 ‘지방자치단체와 인권교육 협력 강화’, ‘지역시민사회와 인권교육 협력 강화’, ‘지역대학과 인권교육 협력 강화’, ‘인권교육에 대한 국제적 협력 강화’를 설정하였다.

인권교육 행동계획 추진체계의 마지막으로 이러한 성과목표를 실행하기 위한 50개의 구체적인 실행과제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인권교육 행동계획 추진체계에 토대를 두어, 인권교육 행동계획 로드맵을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 설정하였고, 공공영역, 학교영역, 시민사회 영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각 영역별 인권교육 중점추진과제도 제시해 보았다.



## 참고문헌

### 1. 국내문헌

- 강순원, 『평화, 인권, 교육』, 한울, 2000.
- 구정화·송현정·설규주, 『교사를 위한 학교인권교육의 이해』, 국가인권위원회, 2004.
- 김창록, “한국 로스쿨, 제3차 ‘수(數) 과동’: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을 둘러싼 논란”, 『법과 사회』 제39호, 2010.
- 김철홍, “인권교육 제도화의 현황과 과제”, 『경상대학교 발표자료』, 2011.
- 나달숙, “인권교육의 국내·외적 현황과 지향 과제”, 『교육법학연구』 23(1), 2011.
- 나달숙,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에 비추어 본 공무원 인권교육의 현황과 과제”, 『제2회 인권교육정책 토론회: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공무원 교육』, 한국인권재단, 2011.
- 나영희, “인권교육법제 및 정책현황과 과제 - NAP와 인권교육지원법을 중심으로”, 『인권이론과 실천』, 영남대학교 인권교육연구센터 제9호, 2011.
- 류지현·허창영, “대학생의 인권인식에 대한 요인분석 및 인권태도의 인식수준”, 『민주주의와 인권』 제8권 제1호, 2008.
- 문용린 외, 『유·초·중·고 인권교육과정 개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03.
- 박경서, 인권교육의 국제적 동향과 한국적 과제, 인권교육의 국내·외적 동향과 실천 방안, 2011 연차(통산 10차) 학술 발표회, 국가인권위원회·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제13차 인권교육포럼 자료집, 2011.
- 배경내,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 실천사례: 인권교육 실천과 원칙”, 『2차 집담회 발제문1』, 2005.
- 배경내, “인권교육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연구 - 인권운동 영역에서의 좌표 모색을 중심으로 -”, 『인권법평론』 제4호, 2009.
- 배경내, “학생 인권침해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양천수, 공무원 인권교육의 현황과 과제. 인권교육의 국내·외적 동향과 실천 방안, 2011 연차(통산 10차) 학술 발표회, 국가인권위원회·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제13차 인권교육포럼 자료집, 2011.
- 양천수, “인권법의 통합과학적 성격”, 『인권이론과 실천』 제2호, 영남대학교 인권교육연구센터, 2007.
- 오완호, “대학 인권교육의 실효에 관한 접근: 영남대 ‘인권과 법’ 강의를 중심으로”, 『인권이

## 244 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안 관련 연구

- 론과 실천], 영남대학교 인권교육연구센터 제7호, 2010.
- 이종태 외 5인, 『인권교육 개념 및 방향 정립 모색 연구』, 2005년도 인권교육개념모색 연구 용역보고서, 사단법인 한국교육연구소, 2005.
  - 이해주 외, 『평생학습에서의 인권교육 접목방안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08.
  - 정원오 외, 『국내·외 공공분야 인권교육 실패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2006.
  - 정해숙 외 3인, 『초·중·고등학교 인권교육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11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2011.
  - 조태원, “기본권분류체계로 본 사회과교육과정 및 교과서상의 인권교육 관련내용 분석 - 제6차, 제7차 교육과정상의 초등학교 5·6학년을 중심으로 -”, 『사회과교육』 49(3), 2010.
  - 조효제, 『인권의 문법』, 후마니타스, 2007.
  - 조혜정, 『학교를 거부하는 아이, 아이를 거부하는 사회』, 또 하나의 문화, 1997.
  - 최현호, “인권교육 개선을 위한 도덕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연구”, 『한국교육』 32(3), 2005.
  - 채형복, “로스쿨에서의 인권교육 현황과 과제-유엔 세계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관점에서-”, 『제1회 인권교육 정책토론회: UN 인권교육프로그램과 한국의 대학(원)에서의 인권교육 자료집』, 한국인권재단, 2011.
  - 하미승 외, 『인권교육원 설립방안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2006.
  - 한홍구 외, 『인권교육발전 5개년 기본계획』,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 2003.
  - 허종렬, “인권교육지원법 제정의 필요성과 추진과정 검토”, 『법과인권교육연구』 제4권 제2호, 2011.
  - 홍관표, 인권교육법제 및 정책현황과 과제 토론문, 「제2회 인권교육정책 토론회: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공무원 교육」, 한국인권재단, 2011.
  - 홍성수, “대학 인권교육의 현황과 과제”,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인권교육연구센터 인권학술 세미나, 2011.
  - 홍성수, “한국 대학에서의 인권교육 현황과 과제”, 「제1회 인권교육 정책토론회: UN 인권교육프로그램과 한국의 대학(원)에서의 인권교육 자료집」, 한국인권재단, 2011.
  - 마이클 셉텔, 이창신(옮김), 『정의란 무엇인가』, 김영사, 2010.
  - 프리먼, 『인권: 이론과 실천』, 아르케, 2005.

## II. 외국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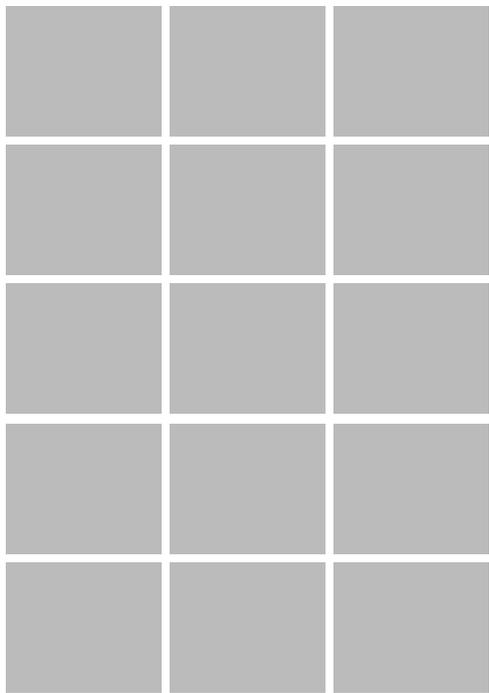
- A. Magendzo, Pedagogy of Human Rights Education: Latin American Perspective, *International Education*, Vol. 16 No. 2, 2005.
- A. Magendzo, Tensions and Dilemmas about Education in Human Rights in Democracy, *Journal of Moral Education*, Vol. 23 No. 3, 1994.
- A. Portes, "Social capital: Its origins and applications in modern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24, 1998.
- Christopher Menke, *Reflections of Equality*, Forum for Modern Language Studies, Oxford University Press, Vol. 43 No. 4, 2007.
- C. Power, The Just Community Approach to Moral Education, *Journal of Moral Education*, Vol. 17 No. 3, 1988.
- Felisa Tibbitts, Regional European Meeting on the World Programme for Human Rights Education, 5-6 November 2007-Conference Report, Strasbourg: Council of Europe.
- F. Tibbitts, Human Rights Education in Schools in the Post-Communist Context, *European Journal of Education*, Vol. 29 No. 4, 1994.
- Ian Lister, The Challenge of Human Rights for Education, in: H. Starkey (Ed.), *The Challenge of Human Rights Education*, London, 1991.
- J. Kozol, *Savage Inequalities: Children in America's School*, New York: Harper Perennial, 1991.
- J. Torney-Purta/B. Wilkenfeld/C. Barber, How Adolescents in 27 Countries Understand, Support, and Practice Human Rights, *Journal of social issues* Vol.64 No.4, 2008.
- M. M. Brabeck & L. Rogers, Human Rights as a Moral Issue: Lessons for Moral Educators from Human Rights Work, *Journal of Moral Education*, Vol. 29 No. 2, 2000.
- Nancy Flowers, *The Human Rights Education Handbook: Effective Practices for Learning, Action and Change*, The Human Rights Resource Center, University of Minnesota & Stanley Foundation, 2000.
- Norma Tarrow, 'Human Rights Education: Alternative Conceptions', in: James Lynch/Celia Modgil/Susan Modgil (Eds.), *Human Rights, Education and Global Responsibility*, The Falmer Pres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ddendum: Guidelines for national plans of action for human rights education, 1997, UN Doc. A/52/469/Add. 1, Section III.

- General Assembly Resolution, World Programme for Human Rights Education, UN Doc. A/Res/59/113, 2004.
-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12/4 World Programme on Human Rights Education, UN Doc. A/HRC/Res/12/4, October 2009, para. 3.
- Human Rights Council resolution A/HRC/RES/16/1 (8 April 2011).
- OHCHR & UNESCO. 2006. Booklet on Plan of Action of the UN World Programme for Human Rights Education-First Phase (2005-2007).
-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General Comment No. 13: The Right to Education, December 1999 UN Doc. E/C.12/1999/10 at para. 6.
-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s 49/184, 50/177, 51/104;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solution 1995/47, decision 1997/11.
- UN General Assembly, Revised Draft Plan of Action for the First Phase (2005-2007) of the World Programme for Human Rights, UN Doc. A/59/525/Rev. 1 (2005), Appendix.
- UN, Revised Draft Plan of Action for the First Phase (2005-2007) of the World Programme for Human Rights Education, A/59/Rev.1 (2005), para. 3.
- UN Revised Draft Plan of Action for the First Phase (2005-2007) of the World Programme for Human Rights Education, UN Doc. A/59/525/Rev.1, Appendix (2005).
- UNESCO/UNICEF A Human Rights-Based Approach to Education for All, 2007.
- United Nations Decade for Human Rights Education, UN Doc.A/RES/49/184, 1995.
- United Nations, Draft Plan of Action for the Second Phase (2010-2014) of the World Programme for Human Rights Education, UN Doc. A/HRC/15/28, 27 July 2010, para. 11
- United Nations Draft Plan of Action for the Second Phase (2010-2014) of the World Programme for Human Rights Education, UN Doc. A/HRC/15/28, 27 July 2010, para. 15.
- 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UN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UN Doc.A/Conf.157/23, 1993.

### Ⅲ. 기타문헌

- 경상대학교 통일평화인권센터, 『대학 인권지표 개발 연구』, 2009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2009.
- 교육과학기술부,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1): 도덕, 국어』, 2008.
- 국가인권위원회, 『교사를 위한 학교 인권교육의 이해』, 2004.
- 국가인권위원회,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2010-2014)』, 2010.
- 국가인권정책협의회, 『2009년도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이행사항』, 2010.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2007.
- 국가인권위원회, 『검찰공무원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인권전문 인력양성 연수교재, 2005.
- 국가인권위원회, 『군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인권전문 인력양성 연수교재, 2005.
- 국가인권위원회, 『교정공무원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인권전문 인력양성 연수교재, 2005.
- Stephen P. Marks 외, 국가인권위원회(역), 『인권도시: 사회발전을 위한 시민의 약속』, 국가인권위원회, 2011.
- 대한민국 정부, 「2007~2011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2011.
- 성공회대학교 인권평화센터, 『인권교육발전 5개년 기본계획 관련 연구』,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2003.
- 어린이, 청소년 권리 연대회의, 『아이들의 인권, 세계의 약속』, 내일을 여는 책, 1997.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편, 『인권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오름, 2000.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편, 『인권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오름, 1997.
-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 『인권교육 길잡이』, 사람생각, 1999.
- 한국인권재단 (편), 「제2회 인권교육정책 토론회: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공무원 교육」.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아이들에게도 인권이 있다』, 참여연대, 1997.
-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인권센터, 『대학의 정보기술 활용에 따른 학생인권 침해에 관한 연구』, 2009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2009.
- 세계인권선언 前文.
-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前文.
-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前文.
- 고문 및 기타 잔학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금지하는 협약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前文.

- 세계인권선언 제26조.
-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7조.
- 고문금지협약 제0조.
- 여성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제10조.
-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제29조.
-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제33조.



부  
속





## 『인권교육발전 10개년 기본계획』 연구를 위한 질문지 (전문가용)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인권교육발전 10개년 기본계획』 관련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영남대학교 인권교육연구센터’ 입니다. 본 조사지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인권교육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여, 보다 종합적인 인권교육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설문지 내용은 본 연구의 목적 이외에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응답은 연구를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연구원 : 오완호 ☎ : (053) 428 - 2114  
한국인권행동 사무총장 H.P : 011 - 512 - 9645  
e-mail : oribal1125@yahoo.co.kr

2011년 11월

영남대학교 인권교육연구센터장 양천수

## 1. 인권교육 수행주체 (국가단위)

※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0년간 인권교육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해 왔습니다.  
 인권증진을 위한 3개년 계획 [2012-2014년]의 성과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IV-1 인권교육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 ▶ 인권교육법 및 인권조례 제정 촉진 등을 통한 인권교육 실행 법적기반 구축
- ▶ 인권교육원 설립을 통한 인권교육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 1. 인권교육의 정부 내 주무부처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교육과학기술부    ② 국가인권위원회    ③ 법무부  
 ④ 기타 ( \_\_\_\_\_ )

### 2. (가칭) 인권교육법을 제정한다면, 이 법안이 중점을 두어야 하는 사항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주십시오.

- ① 인권교육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    )    ② 인권교육원 설립 (    )  
 ③ 공공기관 종사자의 인권교육 의무화 (    )    ④ 인권교육 지원예산의 확보 (    )

### 3. (가칭) 인권교육원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③ 생각해본 적 없다.

#### 3-1. (가칭) 인권교육원 설립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정책관리자의 무관심    ② 예산의 부족  
 ③ 인권교육 필요성 의식 저조    ④ 기타

### 4. 지난 10년간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 활동을 평가하신다면?

- ① 매우 잘했다.    ② 잘했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부족하다.    ⑤ 매우 부족하다.

#### 4-1. 지난 10년간의 인권교육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잘한 점을 기술해 주십시오.

\_\_\_\_\_

\_\_\_\_\_

#### 4-2.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점을 두어야 할 점을 기술해 주십시오.

\_\_\_\_\_

\_\_\_\_\_

## 2. 인권교육의 주요대상

유엔에서는 인권교육 주요 대상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분	학 교 영 역	공공기관 영역	시민사회 영역
대 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치원생,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li> <li>- 전문직업훈련원생</li> </ul> </li> <li>· 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치원 교사, 초·중·고등 교사</li> <li>- 교장, 장학사 등 교육관리자</li> <li>- 대학교수</li> </ul> </li> <li>·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위원, 학교운영위원 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법관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회의원, 입법직공무원 및 (지방)의회의원</li> </ul> </li> <li>· 사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법연수생, 판사 및 법원 행정직 등</li> </ul> </li> <li>· 행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사·검찰공무원, 경찰 공무원 교정직, 보호직·출입국 등</li> <li>- 행정공무원(국가직, 지방직)</li> <li>- 보호시설관련공무원(사회복지사, 시설종사자 포함)</li> <li>- 군부대 종사자(장교·부사관 병사)</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론인, 의료전문인, 변호사 등 법률인</li> </ul> </li> <li>· 사회적 영향력 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단체 지도자, 종교지도자(기독교, 불교 등)</li> </ul> </li> <li>· 사회적 약자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 장애인, 성적소수자, 이주노동자, 탈북자, 극빈층 등</li> </ul> </li> <li>· 기업인</li> <li>· 일반 시민</li> </ul>

### 5. 학교영역의 대상별 인권교육활동을 평가하신다면?

	매우 잘했다	잘했다	그저 그렇다	부족 하다	매우 부족 하다
1) 유치원생 및 취학 전 아동	①	②	③	④	⑤
2) 초·중등 학생	①	②	③	④	⑤
3) 대학생	①	②	③	④	⑤
4) 전문직업훈련원생 등	①	②	③	④	⑤
5) 유치원 및 취학 전 기관 종사자	①	②	③	④	⑤
6) 초·중등 교원	①	②	③	④	⑤
7) 대학교수	①	②	③	④	⑤
8) 기타(교육위원, 학교운영위원 등)	①	②	③	④	⑤

#### 5-1. 학교영역 인권교육의 가장 큰 장애요인 3가지를 선택하신다면?

- |                   |                     |
|-------------------|---------------------|
| ① 예산 부족           | ② 정책관리자의 부관심        |
| ③ 인권교육에 대한 전반적 편견 | ④ 인권강사 및 연수 프로그램 부족 |
| ⑤ 인권교육 자료 부족      | ⑥ 교사의 과도한 업무부담      |
| ⑦ 모니터링 활동이 미미함    | ⑧ 기타 _____          |

#### 5-2. 학교영역 인권교육에서 우선되어야 할 대상 3집단만 적어 주십시오.

\_\_\_\_\_

#### 5-3. 학교영역 인권교육이 더 잘되기 위해 필요한 점을 적어 주십시오.

\_\_\_\_\_

6. 공공기관 영역의 대상별 인권교육활동을 평가하신다면?

	매우 잘했 다	잘 했 다	그저 그렇 다	부족 하다	매우 부족 하다
1) 입법관계자 (국회의원, 입법직공무원 및 지방의회 의원)	①	②	③	④	⑤
2) 사법부(사법연수생, 판사 및 법원 행정직 등)	①	②	③	④	⑤
3) 경찰공무원	①	②	③	④	⑤
4) 검사 및 검찰공무원	①	②	③	④	⑤
5) 국가정보원	①	②	③	④	⑤
6) 교정직 공무원	①	②	③	④	⑤
7) 보호직, 출입국 공무원	①	②	③	④	⑤
8)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①	②	③	④	⑤
9) 국회의원	①	②	③	④	⑤
10) 행정공무원 (국가직, 지방직)	①	②	③	④	⑤
11) 보호시설관련공무원 (사회복지사, 시설종사자 포함)	①	②	③	④	⑤
12) 군부대종사자(장교, 부사관, 병사)	①	②	③	④	⑤

6-1. 공공기관 영역 인권교육의 가장 큰 장애요인 3가지를 선택하신다면?

- |                   |                     |
|-------------------|---------------------|
| ① 예산 부족           | ② 정책관리자의 무관심        |
| ③ 인권교육에 대한 전반적 편견 | ④ 인권강사 및 연수 프로그램 부족 |
| ⑤ 인권교육 자료의 부족     | ⑥ 인권교육 접근성의 어려움     |
| ⑦ 인권교육 의무 규정의 부재  | ⑧ 기타 _____          |

6-2. 공공기관 영역 인권교육에서 우선되어야 할 대상 3집단만 적어 주십시오.

\_\_\_\_\_

6-3. 공공기관 영역 인권교육이 더 잘되기 위해 필요한 점을 적어 주십시오.

\_\_\_\_\_

## 7. 시민사회 영역의 대상별 인권교육활동을 평가하신다면?

	매우 잘했다	잘했 다	그저 그렇 다	부족 하다	매우 부족 하다
1) 언론인	①	②	③	④	⑤
2) 의료전문인	①	②	③	④	⑤
3) 변호사 등 법률인	①	②	③	④	⑤
4) 사회단체 지도자	①	②	③	④	⑤
5) 종교지도자	①	②	③	④	⑤
6) 사회적 약자집단	①	②	③	④	⑤
7) 기업인	①	②	③	④	⑤
8) 일반시민	①	②	③	④	⑤

## 7-1. 시민사회 영역 인권교육의 가장 큰 장애요인 3가지를 선택하신다면?

- ① 예산 부족                                      ② 정책관리자의 무관심  
 ③ 인권교육에 대한 전반적 편견    ④ 인권강사 및 연수 프로그램 부족  
 ⑤ 인권교육 자료의 부족                      ⑥ 사회적 책임의식 및 성숙한 시민의식의 부족  
 ⑦ 체계적 교육기관(인권교육원 등) 부재    ⑧ 기타 \_\_\_\_\_

## 7-2. 시민사회 영역 인권교육에서 우선되어야 할 대상 3집단만 적어 주십시오.

---

## 7-3. 시민사회 영역 인권교육이 더 잘되기 위해 필요한 점을 적어 주십시오.

---

### 3. 인권교육의 물적기반

※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0년간 다양한 인권교육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 인권강사 양성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을 시행해 왔습니다.  
 인권증진을 위한 3개년 계획 [2012-2014년]의 성과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IV-3 인권 콘텐츠의 개발 등 인권친화적 문화조성**  
 ▶ 교육대상별 (유·초·중·고·대학, 군인, 경찰 등) 맞춤형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 신기술 등 대중매체를 통한 인권교육 접근성 강화 등

#### 8. 인권교육프로그램과 자료, 강사의 전문성을 어떻게 평가 하십니까?

매우 좋다	좋다	그저 그렇다	부족하다	매우 부족하다
-------	----	--------	------	---------

1) 인권교육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⑤
2) 인권교육 자료	①	②	③	④	⑤
3) 인권교육 강사의 전문성	①	②	③	④	⑤

8-1. 부족하다면 어떤 프로그램이나 자료들이 개발되어야 할지 기술해 주십시오.

---



---



---

8-2. 인권교육 강사들을 교육하고 양성할 방안이 있다면 기술해 주십시오.

---



---



---

#### 4. 향후 10년간 인권교육 기본계획에 관한 질문

※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교육 10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인권교육의 실천 비전·목표·전략을 수립하고 핵심 추진체계를 확립하여 향후 10년 인권교육이 나아가야 할 기본방향 등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9. 향후 10년간 인권교육계획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기술해 주십시오.

---



---

10. 향후 10년간의 인권교육계획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한 방안을  
기술해 주십시오.

---



---

※ 다음은 **기초자료**에 관한 문항입니다. 해당되는 내용에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SQ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SQ2. 귀하의 연령은?

① 20세-29세

② 30세-39세

③ 40세-49세

④ 50세-59세

⑤ 60세 이상

SQ3. 귀하의 인권교육 경력은?

- ① 0년-5년                      ② 6년-10년                      ③ 11년-20년  
④ 21년-30년                      ⑤ 31년 이상

SQ4. 귀하가 활동하시는 영역은?

- ① 초중등학교      ② 대학교                      ③ 시민사회  
④ 국가인권위원회      ⑤ 정부기관                      ⑥ 기업  
⑦ 기타(\_\_\_\_\_)

◎ 귀한 시간을 내어 응답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설문 결과는 인권교육의 활성화에 소중한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